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48-01

#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제출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12. 15.

연구 수행기관 (사)인권정책연구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여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은희**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교육실장

공동연구원 **이명희**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이준극** | 사람중심교육원 공동대표

**김지우**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배희은**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심기용** |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상임활동가

**최성윤**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강미선**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유지민** |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 요약문

## 1. 연구 개요

- ▶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적 요청에 따라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군도 군이 처한 인권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군 인권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사회 각계에서의 인권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권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인권 콘텐츠에 대한 요청도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권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내실 있는 인권교육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
- ▶ 이러한 노력이 그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콘텐츠 내용의 정확성, 활용도 등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방부와 각 군에서 생산한 인권 콘텐츠를 점검하고, 학습자와 교수자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 및 군 인권교육 관계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진행하여 군 인권교육 콘텐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 연구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지만, 조사 결과 국방부와 각 군에서 제작한 인권 콘텐츠는 그 규모나 내용의 수준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다른 국가기관이 참고할 좋은 사례로 보인다.
- ▶ 조사를 통하여 해당 콘텐츠가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쓰이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콘텐츠 제작 시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군인권 콘텐츠 활용 및 구성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 ▶ 도출한 콘텐츠 개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험판을 개발하여 향후 콘텐츠 개발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조사 범위와 내용

- ▶ 국방부 및 각 군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하여 활용 중인 군 인권교육 교재 및 교안과 주요 참고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아래 표의 목록 참조), 이외 실제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콘텐츠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 인권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12회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미리 준비한 점검지표 항목에 기초해 복수의 연구진이 교차해 분석을 진행했다.
- ▶ 우리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시 참고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군과 미국 연방군 인권교육 콘텐츠를 조사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요약문

## 군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대상 목록

생산단위	콘텐츠 목록	형태
국방부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군인의 인권, 함께 가는 길> (2023)	교재
국방부	국방부 군 인권교육 교안	교안(PPT)+스크립트
해군	2023년 해군 인권 교안	교안(PPT)
해병대	해병대 인권교육 교안 <Q&A로 알아보는 인권교육>	자료집
공군	공군 인권교육 교안 <군인 인권의 이해>	교안(PPT)
육군	인권교육용 소식지형 교육자료 육군 인권소식	소식지
해군	인권교육용 소식지형 교육자료 해군 인권뉴스	소식지
공군	인권교육용 소식지형 교육자료 공군 인권레터	소식지
국방부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2023, 국방부, 60분 내외)	강의 영상
	금쪽같은 내 인권(2023, 국방부, 60분 내외)	강의 영상
육군	인권왕(2022, 육군인권존중센터, 편당 10분 내외)	영상 자료
	인권이군(2023, 육군인권존중센터, 편당 15분 내외)	영상 자료
국방TV	리얼 병영 특! 행복한 군대 이야기(2023, 국방TV, 편당 55분 내외)	방송프로그램
육군	육군 인권툰(2022-2023, 육군인권존중센터, 33편)	웹툰

- ▶ 군 인권교육 수요(내용적 측면) 파악 및 분석을 위하여 1) 병사 총 502명(현장 모니터링 부대 중심)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2) 교수자 및 학습자(직무자) 총 63명에 대한 면접 조사, 3) 군인권교육 촉진자(Facilitator, 이하 FT) 4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교육 경험, 만족도, 인권 의식, 현재 군에서 필요한 교육, 교육 효과 등이다.
- ▶ 이와 같은 전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인권교육 전문가 4명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Focus Group Discussion, FGD)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 3. 주요 조사 결과와 가이드라인

-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자료가 생산되어 있었다. 이 중 최근 생산한 국군 인권교육 교재의 경우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군 인권교육에서 다뤄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도 우수한 편이다.
- ▶ 각 군에서 발행하는 인권 소식지의 경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인권교육 콘텐츠 구성 시 활용하기 좋은 자료인데, 특히 공군 인권레터는 제시하는 소재나 관점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는 훌륭한 인권 콘텐츠였다.
- ▶ 군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광범위성,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해 보면 군 인권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은 우



# 요약문

리 사회 인권 문화 증진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 인권교육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교육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이와 같은 사회 전체의 지원과 협업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은 항목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그 시험판을 제작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 군 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및 구성 가이드라인 항목

대분류	세부항목
군 인권교육의 목표	1) 군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2)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의 학습 목표 점검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	1) 국가의 인권 보장 업무를 이행하는 실행자로서 책임 2) 군 구성원의 인권 보장
인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	1) 인권의 개념: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 보장 2) 인권의 구조: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3)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와 개인의 도덕적 사명 구별 4) 인권 ≠ 권익·이권·이익 5) 인권의 역사
군인과 인권	1) 군인의 정체성 2) 군 직무의 인권적 의미 3) 군 역사와 인권 4) 군 인권 보장의 원칙과 제한과 그 한계 5) 지휘권과 인권 6) 구체화가 필요한 군인 인권 분야 7) 권리구제 및 제도 개선
교육 전반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	1)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 2) 인성교육 및 군법교육과 구별되는 인권교육 3) 인권은 수단이 아닌 목적 4) 인권(기본권)의 충돌 5) 사례를 통한 인권교육 진행 시 유의점 6) 이외 인권교육시 교수자가 유의해야 할 점

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신 군 인권교육 관계자, 인권교육 현장에 계신 군 인권교육 FT와 군 인권 교관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목차



<b>제1장 서론</b>	<b>1</b>
<b>I. 연구의 배경과 범위</b>	<b>3</b>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b>제2장 국내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b>	<b>17</b>
<b>I. 국내 선행연구 분석</b>	<b>19</b>
1. 군 인권교육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 .....	19
2.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21
3. 군 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	24
<b>II. 해외 군 인권교육 콘텐츠 조사 및 분석</b>	<b>26</b>
1. 독일 연방군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	26
2. 미국 연방군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	34
<b>제3장 군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b>	<b>43</b>
<b>I. 국군 인권교육 교재</b>	<b>45</b>
1. 분석 개요 .....	45
2. 제1장 인권 바로 알기 .....	47
3. 제2장 인권 확장하기 .....	53
4. 제3장 인권의 기틀 .....	59
5. 제4장 군인의 인권과 지휘권 .....	63

6. 제5장 사례를 통해 본 군인의 인권	66
7. 제6장 인권침해 시 권리 구제 방법	69
8. 제7장 전쟁, 분쟁과 인권	73

## II. 군 인권교육 교안 77

1. 분석 개요	77
2. 국방부 군 인권교육 교안	78
3. 해군 인권교육 교안	86
4. 해병대 인권교육 교안	91
5. 공군 인권교육 교안	94

## III. 군 인권교육 영상 콘텐츠 및 미디어 98

1. 분석 개요	98
2. 국방부 인권교육 강의 영상	99
3. 육군 인권영상 자료	103
4. 국방TV 방송프로그램	109
5. 육군 인권 웹툰	117

## IV. 각 군 인권 소식지 122

1. 분석 개요	122
2. 육군 인권소식	123
3. 해군 인권뉴스	127
4. 공군 인권레터	130

## V. 군 인권교육 현장 인권콘텐츠 135

1. 분석 개요	135
2. 군 인권교육 현장 콘텐츠	136



# 목차



## 제4장 군 인권교육 수요조사 결과 145

### I. 교수자 수요조사 결과 147

- 1. 조사 개요 ..... 147
- 2. 교수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48
- 3. 시사점 ..... 170

### II. 학습자 수요조사 결과 174

- 1. 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74
- 2. 학습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88
- 3. 시사점 ..... 192

## 제5장 군 인권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195

### I. 군 인권교육 FT 심층면접조사 결과 197

- 1. 조사 개요 ..... 197
- 2. 군 인권교육 FT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 201
- 3.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 230

### II. 군 인권교육 전문가 정책토론회 결과 235

- 1. 정책토론회 개요 ..... 235
- 2. 주요 결과 분석 ..... 236
- 3. 시사점 ..... 243

## 제6장 군 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및 구성 가이드

247

### I. 군 인권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249

- 1. 군 인권교육의 목표 ..... 249
- 2.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 ..... 250

### II.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 252

- 1. 인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 ..... 252
- 2. 군인과 인권 ..... 253
- 3. 교육 전반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 ..... 256

### III. 시험판 260

- 1. 콘텐츠 내용 구성 ..... 260
- 2. 콘텐츠 형식 구성 ..... 261
- 3. 콘텐츠 시험판 해설 ..... 262

### 참고문헌 및 별첨자료 273

참고문헌 275

별첨 1. 군 인권교육 콘텐츠 모니터링지 277

별첨 2. 군 인권교육 FT 심층면접조사(FGI) 질적 분석 결과 279



# 목차



## 표 목차

〈 표 1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구성의 적절성	9
〈 표 2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내용의 적합성	9
〈 표 3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내용의 정확성	10
〈 표 4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내용의 최신성	10
〈 표 5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내용의 윤리성	10
〈 표 6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방법의 적절성	10
〈 표 7 〉 병사 설문조사_조사 개요	12
〈 표 8 〉 학습자와 교수자 면접 및 서면조사_조사 개요	13
〈 표 9 〉 군 인권교육 촉진자(FT) 심층면접(FGI)_조사 개요	14
〈 표 10 〉 전문가 심층토론(FGD)_조사 개요	15
〈 표 11 〉 정치교육 네트워크의 군 인권교육 기관	28
〈 표 12 〉 2023 연방군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주제	29
〈 표 13 〉 국군 인권교육 교재_분석 대상	45
〈 표 14 〉 국군 인권교육 교재_전체 목차	45
〈 표 15 〉 군 인권교육 교안_분석 대상	77
〈 표 16 〉 국방부 군 인권교육 기본교안_주요 내용 구성	78
〈 표 17 〉 국방부 군 인권교육 기본 교안_주요 교육목표	78
〈 표 18 〉 2023년 해군 인권 교안 주요 내용 구성	87
〈 표 19 〉 해병대 Q&A로 보는 인권교육 주요구성	92
〈 표 20 〉 공군 인권교육 교안 주요 구성 내용	94
〈 표 21 〉 군 인권교육 영상 콘텐츠 분석 대상	98
〈 표 22 〉 ‘2023 군인 인권 강의’ 주요 내용 구성	100
〈 표 23 〉 육군 인권영상 자료 주요 구성 내용	103
〈 표 24 〉 분석에 활용한 TV방송용 프로그램 목록	109
〈 표 25 〉 각군 인권소식지_분석 대상	122
〈 표 26 〉 2022년 육군 인권소식(1~12월) 주제	124
〈 표 27 〉 2023년 해군 인권뉴스(1~8월) 주제	127

〈 표 28 〉 인권교육용 소식지형 교육자료 2022년 공군 인권레터(1~12월) 개요 .....	130
〈 표 29 〉 군 인권교육 현장 강의_분석 대상 .....	135
〈 표 30 〉 군 인권교육 현장 강의_교육목표 .....	136
〈 표 31 〉 군 인권교육 교수자 면접조사_조사 개요 .....	147
〈 표 32 〉 설문조사_조사 개요 .....	174
〈 표 33 〉 설문조사_문항 구성 .....	175
〈 표 34 〉 군 인권교육 교수자 면접조사_조사 개요 .....	188
〈 표 35 〉 심층면접조사_조사 개요 .....	197
〈 표 36 〉 군 인권교육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요 .....	235
〈 표 37 〉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 주요 내용과 주제 예시 .....	261



# 목차



##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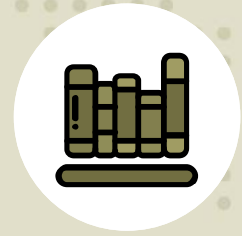
[ 그림 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를 통해 본 인권의 구조 .....	3
[ 그림 2 ] 공직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기본 구조 .....	22
[ 그림 3 ] 설문조사 결과_인권 보장 책무자에 대한 이해 .....	177
[ 그림 4 ] 설문조사 결과_군 인권에 대한 이해 .....	177
[ 그림 5 ] 설문조사 결과_권리로서 인권 .....	178
[ 그림 6 ] 설문조사 결과_군 업무의 인권적 의미 .....	178
[ 그림 7 ] 설문조사 결과_군 조직의 인권적 의미 .....	179
[ 그림 8 ] 설문조사 결과_권리의 제한 .....	179
[ 그림 9 ] 설문조사 결과_군 인권 보장과 군 역량 .....	180
[ 그림 10 ] 설문조사 결과_제도 개선의 중요성 .....	181
[ 그림 11 ] 설문조사 결과_군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 및 제도의 필요성과 유익성 .....	181





# 제1장

##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범위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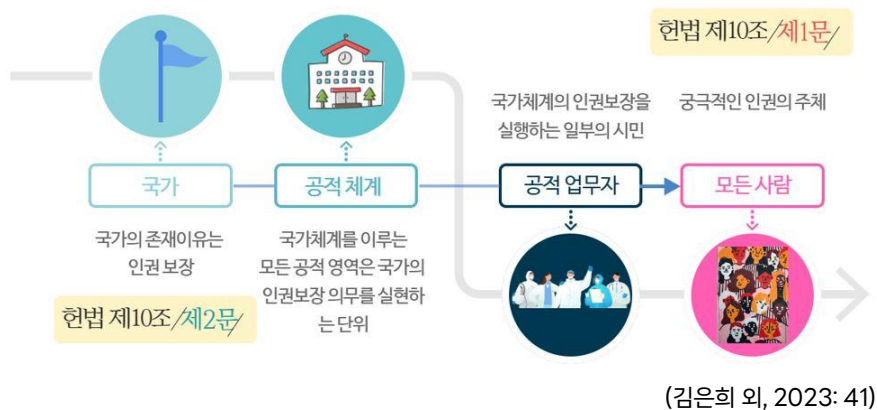
# I 연구의 배경과 범위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 (1) 군의 인권적 역할 수행과 인권교육

▶ 군은 국가체계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이다. 헌법 제10조의 제2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인권 보장인 만큼 군의 업무 역시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이행의 일환에 해당한다.



[그림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를 통해 본 인권의 구조

▶ 직무자로서의 군인은 이와 같은 군의 인권적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한 인권 역량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7조와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2014)이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UN 인권교육훈련선언」 제7조

- ①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참여, 통합, 책임의식 속에서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 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 ②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군대 내의 전 군인 등에게 적합한 인권훈련과 적절한 경우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등의 교육을 (...) 보장해야 한다.

**(2) 군인의 인권과 인권교육**

- ▶ 군인은 국가의 중요한 체계에 해당하는 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이면서 시민이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군 업무 수행자로서 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인 인권 문제에 대하여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 한편 우리 군은 그간 군이라는 이유로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만 여겨왔던 인권 문제를 인권적 시각에서 성찰하고 군 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 ▶ 모든 조직의 인권 증진은 이를 견인할 구성원의 인권 역량을 필수 요소로 한다. 아무리 많은 제도를 구비한다 해도 구성원의 역량에 의한 뒷받침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지에 기반할 때만 진정한 인권 증진이 가능하다. 군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권적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구성원인 군인의 인권 역량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 ▶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군 역시 관련 법률에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 (군 인권교육의 목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데 있다.

제18조 (교육 내용) ① 병 및 간부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3.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제도의 구체적 이용방법
4. 인권정책 및 규정의 이해
5. 교전 시 인권보호의무
6.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7. 인권침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조치

▶ 특히 우리 군은 군의 특수성으로 여겨져 왔던 요인들을 다시 돌아보고 인권적 조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사회적 흐름을 맞고 있다. 군 임무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조직 운영은 이제 더 이상 군 조직의 인권적 취약성으로 방치할 수 없다. 이를 넘어서는 인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여기에 군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지원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군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해 일상적인 인권교육 협력을 유지하면서 군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이러한 활동 차원에서 진행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4) 국제 인권문서를 통해 살펴본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제2조 1. 인권교육 및 훈련은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고 특히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형성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공하고 태도나 행동을 발전 시킴으로써,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훈련·정보제공·인식개선·학습 활동들이다. ...(후략)...

#### 「세계인권선언」

(전문) ...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duty)를 진다.

- ▶ 「유엔 인권교육 훈련에 관한 선언」 제2조에서는 말하는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인권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에 그치는 표현이 아니다. 즉 개인적으로 타인을 차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변화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존중’은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인권 문화’와 긴밀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즉 인권교육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문화 형성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인권문화라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이 인권을 증진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배려나 희생으로 누군가의 존엄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구성되는 기준이 인권인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인성과 인권,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보편적 인권문화의 형성은 결국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에 의해 만들어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의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사명(duty)를 가진다”는 내용은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이 실현되는 공동체 구현!**

인권교육은 그 공동체의 각 제도와 정책이 구성원의 인권을 실현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은희, 2023).

**◆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향한 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성원의 인권적 역량이 필요하다(김은희, 2023)

**2) 연구의 목적**

**(1) 인권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콘텐츠에 대한 요구**

- ▶ 인권교육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교육의 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콘텐츠의 준비가 중요하다.
- ▶ 군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어 확산되고 있지만, 그 실행 현장을 채울 적합한 교육 내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콘텐츠의 구성과 제공이 시급하다.

- ▶ 학습자에 특화된 인권교육 콘텐츠의 부족은 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겪고 있는 인권교육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 또한 사회·문화적 급변에 따른 세대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의 부족으로 교육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 (2)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 이에 이 연구는 향후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시 활용할 가이드라인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인권교육 목표에 맞게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서도, 학습자인 군인에게 적합한 소재와 방법으로 구성된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 군 학습자 특성에 기반한 인권교육 콘텐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향후 구체적인 인권교육 콘텐츠 구성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군 조직 내에는 다양한 주체(간부, 병사, 군무원 등)가 혼재하고 있고 각 주체별로 인권과 관련된 관점, 상황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내용 마련이 요구됨.”

(김은희 외, 2022: 87)

- ▶ 이를 위해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콘텐츠가 어떤 목적과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해당 콘텐츠가 인권교육 현장에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쓰이는 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콘텐츠 제작 시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과업이다.
- ▶ 이에 기존의 군 인권교육 콘텐츠를 분석하고 관계자 수요 조사 등을 진행하여 필요한 가이드라인 항목을 도출하였다.
- ▶ 도출한 콘텐츠 개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실제 간단한 시험판을 제공하여 향후 콘텐츠 개발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전반 실태조사

#### (1) 조사 대상

-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실제 활용 중인 군 인권교육 교재 및 주요 강의 참고자료 등
- 국방부와 각 군에서 공식적으로 생산하여 활용 중인 인권 콘텐츠를 기본으로 하되 이외 실제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콘텐츠의 추세도 참조

#### (2) 분석 목적

- 콘텐츠가 인권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내용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방해 요인을 분석하여 지속할 부분과 개선 방안으로 연계하였다.  
→ 향후 교재 등에 지속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 및 수정·개선 방안 제시

#### (3) 분석 기준

- 군이라는 공적 조직 내 인권교육인 만큼 공직자 인권교육의 기본 틀에 입각하되, 군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기준을 정립하였다.
- 공통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진별로 각 콘텐츠에 대한 점검지를 적성한 후 이를 취합하여 분석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였다.
- 군 인권교육의 기본구조는 군이라는 공적 조직의 수행하는 임무를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근거하여 현안을 분석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를 연대와 포용(inclusion)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군 조직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인권 보장 체계 속에서 개선하는 흐름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 (4) 연구 방법 및 절차

##### ① 콘텐츠 분석

- 국방부 및 각 군 인권교육 담당부서의 협조체계 아래 관련 콘텐츠 취합(2023년 상반기 군 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하여 목록 협조받음)
- 확정된 콘텐츠 리스트에 대한 문헌 연구 진행 : 앞서 제시한 것처럼 군 인권교육으로서의 기본적인 구조와 필수 사항, 맞춤형 인권교육 구조 등 확인
- 콘텐츠별 1차 검토 후 점검기준 수정·보완하여 점검지 양식 확정



- 작성된 점검지 취합과 분석, 시사점 초안 도출

② 현장 모니터링(참여 관찰)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10개 직무별 인권교육 및 부대 인권교육(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 조사 방법 : 군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문헌 정리 후 모니터링 분석 틀을 설계하여 현장 조사 진행

○ 조사 진행 방법

- 군 내부 강사 진행 인권교육, 외부 강사 진행 인권교육, 군별 직무별 점검
- 모니터링 분석 지점: 국방부 국군 인권교육 교재의 내용이 설정한 목적에 맞게 학습자들에게 전달되는지, 현 군 인권교육에서 필요한 이슈, 정리되지 않은 쟁점 파악,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지점 등 파악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점검지는 부록으로 첨부) ★

1. 교육 구성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교육목표가 군 인권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 표 1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구성의 적절성

세부 지표	점검을 위한 질문
내용 선정 및 구성의 적합성	기획자가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구성되었는가?
학습자 특성 적합성	학습자의 특성(예: 각군, 직위(급), 업무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학습 분량의 적절성	교육 시간 및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 분량이 적절한가?
내용의 논리성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앞뒤 내용에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가독성 확보 등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의 체계성	교육목표 및 교육 내용, 학습자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2. 교육 내용

- 1) 적합성

< 표 2 >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내용의 적합성

세부 지표	점검을 위한 질문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인권의 보편성(모든 사람)과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잘 제시하고 있는가?
	인권의 원칙(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 포함)을 적절하게 다루어 내는가?
직무의 인권적 의미	군 업무의 역할과 사명을 인권적으로 제시하는가?

세부 지표	점검을 위한 질문
인권의 관점	대상화, 수단화, 서열화, 타자화, 시혜적 접근 등의 내용은 없는가?
	인권침해의 원인을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이 아닌 구조적 측면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가?
	사례를 단순 소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인권적 맥락을 읽어내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돕는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연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인권 보장 체계 (환류)	군인권 보장제도와 정책 및 관련 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는가?

2) 정확성

〈표 3〉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내용의 정확성

세부 지표	점검을 위한 질문
교육 내용의 표현상 정확성	표현상(용어 설명, 맞춤법, 외래어 표기, 오타자 등)의 오류는 없는가?
	인용하고 있는 사례, 정보, 인권 관련 용어의 표현과 사용이 정확한가?
교육 내용의 의미상 정확성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정확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예, 인권의 상호의존성, 권리와 의무 등)

3) 최신성

〈표 4〉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내용의 최신성

세부 지표	점검을 위한 질문
교육 내용·자료의 최신성	내용(사례 업데이트, 쟁점의 현재성 등)과 자료(사진, 통계, 도표, 지도, 지명, 각종 용어, 법령 및 각종 인용 자료)가 최신인가?

4) 윤리성

〈표 5〉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내용의 윤리성

세부 지표	점검을 위한 질문
선정성 및 폭력성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용어, 이미지,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가?
편견과 고정관념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등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정보보호	개인정보(공인이 아닌 사람의 실명이나 연락처, 사진 등)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진 않는가?

3. 교육 방법 : 교육 방법의 적절성

〈표 6〉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_교육 방법의 적절성

세부 지표	점검을 위한 질문
효과성	교육목표, 학습자 특성, 학습 경험 등을 고려한 교육의 흐름과 방법 배치인가?
효율성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장애, 성, 연령, 문화 등)을 고려한 자료나 활동 구성인가?
참여성	학습자의 의견 초대, 비판적 사고의 확장, 생각의 전환, 스스로 문제와 해결 방안 발견 등을 돕는 질문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는가?

세부 지표	점검을 위한 질문
실천성	교육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 이후 삶에서 이어질 실천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4. 학습환경**

- 1) 학습 분위기(인권적 학습 분위기) : 인권적 학습 분위기(민주적, 협력적, 상호존중 등)를 유지하고 있는가?
- 2) 학습자 편의(편리성) : 교육 진행에 필요한 준비물과 공간 배치 등을 미리 확인하였는가?

**5. 총평**

**6. 개선을 위한 제언**

**2) 군 인권교육 수요(내용적 측면) 파악 및 분석**

**(1) 조사 내용**

- 교육 경험, 만족도, 인권 의식, 현재 군에서 필요한 교육, 교육 효과 등 파악(과업 요청 참조)
- 이 중 이번 실태조사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파악해야 할 것은 각 학습자 군별 맞춤형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의 방향임.
- 이와 관련해서는 앞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그 실제적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무게 중심을 두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연구 방법**

① 설문조사

📍 조사 개요

〈표 7〉 병사 설문조사\_조사 개요

<b>조사 시기</b>	2023년 9월 20일 ~ 12월 11일
<b>조사 참여 규모</b>	총 502명 : 육군 219명, 해군 81명, 공군 91명, 해병대 111명(현장 모니터링 10개 부대 중심)
<b>조사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이해(인권의 개념과 구조, 권리주체와 책무자 등)</li> <li>• 군인권에 대한 이해도</li> <li>• 인권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li> <li>• 필요한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 등</li> </ul>
<b>조사 방법</b>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
<b>질문 문항 유형과 설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li> <li>• 담당 연구진 설문지 설계</li> <li>• 연구진 회의에서 설문지 초안 보완 및 최종설문지 완성</li> </ul>
<b>분석 방법</b>	수집된 자료는 코딩(coding), 입력된 파일 데이터 편집(editing),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빈도분석 진행

◆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주의 사항

군 조직의 특성상 보안 등의 상황으로 군별 모집단 규모에 기반한 유효한 표집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조사 규모도 500명 안팎으로 평균값을 도출하거나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각 군, 남녀, 계급 등)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 문항별 빈도를 중심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면접 및 서면 조사(총 71명)

① 면접 및 서면조사 (63명)

◆ 조사 개요

〈표 8〉 학습자와 교수자 면접 및 서면조사\_조사 개요

조사 시기	2023년 9월 19일(화) ~ 12월 8일(금)
조사 참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20명(장병 14명, 직무자 6명)</li> <li>• 교수자 43명</li> </ul>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생활에 있어서의 또는 직무에 있어서의 군 인권교육의 의미</li> <li>• 학습자와 직무에 필요한 교육 내용</li> <li>• 인권교육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li> <li>• 인권교육 관련 알고 싶은 주제 및 교육 형태 등</li> </ul>
조사 방법	면접조사 및 서면조사
질문 문항 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li> <li>• 담당 연구진 설문지 설계</li> <li>• 연구진 회의에서 설문지 초안 보완 및 최종설문지 완성</li> </ul>
분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조사 : 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 해제와 클리닝(Cleaning) → 질적 코딩(Nvivo 프로그램 활용)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li> <li>• 서면조사 : 서면취합 → 내용의 엑셀 분류 → 질적 내용 분석</li> </ul>

### ○ 조사의 목적

- 군 인권교육 현장 및 교육참여자의 인권교육 콘텐츠 수요 파악
- 면접조사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 양적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구체적인 수요 추가 파악

### ○ 조사 시기

- 2023년 9월 19일(화) ~ 12월 8일(금)

### ○ 조사 대상

- 직무별 학습자(수사직, 법무직, 의료직, 상담직), 군별 학습자(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 군인권 교수자

### ○ 조사 내용

- 군생활에 있어서의 또는 직무에 있어서의 군 인권교육의 의미
- 학습자와 직무에 필요한 교육 내용
- 인권교육에서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 직무별 특성화된 콘텐츠의 필요성
- 인권교육 관련 알고 싶은 주제 및 교육 형태
- 향후 인권교육 참여 의사 등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 구성, 인권교육 현장 모니터링 시 해당 교육 교수자, 학습자 중심으로 섭외, 면접 조사 또는 서면 면접 진행

○ 분석 방법

- 대면 인터뷰 조사 : 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 해제와 클리닝 (Cleaning) → 질적 코딩(Nvivo 프로그램 활용)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서면 인터뷰 조사 : 서면 내용의 취합 → 내용의 엑셀 분류 정리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②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4명)

○ 조사 개요

〈표 9〉 군 인권교육 촉진자(FT) 심층면접(FGI)\_조사 개요

조사 시기	2023년 10월 12일(목) ~ 10월 25(수)
조사 참여 규모	• 국방부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Facilitator, FT) 4명
조사 내용	• 인권교육의 목적 및 의미 • 국방부, 각 군 표준 교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인권교육 콘텐츠 • 군 인권교육 시 공유하고자 하는 사례, 콘텐츠 • 인권교육 시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콘텐츠 • 학습자(장병, 지휘관, 직무자 등)에게 설명이 어려운 내용 • 군별, 부대별, 직무별 특성화된 콘텐츠의 필요성 • 향후 인권교육 콘텐츠로 설계하고자 하는 주제 등
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FGI)
질문 문항 유형과 설계	• 반구조화된 질문지 • 담당 연구진 토론 내용 설계 • 연구진 회의에서 토론 내용 초안 보완 및 최종설문지 완성
분석 방법	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 해제와 클리닝(Cleaning) → 질적 코딩(Nvivo 프로그램 활용)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조사의 목적

- 인권교육 구조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군 인권교육에 필요한 주제와 교육 방법 파악
- 현 군 인권교육의 문제점 등에 나타나는 주요 맥락 파악 등

○ 조사의 대상

-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 군 인권교육 촉진자(Facilitator, FT) 총 4명

○ 조사 시기

- 2023년 10월 12일(목) ~ 10월 25(수)

○ 조사 내용

-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필요성과 목적)
- 국방부, 각 군 표준교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인권교육 콘텐츠
- 인권교육 시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설명이 어려운 내용
- 군별, 부대별, 직무별 특성화된 콘텐츠의 필요성
- 현 군 인권교육의 문제점 등 파악
- 향후 인권교육 콘텐츠로 설계하고자 하는 주제 등

○ 조사의 방법

-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 심층면접조사는 정성적 조사의 한 종류로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 등의 서사와 맥락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룹으로 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면접방식이다. 보통은 집단면접형식으로 진행하지만, 특정 경험이나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그룹에 포함되는 개인별로도 진행할 수 있다.

○ 분석 방법

- 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 해제와 클리닝(Cleaning) → 질적 코딩(Nvivo 프로그램 활용)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③ 전문가 심층토론(Focus Group Discussion, FGD): 정책 토론 (4명)

○ 조사 개요

〈표 10〉 전문가 심층토론(FGD)\_조사 개요

조사 시기	2023년 12월 6일(수)
조사 참여 규모	• 군 인권교육 관계 전문가 4명
조사 내용	• 군 인권교육 목표 점검 •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 •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분 •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분 • 기타 내용 제안
조사 방법	집단심층토론(FGD) 방식의 정책토론회
질문 문항	• 반구조화된 기초 토론 내용

<b>유형과 설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연구진 토론 내용 설계</li> <li>• 연구진 회의에서 토론 내용 초안 보완 및 최종설문지 완성</li> </ul>
<b>분석 방법</b>	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 해제와 클리닝(Cleaning)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조사의 목적**

-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방향성 도출

○ **조사의 대상**

- 군인권(교육)전문가 및 인권전문가 1그룹 총 4명
- 국방부 군 인권콘텐츠 관계자, 전 군법무관
- 국방부 군 인권콘텐츠 관계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국방부 군 인권콘텐츠 관계자, 이주인권 전문가
- 인권교육 및 정책 전문가,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조사의 내용(토론 내용)**

- 군 인권교육의 지향점 및 방향성
-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
- 군 인권교육의 쟁점 정리(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별,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별 등)
- 기타 내용 제안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수요 파악 면접조사,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 군 인권교육 촉진자(FT) 심층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FGI)의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가 심층토론(Focus Group Discussion, FGD)으로 진행

○ **조사의 사후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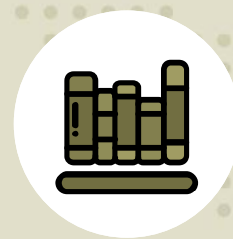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지성 작업 진행, 향후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향을 도출





# 제2장

## 국내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I. 국내 선행연구 분석

II. 해외 군 인권교육 콘텐츠 조사 및 분석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제2장

## 국내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 I

## 국내 선행연구 분석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참고문헌 및 별첨

1

### 군 인권교육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2020)

#### 1) 목적 및 필요성

- ▶ 군 인권교육은 「군인권업무훈령」 제·개정과 함께 실시되어 군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형식적 측면은 갖추었으나, 군 인권교육 업무가 부수적인 업무로 여겨지는 상황과 간부 대상 인권교육 부족, 군법 위주의 내용 등 인권교육의 콘텐츠 등의 어려움이 있다.
- ▶ 이에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2019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군 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군 인권교관 심화 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국군 인권교육 교재」(국방부, 2016) 분석을 통해 군 인권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 모니터링은 군부대 현장에서 군 인권교육을 하는 군 인권교관 과정에 대한 진단, 군 인권교관 교육과정 개선안 도출과 「국군 인권교육 교재」(국방부, 2016)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주요 내용

- ▶ 모니터링단은 군 인권교육의 내용 및 운영 측면 모두를 점검하였다. 콘텐츠와 관련하여 기본권과 인권 구분의 문제점, 군 내 성소수자 인권 내용 부재, 인권의 수단화, 국제인권규범 내용 추가 등을 다루었다.
- ▶ 군 인권교육의 내용이 군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짚으며, 군법 내용을 다루더라도 인권교육으로 정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군 인권교육에서 군법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면, 인권의 원칙으로 군법을 재해석하고 법이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군법 판례를 인권의 가치와 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의무 없이 권리 없다’는 설명을 비추어 볼 때, 인권의 개념을 오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의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할 것을 제안한다.
- ▶ 기본권과 인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군 인권교육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및 지휘권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보이는데, 기본권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를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면, 세계인권선언 제30조를 인용하여 설명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인권교육가는 기본권 제한을 설명할 때에도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의 기본적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경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현실 여건에 맞추어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 ▶ 인권침해의 원인을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에서 찾는 것을 넘어, ‘억압적 상명하복 문화’, 불평등한 젠더 문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 ▶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전투력 강화/향상에 두는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 점검하고, 인권을 수단화시키는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 3) 의의 및 본 연구와 연계성

- ▶ 모든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여주듯,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며, 인권 보장의 책무는 국가에 있음을 명확하게 짚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내용 보완점을 제시한다.
- ▶ 군 인권교육과 군법교육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 본 연구 모니터링 점검 내용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군 인권교육은 인간 존엄성을 중심으로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과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과 방법을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에서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한 배경, 조항의 내용을 통해 시민이자 군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군 인권 보장 체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인권교육에서 사안을 인권의 개념과 구조로 바라보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권역량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 인권 관련 사례 분석과 토론·토의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인권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인권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 기본권과 인권을 구분은 모니터링 의견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2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은희 외, 2022)

### 1)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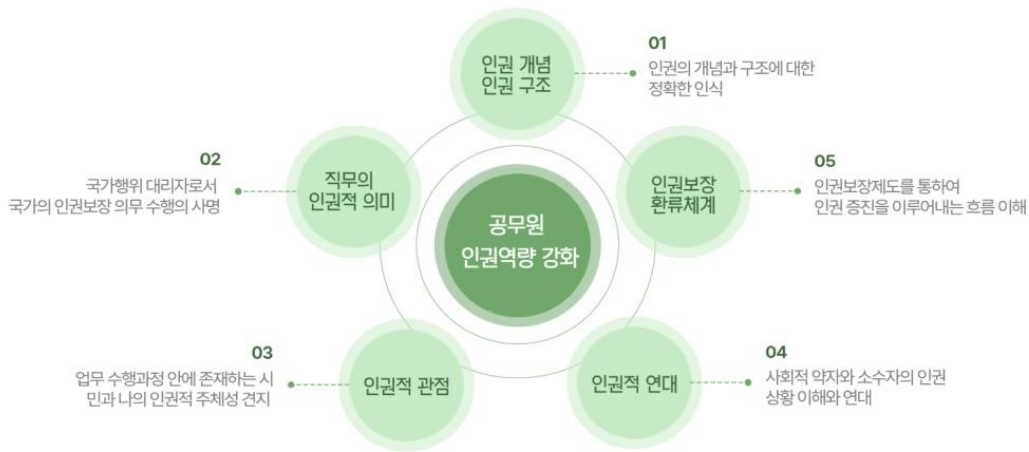
- ▶ 공무원은 인권의 주체이자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실현하는 대리자이다. 공무원의 업무 수행은 시민의 인권 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공무원의 인권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2014):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에서도 공무원의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맥을 같이 한다. 연구는 공무원의 인권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인권교육을 그동안 제기된 한계인 학습자 중심과 현장 적합성을 보완하여 사회복지, 경찰, 군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2) 주요 내용

- ▶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병사를 위한 기본과정과 훈련가 과정 두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군의 현황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하였고,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 시연 후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용자 평가 방식으로 적합성 조사를 진행하여 확정하였다.
- ▶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엔 등 인권교육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필수 내용 목록의 구조를 바탕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자 인권교육의 기본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각종 콘텐츠 점검 시 이러한 기본적 구조를 군 인권교육에 접목하였다.
- ▶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관련 조사의 주요 항목은 인권교육 현황, 현행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 직무에서 필요한 인권교육 내용과 사례 등이다. 조사 결과, 군 인권교육의 목표로 “군대의 인권적 의미 이해와 인권사례 토론을 통한 장병의 인권역량 강화”를 제시한다(김은희 외, 2022). 군 인권교육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는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를 구별할 수 있는 사례 훈련과 군내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인권적 관점으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제안한다.
- ▶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로는 ① 인권 개념과 구조, ② 직무의 인권적 의미, ③ 인권적 관점, ④ 인권적 연대, ⑤ 인권 보장 환류체계를 제시한다.
  - ① 인권 개념과 구조: 인권 개념과 구조는 인권의 주체와 인권 보장의 책무자 구조를 보여주고, 인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는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② 직무의 인권적 의미: 공직자는 국가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권의 개

념과 구조에서 자신의 업무를 해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인권적 관점: 인간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한다.
- ④ 인권적 연대: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배려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⑤ 인권 보장 환류체계: 인권 보장은 인권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고 적용하는 데 있다.



(김은희 외, 2022: 92)

[그림 2] 공직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기본 구조

### 3) 의의 및 본 연구와 연계성

- ▶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 인권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기본 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공직자 인권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 기본 구조 5가지에 기반하여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지표를 설계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군 인권교육 시험판을 개발하였다.
- ▶ 인권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다지고(① 인권의 개념과 구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군의 인권적 의미(② 직무의 인권적 의미),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특히 군인 역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③ 인권적 관점), 군 내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인권의 주체로 볼 수 있도록 사례와 교육 방법 제공(④ 인권적 연대), 마지막으로 군내 인권 보장 환류체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군내 인권 보장 체계와 사례를 제시한다(⑤ 인권 보장 환류체계).
- ▶ 또한 군 인권교육 현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수자, 학습자의 인권교육 필요성, 목표, 필요한 교

육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정리되어 있어 본 연구 조사 설계 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 ▶ 설문 및 면접조사 항목 설계 시 반복적 유사 설문이 아닌 프로그램 개발에 연계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성 기획에 필수적인 참조 자료 역할을 하였는데, 핵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참조하였다.

### 직무수행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교수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으로는 '군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며, '군 문화 개선', '군 직무의 인권적 의미' 이해, '시민교육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교육참여자는 주로 기본 소양으로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인권친화적 군 문화 견인, 직무의 인권적 이해, 권리 이해, 인권이슈 이해 등 개인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사점** 군인은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 인권교육을 통한 군인의 인권 의식 함양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서 군인의 존재 의의와 연결된다는 인권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메시지 필요하다.

- ▶ 또한 군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의 기초적인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 직무수행에서 인권교육의 효과 분석

교수자는 '지휘관 대상 인권교육', '기본권을 넘어선 교육', '군 특수성을 넘어선 인권의 보편성 등', '군인의 인권적 의미를 이해와 실생활에 적용', '인권의 오개념을 잡아주는 강의'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참여자의 경우 '인권의 이해로서 지휘권을 비롯하여 인권 개념 이해', '법리 해석', '인권적 관점에서 실무', '인권침해 및 구제 방안' 등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 내용이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교수자는 '학습자 수준과 학습자를 배려하지 않는 인권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견으로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없었음',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음', '학습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 '현실과의 괴리', '사회적 소수자 관련 콘텐츠 부족' 등이 나왔다.

**시사점**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군 내 다양한 주체들(간부, 병사, 군무원 등)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해함으로써 직무수행 시 이러한 관점을 항상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권교육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군 조직의 특수성, 교육 참여자인 간부, 병사들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교육 내용에 대해 호기심,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 3

## 군 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22)

### 1) 목적 및 필요성

- ▶ 군 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은 군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가로서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과정이다.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운영하였으며, 교육 시간은 7일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 ▶ 모니터링단은 강의 참관 조사 및 학습자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2) 주요 내용

- ▶ 모니터링에서 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❶ 군인권 관련 사례를 통한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명확히 짚는 콘텐츠
  - ❷ 군이라는 직무가 가지는 사회적 사명에 대한 인권적 규명 필요
  - ❸ 인권 보장 흐름에서의 접근
  - ❹ 군 인권 보장 체계를 연결하는 마무리 필요
- ▶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 ▶ 군의 사회적 역할이자 인권적 사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군의 인권적 역할이 설명될 때, 군인의 복지가 이익이 아닌 권리 보장의 측면으로 해석될 것이다. 아울러 인간안보 관점에서 군의 사회적 역할을 해석해야 한다.
- ▶ 군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는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군인으로서 권리 제한이 당연시되는 것이 아닌, 제복을 입었어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함부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 ▶ 군 인권교육에서 군 인권 보장 체계를 숙지하는 차원을 넘어 인권 보장 체계의 의미와 역할과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3) 의의 및 본 연구와 연계성

- ▶ 현재 국방부가 운영 중인 군 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문가 모니터링단을 통하여 해당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 보고서로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직간접으로 제시되어 있다.

- ▶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 ▶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인권의 원칙인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과 의존성, 인권의 구조인 인권의 주체와 인권 보장 책무 구조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기본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군 인권교육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군인권 관련 사례를 인권의 개념과 구조로 해석하여 학습자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군 인권교관의 인권적 해석 역량을 증진할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제안한다.
- ▶ 군의 사회적 역할 즉, 인권적 역할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 국토 방위와 평화를 지키는 역할이라는 점을 교육 내용에서 제시하였다.
- ▶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에서 부르는 데 있어, ‘제복’에 초점을 맞추어 권리 제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시민’에 방점을 두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제복을 입었어도 시민으로 권리의 주체임을, 따라서 국가는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 본 연구에서는 군 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된 배경과 의미를 읽을 수 있도록 시험판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여 모니터링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II 해외 군 인권교육 콘텐츠 조사 및 분석

### 1

### 독일 연방군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 1) 연방군 인권교육의 목적 및 시행 근거

##### (1) 독일 연방군 인권교육의 목적

연방군의 인권교육은 독일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기본법(Grundgesetz, GG)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역사적 맥락의 이해와 평가를 통해 군인들의 인권 역할을 증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잘 보여주는 인권교육 사례가 2차 대전 후 전범재판이 진행되었던 뉘른베르크시 인권사무소(Menschenrechtsbüro der Stadt Nürnberg)의 연방군을 위한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 (2) 시행 근거

- 독일연방의 인권교육 의무조항은 「군인법」 제33조(§33 des Soldatengesetzes) 제1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써 연방군의 의무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현행 국방부장관공보(Verteidigungsministerialblatt, VMBI) 시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 연방군에 대한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을 수행할 때 네트워크<sup>1)</sup>는 연방군의 민주시민/인권교육을 위한 중앙 복무규정(Zentrale Dienstvorschrift, ZDv A-2620/1) 및 내적 리더십/가이드를 위한 중앙 복무규정(ZDv A-2600/1)에 따른다.
- 단, 연방 정치교육센터(BpB)의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의 지원을 통해 추진할 때 연방 정치교육센터(BpB)의 관련 지침(Richtlinien zur Anerkennung und Förderung von Veranstalt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durch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을 준수한다.

1) 독일 연방군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네트워크는 연방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 연방군(Bundeswehr) 그리고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으로 공인된 교육기관들의 공동 추진기구이며, 연방 국방부(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MVg)와 연방 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산하 연방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센터(BpB)가 지원한다.

## 2) 연방군 인권교육의 특징

- 독일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정치교육으로 진행된다. 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적 지향성을, 민주시민교육은 인권 보장의 방법적 틀로서 서로 상호 침투한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군 인권교육은 독일의 역사적 맥락, 현재의 인권상황, 연방군이 처한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런 목적을 잘 보여주는 인권교육 사례가 2차 대전 후 전범재판이 진행되었던 뉘른베르크시 인권 사무소의 연방군을 위한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전범재판소 등 역사적 추념 공간 방문, 전시 및 영화 관람과 함께 진행되는 데 주요한 질문이 다음과 같다 : ‘지난 나치독일 국방군의 역사는 오늘날 연방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개인의 책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날 군인의 임무와 관련된 새로운 자아상은 무엇인가? 인권을 침해하는 무조건적인 명령과 무조건적인 복종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 특히 최근 독일 군대 내 인종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우익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점점 더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의 목록에 따르면 우익 극단주의적 인식 및 태도는 주로 선전·선동 등 범죄, 즉 히틀러 경례, 나치 시대 슬로건 게시, 우익 극단주의적 이미지,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연방군에서 맹목적인 단결 정신은 공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잘못 이해된 단결심은 개인과 우익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도 있다. 그들은 무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무기 사용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의 우익 극단주의는 민간인보다 잠재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

## 3) 연방군 인권교육 운영기관

- 독일 연방군 인권교육은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네트워크(Das Netzwerk Politische Bildung in der Bundeswehr)에 참여하는 공인된 교육기관들이 주로 시행하는데, 주로 연방군 내부 및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 독일 연방군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네트워크는 연방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 연방군(Bundeswehr) 그리고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으로 공인된 교육기관들의 공동 추진기구이며, 연방 국방부(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MVg)와 연방 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BMI) 산하 연방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센터(BpB)가 지원한다.

〈 표 11 〉 정치교육 네트워크의 군 인권교육 기관

구분	공인 교육기관명
정치교육 네트워크 참여 교육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멘주의 민주시민(정치), 경제와 문화 아카데미 Akademie für Politik, Wirtschaft und Kultur in Meckenburg-Vorpommern e.V. 함부르크 하우스 리센 정치(민주시민)와 경제 국제연구소 Internationales Institut für Politik und Wirtschaft HAUS RISSEN HAMBURG 헤르만 엘러스 아카데미 Hermann Ehlers Akademie 독일 연방군협회 칼_테오도르 몰리나리_재단의 교육센터 Bildungswerk des Deutschen BundeswehrVerbandes- Karl-Theodor-Molinari-Stiftung e.V. 민주시민교육센터 헬름슈테트 Politische Bildungsstätte Helmstedt e.V. Sudetendeutsches 사회 교육 재단/바트 키싱엔의 교육 센터 “하일링엔호프” Stiftung Sudetendeutsch <sup>2)</sup> es Sozial- und Bildungswerk e.V./Bildungsstätte “Der Heilingen Hof” – Bad Kissingen 독일연방 가톨릭 사회 교육센터 공동회 Arbeitsgemeinschaft katholisch-sozialer Bildungswerk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aksb) Gesellschaft der Europäischen Akademien e.V. 프랑켄바르트 아카데미 Akademie Frankenwarte 칼 아놀드 재단 Karl-Arnold-Stiftung e.V.
정치교육 네트워크 외 기관	파드본 콜핑_교육센터 Kolping-Bildungswerk Paderborn gGmbH 등

#### 4) 독일 연방군 인권교육 및 주요 콘텐츠

##### (1) 연방 국방부의 지침에 따른 교육목표와 내용

###### ① 2023년 연방군 역량 강화의 목표

- 연방군의 정치적 판단력을 높임.
- 가치에 대한 인식과 도덕적 판단력의 증진
- 민주시민의 소양에 기반이 되는 정치적 맥락의 이해
-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
- 독일 역사의 중요시기의 사건과 계기에 따른 지식과 인식의 심화
- 문화 간 소통과 이해의 역량 향상

2) 독일 보헤미안, 독일 모라비아인이라고도 하며 구 체코슬로바키아 영역에 거주하던 독일 민족

## ② 2023년 연방군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

연방 국방부(BMVG)의 2023년 교육 지침에 따른 연방군의 역량 강화는 '제복을 입은 시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내적 리더십의 세 가지 주요 영역 중 하나이다. 군인은 본인 행동의 정치적 원인, 배경 및 결과를 알고, 이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연방군의 모든 장병은 복무의 가치 기반, 정치적 및 구조적 배경을 인식하고 내재화하여 군을 대표할 수 있다.

연방 국방부의 교육 지침에 따라 2023년 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제가 결정되었고 이것은 독일 연방군의 정치(인권/민주시민)교육에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 국방부(BMVG)가 선정할 주제는 한편으로는 현안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23년 오늘과 맞닿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표 12〉 2023 연방군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주제

구분	주제
기본 주제	유럽 내 난민 위기, 취약 국가들과 냉전 갈등, 제복 입은 시민, 독일 내 집단 혐오 태도 등
현안 주제	유럽에서의 전쟁과 시대전환, 인간 존엄과 극단주의 - 지역공동체의 도전들, 독일에서의 종교적 다양성, 지역방위정책/지역연구 등
전문 주제	집단 안전보장 시스템 틀에서의 평화 보장, 일상과 복무에서의 윤리적 도전들, 난민과 이민, 디지털화와 사이버 위협,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오늘과 맞닿은 역사 관련 주제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 위기, 냉전, 연방군에서의 전통 - 임무에서 배운 교훈 등

(Politische Bildungsstätte Helmstedt, 2023)

## ③ 2023년 연방군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별 주요 교육 내용

- 군복무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에게 모범과 전통으로 각인되어 영향을 주는가?
- 태도와 인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하는가?
- 시대전환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
- 돌봄과 책임 - 연방군과 지역사회의 추모 문화 다루기
- 집단 안보 체제의 역사와 현재
- 국경 - 정체성 - 조국이라는 접근 방법
- 당시와 현재의 포로 권리
- 소년병과 비전투원 다루기
- 다양성을 기회로 활용 - 전투 역량(군대)은 어떻게 사회변화에 적응하는가?

- 전투역량(군대)에서의 여성 - 성차별의 경험 또는 성공담
- 반유대주의의 어제와 오늘
- 차별 - 연방군에서의 문제와 개선
- 지역사회와 연방군에서의 인종주의 다루기
- 문화 간 공존문제의 영역 소개 등

(Politische Bildungsstätte Helmstedt, 2023)

## (2) 독일국가인권연구소의 군 인권교육 콘텐츠

아래에 소개할 「독일 연방군에서의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인종차별 및 우익 극단주의 입장에 대한 접근」은 독일국가인권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가 개발한 주요 군 인권 교육 콘텐츠 중의 하나이다.

### 📍 학습자

- 독일 연방군의 민주시민교육 대상자

### 📍 군 인권교육 주요 내용

- 기준으로서 인권과 기본권

인권과 기본권(Grundrechte)는 교육분야, 특히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 분야에,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정치교육과 인권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인권교육으로서 정치교육

국제인권조약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규범은 해당 교육목표와 내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독일 연방의 행정당국과 교육기관 및 교수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무는 독일의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자가 자기 삶과 사회적·정치적 과정에 따른 현상의 인권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인종차별적이고 우익극단적인 입장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범주화와 위계화는 ‘인종’이라는 용어와 함께 진화해 왔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함께 고착되어 온 다양한 인종차별은 다름(“그들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으로 선동되면서 이들을 배제하는 데 이용된다. 특히 인종차별적인 관점이 특정 수준의 강도에 이르면 우익극단주의가 된다. 이것은 국가 단위의 발상이며 민족주의적인 범주에서 인종차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 논쟁, 중립성과 객관성

이 주제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당의 인종차별 및 우익 극단주의 입장에 대한 교사의 입장 정립에 관한 쟁점이고, 두 번째는 군인들의 인종차별적, 우익 극단주의적 발언에 대한 교육자의 입장 정립에 대한 쟁점이다. 특히 군 인권교육에서 인종차별 및 우익 극단주의의 쟁점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차별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차별로부터의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중심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remer, H., 2020)

### (3) 독일의 뉘른베르크시 인권사무소 군 인권교육 세미나 콘텐츠

뉘른베르크시는 국가 사회주의 출현과 그 교훈을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도시이다. 이런 배경에서 인권사무소(Menschenrechtsbüro der Stadt Nürnberg)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쟁과 홀로코스트에 참여했던 독일군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와 그 결과를 인권교육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군인들이 독일 역사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미나가 제공되고 있다.

#### 📍 학습자

- 독일 연방군과 경찰 - 그룹별로 제공되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인권세미나

#### 📍 군 인권교육 주요 내용

- 세미나 여는 마당

나치독일의 국방군은 한편으로는 병참지원과 전쟁범죄에 대한 명령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홀로코스트 등 대량 학살에 직접 관여 했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에 대한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독일군이 저지른 범죄의 교훈에 대해 합의를 해가는 과정을 다룬다. 여는 마당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나치 독일의 국방군(Wehrmacht) H 군권력의 최고 사령관의 리더십은 오늘날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 전범자들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판결은 공정했는가? 등

- 전시회 관람과 세미나

인권교육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전시회 관람은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쟁과 그것이 가지는 현재 생활과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콘텐츠의 배경이 된다. 소그룹 세미나는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 전쟁 범죄에서 개인의 책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 지난 나치 독일 국방군의 역사는 오늘날 연방군에게 어떤 시사점과 의미를 던져주는가?
- 오늘날 군인의 임무와 관련된 새로운 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영화 관람과 세미나

영화 발췌문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도덕 원칙을 크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다.

- 군인으로서 나는 오늘날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명제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무조건적인 복종이 오늘의 군대에서는 양심적 복종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지지 않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불복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Riedl, H., 2019)

**(4) 독일의 헬름슈테트 정치교육 센터의 군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센터 헬름슈테트(Helmstedt)는 독일 교육 기관 연합(Arbeitskreis deutscher Bildungsstätten e.V., AdB)의 니더작센주 기숙형 성인(평생)교육 센터 협회(HVHS)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방 내무부 산하의 연방정치(민주시민/인권) 교육센터(BpB)가 공인하는 군 인권교육 기관이다. 연방 국방부(BMVG)와 연방내무부(BMI) 산하 연방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센터(BpB)가 지원하는 연방군 정치(민주시민/인권)교육 네트워크(Das Netzwerk Politische Bildung in der Bundeswehr)를 통해 45년 이상 연방군과 협력하고 있다.

📍 학습자

- 군 내의 모든 단위 및 계급 그룹 - '제복을 입은 시민'이 이 센터 교육의 주대상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군의 대화 및 소통도 놓치지 않음.

📍 주요 군인권교육 주제

- Block 1 - 기본 주제

- 복무 - 무엇을 위해?
- 유럽 내 : 난민위기 - 국가부채 위기 - 포퓰리즘 경향
- 외교정책 : 취약 국가들 - "냉전적인 갈등" - 자원문제
- 안보정책 : 제복을 입은 시민, 의회 군대, 내부 가이드
- 독일에서 집단 관련 인간에 대한 적대감(증오)과 대하는 태도
- 사회적 미디어의 위기와 기회



● Block 2 - 현안

- 뒤셀도르프에서 인빅투스 게임 2023(Invictus Game 2023 - A Home For Respect)
- 유럽에서의 전쟁과 시대전환
- 인간 존엄과 극단주의 - 지역 공동체를 위한 도전들?
- 지역방위정책/지역연구 ;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연방
- 케스팅보트 국가 ; 튀르키예 - 이란 - 러시아 - 프랑스 - 영국
- 독일에서의 종교적 다양성

● Block 3 - 전문 주제

- 집단 안전 보장 시스템의 틀에서 평화 보장
- 외부 인식과 자기 인식
- 일상과 복무에서의 윤리적 도전들
- 디지털화와 사이버 위협
- 난민과 이민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 Block 4 - 역사

- 독일과 유럽의 역사
- 100년 전 :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위기의 해. 민주주의의 검증 시험
- 냉전
- 연방군에서의 전통 - 임무에서 배운 교훈
- 독일의 건국 신화

## 2

## 미국 연방군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 1) 미국 군 인권교육의 목적 및 시행 근거

## (1) 목적

미국 군 인권교육의 목적은 평화 유지, 우호국 국방 기관의 제도적 역량 구축, 군인·법집행기관 종사자·시민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역량을 길러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문화를 증진하는 데 있다.

## (2) 시행 근거

-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10편 군대(Title 10 Armed Forces) 제3하위장 외국군과 훈련 제321조(§321. Training with friendly foreign countries: payment of training and exercise expenses)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방부 장관 관할에 있는 군대는 우호국의 군대 또는 기타 보안군과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동조 (4)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대 범위로 증진해야 하는 훈련 요소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 제332조는 우호국 국방 기관의 제도적 역량 구축 계획(§332. Friendly foreign countrie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defense institution capacity building)에 관한 조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우호국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제도적 역량 구축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호국 및 관련기관의 역량 구축을 위한 내용은 인도법, 인권과 기본적 자유, 법의 지배와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 제333조는 외국 보안군 역량 구축에 대한 권한(§333. Foreign security forces: authority to build capacity)에 관한 조항이다. 외국 보안군 역량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로 「무력충돌법」,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법치(rule of law), 군대의 민간 통제 준수 및 제도적 역량 구축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 군사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은 국방국제법학연구소(Defens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DIILS)를 운영할 수 있고, 연구소 운영의 목적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장려하고,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 군사 정의, 평화 유지의 법적 측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및 국방 개혁에 있어 반부패, 인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내부 역량의 국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연구소의 세부 활동 중 하나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국방 기관,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 인권 및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외국 군대 및 기타 보안군의 법적 역량 구축을 두고 있다.

- 제343조(§343. Western Hemisphere Institute for Security Cooperation)에 따라 서반구 안보 협력 연구소(Western Hemisphere Institute for Security Cooperation)는 학생은 최소 8시간 동안 인권, 법치, 정당한 절차와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미국 남부 사령부(United States Southern Command, USSOUTHCOM)은 1998년 규정 1-20을 제정하여 미국 남부 사령부에 배정되거나 책임 영역에 배치된 모든 직원이 인권 인식 교육을 받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해하며 모든 의심되는 기본적인 인권의 위반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 2) 연방군 인권교육의 특징

- 미군은 해외 주둔과 우호국과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호국 군사 기관 및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연방법전에는 따르면 우호국의 군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법치주의, 군대에 대한 시민의 통제, 민주사회에서 군대의 역할,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인권 보호와 증진이고, 미군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야 하며 주둔국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 남부 사령부의 경우 「미국 남부 사령부 인권 상시 명령」을 두어 인권침해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을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사전에 행동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서반구 안보 협력 연구소는 인권 및 민주주의 센터를 설치하여 인권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센터는 군인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 종사자와 민간인이 인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인권침해의 참상과 인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현장 탐방 진행하고, 지휘 및 참모 장교를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3) 미국 군 인권교육 주요 콘텐츠

### (1) 미국 남부 사령부(United States Southern Command, USSOUTHCOM)

#### ① 개요

- 교육명: 인권 의식 교육(Human Rights Awareness Education) 프로그램
- 대상 : 장성급 장교

#### ② 세부 내용

#### ○ [1장] 인권법, 정책, 원칙과 절차

- 전쟁법에 대한 이해: 전쟁법은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에 기반한 무력 제한에 관한 법으로, 군대는 「전쟁법」에 대한 내용을 군인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 인권 이해: 「전쟁법」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와 인권의 원칙(보편성, 양도 불가능 등).
- 미국 외교 정책의 중점 목표는 인권 증진이다. 미국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동의한다. 따라서 미군은 인권침해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주둔국의 인권 증진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 남부 사령부에 「미국 남부 사령부 인권 상시 명령」을 두어 군인들에게 인권 존중, 보호, 증진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권에 있어 5가지 R(The Five Rs of Human Rights)를 강조하며, 인권침해 인지하기(Recognize), 그만두기(Refrain), 대응하기(React), 기록하기(Record), 보고하기(Report)를 행동 지침으로 두고 있다.

### <전쟁법>

- 「전쟁법」은 군사적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에 기반한 무력 제한에 관한 법이다. 군대는 전쟁법 훈련을 제공할 책임이 있고, 전쟁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경우 상부 또는 법무참모에 문의해야 한다.
- 인권은 전쟁법에서 포함되지 않은 초법적 살인, 제노사이드, 고문, 강간, 불법 구금, 인질극, 비인도적 처우, 보편적인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종교적 권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인권은 사회 또는 특정 정부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 외교 정책의 중점 목표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인권 존중의 증진에 있다.
- 미국은 개인을 위한 인권 존중과 전쟁법의 기준이 국제 조약, 국제관습법, 군사 정의 코드, 국방부 지시와 미국 남부 사령부 규정에 성문화하고 있다. 미국은 몇 인권은 관습법 범주에 속하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입장을 수용한다. 미국의 법과 국방정책은 미국 소속의 인력이 주둔국의 인권 지식과 존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의 법은 안보와 군사 지원이 어느 국가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침해에 지속적인 패턴으로 가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주둔국이 인권침해를 일으킬 경우, 즉시 자금을 중단한다.
- 미군이 주둔국 군대의 전문성과 민주적 절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미군 주둔국의 인권 증진 성공 여부는 주둔국 당국이 부패와 인권침해를 근절 또는 줄이기 위한 개혁 노력에 달려 있다. 주둔국이 군을 개혁할 수 있도록 주도하거나 지원하여 설득이 미국 대표단에 달려 있기에 미군은 인권 주체이다.
- 미국 국방부는 인신매매, 매춘, 노동 착취, 소년군, 다른 형태의 노역 등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며 이에 대해 불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미국 남부 사령부 인권 상시 명령〉

- 미국 국방부는 인권법과 「무력충돌법」을 지지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 기준을 이행한다.
- 인권은 제노사이드, 노예제, 살인,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저속한 처우로부터 자유, 무기한 임의적 구금과 구조적 인종 차별로부터 자유 등 개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포함한다.
- 국방부 직원은 미국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다른 국방부 직원이 참여, 장려하지 않으며 용납해서는 안 된다.
- 모든 국방부 직원은 관계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인권침해 가능성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 국방부 직원은 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국방부 직원은 미국법과 도덕적 원칙의 가시적인 대표이다. 행동, 말과 행위는 인권, 군대의 명예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 지지를 반영해야 한다.

※ 미국 남부 사령부 인권 상시 명령 카드는 모든 인권침해 혐의에 대한 인권 신고 절차가 담겨 있다.

### 〈인권에 있어 5가지 R(The Five Rs of Human Rights)〉

- 인지하기(Recognize) : 무엇이 인권침해인가?
- 그만두기(Refrain) :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지지하지 않기
- 대응하기(React) :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신과 당신의 군대를 위협에 빠트리지 않는 경우, 개입, 대응하기
- 기록하기(Record) : 침해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하기(날짜, 시간, 장소, 사람들 등)
- 보고하기(Report) : 명령체계에 위반 상하 보고하기

대응하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군의 행위가 인권침해와 연관되어 있다면 침해를 막기 위해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침해가 구금자 학대에 관한 것이라면 구금자 앞에서 법적 질문을 제기하지 말고, 도덕적 설득을 사용하여 계속되는 학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지휘관은 부하 직원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 병사가 인권침해를 저지를 명백한 불법 명령을 받았다면, 상사는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백히 불법 명령을 병사가 받는다면, 상사에게 명령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길 요청하고, 명령 수행을 거절하고, 상부 명령체계에 불법 명령을 보고해야 한다. 죽음, 신체 절단 또는 강간이 거의 확실하게 발생할 경우, 당사자 또는 부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한 개입이 역으로 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침해를 막으려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 교전 규칙 또는 자기방어를 할 때를 제외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이 폭력을 사용할 권한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 [2장] 미국과 주둔국의 국제적 의무

- 인권의 역사: 양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확인하고, 인권의 양도 불가능성 강조함.
- 미국은 인권 조약에 다 가입한 것은 아니나 이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상 국제관습법 등에 의해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군사 계획은 군사 작전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포함해야 함.
- 남부사령부 책임 지역의 국가들은 과거에 자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호하지 못한 정부가 존재했던 복잡한 역사를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이 국가들은 주요 국제 인권 규범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안보와 안정성을 위한 새로운 운영규칙과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끌고 있음. 이는 평화 유지와 다른 중요한 국제 임무에 기여를 확대한 것임.

〈주요 내용〉

- 역사상 다수 사회에서 시민권(국가가 개인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인권은 양도 불가능하다(인권을 국가가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없음)는 인식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과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 국제법 개념(비시민의 권리를 국가가 인정할 수 있게 함)에서 인권은 훨씬 전인 16세기와 17세기 현대 유럽을 탄생시킨 조약과 군사 개혁을 통해 도입되었다. 군사 역사가들은 전통적인 국제법이 18세기 전쟁을 더 인도적으로 만들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통 국제법은 현대 전쟁의 파괴성을 통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만행으로 국가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통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선언의 내용 대부분은 국제관습법 또는 구속력 있는 인권 조약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여러 협약과 인권 조약에 구속되고, 국제관습법 다수를 인정한다. 미국이 추가적인 제네바 프로토콜 가입국은 아니나, 미국 남부 사령부 책임 지역의 모든 국가는 가입하였다.
- 군사 계획은 군사 작전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1978년 미국 남부 사령부 책임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는 미국인권협약 재판소의 관할권에 구속된다. 미국은 1977년에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법정의 관할권에 대한 헌법적 관심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둔국은 이 관할권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주둔국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경우 벌금을 내고, 국가적 위신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당사국은 희생자에게 보상하고, 법률, 헌법, 정책적 변화를 만들 것을 요구받고, 국내 법정에서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로마 유엔 콘퍼런스에서 설립되었고, 제노사이드, 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다룬다. 미국은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국내 법원이나 임시 국제 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을 지지한다. 미국 남부 사령부 지휘관은 군사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 주둔국 군대에 지역적 절차를 지원하기로 제안하고 있다.

- 협력국은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남부사령부 책임 지역의 국가들은 과거에 자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호하지 못한 정부들이 있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이 국가들은 주요 국제 인권 규범 발전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복잡한 안보와 안정성을 위한 새로운 운영규칙과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평화 유지와 다른 중요한 국제 임무에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서반구 안보 협력 사무소

### (Western Hemisphere Institute for Security Cooperation, WHISC)<sup>3)</sup>

미국의 서반구 안보 협력 연구소는 미국 국방부의 학교로 2016년 인권과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CHRД)를 설립하였다. 인권과 민주주의 센터의 임무는 군대, 법 집행공무원과 정부의 민간인들에게 인권, 민주주의와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센터의 목표는 군인, 법집행기관 종사자와 민간인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의사결정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서반구 전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문화를 증진하는 데 있다.

#### ① 개요

- 학습자 : 군인, 법 집행 기관 종사, 민간인 등

#### ② 주요 교육과정과 내용

- 교육과정은 법 집행공무원 및 군 변호사, 인권 시민단체, 국제 적십자위원회, 인권 및 인도주의 법 아카데미와 여타 주도적인 인권옹호자들과 긴밀한 협력과 자문을 통해 개발한다. 교육 과정과 내용은 인권 및 민주주의 센터와 서반구 사무국과 연계하여 국무부는 관계 부처의 관점 및 법률과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현장을 준수하고 있다.
- 주요 교육 내용은 의회에서 위임한 국제인권법, 법치주의, 적법절차, 민간에 의한 군 통제, 민주주의에서 군대(또는 보안군)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다. 한편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제 인도주의법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최소 7시간, 민주주의 교육 3시간, 윤리교육은 3시간으로 진행하며 현장 학습 프로그램(Field Studies Program, FSP)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의 모든 학생은 반드시 필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https://armyuniversity.edu/whinsec/en/chrd>

- 서반구 안보 협력 연구소의 몇 개 과정은 내전 중 인권침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는 Andersonville Staff Ride를 포함하고 있다. 현장 연구 프로그램은 인권, 민주주의와 윤리 커리큘럼을 국립 시민 및 인권센터(National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 윌리엄 브레만 유대인 유산 & 홀로코스트 박물관(William Breman Jewish Heritage & Holocaust Museum), 터브먼 박물관(Tubman Museum)과 기타 장소를 방문하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유엔의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UN's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유엔 법 집행공무원 행동 강령(UN's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휘 및 참모 장교 과정에 선택 과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 (3) 국방국제법학연구소

#### (Defens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egal Studies, DIILS)<sup>4)</sup>

국방국제법학연구소는 미연방법전 제333호에 규정된 인권교육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외국 보안군의 역량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인 민주적 법치(Rule of Law), 「무력충돌법」, 인권 및 기본적 자유, 군대의 민간 통제 준수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연구소의 법치 훈련의 목적은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 군사 정의, 평화 유지의 법적 측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국가의 내부 역량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국가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다.<sup>5)</sup>

#### ① 개요

- 학습자 : 각급 교육 대상 단위의 구성원은 참석 자격이 주어짐. 교육 대상 단위의 리더 및 기타 핵심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주요 교육과정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가 달라진다.

#### ② 주요 교육과정과 내용

- '인권과 「무력충돌법」'은 4주 과정으로 권장 학습자는 군사 또는 보안 작전의 설계, 계획 및 실행 관련 군 장교, 법률 고문 그리고 민간인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는 국제 인권법 및 무력 충돌법에 따라 군사 및 안보 작전의 범위 내에서 국제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며 민간인 피해 완화 및 보호, 여성, 평화 및 안보, 사이버 작전, 정보 작전의 인권 영향 등이 특별 주제로 포함된다.
- 「군사작전법」은 4주 과정으로 권장 학습자는 군 장교, 법률 고문 및 민간인, 군사 작전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정책 또는 프로세스 개발 관련자 등이 포함된다. 이 교육과정은 군사작전과 관련된 국제인권법(IHRL) 등의 국제법적 기준 적용의 최신 개발 및 새로운 추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4) <https://www.dscu.edu/documents/diils-documents/diils-catalog-2023.pdf>

5) <https://www.dscu.edu/diils-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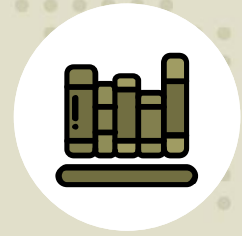
- ‘해양 보안 작전의 법적 측면’ 과정은 4주 과정으로 권장 학습자는 해양 안보 및 해양 법 집행 분야의 군 장교, 법률 고문 및 민간인이 포함된다. 학습자들은 1982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검토와 잠재적인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법 집행, 해양 안보 작전 수행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검토한다. 특히 이 교육 과정에서는 민주적 법치, 해상 보안 및 안전, 항해의 자유 및 영공비행 권리, 무력 사용 기준, 국제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습한다. 특히 이 과정은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 시나리오 기반 토론, 국가 모범 사례 조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민주적 법치, 국제 인권 증진 및 보호 등의 원칙을 해양 영역 운영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테러 방지의 법적 측면’ 과정은 4주 과정으로 학습자는 군 장교, 법률 고문 및 민간인 등이다. 국내 소요, 내부 무력 충돌(반란), 국제적 무력 충돌의 세 가지 맥락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의 퇴치에 대한 국제법을 검토한다. 특히 국제인권법, 「무력충돌법」, UN 대테러 협정, 법 집행과 군사 작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약 등을 검토하여 법치 내에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수단을 모색한다.

##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제3장

## 군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 I. 국군 인권교육 교재
- II. 군 인권교육 교안
- III. 군 인권교육 영상 콘텐츠 및 미디어
- IV. 각 군 인권 소식지
- V. 군 인권교육 현장 콘텐츠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제3장

## 군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



# I

## 국군 인권교육 교재

### 1 분석 개요

#### 1) 분석 대상

- ▶ 국방부는 군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해 오고 있다. 이 기본교재는 2023년 전면 개정판이 제작되어 현재 전 군에 인권교육 교재로 배포된 상태이다. 그만큼 군 인권교육의 내용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텐츠 자료이다.
- ▶ 이 연구에서는 이 교재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진행하여 군 인권교육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본래 인권적 의도대로 전달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점을 파악하는 등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시 참조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3〉 국군 인권교육 교재\_분석 대상

생산단위	콘텐츠 목록	형태
국방부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군인의 인권, 함께 가는 길> (2023)	교재

〈표 14〉 국군 인권교육 교재\_전체 목차

제1장 인권 바로 알기	제2장 인권 확장하기
I. 인권의 기본 개념 및 가치 I. 인권의 역사적 반영과정 II. 인권교육의 이해 IV. 인권에 관한 질문	I. 인권 확장하기: 심화편 I. 소수자와 인권 II. 혐오와 차별의 이해 IV. 인권에 관한 질문
제3장 인권의 기틀	제4장 군인의 인권과 지휘권
I. 헌법과 인권 I. 기본권의 제한 II. 개별 기본권에 관한 탐색과 기본권 논증 연습하기 IV. 인권에 관한 질문	I. 국군과 군인의 법적 지위 I.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II. 모든 군인의 인권과 지휘관의 지휘권 IV. 지휘권의 바람직한 행사 V. 인권 친화적 지휘권 행사를 위하여: 사례연구 VI. 인권에 관한 질문
제5장 사례를 통해 본 군인의 인권	제6장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방법
I. 언어폭력 III. 사적 지시 V. 통신의 자유 VII. 근무시간 및 휴식권 보장	I.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법 II. 고충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1. 군대 내 인권침해 관련 신고의무 2. 인권침해 관련 신고자의 비밀보장
II. 폭행 및 가혹행위 IV. 사생활의 자유 VI. 의료권 보장	

VIII. 종교의 자유 보장 X. 표현의 자유 보장 XII. 성폭력	IX. 휴가권 보장 XI. 평등권(평등원칙)	3.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	-----------------------

**제7장 전쟁, 분쟁과 인권**

I. 전쟁 및 분쟁에서의 인권이란? III. 어떤 전투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II. 누구를 공격목표로 해야 하는가? IV. 전쟁포로와 인권
---	---------------------------------------

- ▶ 이 교재의 전체 구성은 위 표와 같다. 군 인권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전반을 포괄하는 구성으로 짜여 있으며, 총론에 해당하는 제4장까지는 각 장마다 해당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질문’을 설계하여 넣어 두었다. 각 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의 를 여는 질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 ▶ 한편 관련한 내용과 연결할 수 있는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소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인권 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구성도 시도하고 있다.

**2) 분석 기준**

- ▶ 교재는 교육을 통한 확산력이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강의자의 인식을 견인하는 자료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오개념을 생산할 우려는 없는지, 의도대로 인권적 이해를 돕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서술 방식인지 등 세심한 점검을 진행해 향후 교재 개발 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 ▶ 이 교재는 국군 인권 교육 내용이 모두 집약된 가장 최근 자료로, 이번 연구에서 제작할 시험판에서는 이 자료의 활동도를 높이는 산출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각 장별로 2명의 연구진이 함께 점검한 후 전체 연구진 회의에서 각 점검 결과를 함께 토의하는 방식으로 전체 분석을 진행하였다.
- ▶ 분석기준으로는 이 교재가 어떠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떠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떠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군 인권교육 점검 지표를 활용하였다.
- ▶ 연구진이 개발한 점검지표 11개 중에 학습환경 영역을 제외하고 9개 점검 항목을 사용하였다(교육 목표의 적절성, 교육 구성의 적절성, 교육 내용의 적합성, 교육 내용의 정확성, 교육 내용의 최신성, 교육 내용의 윤리성, 교육 방법의 적절성, 종합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이러한 분석 결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에는 그 결과를 3개 영역(교육목표 및 구성/교육 내용 및 방법/가이드라인을 위한 시사점)으로 정리해 제시하였다.

## 2 제1장 인권 바로 알기

### 1) 개요

- 국군 인권교육 교재 제1장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인권의 기본 개념 및 가치’, ‘인권의 역사적 반영 과정’, ‘인권교육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용 아래 2~4개의 하위 목차를 가지고 있다.
- ‘인권의 기본 개념 및 가치’에서는 인권의 개념,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인권의 분류와 인권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고, ‘인권의 역사적 반영 과정’에는 인권의 세계사적 흐름에서 시작해 한국 인권역사를 비롯해 군인권의 역사까지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이해’에서는 군의 인권적 사명으로부터 군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 설명하고 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군 인권업무 훈령」에 의하면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 군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의 확산이라고 할 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확보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을 적용하고,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제1장은 인권의 개념과 특징(원칙), 인권의 역사,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는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내용 구성으로 판단된다. 즉 이 교재 제1장은 인권 교재의 첫 장으로서 그 교육목표가 매우 적합하게 잘 설정되어 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제1장은 이러한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으로서 이를 위해 인권의 개념과 특징(원칙), 인권의 역사,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교육목표에 맞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 인권의 개념과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도 세계 인권의 역사, 한국 인권의 역사, 군 인권 보장 역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주어 각각의 인권 보장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이다.

- 제 1 장
- 제 2 장
- 제 3 장**
- 제 4 장
- 제 5 장
- 제 6 장
- 참고문헌 및 별첨

-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첫 번째 ‘I.1. 인권개념 소개’에 인권의 구조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인권의 구조는 대(對)국가적 권리로서의 인권,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성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뒤의 다른 부분에 일부 포함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예. 12쪽의 마스트리흐트 가이드라인과 국가의 의무), 인권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교재 앞부분에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 I.4. 인권의 특성에 소개된 ‘도덕성’과 ‘확장성’은 각각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역사’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경과 조정의 이유는 아래 ‘교육 내용의 적합성’ 분석에서 자세히 다룬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 필수적 내용 전개 등의 적절성

- 전반적으로 인권 교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균형 있게 잘 다루는 탁월함을 보인다.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부분만을 분리해 구성한다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 교재 구성 시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따랐을 것인데, 첫 장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비교적 잘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국내 다른 인권 교재에 비해 필수적인 내용의 포함 비율이 높고 오류가 적은 편이다.

#####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의의 설명을 통한 군인 인권 보장의 원칙 강조의 적절성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의의 설명을 통한 군인 인권 보장의 원칙이라는 기준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간 군 인권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도 전체 군 인권 보장 체계의 의미를 살리는 적합성이 뛰어나다.

##### ○ 인권과 군의 전투력의 관계 설정

-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면 전투력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인권이 수단화되는 것을 막는 기술 방식이 돋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과 기술 방식은 향후 다른 콘텐츠 구성 시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 인권의 개념에 인권의 구조(대(對)국가적 권리,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등) 연결 필요

-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대(對)국가적 권리라는 인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이 교재 제2장에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1장에서도 ‘인권과 기본권’, ‘연대권’ 등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언급되어 있는데, 해당 콘텐츠가 가지는 중요도에



비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2장의 해당 내용을 인권의 개념에서 함께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2장으로 미루더라도 인권의 개념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임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참고로 1장에서 소개하는 마스트리흐트 가이드라인과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3대 책무라는 제목으로 제시하면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 기본권과 인권 개념과 관계 정리 작업 필요

- 국민국가 체제를 반영한 인권의 실현 형태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같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 즉 국가가 모든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점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의 범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의 정당화나 현실 안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인권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 인권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과 국가의 다면적 의무 이해

- 본 교재에서는 인권의 종류를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으로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마치 각각의 권리들이 서로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인권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권리를 분류하여 학습하더라도 이들 권리가 서로 의존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 충분히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향후 콘텐츠 개발 시에는 학습자들이 그 연계성을 가지고 내용을 습득할 수 있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내용이 각각 단순한 지식정보로만 존재하게 되고, 입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 연결하여 설명하자면, 하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다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유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의 경우 국가가 시민의 표현을 억압해서도 안 되지만(소극적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적극적 권리). 따라서 인권의 종류(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에 따라 적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종류와 무관하게 각각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가 모두 필요하다. 교재에서 소개하는 「마스트리흐트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 이를 활용해 인권의 불가분성과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다면적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인권의 도덕성’과 ‘인권의 확장성’의 배치

- ‘인권의 도덕성’과 ‘인권의 확장성’이 인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는 하나, 국제인권기구나 인권관련 문서에서는 ‘인권의 도덕성’, ‘인권의 확장성’을 인권의 원칙(특성)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6)</sup>
- 인권의 도덕성은 인권의 개념에서 인간 존엄, 권리로서의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인권의 확장성은 인권의 역사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를 참조해 ‘인권의 도덕성’과 ‘인권의 확장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 역사적 성찰의 의의에 입각한 접근

- 한국의 인권 역사 부분에서 군이 동원되었던 국가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군의 존재 이유, 군의 목적을 상실하고 군이 국가 권력에 의해 동원될 때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군 인권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다.
- 다만 이 교육을 듣고 있는 학습자가 스스로를 가해자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의 의의를 국내외 사례와 함께 제시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 국가 폭력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이 국가폭력에 동원된 사회적 구조와 맥락을 살피는 사회적 성찰이 가능하다.

○ 긍정의 언어로 접근

- 의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이 ‘인권을 통한 교육’이라는 인권교육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질문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습자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으로 실제 교육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육에서 학습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교재에 제시하는 탁월성이 돋보인다.
- 다만, 이에 대한 설명이 ‘권리의 제한’으로 되어 있어 의무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도 있다. ‘권리의 제한’이라는 부정적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공직자 인권교육의 이행의 의미와 맞닿아 있고, 학습자의 인권교육 참여를 독려하는데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인권교육 참여에 대한 이유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국가의 인권 보장 업무를 실행하는 실행자로서의 중요성과 책임성’, ‘군의 인권적 사명’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6) UN에서는 인권의 특징을 ‘보편성’, ‘양도불가능성’,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을 기본으로 ‘평등과 비차별’, ‘참여 및 포용(inclusion)’, ‘법의 지배와 책임’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 평의회의 청소년 인권교육 매뉴얼인 COMPASS에서도 인권의 원칙(특징)을 ‘양도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보편성’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제 인권기구 및 문서들에서는 ‘인권의 도덕성’과 ‘인권의 확장성’을 인권의 원칙(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UN 산하기구인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홈페이지에서는 인권의 원칙(특징)을 ‘보편성’, ‘양도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평등과 비차별’, ‘참여 및 포용’, ‘책임과 법의 지배’로 제시하고 있고, 유엔인권최고 대표에서 발간한 ‘인권지표 가이드’에서는 인권의 원칙(특징)을 ‘보편성’, ‘양도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 문장의 맥락에 따른 표현의 구별적 사용 필요: 인권의 개념과 현재 인권현황에 대한 표현 구별

- 인권의 개념 소개에서 참정권을 예로 들며, “인권의 범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다. (...중략...) 인권은 이처럼 그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데, 이는 인권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반면에 그만큼 인권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보편성을 띠게 되는 점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보면 마치 두 문장이 상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문장의 맥락에 따라 현재의 인권 현황과 인권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 인권의 범위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가 가지는 사회적 한계로 인해 모든 사람의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일부의 인권만 보장되는 현상을 나타내고자 한 문장이다. 이러한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권의 범위’라는 주어를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의 범위’라고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제시하고자 하는 개념 설명에 필요한 사례

- 인권의 확장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성동본 금혼제도’와 같은 개별적 사례만 제시하기보다는 인권이 점차 확장되어 온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면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돈이 많은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이 모든 남성, 여성, 흑인 등을 거쳐 지금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이주민과 청소년의 참정권 운동으로 나아간 역사를 보여주며 인권의 확장성을 설명할 수 있다.

### ○ 위계질서에 의한 지휘체계와 평등의 관계

- 군인 인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명령복종의 위계질서를 갖춘 군대는 이미 모든 군인이 평등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명령복종의 위계질서’는 군인의 계급 또는 직급에 따른 역할과 권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계급 또는 직급에 따른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에서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명령복종의 위계질서’라는 것이 계급 또는 직급에 따른 역할과 권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대한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대는 이미 모든 군인이 평등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 ○ 다의적 언어 사용의 유의점

-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의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 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질서유지’라는 단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서부터 생활규범까지 다양한 층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질서유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 인권의 개념과 원칙에 유의한 단어 선택과 기술 방식

- ‘군에서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 부분에서 많은 문장의 주어가 ‘국민’으로 되어 있다. 군의 존재 이유 및 목적을 헌법과 법률의 내용을 활용해 설명하다 보니, 주어에 ‘국민’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인권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다. 따라서 교재의 표현도 가능한 ‘국민’보다는 ‘시민’ 또는 ‘모든 사람’으로 표현하여 인권의 개념 및 원칙(특징)에 더 적합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부득이하게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
- 실제 군의 인권 보장 활동(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활동)은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따라서 개개인의 인권 역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교재에서 인권을 ‘자신의 권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이 마치 따로 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경우 인권을 권익이나 이익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라는 표현보다는 ‘인권’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제1장의 교육목표는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본 장의 교육목표에 비춰 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 타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시 그 구성을 참조할 수 있다.
- ▶ 군은 국가책무의 실행자이자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군의 인권역량이 시민의 인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군의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책무의 실행자인 공무원 인권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업무를 인권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군에서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이유’와 ‘군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다.
-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의의 설명을 통해 군인 역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임을 명확히 한 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함에 있어 인권을 수단화하지 않는 내용 전개가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 군 인권교육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과 관계 설정의 정리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인권의 종류(사회권/자유권/연대권) 설명과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과 및 국가 책무의 다면성 등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군이 국가 폭력에 동원되었던 과거를 살펴보는 내용 구성은 향후 다른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시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군이 국가폭력에 동원된 역사를 성찰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사례를 제시하여 인권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학습자가 가해자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 ▶ 단어나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나 용어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있을 때, 인권의 개념과 원칙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② 활용방안(가이드라인)

- ▶ 인권의 개념과 더불어 인권의 구조(인권의 보유자 - 인권 보장의 책무자)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 자신의 업무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군 인권교육의 목표로 제시한다.
- ▶ 군 조직의 인권적 사명 확인을 통해 인권교육의 목표를 제시한다.
- ▶ 인권과 기본권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출발한다.
- ▶ 인권의 종류(자유권/사회권/연대권)를 따로 다루기보다는 인권의 원칙(특징)-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에서 다루면서 이와 연계한 국가의 다면적 의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 근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분류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 군의 역사를 인권 교육 내용으로 활용할 경우 역사적 성찰의 의의를 함께 다룬다.
- ▶ 교육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용어는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

# 3

## 제2장 인권 확장하기

### 1) 개요

- 국군 인권교육 교재의 2장은 ‘인권 확장하기: 심화편’, ‘소수자와 인권’, ‘혐오와 차별의 이해’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인간 존엄성과 우리는 왜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인권 감수성(문해력), 차별과 혐오, 성희롱,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이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군 인권업무 훈령」에 의하면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

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군 인권업무 훈령」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제2장은 인간 존엄성과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 사안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분석하여 해결하기 위한 실천 능력을 도모하는 인권감수성의 중요성과 그 내용,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 및 혐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제2장 인권 확장하기 학습목표〉

-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권리라는 것을 이해한다.
-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권 보장에 있음을 이해한다.
- 어떠한 사안을 인권적 관점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인권감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한다. 인권감수성을 국가가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이해한다.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해 이해한다.
- 혐오표현과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인간 존엄성,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인권 보장에 있다는 점과 시민의 인권 보장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인권의 구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로 이어지는 흐름은 적절하다(인간 존엄성 - 국가의 책무성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 차별과 혐오). 이는 인권 개념 핵심을 짚고 있는 것으로 내용과 구성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 조금 더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Ⅱ. 소수자와 인권’, ‘Ⅲ. 혐오와 차별’의 이해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이론을 먼저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원인과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시혜적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성희롱의 경우 5장에서 성희롱 내용을 다루고 있어 성희롱·성폭력으로 한 장에서 다루고, 본 파트에서는 차별과 혐오에 집중하는 것이 차별 및 혐오 - 사회적 약자 소수자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 인간 존엄성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간 존엄의 파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의 핵심 가치로서의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짚고 있다. 인권 교재에서 정면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교재 내용으로 구성하여 다른 인권 교재와의 차별성이 있다.

###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 인권은 국가의 존재 목적 즉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인권은 국가 행위의 기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앞에 1장의 검토에서 아쉬운 점으로 제시된 부분이 해소된다. 이로 인해 인권 교재가 확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 ◆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과 인권

- 인간은 공동체 속 사회적 존재임을 통하여 인권을 설명하며,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에서 제시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사명(duty)과 함께 설명한다면 그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적 시민성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인권적 사명은 도덕적 의무/사명(duty)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obligation)와는 구별된다.
  - ② 학습자가 개인 간의 상호존중과 배려가 곧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이러한 개인의 도덕적 사명은 소극적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자신의 것을 양보하거나 나누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인성의 차원이 아니다. 공동체 내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를 국가 등 공동체 체계 내에서 실현되도록 요구하는 시민성을 의미한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 등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 ◆ 인권의 보편성 및 인권과 민주주의

- 인권은 역사적 투쟁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는 보편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한다. 현재까지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실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지금도 인권이 확장하는 역사의 한 순간이라는 점도 설명한다. 아울러 현실에 맞추어 인권 실현의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며 인권의 역사와 인권의 보편성 원칙, 나아갈 지향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 인권의 보편성을 민주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인권의 본질은 인간 존엄성이고,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설명을 잘 전개하고 있다. 다만 민주주의와의 연결에서는 순환논리에 빠지기 쉬운 설명이 일부 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적 확장 달성에 가장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

### ◆ 인권 감수성

- 인권 감수성을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인권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개인이 행위와 국가의 활동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한다.<sup>7)</sup>
- 인권 감수성을 개인의 감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인권적 관점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개인과 국가의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인권감수성이라고 하면서, 즉 모든 가치의 중심이 인간이며 국가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권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 감수성을 인권의 개념, 구조 안에서 해석하는 내용적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주체성 vs. 시혜와 배려의 대상

- “대표적으로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헌법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제5항).”, ‘특별한 배려’와 같은 표현은 유의해야 한다. ‘도움’이나 ‘배려’와 같은 표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시혜,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왜곡해 인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뒤에 나오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와 연결해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 이를 실현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인권의 개념 및 구조에 맞는 정확한 표현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 “아동이나 노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미발달 또는 신체적·정신적 노쇠로 인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미발달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함께, 보호의 의미가 당사자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포함해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문장 정리: 인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 고려

- 인권(Human Rights)의 rights는 올바른·정당한(right)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권리가 인권은 아니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권 행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익, 권익, 이권, 권리가 인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권익·이권·이익 ≠ 인권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인권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하여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침해한 사람이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력, 협박, 강요, 감금, 납치, 살인 등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그 예이다. 이런 형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7) 이 내용은 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인지 주관적 공권인 인권에 대하여 개인에게 그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만의 인권을 일반적으로 관철하려 할 때 부과된다.”  
 → “자신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주장하여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침해한 사람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력, 협박, 강요, 감금, 납치, 살인 등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은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예방 측면에서의 기능이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개념과 용어 정리

-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박경태(2007)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권력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며, 소수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는 집단을 말한다.
- “의사결정권을 ‘권한(competence)’이나 ‘권력(power)’으로 부를 수 있다면, 소수자란 특정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한이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부분에서 ‘복종’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으로 보완한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개인 아닌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양산된다는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급식배려병사’라는 말을 군에서 정식 용어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러하다면 배려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는 권리를 시혜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설명하고 대안적 표현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성향(sexuality)과 다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정의하는데, 일반적인 것의 반대어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논의가 섞여 있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인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있는가(인권으로 볼 수 있는가)와 혐오표현에 대한 공권력에 의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 논의를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서는 ‘라바트 행동계획’의 내용을 제시해 볼 수 있다.

○ 차별 개념

- 차별(discrimination)은 평등(equality)의 개념과 관계 등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기본용어」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개념과 쟁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제2장은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와 인권감수성(문해력), 인권의 역사를 통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확장까지를 다루고 있어 학습목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 차별 및 혐오에 대한 이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까지 다루어 인권의 내용을 확장·심화할 수 있는 내용을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제2장의 내용은 인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제1장을 심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장을 묶어 '인권의 이해' 콘텐츠로 제작할 수도 있다.
- ▶ 제2장에서 제시된 키워드 인간 존엄성, 인권의 개념과 구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와 인권감수성(문해력),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인권의 보편성, 인권과 민주주의, 차별 및 혐오에 대한 이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은 군 인권교육 콘텐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권익, 이권, 이익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콘텐츠 개발시 모든 권리 주장이 인권이 아니라는 설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권익·이권·이익 ≠ 인권.
- ▶ 인권의 구조에서는 인권의 개념 자체가 대국가적 권리로 그 궁극적 보장 의무자가 국가임을 설명하고, 국가의 의무(obligation)과 개인의 의무/사명(duty)를 설명하며 사회적 인간, 공동체성, 연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 차별과 혐오가 일어나는 원인과 맥락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혐오 차별이 일어나는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의 내용을 전개한다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시혜와 배려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권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 ▶ 향후 콘텐츠 개발시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과 평등 개념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 4

## 제3장 인권의 기틀

## 1) 개요

- 국군 인권교육 교재의 제3장으로 헌법의 인권 보장 체계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장은 크게 헌법과 인권, 기본권의 제한, 개별 기본권에 대한 탐색 및 기본권 논증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2~4개의 하위 목차로 나뉜다.
- ‘헌법과 인권’ 영역에서는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보장 체계와 기본권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본권의 제한’ 영역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근거, 방법,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개별 기본권에 관한 탐색과 기본권 논증 연습하기’ 영역에서는 4개의 사례를 통해 기본권 논증을 연습하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학습자들이 기본권과 인권, 기본권의 적용, 그리고 기본권 침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질문’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제1, 2장과 연결되는 적절한 구성: 제1장 ‘인권 바로 알기’와 제2장 ‘인권 확장하기’에 이어, 헌법을 중심으로 인권의 개념, 구조, 관점, 그리고 실제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해설되어 있다. 이 장만 단독으로 살펴보면 헌법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앞서 소개된 장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 헌법과 인권 간의 상호관계와 인권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먼저, 헌법과 인권의 상호작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헌법에 반영된 인권인 기본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구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가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례 논증을 실습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의 이해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구성이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 헌법과 인권에 대한 적절한 내용 제시

- ‘헌법의 존재 이유가 인권 보장’이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조항들이 시대정신과 국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한다. 헌법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 특히 헌법과 인권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인권 구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어할 도구’로 소개하며, ‘헌법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의 보장 및 실현’이라는 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고 있다.
- ‘국가 권력을 제어할 도구로 헌법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헌법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로 보완하면 헌법의 인권적 의미를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다.
- 인권에 대한 설명이 주로 한국의 법률 및 정치 체제에 국한되어 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헌법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학습자가 인권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문에서 헌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서문과 본문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가진 한계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 ○ 군인 인권의 실현과 제한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단계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군인 역시 인권의 보장이 원칙이며,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기본적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많은 주제인 만큼 이러한 교육목표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전략이다.
- 1장에서 소개된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의의를 군인 기본권 제한과 연계하여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군은 창군 이후 지속적으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근거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제한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의 의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 구체적 사례 제시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본권 실현의 방법과 체계를 현재의 법률과 행정체계 내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사례에 등장하는 구청 공무원은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현행 법률과 행정체계 내에서 허락된 것만 확인하고 조치하는 점이 아쉽다. 법률이나 행정체계의 범위를 초월하는 인권의 가치를 간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의 구청 공무원이 법률과 행정체계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함께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 ○ 국제인권규범 소개

- 인권이 헌법과 법률에 갇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지위를 설명하고, 기본권 제한을 판단할 때 국제인권협약을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례 연습에 이러한 국제협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 기본권의 충돌, 인권의 충돌

- ‘기본권 사이에서도 권리 주장들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기본권 충돌’이란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권 충돌’이라는 용어는 법학계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지만, 인권의 구조에서 인권은 개인과 국가 간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기본권이나 인권 충돌은 성립되기 어렵다. 만약 기본권이나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면 그 원인과 맥락을 고려하여 국가의 공권력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 ‘기본권 충돌’, ‘인권의 충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해결의 책임이 당사자인 개인에게로 옮겨지며, 인권 보장의 궁극적 책임을 진 국가의 작용은 퇴색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기본권 충돌은 인권의 구조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인권 보장은 개인들 상호 간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에 작용하는 의무이므로 적어도 인권 교재에서 ‘기본권 충돌’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vs. 시민의 인권적 사명

- ‘우리는 모두 기본권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 동시에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는 문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는 당연히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와는 별개의 개념이다(2장 분석 참조).
- 국제 인권문서에서는 국가의 의무는 주로 ‘Obligation’으로, 개인의 의무는 주로 ‘Duty’로 표현한다.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의무’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번역 과정에서 다른 용어로 기술된 국가의 Obligation과 개인의 Duty 모두를 동일한 용어인 ‘의무’로 번역하여 혼란이 생겼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sup>8)</sup>

### ○ 친근한 문체로 순화

- 헌법과 인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고 사례도 풍부하여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사용된 용어나 문체가 법률 설명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인권을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충분한 용어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되, 더 친근한 문체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국민 또는 시민은 자기 스스로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인권 실현과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사명(duty)을 갖는다. 사명이란, 주권자 스스로 인권의 역량을 갖춤으로써 **인권 실현**을 위한 책임적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사)인권정책연구소, 2021: 23). 저자는 이 글에서 **인권 실현**의 ‘의무(obligation)’, ‘책임(responsibility)’, ‘사명(duty)’의 개념을 구별해 제시한다. 물론 영미 언어의 개념을 우리 언어에 맞는 개념으로 등식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제인권문서에도 경우에 따라 당사국에 ‘duty’를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듯이 영미에서도 ‘duty’를 이와 같이 쓰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헌법과 인권의 관계 및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 ▶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권 목록과 기본권 실현의 방법과 체계, 기본권의 구조와 제한 등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해하기 쉽다.
- ▶ 헌법과 인권에 대해 이해한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기본권 논증 연습하기’을 통해 실습하도록 하여 학습효과를 높였다.
- ▶ 헌법과 인권을 한국의 법률과 정치 체제에 한정시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헌법과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비교 등 이해를 돕기 위한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 이 장에서는 공무원의 인권 보장 책무 사례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하고, 잘못된 내용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 ▶ ‘기본권 충돌’, ‘인권의 충돌’이라는 용어 사용의 유의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 ▶ 인권 보장에 있어 개인과 국가의 ‘의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포함한 인권의 구조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② 활용 방안

- ▶ 헌법의 인권 보장 가치 강조
  -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실현이라는 사실을 헌법이 탄생한 역사적 사실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전달한다.
- ▶ 인권의 구조 이해
  - 인권의 개념 자체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인권의 구조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 이를 위해 헌법을 활용해 ‘인권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거나 영화 <변호인>의 내용 중 국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예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인권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인권의 충돌이라는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 ▶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의 연계
  -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의의 설명

-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된 2016년 전까지 군인의 기본권이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의해 제한되었던 사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한다.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근거 자료로 설명한다.

▶ 군인의 인권 보장 강화

- 인권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군인은 인권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국가를 대리하는 인권 보장 의무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이때 교재의 사례 중 ‘시민이 구청 공무원에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사례’를 활용한다.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와 시민성의 역할 구별

- 국가가 가지는 인권 보장의 ‘의무’와 개인이 지는 인권적 사명이 같은 층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때의 사명이란, 주권자 스스로 인권 역량을 갖추므로써 인권 실현을 위한 책임적·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의미(☞인권정책연구소, 2021: 23)라는 점에서 국가가 지는 인권 보장 의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5

## 제4장 군인의 인권과 지휘권

### 1) 개요

- 제4장 군인의 인권과 지휘권은 인권 친화적 지휘권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과 원칙, 관계와 구조 등을 다룬다.
- 군인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 군인의 인권이 무슨 근거와 어떤 방법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지 알아보며 지휘권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며 바람직한 지휘권 행사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제4장에서는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지휘권 행사에 필요한 국군의 사명과 군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을 「군인복무기본법」을 통해 살펴본 후 인권의 제한과 보장 방법을 익힌다. 지휘권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때 인권을 침해하는지 관련 사례를 분석하면서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지휘권 행사 방법에 대해 모색할 수 있게 한다.

-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에서는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고 제시한다. 인권에 기반한 지휘권 행사는 군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친인권적 병영문화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4장 군인의 인권과 지휘권>의 교육 목표는 군 인권교육의 목표로서 적절하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인권 보장 의무자로서 군의 역할과 군인 역시 한 시민으로서 인권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 군인으로서 인권과 지휘권의 개념을 연계한 구성이 탁월하다.
- 인권 제한의 한계를 지휘권 행사에 있어 원칙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례 분석을 제시하는 내용 구성의 체계가 적절하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 인권의 보편성 제시

- 군인 역시 헌법상 인권 보장 원칙에서 제외될 수 없는 한 시민이며, 「군인사법」에서 군인의 계급과 서열을 규정한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써 정한 것이지, 헌법에서 금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군 조직 내부에서 허용한다거나 군 외부에서 군인이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짚어주고 있다.

####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제시

-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군인을 국방부 장관이 보호하도록 하는 등 병영 문화를 개혁해 나갈 필요성 대두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법의 존재 이유가 인권 보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군인의 복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 군 업무의 역할과 사명

-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에 사명을 둔 국민의 군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제시하여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 인식 개선 효과를 위한 언어의 전환

- 123쪽 지휘권이란 '직무상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계통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복종의 '종'이라는 뜻이 시중들다, 종이 좇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인권 교재인 만큼 언어를 전환할 수 있는 추가 설명 혹은 시도가 필요하다. '지시이행 의무가 있는', '지휘 체계에 있는' 등의 순화된 단어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교육 방법의 적절성

### ○ 사례 활용의 참신성

- 하나의 사례를 그냥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에서 사례를 재구성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입장에 따른 고충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휘권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맞물리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인권적 지휘권 행사를 위한 체계적 교육 콘텐츠

- 지휘권을 인권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은 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함께 설명했다.
- 기본권의 제한 역시 '군사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휘권 역시 군사적 직무 수행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지휘권 행사가 기본권 제한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 초급 간부의 이중 부담을 다룬 사례 제시

- 초급간부의 경우 명령을 최종적으로 하달함과 동시에 병사와 함께 그 명령을 실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관과 병사 양쪽으로 인권적 관계에서의 고민하는 위치에 있다. 군 조직 내 임무 수행과 관련한 구성원의 인권 상황을 다각도에서 인식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 ▶ 인권에 관한 질문을 통해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인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국군의 사명과 군인의 법적 지위,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내용은 직급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지휘권 내용의 경우 지휘관 교육에 더 적합하다. 반면 병사들도 지휘권의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 학습자가 병사인 경우에 맞게 적용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군인의 인권 보장은 군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군인이 처한 물질적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130쪽)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 진행 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토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 ▶ 기본권 제한에 대해 다룰 때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6

## 제5장 사례를 통해 본 군인의 인권

### 1) 개요

- 5장 <사례를 통해 본 군인의 인권>은 사례를 통해서 군대 내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고,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5장의 교육목표는 “이번 장에서는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례별로 살펴보는 가운데 각 사례에 대한 법적·인권적 판단기준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매우 필요한 일로 적절한 목표를 설정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5장은 폭력이나 인권침해 양상, 혹은 권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이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서 설명된 개념과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매우 논리적이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구성이다.
- 소제목에서 8, 9번 항목은 임무 수행의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모든 항목에서 임무 수행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임무 수행의 표현을 넣을 것인지는 어느 쪽으로든 통일하면 좋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 군대 내 인권 현장 사례 제시와 해설

- 군대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폭력양상이나 인권침해 양상, 혹은 보장되어야 할 권리 내용들을 담고 있어 매우 적합하고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사례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설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 ○ 극단적 사례에서 벗어나는 시도 필요

- 1, 2, 3번의 폭력양상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행위들이 대부분 범죄 수준의 것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들이다.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범죄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폭력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사례들이 제시될 수 있다면 더 깊이 생각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 인권침해라는 것이 쉽게 판단되는 사례도 제시되면 좋지만, 판단이 모호한 사례를 토의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토의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인권적 역량을 배가할 수 있다.

##### ○ 인권 보장 부족 상황 개선점 찾기

- 의료권 부분 사례 제시에서 대부분 의료권 보장의 책임이 간부의 관련 지식이나 감수성 등 개인 역량에 책임이 있다고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군대 내 의료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다. 가령 병원과 담당 의사, 간호사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충분한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국가가 군인의 인권 보장 책무를 충분히 수행해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를 간부 개인의 책임으로만 읽히게 하는 것은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의 궁극적인 개선을 고민하는 흐름을 막을 수 있다.

##### ○ 성폭력의 기준과 범위

- 성폭력 문제에서도 정의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도 폭넓게 성폭력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만이 강조되어 아쉽다. 성폭력을 설명할 때 성적 수치심을 설명하게 되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아니다)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 소수자 인권 문제 다루기

- 소수자 보호의 방법으로 관련 훈령만을 기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또한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표현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시혜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소수자의 예시로 앞서는 다문화 장병과 성소수자 장병이 언급되었는데, 사례 제시로는 식이 소

수자가 제시되고 있고 앞선 두 집단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동성애자 군인 외에도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거나 성소수자 개념이 설명되어야 한다. 해당 부분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학습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 사례 정확성 확인

- 통신의 자유에서는 “간부들과 달리 병사들에게도 그 정도의 수준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해 줄 필요성까지는 아직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지휘관 재량 아래 일과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한다면 교육이나 훈련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된 부분 내용은 현재 국방부 정책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방부는 일부 병사들에게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 허가 시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 운영은 병사들이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군의 군사적 목적 달성과 상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관행에 대한 성찰적 반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상황 조건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 ○ 관련 판례의 변경

- 강제추행죄 설명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중략...)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판례가 변경되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향후 인권 콘텐츠 개발 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정확성

- 앞서 다룬 것처럼 일부 사례 제시가 최근의 판례 등에 맞지 않은 것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전반적으로 구성과 내용이 탄탄하고, 학습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알차다.
- 사례들이 꽤 명확한 경우가 많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로 이뤄져 있어 실제 상황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인권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훈련을 끌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질문이나 생각해 볼거리를 제안할 때 조금 더 모호하거나, 경계에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더 좋을 것이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5장은 사례를 통해서 군대 내 인권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고, 보장받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들은 군인들이 익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안들로 잘 정리가 돼 있다. 또한 굉장히 다양한 폭력양상, 인권침해 양상, 권리의 목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권 보장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 보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실제 군대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보장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판단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권 보장의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정신전력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 직관적인 도덕적 판단이 용이한 사례보다 판단이 모호한 사례들을 토의 소재로 사용한다면 서술된 여러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보다 깊어질 것이다.
- ▶ 구체적인 사례나 해설에서 최근 판례나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소수자 인권 다루는 부문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보완해 활용할 수 있다.
- ▶ 위와 같은 몇 가지를 보완하면 5장 자체만을 활용해도 훌륭한 인권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 7

### 제6장 인권침해 시 권리 구제 방법

#### 1) 개요

- <제6장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방법>은 인권침해 시 사법적 구제,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에 대해 알아보고, 인권침해 관련 신고 의무와 신고자 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제6장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방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방식 및 그에 따른 세부 절차들을 살펴본다.
  2. 여러 권리구제 방식을 비교한 후, 사안에 따른 적합한 권리구제 방식을 살펴본다.
  3.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4.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처벌 요건과 처벌 내용을 살펴본다.
- 본 장은 군 인권 보장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교재를 학습자에게 안내할 때 ‘군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한 이해: 규범, 정책, 기구 등’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군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 속에서 권리구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 인권 보장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전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후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는 사후적 조치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적 구제가 더 본질적인 인권 보장 방안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인권 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 이러한 목표 아래 신고자 보호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인권 보장을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로 한정한다면 내용이 적절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앞서 목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장의 목표를 ‘군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한 이해’로 설정한다면 내용 체계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 참고로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김은희 외, 2022)’에서 제시하는 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처럼 <국방 인권정책의 역사-국방 인권정책의 이해-군 인권 보호 제도-권리 구제 제도>의 전개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 인권적 권리구제와 다른 구제절차의 차별성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권적 권리구제와 사법적 권리구제 등의 목적은 다소 상이하다.
- 인권적 권리구제는 피해자의 피해 상황 중단과 회복이 일차적인 목적이면서, 피해-가해의 이분적 구도를 넘어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규명된 시스템적 오류나 부족함을 찾아 보완하는 예방적 구제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 한편 사법적 권리구제나 징계와 감사 시스템 등은 가해행위에 대한 응징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부분은 인권적 권리구제 시스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인권침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 일탈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구하는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 등과 구별되는 인권 시스템의 역할이다.
- 이러한 기준과 맞게 관련한 여러 제도 각각의 역할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

◆ 피해 상황별 행동 요령 소개

- 군 내 인권상황을 보면 의도적인 인권침해보다는 관행적 행태가 양산하는 인권침해가 많다는 점에서 가해-피해의 이분적 구도에서 접근하는 구제 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 물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심각한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례별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해 주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 각 구제 제도를 통한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는 선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고 의무에 대한 인권적 해설

- 교재에서 소개하는 '신고 의무'의 경우 이것이 병사 간의 감시처럼 느껴지거나 군대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동료 병사의 책임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 비록 법에는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동료 군인이자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가지는 자율적 사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2장 및 3장의 도덕적 사명(duty) 설명 참조).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구체적 사례 제시

-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사례를 통해, 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이 비밀이 잘 보장된다고 여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밀이 잘 보장된 사례를 제시하거나, 비밀보장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제도, 절차들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긍정적인 사례 제시


-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학습자들이 인권침해를 목격했을 때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권구제 제도의 정확한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설명에서 각하 사유를 설명하면서 '진정이 제한된다'고 표현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진정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진정 접수 후 조사개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건을 각하할 뿐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제도 개선 권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사건은 각

하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여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처음부터 진정이 제한된다고 기술하게 되면 이러한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문제가 생긴다.

- 또한 군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동법 제50조의7에서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사건 발생 시기를 이유로 한 각하 사유 및 동조항 제5호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의 각하 사유에 대한 특례를 제시하고 있다(아래 「국가인권위원회법」 참고). 군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 4.]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본 콘텐츠는 인권침해 권리구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를 당한 군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직접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 ▶ 실제 해당 구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학습자의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강의 중에 접근 방법과 사례 등을 추가한다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 ▶ 향후 교재 재편 시에는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에 한정하여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군 인권 보장 체계’로 넓혀서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논의해 봄으



로써 대응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권적 구제 제도가 갖는 의미를 공감하도록 하고, 불완전한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탐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복성 민원을 줄이는 방법,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실제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악용 사례 등, 또한 신고 의무가 갖는 인권 보호의 의미 등은 따로 정리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 ▶ 인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거나 가해자 응징으로만 매몰되지 않도록 인권 보장 체계를 간단하게 넣고,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 ▶ 잔혹한 것만이 인권침해가 아니며, 인권침해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앞의 장에서 제시된 인권의 개념과 원칙 등을 연계하여 사례를 풀어낼 필요가 있다.
- ▶ 신고는 징벌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안내가 필요하다.

#### 〈인권침해 구제제도 안내 시 유의점〉

1. 각 구제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웹사이트, 전화번호 등)을 제시하시오.
2. 각 구제 방법의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변별할 수 있도록 하시오.
3. 유의 사항 부분을 추가하여, 인신공격, 보복성 민원, 무분별한 민원 제기 등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안내하시오.
4. 각 제도를 설명할 때 선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시오. 군대 내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본 제도의 실효성을 알리시오.

#### 〈국방헬프콜 안내〉

고충 상담, 성범죄 신고, 군 범죄 신고 등 군 내부 통합 신고·상담 전화이다.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현역 장병뿐 아니라 부모님, 일반 민간인도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시 사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본인이 원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시급하게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8

## 제7장 전쟁, 분쟁과 인권

### 1) 개요

- 국군 인권교육 교재의 7장 〈전쟁, 분쟁과 인권〉은 전쟁 중에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쟁법을 다루고 있다.

- 이 장은 전쟁 중에 인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전쟁 및 분쟁에서의 인권이란?’, ‘누구를 공격 목표로 해야 하는가?’, ‘어떤 전투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등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군인권업무훈령」 제12조는 군 인권교육의 목표를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7장은 전쟁과 분쟁 상황에서도 군인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가지는 인권적 의미를 전쟁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확인한다는 세부 교육목표를 가진다.
- 다만 전쟁법의 기본원칙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므로 그 차이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전쟁, 분쟁과 인권은 현대적 의미에서 「국제인도법」과 결합하여 무력 충돌 시 인간과 물자, 시설 등의 보호, 전투의 수단 및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이 분쟁과 전쟁 상황에서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다면 7장의 내용은 적절한 구성이다.
- 다만, 향후 「전쟁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공격 대상, 전투 수단, 방법 등을 기술적으로 선별하는 「전쟁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인권교육의 본연의 관점에서 해석이라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남는다.

## 3) 교육 내용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 「전쟁법」상 보호 대상 구별과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넓은 의미에서의 전쟁법은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제인권법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쟁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구별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공격 목표와 보호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인다. 다만,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국제인도법」이 제시하는 보호 대상을 넘어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는 함으로써 비록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적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보호와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 ○ 「전쟁법」 준수의 필요성

- 제7장의 「전쟁법」 준수의 필요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내용이 전쟁법 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 **인권의 측면에서 전쟁법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에 대한 고민**

- 전쟁법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 개별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권적으로 모두 합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개별원칙의 기계적인 이해보다는 인권의 가치에 기반해 그 한계를 함께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해당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대한민국 군인의 「전쟁법」 준수 의무의 의미**

- 교육 내용 중 대한민국 군인의 「전쟁법」 준수 의무를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과 법령에 근거한 의무로 연결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양한 국제규범과 「전쟁법」**

- 「전쟁법」에는 UN 헌장, 제네바 협약, 「군형법」 등 다양한 종류의 국제규범과 법규가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측면이 긍정적이다. 이 국제규범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전쟁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완될 수 있다면 인권교육으로서 그 정체성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지휘관의 명령과 복종**

- 「전쟁법」 위반과 관련해 전쟁범죄에 해당하거나 「군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보완적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지휘관의 명령과 복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지점을 함께 제시하면 훨씬 더 풍부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쟁법」의 배경인 역사적 흐름 및 국제규범의 태동 등과 연계**

- 이 장은 지식 전달의 측면이 매우 강한데 전쟁법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지난 역사의 흐름과 다양한 국제규범의 태동을 함께 짚어봄으로써 현실과 구동될 수 있도록 하면 인권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① **시사점**

- ▶ 제7장의 교육목표는 전쟁과 분쟁 상황에서도 「전쟁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민간인, 부상병, 포로,

군 의료 요원 등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교육목표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 ▶ 「전쟁법」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어 학습자의 지식 전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 ▶ 「전쟁법」을 준수할 의무를 기본적 인권을 수호한다는 우리의 헌법에 근거한 의무로 연결함으로써 우리 군 인권교육의 한 주제로서 적극적으로 다룬 점이 우수하다.
- ▶ 군 업무 수행의 인권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와 인권의 가치 기반의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 「전쟁법」은 무력 충돌로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보호 대상’이라는 제한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인권의 가치에 기반해 그 한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 전쟁법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개별 항목별로 인권적 가치에 따라 그 한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 ▶ 법규범에 대한 제시에 있어 그 규정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쟁범죄 해당 또는 균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는 규정을 소개할 때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 개인의 책임으로 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모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가 「전쟁법」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 ▶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기본으로 전쟁법과 전쟁법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한계를 인권적 기준에서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인권적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다.
- ▶ 광의의 「전쟁법」,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배경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인권과 인도주의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 ▶ 전쟁법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지난 역사의 흐름과 다양한 국제규범의 태동을 함께 짚어봄으로써 현실과 구동될 수 있도록 하면 인권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II 군 인권교육 교안

## 1 분석 개요

### 1) 분석 대상

〈표 15〉 군 인권교육 교안\_분석 대상

생산단위	콘텐츠 목록	형태
국방부	국방부 군 인권교육 교안	교안(PPT)+스크립트
해군	2023년 해군 인권 교안	교안(PPT)
해병대	해병대 인권교육 교안 <Q&A로 알아보는 인권교육>	자료집
공군	공군 인권교육 교안 <군인 인권의 이해>	교안(PPT)

### 2) 분석 기준

- 교안은 강의자가 교육 현장에서 전달해야 할 교육 내용과 그 전달 방식 등을 담은 학습지도 자료이다. 처음 인권교육을 시작하는 강의자들의 막연함을 덜어주고 필수적인 인권교육 내용과 설명을 제공한다. 교육을 통한 확산력이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강의자의 인식을 견인하는 자료이기도 한 만큼 엄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편견이나 오개념을 만들어 내지 않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교안이 어떠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떠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떠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군 인권교육 점검 지표를 활용하였다.
- 연구진이 개발한 점검 지표 11개 중에 학습환경 영역을 제외하고 9개 점검 항목(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 구성의 적절성, 교육 내용의 적합성, 교육 내용의 정확성, 교육 내용의 최신성, 교육 내용의 윤리성, 교육 방법의 적절성, 종합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결과를 3개의 영역(교육목표 및 구성, 교육 내용 및 방법, 가이드라인을 위한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참고문헌 및 별첨

## 2 국방부 군 인권교육 교안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교안 자체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는 부대에서 장병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지휘관, 인권교육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자료이다. 이에 페이지마다 슬라이드(PPT) 화면과 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스크립트를 넣어 활용의 편의(스크립트만 읽고서도 설명이 가능하도록)를 돕고자 한 구성으로 짜여 있다.
- 또한 이 교안을 ‘표준’ 교안이 아닌 ‘기본’ 교안이라고 밝히고 있어 해당 내용이 군 인권교육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내용일 뿐이므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발전시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각 영역 세부 주제마다 해당 영상(행군기)을 제시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 업데이트 예정을 안내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16〉 국방부 군 인권교육 기본교안\_주요 내용 구성

조화로운 기본권 보장	기본권 사례 연구	기본권 침해 관련 권리구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 기본권이란 무엇인가</li> <li>-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li> </ul> </li> <li>• 기본권 보장의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권의 목록</li> <li>- 장병 기본권의 목록</li> </ul> </li> <li>• 기본권 제한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권 제한의 근거</li> <li>- 군인 기본권 제한의 형태</li> <li>- 지휘권이란 무엇인가</li> <li>- 기본권의 조화로운 보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권 관련 주요 규정</li> <li>• 기본권 관련 사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폭력(인격권) 관련</li> <li>- 가혹행위 관련</li> <li>- 사적 지시 관련</li> <li>-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li> <li>- 통신의 비밀과 자유 보장</li> <li>- 의료권 보장</li> <li>- 근무시간 및 휴식권 보장</li> <li>- 종교의 자유 보장</li> <li>- 휴가권 보장</li> <li>- 표현의 자유 보장</li> <li>-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li> <li>- 군대 내 다양성 존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구제 방법과 신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구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기관/징계처분/진정 및 민원/부대 자체신고 체계</li> </ul> </li> <li>- 신고 의무 규정과 사례</li> </ul> </li> <li>• 신고자 보호와 의견 건의 및 고충처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보장 및 신고자 보호</li> <li>- 의견 건의 제도 및 사례</li> <li>- 고충처리제도 및 사례</li> </ul> </li> </ul>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표 17〉 국방부 군 인권교육 기본 교안\_주요 교육목표

해당 파트	제시된 교육목표
1. 조화로운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들을 통해 기본권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보장에 관한 규정과 헌법 및 「군인복무기본법」 등에 따른 기본권

해당 파트	제시된 교육목표
	보장과 기본권 제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2. 기본권 관련 사례 연구	장병들이 핵심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분야별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사례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3. 기본권 침해 관련 권리구제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 구제 방법과 권리구제의 수단별 특징을 살펴보고 구제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부분 등을 알아본다.

- 이 교안에서는 파트별 교육목표를 위와 같이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학습자 맞춤형 교육 목표를 설정하되 인권의 문제를 예방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목표, 구제 수단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절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이 교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 표와 같으며, 『1. 조화로운 기본권 보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한 후 군 인권 및 그 제한, 지휘권에 대한 내용으로 심화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2. 기본권 사례 연구』 부분에서는 장병 10대 기본권 목록에 대응한 현장 사례를 관련 규정과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3. 기본권 침해 관련 권리구제 방법』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구제 창구 및 신고 의무, 신고자 보호, 의견건의 제도, 고충처리제도 등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 직무자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구조인 인권의 개념과 구조, 직무의 인권적 의미, 인권적 관점(사례 적용), 인권적 연대(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이해와 연대), 인권 보장 환류체계(구제와 증진을 위한 제도와 사례)의 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김은희 외, 2022 : 92), 이 교안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서 요구하는 요소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어 직무자 인권교육 교안으로서 적절한 구성으로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 다만 이 교안은 야전에서 장병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을 전제로 하는 특성에 맞춰 가급적 인권 일반에 관한 내용의 비중을 줄여 학습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는 단계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기획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제 군 인권교육이 한발 더 나아간 내실화 단계의 진전을 기대받고 있는 만큼, 인권교육 기획 및 진행자 내부적으로라도 인권교육에 있어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별도의 강좌로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각 파트에서 이 기본 틀에 입각한 교육목표와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항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참고문헌 및 별첨

앞의 교육 구성의 적절성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하고,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 인권교육 교안으로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 ○ 인권의 가치를 공감하는 교육 시작 내용

- 인류사의 비극을 통하여 확인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헌법이 이러한 인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군인 인권 보장과 그 제한 및 한계를 지휘권에 대한 규명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그간 상명하복의 절대적 조직 문화로 인해 지휘권과 장병 인권에 대한 관계 규명이 조심스러웠던 군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이 상충관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즉 군인 인권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전제로 지휘권의 기능과 역할을 인권적으로 설명하는 적극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1조로부터 제시하여 인간 존엄성의 숭고하고 동등한 가치를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세계대전으로부터 위협받았던 아픈 역사의 성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인류의 노력과 다짐을 확인하는 흐름을 구성의 맨 앞에 배치하여 인권교육으로서의 첫 구조를 훌륭하게 열고 있다.
- 조금 더 연결해 우리 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상에서 제시되는 방위 전쟁의 개념 역시 이와 관련되는 것, 즉 광의의 인간안보라는 인권적 개념 안에서 군 조직의 인권적 역할을 설명하는 콘텐츠로 구성한다면 직무자 인권교육 구조에 있어 두 번째 요소인 ‘직무의 인권적 의미’ 부분을 명시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국제인권규약 목록을 달아 소개하고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 파트 ‘조약’에서 다자간 조약 ‘인권’ 분야에 9대 인권조약과 각 선택의정서 등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 각 9대 조약기 구별 일반논평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의견 등을 더 알고 싶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는 안내가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장병이나 교관이 그 세세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9대 인권조약이 있고 관련해 유엔 조약기구에서 각국의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의견을 보내오고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국제 인권 보장 체계가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현장기구 특히 국가별 정기 인권상황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는 군 인권 관련 사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함께 알아 두면 유용하다.

### ○ 인권의 역사 속 군 인권의 역사

- 인권이 역사적으로 쟁표만 있을 뿐 마침표가 없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한 단락으로 요약된 설명으로 끝나고 있어 아쉽다. 인권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과제 제기(예. 지속적인 군내 폭력적 문화 개선 등)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인권의 영역 확장(예. 「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의 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 활동 제한 등))은 우리 군 인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흐름으로 연결한 내용이 추가되면, 뒤의 군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효능



감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나아가 이는 현재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군대는 있어도, 군대 내 민주주의는 없다?”의 교육 내용과도 연계하여 활용, 우리 군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체계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음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군 인권 보장의 원칙과 제한과 그 한계

- 이 교안에서는 군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그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차 명시하고 있다. 아직 군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 시작의 급물살에 떠밀려 이제 간신히 과도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면 이 기본 원칙은 더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 그런 점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이 일부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군인이라고 해서 그 인권이 제한되는 것이 당연시해 왔던 지난 관행에 대한 사회 전체적 성찰과 경계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확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해석을 강조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 지휘권의 의미와 역할 정립의 탁월성

- 이 교안에서는 그동안 개념과 역할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있었던 지휘권에 대하여 인권적으로 다루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휘권은 군조직의 유지와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 만큼 이것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끊임없는 성찰과 성장을 통하여 우리 군의 민주화, 인권적 생태계 등을 확보할 수 있다.
- 그러한 면에서 이 교안은 지휘권이 권한이라는 점을 규명하고, 권한은 인권이라는 권리와 층위가 다른 성질인 만큼 장병의 인권과 지휘관의 지휘권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지휘권은 군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제시하고 있다.
- 이 내용은 병사 인권교육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은 병사들에게 군 조직의 인권적 변화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 군인권 사례 선정과 설명

- 이 교안에서는 군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사례들을 선정해 제시하고 있다. 일단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된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내용적 적합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사례를 활용하는 인권교육은 사례 속 상황이 관련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인권 훈련,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해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인권 문해력의 함양이 두 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 이 교안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대체로 해당 행위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관련 징계나 처벌 규정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다만 이것은 군법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으로서의 변별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즉 인권교육은 관련 상황이 누구의 어떤 인권을 왜 위협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 제2문과 「군인복무기본법」 제4조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인 군인의 인권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 의무자는 국가라는 점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조직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적 지시 사례와 관련해 병영 문화적 측면에서의 설명(국방부 군 인권교육 교안, 52p. 참고), 근무시간 및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설명(동 교안, p. 84~85참고) 등은 기존의 관행을 되짚어보게 하는 우수성이 있으며, 생활관 공간에 대한 인권적 설명(동 교안, p. 59-61참고), 장병 의료권에 대한 인권적 설명(동 교안, p. 73-74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동 교안, p.102 참고) 등은 인권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게 하는 우수성이 확인된다. 또한 근무시간 및 휴식권 보장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내용(동 교안, p. 86 참고)의 경우 인권 문해력을 촉진하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우수성이 있다.
- 한편 상급자의 모욕적 언행 녹음 사례의 경우는 인권사례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된다.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이나 군사보안 유지 의무에 대한 사례이기는 하나 인권적인 쟁점을 부각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경우를 인권 사례로 제시할 경우 인권 문제와 인권 문제가 아닌 것의 분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 ◉ 권리구제 방법과 신고의무 등

- 인권적 구제뿐만 아니라 사법적 구제까지 전반적인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군법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인데, 강의자 입장에서는 전반적 구제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교안 자체에서 빼기보다는 교수자 참조용으로 편제하면 좋을 것이다.
- 관계 법령에서 이렇게 신고를 의무화하기까지는 군 인권과 관련한 여러 부침이 있어 왔음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연대 사명의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 추가되면 인권적 의미가 살아나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이 공동체에 지니는 사명(duty)의 차원에서 이를 설명한다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구분 및 관계

- 이 교안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을 구분 짓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미 이 교안 내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에 대한 많은 설명에서 이 구분이 의미 없음을 간접적으로 논증하고 있어, 앞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고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즉 아래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실정법으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완벽하게 명문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비록 법적 형태로 규정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권으로 보장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 의한 인권 보장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두는 인권적 관점에서 매우 정확한 설명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모두 보장함을 천명하는 것(헌법재판소 결정: 2002.1.31.2001헌바43)”

### ○ 군 인권의 제한과 충돌 구별 유의

- 이 교안에서는 군 인권은 군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군인 인권 보장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제한의 필요성(목적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기준으로 군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물론 군과 사회의 여러 변화 속에서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는 지금의 판단이 고정값은 아닐 것이다. 이 교안 서두에서 정기적인 교안의 업데이트를 안내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지금까지 군에서의 인권적인 여러 변화 역시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군 인권의 제한이 물리적, 문화적인 변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다만 조금 조심스러운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인권의 제한과 인권의 충돌 논점이 섞이면서 인권의 문제가 상호 양보와 배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화로운 기본권 보장’ 기본권 충돌에 대한 해결 이론 중 규범조화적 해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장병 인권 보장 방향을 담기 위한 표현으로 선택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장병의 인권과 조직이 추구하는 공익을 양쪽에 놓고 조화로운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큰데, 이는 헌법에서도 유사 충돌로 분류하는 구도이다. 반면 부대 내에서 장병들의 인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쓴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인권의 충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는 없는지 세심한 점검을 제안한다. \* 앞의 국군인권 교재 제3장 분석 참조

- 한편 휴가권 사용 등 주요 사례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면, 이미 이 교안에서도 장병의 인권과 군조직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달성 간의 문제, 즉 장병 인권의 제한과 그 한계의 논의로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 군 내 구성원 간 인권의 관계

- 인권의 구조는 헌법 제10조제2문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그 궁극적인 보장 의무자가 국가이다. 특히 군인의 경우 「군인복무기본법」 제4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인권의 구조로부터 인권은 인권의 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이 확인된다. 인권교육이 인성교육과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 장병 개개인의 인권은 궁극적으로 군조직과 군조직을 책임지는 국가체계가 그 보장 의무자이다. 따라서 A라는 장병의 인권 보장이 다른 장병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장병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병 간의 인권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제한된 자원에서 한계는 생길 수 있다. 그 한계로 인해 국가체계가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우리는 국가체계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체계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서 상황을 설명해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상황이어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책임을 요구받는 당사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이슈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데, 막상 아침 출근길의 혼란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기로 쉽지 않다. 다만 그 분노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진정한 책임자들을 향한 것이어야지 같은 인권의 주체인 장애인 당사자들을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존엄을 추구하는 인간이지 그저 분노를 배설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윤리성

-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오래되거나 고루한 느낌이 들지 않게 잘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례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사례 관련자가 드러날 위험이 없도록 익명 처리 등에 있어 문제없이 구성되어 있다.
- 지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이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두발 자유화나 핸드폰 사용의 변화, 「군인복무기본법」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 활동 제한 등), 제18조의2(생활 여건의 보장) 등과 같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바뀌고 있는 사항들이 바로 반영되면 현장 활용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영상, 관련 사례, 사례와 관련 규정 소개 등의 플롯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본 교안으로서의 구성으로서 적절한 구성이다.
- 다만 현장 교관들이 병사들과 토의식 인권교육을 적잖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식 교육의 피로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활용할 수 있는 반전의 질문, 좀 더 일상적인

영상 풀 등이 연계되면 좋을 것이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이 교안은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처음 진행하고자 하는 교관이나 지휘관이 필요한 내용을 뽑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그 편의성이 높은 자료이다.
- ▶ 제시된 사례들이 군 현장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맞는 현장성 또한 완비하고 있다.
- ▶ 나아가 직무자 인권교육에 필요한 요소를 잘 포함하고 있는 교안이며, 지휘권과 군 인권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콘텐츠를 잘 정리한 강점도 엿보인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군 인권 보장 체계를 통한 개선 사례 소개를 통한 군인의 인권주체성과 군 인권 보장 체계 효용성 공유
  - 군대 내 많은 문화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변화로 군 인권 증진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과 관련한 현장의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인에게 핸드폰이 가지는 의미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군 조직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 한 사용을 보장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변화는 군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그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한편 이로 인해 군 조직의 폐쇄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적 위험성을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평가받는다.
  -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가능한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했지만 군 인권 보장 체계 내 여러 장치 역시 그 역할을 했다. 향후 군 인권교육에서는 실제 이와 같이 개선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러한 군 인권 보장 체계의 토대 위에 군인 스스로 군의 인권 증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군인의 인권주체성과 군 인권 보장 체계의 효용성을 공유하면 좋을 것이다.
- ▶ 인성교육 및 군법 교육과 구별되는 인권교육의 흐름
  - 이 교안에서는 다행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인권의 문제를 병사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틀로만 가둘 우려는 없는지, 즉 인권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으로 흘러가는 구성은 아닌지에 대한 긴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 이 교안의 경우 인권사례 소개 부분에서 일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이 역시 인권의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해석하게 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은 기왕의 군법교육으로 털어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 향후 군 인권 콘텐츠 개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한다.

- 1) 사례가 가지는 인권적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여 강의자가 방향성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2) 처벌과 징계 등 법 위반 안내 중심으로 균형이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3) 문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틀, 질문 등을 제공한다.
- 4) 관련해 강의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여 강의자가 강의 준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참고 자료가 인권적으로 정확한 내용인지 엄격한 검수가 필요하다.
- 5) 앞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구동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오해나 함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본적 콘텐츠 지원도 필요한데, 교안의 특성상 직접 내용을 담지는 않더라도 핵심적 내용과 참고 자료를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 3

## 해군 인권교육 교안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분석에 활용된 콘텐츠는 해군인권센터에서 만든 2023년 해군 인권 교안이다. 총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내용이 전체 강의안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념이나 이론보다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교육목차 및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해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 인권을 적용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군 인권업무 훈령」에 의한 군 인권교육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적절한 목표 설정이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유엔 인권최고대표부(OHCHR)에서 발간한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활동평가 길라잡이」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행동 등에 대한 모든 학습을 의미”하고 “이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역량 강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해군 인권 교안의 목차를 보면, 해군이 알아야 할 인권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기술 및 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인권교육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내용 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해군 인권 교안의

목차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8〉 2023년 해군 인권 교안 주요 내용 구성

2023년 해군 인권 교안	
<input type="checkbox"/> 군내 인권 보장의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헌법과 기본권
<input type="checkbox"/> 인권업무 훈령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지휘권과 인권
<input type="checkbox"/> 인권의 이해	<input type="checkbox"/> 기본권 침해 사례
<input type="checkbox"/>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신고의무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 군 업무의 인권적 사명과 군의 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

- 해군 인권 교안에서는 군 업무의 인권적 사명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과 국가의 물리적 수호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의 인권적 사명을 다하고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 ○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 설명과 인권의 수단화

- ‘대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군내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인권을 수단화할 우려가 있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설명으로 순서를 바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받기 위해 군내 인권 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시민의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 「국군 인권교육 교재」 제1장에 인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군 인권의 수호가 군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표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군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인권적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잘 설명하고 있다. 국군 인권 교재의 내용을 참조하여 교안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 인권의 개념과 구조, 특성과 역사 등에 대한 설명

- 이 교안에서 인권의 개념은 선언적 의미로만 간략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교육 시간에 비해 교육 내용이 많아 발생하는 교육의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인권의 개념과 구조’는 인권을 이해하는 기본지식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서 다뤄져야 할 최소한의 교육 내용은 인권의 개념 및 역사, 인권의 구조(인권의 보유자-인권 보장의 책무자), 인권의 특성이다. 「국군 인권교육 교재」 제1장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참고해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내용의 설명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군과 관련된 구체적 예시를 통하여 설명하여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기본권과 인권의 설명

- 국민국가 체제를 반영한 인권의 현실태가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둘은 근본적으로 같다. 인권교육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다룰 때 초점이 되어야 할 점은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가 아니라 이 둘이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점이다.
-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은 타 분야의 인권교육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군 분야 인권교육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군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의 제한을 기본권의 제한으로 설명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권 역시 기본권 제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 틀을 빼고 ‘인권의 제한과 그 한계’로 설명하면 충분해 보인다.

### ○ 군인 인권 보장

- 헌법상 기본권과 「군인복무기본법」상 군인의 권리를 연속해 보여줌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군인의 인권이 다르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설명하고 있다.
- 헌법상 권리 설명 부분에 헌법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조적 분석

- 해군 인권교육 교안에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인권침해 사례가 제시되면 이와 관련 있는 법률이나 지침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례가 법률이나 지침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인권침해이고 어떤 것이 인권침해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의 내용으로 더 전개해야 한다.
- 다른 인권침해 사건을 교훈 삼아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맥락과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침해된 인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처한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서 무엇이 결핍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 ‘해군 인권 보장 체계’로 교육 내용 확대

-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전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후 권리를 구제하는 사후적 조치가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구제 조치와 사후구제 조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해군 인권 보장 체계’로 교육 내용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학습자들이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군 인권 보장 체계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 군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군인의 기본권 제한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헌법 제37조 제2항과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인의 ‘기본권 제한’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

- 헌법 제37조 제2항의 목적은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다. 이 교안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내용 중 일부만 소개되어 있다. 소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제37조 제2항 전체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사례와 과잉금지 원칙 적용

-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한 제한인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원칙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모두 갖추야 인권침해가 아닌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정된다.
- 기본권 제한과 인권침해를 구별하는 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을 설명하고 사례에 이를 적용해 인권 침해 여부를 분석하는 교육으로 활용해 보도록 한다. 해군 인권교육 교안에 많이 실려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 중 군의 생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례’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군 인권교육 교재」 제3장 인권의 기틀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국군 인권교육 교재」 내용을 재구성해 교안에 담을 수도 있다.

### ○ 인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 기본권 제한 사례 중 사적 지시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녹음, 메시지(카카오톡) 등의 형태가 증거로 수집되어 (…중략…) 등의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라고 설명하여 마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인권침해 행위 적발로 처벌될 우려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와 개인의 도덕적 사명 구분**

-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이 군 내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목격자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 의무라고 칭하고 있다.
- 인권의 개념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인권 보장의 궁극적 의무는 국가에 있다. 따라서 동료 군인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다. 다만, 군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인권적 사회로 만들고 동료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도덕적 사명을 가질 수 있다. 인권 보장의 책임을 지는 국가의 의무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도덕적 사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① **시사점**

- ▶ 교육 내용에 인권에 대한 지식의 전수, 인권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자신의 업무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태도의 개발까지 모두 담고 있는 적절한 교육 구성이다.
- ▶ 군 업무의 인권적 사명으로부터 군의 인권 보장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
- ▶ 「대한민국헌법」상 기본권과 「군인복무기본법」상의 군인의 권리를 연속해 보여줌으로써 시민의 인 권과 군인의 인권이 다르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다.
- ▶ 군인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
- ▶ 인권의 개념과 구조, 특성과 역사 등에 내용의 사례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보강이 필요하다.
- ▶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군 인권 보장 체계라는 큰 틀에서 권리구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② **활용방안(가이드라인)**

- ▶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하되 사례 등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전략을 강구한다.

- ▶ 인권 보장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도덕적 사명은 구분하여 제시한다.
- ▶ 군 조직의 인권적 사명 확인을 통해 인권교육의 목표를 제시한다.
- ▶ 자신의 업무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군 인권교육의 목표로 제시한다.
- ▶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은 가급적 삭제하고 인권(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를 중심으로 다루되, 사례 훈련 기법을 활용한다.
- ▶ ‘기본권 침해 사례’ 교육의 경우 금지 가이드라인 숙지식 교육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기본권 침해 사례’는 기본권 침해가 일어난 구조적 원인을 찾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

## 4

## 해병대 인권교육 교안

### [Q&A로 알아보는 인권교육]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분석에 활용된 콘텐츠는 해병대 담당부서에서 개발한 ‘Q&A로 보는 인권교육’이다.
- 이 콘텐츠는 1주 차부터 15주 차까지의 총 1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차의 콘텐츠는 군인의 기본권에 중점을 두고 ① 관련 규정 및 이론, ② Q&A, ③ 구제 절차로 체계적인 구성이다.
- Q&A 섹션에는 부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3개의 질문과 해당 질문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교육목표는 장병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인식하고, 현실에서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군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명확히 이해하고 인권침해 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숙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군 내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교육의 구성은 군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15가지 기본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이론 → Q&A → 구제절차’의 일관된 전개 방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작되어 있다. 이 구성은 군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식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서 이에 대

한 지식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질문에 대한 답이 주로 법률과 규정에 기반하여 제시되는 방식은 학습자의 사고력을 촉진하거나 인권적 해석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생각을 확장하고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구체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체 주차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으나, 각 주제에 따라 특정한 사례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절차를 덧붙이는 것이 교육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군인들이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표 19〉 해병대 Q&A로 보는 인권교육 주요구성

해병대 Q&A로 보는 인권교육	
1주 차: 휴식권	9주 차: 신고자 보호
2주 차: 의료접근권	10주 차: 연대책임 관련
3주 차: 인격권	11주 차: 방어권
4주 차: 양심의 자유	12주 차: 일반적 행동 자유권
5주 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주 차: 평등권
6주 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4주 차: 신체의 자유
7주 차: 종교의 자유	15주 차: 거주·이전의 자유
8주 차: 선거권 및 정치적 중립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휴식권 설명 시 ‘모든 군인은 휴식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향유’와 ‘제한’을 동일한 위치에 두어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뒤의 설명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정당한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제한 요건도 함께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 Q&A에서 답변을 제시할 때 배경이나 판단 근거를 생략한 채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은 입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한다. 각 상황의 환경과 맥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보강하여 서사와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교육에서 사례로써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숙소 대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 상태 및 위치 확인을 한 것에 대해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곧바로 내리고 있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더욱 입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구체절차’를 주차별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사례별 구체적인 구체 방법을 제시하거나 구체 절차에서 제시하는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등을 설명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또

한, 군인권보호관제도 외에도 군 외부의 다양한 구제 및 상담 기관에 대한 안내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료 접근권의 궁극적인 피해로 전투력 저하와 이로 인한 안보 악영향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뒷순위로 밀어두는 것은 인권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 전개가 아니다.
- 의료 접근권 Q3의 경우, 국가의 책무성이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의 ‘군인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들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의료 접근권과 관련한 3개의 요소 모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체계적인 구성으로 학습자의 이해 증진:** 주차별 15개의 군인 기본권 침해 사례를 ‘관련 규정 및 이론’ → ‘Q&A’ → ‘구제절차’로 정형화한 체계적인 구성은 학습자의 이해를 쉽게 한다. 사례가 해병대의 병영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이어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Q&A 코너로 궁금증 해소:** Q&A에서 관련 규정 및 이론 설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3가지 질문과 답변 코너를 마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는 구성은 사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법률 중심의 사례 해석에 따른 인권적 가치 확장 미흡:** 사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근거를 법률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인권적 가치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다. 특히 학습자가 인권에 대한 충분한 선행지식이 없는 경우 이러한 법률 중심의 해석은 인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시된 사례의 해석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답이 있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해 교육하는 경우 학습자의 인권교육 수준에 따라 설명 방식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법률에 따른 사례 설명만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② 활용방안

- ▶ 이 자료에 제시된 15개의 군인 기본권 관련 사례는 군 인권교육 교안에 토의식 사례로 적합하다. 군인 기본권 관련 사례는 군 인권교육에서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 ▶ 법률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에서 나아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보다 풍성한 생각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음의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 이 사례에서 인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 이 사례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
-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사례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토론한다.
  - 사례와 관련된 철학자나 사상가의 글을 읽고 토론한다.
  - 사례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조사하고 토론한다.
- ▶ 토론 후 교관은 사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제시해야 한다. 교관의 생각은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5 공군 인권교육 교안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공군 인권교육 교안인 ‘군인 인권의 이해’는 간부용과 병사용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두 버전의 교안의 체계와 내용은 같고, 병사용 교안에 추가적 설명이 보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교안의 형식은 설명글이 없는 PPT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누구나 PPT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0〉 공군 인권교육 교안 주요 구성 내용

인권과 기본권	「군인복무기본법」 관련 주요사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 기본권의 의의</li> <li>•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의 체계</li> <li>•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개관</li> <li>• 기본권과 지휘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기본권 구체화 규정</li> <li>• 관련 사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구제 방법과 상담 제도</li> <li>• 신고자 보호와 의견건의 및 고충처리 등 기타 제도</li> </ul>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연구진이 교안을 분석하면서 정리한 공군 인권교육 표준교안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 이해한다. ②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제시한 군인기본권에 대해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③ 군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에 대해 안다.

- 이 교육목표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통해 군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제도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에서 제시하는 군 인권교육의 목표에 부합한다. 다만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학습자의 인권 역량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표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인권과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 공군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와 질문, 권리구제 소개와 특징 설명의 구성은 적절하다.
- 기본권과 인권을 나누고 있는데, 인권의 특성으로 언급한 우월성에서는 인권을 실정법보다 우선하는 우월적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것과 같이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한 개념 설명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인권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군의 인권적 의미와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군 인권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권리구제 방법으로 사법기관, 인권기구, 고충처리 시스템 전반을 소개하고 각 권리구제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한 것은 고무적이다. 학습자가 각각 권리구제의 특징을 알 수 있어, 사안 발생 시 자신에게 적합한 권리구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 인권감수성

- 인권감수성 설명에서 개인에게 인권 보장의 책임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인권의 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인권 개념에서 인권을 보장할 책무자는 국가이므로 개인에게 인권 보장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개인의 인권 존중의 도덕적 책임을 말하려 한다면, 자율성(자발성)에 기반한 책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학습자가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 기본권 제한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 기본권 제한에 대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조항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문장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군

인 신분이라고 해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모든 시민(군인 포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도 이루어야 하기에, 군인과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인권교육에서 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 ◎ 표현의 정확성

- 성소수자 관련 도서 반입 사례에서 해당 도서가 선정적이므로 반입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 설명한다. 여기서 성소수자 관련한 도서가 선정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성소수자 주제와 관련 없이 도서가 선정적이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성소수자 관련 도서 = 선정 도서로 읽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성소수자 관련 도서 자체를 선정적이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반하는 사례이므로 인권교육 사례로 재고가 필요하다.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윤리성

- 공군에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최신성을 담보하고 있다.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주로 강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인복무기본법」 관련 주요사례 파트에서 사례별로 있는 질문을 학습자와 나눈다면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이 교안의 장점은 실제 공군 사례를 통해 인권교육을 기획하였다는 것이다. 병사들에게 밀접하고, 친숙한 사례이므로 관심도와 참여를 높일 수 있고, 군 생활과 인권을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다.
- ▶ 한편 교안이 법 위주로 설명되어 있어 사례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인권교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사례를 상상할 수 없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법 위주의 교육이 아닌 인권교육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습자들과 함께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인권 감수성 부분은 국군인권 교재의 인권감수성 개념을 차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국군인권 교재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인권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개인이 행위와 국가의 활동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하며, “모든 가치의 중심은 인간이며 국가도 결국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 인권에 집중



하는 인권감수성이야말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더욱 명료한 판단력”을 줄 수 있다 설명한다.

- ▶ 지휘권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병사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풀어내는 것이 인권교육으로서 효과적인 것이다.
- ▶ 사례 부분에 있는 질문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권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 ▶ 인권기구를 통한 권리구제 특징을 설명할 때,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공군의 인권구제 선사례와 함께 이야기하면 효과적이다.

# III

## 군 인권교육 영상 콘텐츠 및 미디어

### 1 분석 개요

#### 1) 분석 대상

- 군 인권교육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집하였다.<sup>9)</sup> 그중에서 군 인권교육에 활용되는 영상 콘텐츠는 하나의 강의로 완결 구조를 가진 강의형 콘텐츠, 인권교육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영상형 콘텐츠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외에 TV 방송형 프로그램, 웹툰, 유튜브, 영화·드라마 영상 등 다양한 플랫폼의 방송형 콘텐츠가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개발된 콘텐츠를 검토하여 유의미성, 접근성, 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을 선별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영상 콘텐츠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1〉 군 인권교육 영상 콘텐츠 분석 대상

분류	콘텐츠(연도/출처/길이)	편수
국방부 인권교육 강의 영상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2023, 국방부, 60분 내외)	1편
	금쪽같은 내 인권(2023, 국방부, 60분 내외)	1편
육군 인권영상 자료	인권왕(2022, 육군인권존중센터, 편당 10분 내외)	12편
	인권이군(2023, 육군인권존중센터, 편당 15분 내외)	12편
국방TV 방송프로그램	리얼 병영 특! 행복한 군대 이야기(2023, 국방TV, 편당 55분 내외)	10편
육군 인권 웹툰	육군 인권툰(2022-2023, 육군인권존중센터, 33편)	33편

#### 2) 분석 기준

- 영상 콘텐츠는 학습자에게 추상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영상, 음향 등 현실 세계의 재현을 통해 간접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학습자원이다. 하지만 강력한 시청각 효과로 인해 오개념을 만들어내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인권교육을 위한 영상 자료로 활용할 때는 목적에 적합한지 시청 후 편견이나 오개념을 만들어내지 않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 인권

9) 군 인권교육협의회(2023.9)에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제출한 인권교육 자료를 확인한 후 초기 목록화하였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유의미성, 접근성, 최신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조사대상을 확정하였다.

교육에서 활용되는 영상 콘텐츠가 어떠한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가, 어떠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떠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군 인권교육 점검지표를 활용하였다.

- 연구진이 개발한 점검 지표 11개 중에 학습환경 영역을 제외하고 9개 점검 항목(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 구성의 적절성, 교육 내용의 적합성, 교육 내용의 정확성, 교육 내용의 최신성, 교육 내용의 윤리성, 교육 방법의 적절성, 종합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을 사용하였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결과를 3개 영역(교육목표 및 구성, 교육 내용 및 방법, 가이드라인을 위한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2 국방부 인권교육 강의 영상 (2023 군인 인권 강의)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국방부에서 2023년 제작한 인권강의 영상 2편이다.
- 전문 방송인 2명의 진행 아래 2023 국군 인권 교재의 주 집필자 2명이 각각 출연, 청중으로 출연한 각 군 현역 군인 3명과 질문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교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TV방송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sup>10)</sup> 컨셉임).
- 각 영상의 분량은 60분 내외이고,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는 인권과 군대 관련 총론적인 부분을, ‘금쪽같은 내 인권’은 각론과 구제 방법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의 경우 1. 군대와 인권은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고 군대 역시 인권이 필수적인 조직인 이유를 이해 2. 군인의 인권 역시 그 최대한의 보장을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제한만이 가능함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군 인권에 대한 오해와 함정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매우 적절한 교육목표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이라는 목표를 내재화해야 함을 강조하는 탁월성이 돋보인다.
- ‘금쪽같은 내 인권’의 경우 군대 내 주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10) ‘벌거벗은 세계사’는 tvN 역사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기 강사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빠른 전개와 연예인 패널의 재미있는 대화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하고,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 인권교육으로서의 기본적 목표 설정이다. 다만 사례형 교육에서 좀 더 진전된 교육목표를 세워도 좋을 단계라고 본다. 즉 사례 속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가치와 반복되는 유형의 사례 속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인권역량 함양으로 그 목표를 좀 더 진전시켜도 좋을 것이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각 강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를 통해 군대와 인권은 양립할 수 없다는 편견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구성을 기반으로, ‘금쪽같은 내 인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 즉 직무자 인권교육의 구조, ‘인권의 개념과 구조’ 및 ‘직무의 인권적 의미’는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 강좌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금쪽같은 내 인권’ 강좌에서는 사례를 통하여 인권을 적용하여 ‘인권적 관점’을 다룰 뿐만 아니라 소수자 인권 사례를 통하여 ‘인권적 연대’로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인권 보장 환류체계’에 해당하는 구제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 다양한 군 인권 보장 체계의 소개가 접목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은 만큼 향후에는 관련한 선사례가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학습자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선사례 소개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학습자들이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표 22〉 ‘2023 군인 인권 강의’ 주요 내용 구성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60분 내외)	금쪽같은 내 인권(60분 내외)
제1장 군대에서 인권을 말하는 이유 - 군조직에서의 인권의 중요성 “인권을 잊은 군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군인은 없다”	제1장 언어폭력 폭행 가혹행위
제2장 군에서 인권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 군인 인권 보장과 비례성의 원칙 “지시와 명령은 정당한 목적으로, 필요한 만큼, 인권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2장 사생활의 자유
	제3장 근무시간 및 휴식권 보장, 사적 지시
	제4장 의료권 및 휴가권 보장
	제5장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제6장 인권침해시 권리구제 방법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의 경우 재차 밝히는 것처럼, 군대와 인권의 필수적 관계를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막연히 국가에 대한 충성과 이를 위한 군인 개개인의 희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인권을 불편하게 여겨온 인식의 문제점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인권 보장이고, 국가의 실체가 국민이라는 점, 군인 역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탁

월성이 있다. 나아가 군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인권이라는 목표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 또한 군대라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라도 군인의 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명료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 ‘금쪽같은 내 인권’의 경우, 사례에 대한 입체적이고 꼼꼼한 체크는 현장 군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다. 다만 사례 교육이 가지는 강점인 구체성을 유지하되, 그 사례가 문제되는 이유인 인권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한 무게 중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 처벌 규정 소개까지 붙게 될 경우 인권적 의미와 중요성 따위는 안중에 없게 할 가능성이 크다. 처벌 규정을 소개할 경우 이만큼 인권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톤의 내용이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 균형법상 합의 여부, 불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군 내 폭행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군내 발생했던 극한의 희생을 성찰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설명이 붙어준다면, 인권의 역사와 연결한 내용으로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례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군인의 인권 제한을 당연시하던 인식과 관행의 성찰, 인권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원인 규명 등으로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다면 인권교육 내용으로서 적합성에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이전 국군인권 교재 모니터링 시 제시된 문제점 중 하나가 인권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강의 영상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표현과 ‘인권 보장은 전투력 향상의 결과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표현의 차이 정도일 것인데, 교육 내용 구성 시 지속적으로 유의하면 좋을 것이다.
- 한편 패널 의견 중에 ‘역차별’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 군대 내에서 이러한 오해가 있는 만큼 역차별 주장이 가진 오해와 오류를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
- 또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남에게 상처 줄 자유는 없다’는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조금 더 혐오 표현 등에 대한 논의나 인권의 개념에 있어 ‘정당한’ 권리인가의 내용으로 연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윤리성

-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용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은 발견되지 않았다.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연사 1인의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다수의 등장인물과 다양한 톤으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짜인 영상이다 보니 몰입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 또한 학습자가 궁금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할 부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의견 등을 시나리오에 담아 구성한 점 역시 교육 효과를 높이는 요소였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지루한 강의 형식을 벗어난 영상 구성으로 내용에 대한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인 콘텐츠 구성 방식은 이후 영상 제작에도 참고할 수 있겠다. 특히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현역 군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식은 인권의 문제를 정답식 또는 피해/가해의 이분법에 가두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사례형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은 군 인권교육만이 아니라 인권교육 현장 전반의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영상을 함께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 등을 알 수 있는 내용 역시 필수적이다.
- ▶ 인권이 대 국가적 권리라는 점에서 다만 개인들로 하여금 처벌과 징계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시키는 것에 그치는 교육은 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교육과 인성교육, 군법교육 등의 차이를 확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강한 군대는 인권이 만든다’의 경우 기존에 군 인권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워하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인권교관이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야전 인권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해도 좋다. 현장 인권교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인권교육을 준비하는 인권교관 학습용으로든 손색없는 영상자료이다.
- ▶ ‘금쪽같은 내 인권’의 경우 토론/토의식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제시되는 인권 상황극 부분을 보여주고 함께 원인 탐색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단순하게 법 위반 여부 등의 결론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 ▶ 향후 군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시 두 영상 자료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3 육군 인권영상 자료 (2022, 2023 영상 자료)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1) 기초 정보

- 분석에 활용된 영상 콘텐츠는 육군인권존중센터<sup>11)</sup>에서 2022년, 2023년에 배포한 것으로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내용으로 방송예능 형식으로 개발되었다. 해당 영상은 보안 사항인 육군 규정을 수록하고 있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각 군에서 접근 가능한 IPTV를 통해 배포된다. 예하 부대의 통신망을 고려한다면, 배포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2) 주요 특징

- 형식적 특징 : 방송예능 형태, 1편당 10~15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 내용적 특징 : 군의 인권침해 사례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표 23〉 육군 인권영상 자료 주요 구성 내용

인권왕(2022)	
• 인권침해 구제제도	• 2차 피해 방지
• 신고자보호제도	• 소원수리제도: 마음의 편지
• 사생활의 비밀보장	•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 올바른 호칭과 언어 사용	• 사생활 침해: 핸드폰 강제 열람 사례
• 타인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 지나친 휴무일 통제
• 업무관련 갑질 사례: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 무분별한 관물대 검사 사례
인권이군(2023)	
• 개인택배 검사 사례	
• PX셔틀 사례, 화장실 알람 설치 사례	
• 코골이로 인한 집단괴롭힘 사례, 사이버 불링 사례	
• 휴식권 침해 사례, 벌 규정을 일괄 적용한 사례	
• 휴가 일정의 과도한 통제 사례	
• 숙소 복귀 지연 사례, 신용조회서 제출 권유 사례	
• 폭언 사례, 휴일 업무 지시 사례	
• 전원별점 사례, 사적 부탁 사례	
• 경고장 부착 사례, 난임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장병 상호 간 금전거래 사례	
• 병영 부조리 사례, 신고자 보호 사례, 의료법 위반 사례	
• 장난 빙자 폭행 사례, 절차위반 관물대 검사 사례, 규정 위반 휴대폰 사용제한 사례	
•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제도: 항고,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	

11) <https://hrkeeper.mnd.go.kr>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해당 영상 콘텐츠의 교육목표는 군 인권 사례를 통해 인권 문제를 점검하고, 인권적 인식을 확장하며, 인권적 군문화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과 인권침해 행위가 갖는 구체적인 군대에 적용되는 법률·구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군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교육목표 중 하나로 학습자가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개발 목적에 차이를 보인다.
- 2022년에 개발된 ‘인권왕’은 부대에 일상에서 장병·지휘관이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인권침해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실제적 방식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2023년에 개발된 ‘인권이군’은 징계·처분·고발 등 군 인권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각색하여 인권침해의 가이드라인과 처벌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교육 구성 측면에서는 두 콘텐츠 모두 인권 사례 중심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인권왕(2022)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 예방과 배경 설명, 행동 수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인권이군(2023)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된 인권침해 사례의 법, 규정에 대한 안내, 처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유사 사고 방지와 규정 숙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차이이다. 인권왕(2022)보다 인권이군(2023)에서 다루는 사례가 분명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 정도가 크다.
- 두 콘텐츠 모두 병사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TV방송 예능형식을 차용하여 제작되어 있으며, 인권왕(2022)은 소령+법무관+군인들이 등장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인권이군(2023)은 연예인+법무관+재연배우가 등장하여 사례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었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본 영상 콘텐츠는 상당한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교육 콘텐츠 기획으로서 우수하다.
- 먼저, 군조직의 인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직 미처 인식하지 못한 인권 문제를 점검하고, 자연스러운 군 생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군에서 지향해야 할 인권적 군 생활의 모습을 제시하는 구성의 인권적 힘이 있다. 특히 외부 인권전문가나 전문 연기자의 출연이 아닌 군인 당사자들의 등장한 인권왕(2022)은 외부에 의한 지적이나 평가가 아닌 군 조직 스스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태도<sup>12)</sup>를 보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예를 들면, 2차 가해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개인의 문제점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진 가해자 중심적인 제도나 인식의 잔재라는 분석을 제시하여 인권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배경에 대해 탐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을 참조하여 다른 사례에서도 인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는 기획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인권왕(2022)은 스토리 전개가 자극적이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백하게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인 군인 입장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호기심과 수용도가 높아지는 교육효과가 기대된다.
-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나 방송예능 형식 영상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고 있다. 인권교육 콘텐츠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작 지침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 첫째, 인권의 의무주체에 대해 오해를 가져오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 둘째, 인권침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 셋째, 재미를 위한 감정적 발언, 사람을 희화화하는 발언 등에 주의해야 한다.
  - 넷째, 선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 다섯째, 특히 인권이군 포맷에서 인권침해에 대응 방법으로 신고하는 방법만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신고 못지않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공동체의 대안 모색 역시 중요하다.
  - 여섯째, 사례 재구성에서 악당이 등장하는 선악 구조, 원인분석이 잘못된 경우 등 사례를 재구성할 때, 단편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법적 방법으로 인권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군인권침해 사례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의 상황 맥락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부합하는 마무리

- 인권이군(2023)의 마무리 정리하는 부분에서 시청자의 '멘탈케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흔들 여지가 크다. 인권교육에서 국가책무를 배제하고 개인의 도덕성과 인성 등만을 제시하는 것을 적절한 대응과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관행의 미화와 무의식적 인권 침해에 유의

- 인권이군(2023)에는 인권침해의 심각성보다도, 언어폭력, 선정적 표현 등이 등장하였고, 관행

12) 군대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태도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지향하는 진단과 점검(Assessment) 형태로 인권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미화되어 표현된 것이 많았다. 사례를 이해시키기 위해 재구성된 스토리에서 인권침해나 오류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택배 물품을 병사의 허락 없이 열어보는 것도 문제지만, 여자 친구 얼굴을 폄평하는 언행 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해당 사례는 사생활 침해 영역만 짚어내고, 모욕적 언사, 성적 발언 등은 교정하지 않고 있다.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윤리성

#### ○ 최신성

- 교육 내용에 활용된 사례의 연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교육 내용의 최신성의 판단은 어렵다.

#### ○ 선정성과 폭력성

- 인권왕(2022)은 등장인물의 언어, 표정 등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그 누구도 악인화하거나 하지 않고, 조직문화의 개선 차원에서 다루어 제시된 내용을 편안하게 수용하게 하였다.
- 인권이군(2023)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강조하려다 보니 행위자를 악인화하는 구조로 기획되어,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적지 않았다. 이 콘텐츠로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알려주려는 목적도 이해되나, 다소 과한 설정으로 각색되어 보는 시청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사례 출처가 표기되지 않아 사례의 정확한 이해를 흐리게 하고 재구성인지, 실사례인지 혼란을 준다.
- 사례 재구성 시, 폭력, 비하, 모욕적인 언어 등이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배우기 위해 과도한 폭력적인 장면이 노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를 보면서 특정인이나 특정 관계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 고정관념 등을 심어줄 수 있다.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군부대의 일상 속 사례를 실제 군인들이 출연해 보여줌으로 인해 인권 문제를 실제 우리의 문제로 보고 거리감 없이 고민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콘텐츠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보다 인권적 관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군문화 차원에서의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교육적 대응과 해결방안

- 스토리 구성 시 악당 찾기, 폭로전, 응징 등이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은 학습자로 하여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콘텐츠를 따라가게 할 우려가 크며, 이는 관련 사안을

접하게 될 경우 이를 숨기거나 부인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학습자 집단을 잠재적 인권침해자의 위치에 놓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을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본 영상 콘텐츠의 최대 장점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 구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군조직의 인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직 미처 인식하지 못한 인권 문제들을 점검하고, 자연스러운 군 생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군에서 지향해야 할 인권적 군 생활의 모습을 제시하는 구성이 인권적 관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텍스트가 아닌 이야기 구조로 학습자에게 빠르게 사건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식이다. 또한 인권교육에서 이를 활용하기에 적절히 짧은 콘텐츠와 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토론 자료, 교육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 군대 내의 모든 생활을 규정과 지침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도 마찬가지다. 해당 콘텐츠들은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돕기에는 적합하지만, 인권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인권교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이 인권침해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인이 군인권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 ▶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인권침해 원인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점, 처벌과 규제로 모든 문제 해결이 귀결된다는 점, 사례 재구성 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재생산된다는 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시나리오 검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의하면 좋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 선택의 5가지 기준>

1.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사례인가?
2. 학습내용과 관련이 깊은 사례인가?
3.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사례인가?
4. 인권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인가?
5. 현실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례인가?

###### ◉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 학습 4단계>

1. 사례의 명시적 내용 파악하기(표면적 읽기)
2. 사례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분석적 읽기)
3. 사례를 비교, 종합하여 의미를 해석하기(해석적 읽기)
4. 사례의 함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창의적 읽기)

◆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 구성 시 유의점>

1. 인권의 의무 주체에 대해 오해를 가져오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례를 가해자(개인)-피해자(개인)을 대립 관계로 두고, 가해자의 인성, 성향에 해당 사건의 초점을 두는 경우이다.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일깨우는 구조적 시각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인권침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이 문제는 이점보다는 해가 많다. 폭력이 나쁘다는 걸 폭력적인 장면을 소환해서 교육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례의 재구성 시, 선정적이고 혐오 표현 등이 노출되어 의도와는 다른 교육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을 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군문화를 미화하는 언어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눈물 젖은 초코파이, 맛코, 비실비실 등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재미를 위한 감정적 발언, 사람을 희화화하는 발언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패널이 등장하여 감정적 발언, 혹은 재미를 위해 희화화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콘텐츠 내용 전달에 있어 유익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패널의 역할 등을 분명하게 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 중요한 사례를 다루되 선사례를 포함하고 학습자의 행동과 실천 방안을 염두에 둔다. 선사례 등을 제시하여 벤치마킹하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해당 사례의 배경과 이 사건이 지속되는 이유 등을 이해하게 하고, 이 사례들로 빠지지 않도록 개인이 해야 할 행동 가이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공동체의 인권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
5. 인권침해에 대응 방법으로 신고 의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문제해결이 곧 신고, 처벌하는 것의 공식보다는 다양한 해결책 들을 제시되어야 한다.
6. 사례 재구성에서 악당이 등장하는 선악 구조, 원인분석이 잘못된 경우 등 사례를 재구성할 때, 단편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법적 방법으로 인권구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군 인권침해 사례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의 상황 맥락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안내해야 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위한 법 규정을 다룰 때 유의점>

- 인권교육에서 법 규정에 근거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때로는 유용할 수 있다. 법 규정으로 보장

하고 있는 권리의 중요성과 가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단순히 법 위반의 문제로만 이해되면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4 국방TV 방송프로그램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1) 기초 정보

- 분석에 활용된 TV방송 프로그램은 <리얼 병영 특! 행복한 군대 이야기>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방홍보원 국방TV 채널에서 방송되며, 2015년 6월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2023년 10월에 종영했다.
-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을 보장하며 변화가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보다 쉽고 재밌게 소개한다는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그중 인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코너는 ‘사건의 재구성’으로 군대 내부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그 이면에 담긴 인간의 심리와 현상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소개하고 있다.
- 본 프로그램은 총 434회 방송이 제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주제(중복 제외), 유의미성, 최신성, 조회수 등을 고려하여 10편을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주요 특징

- 형식적 특징 : 재현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전문가와 연예인 패널이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1편당 전체 50분 내외 중 해당 사건의 재구성 코너는 20분~30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내용적 특징 : 군의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사안이 심각하고, 복합적인 배경을 가진 실사례를 연예인 패널과 전문가 패널이 등장하여 해당 사례의 배경과 원인, 규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 분석에 활용한 TV방송용 프로그램 목록

방송회차	주요 내용	방송일자	방송시간
396회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방한용품을 금지한 인권침해 사례	2023.01.29	57:24
398회	축구 우승을 위해 병사들에게 훈련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례	2023.02.12	55:21
399회	여 간부의 업무를 병사에게 전가한 인권침해 사례	2023.02.19	56:26
403회	군대판 더 글로리, 가혹행위를 한 인권침해 사례	2023.03.19	56:38
405회	후임을 자신의 광대로 이용한 인권침해 사례	2023.04.02	54:17

방송회차	주요 내용	방송일자	방송시간
406회	종교의 자유 인권침해 사례	2023.04.09	54:42
412회	선임의 여성혐오 발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2023.05.21	58:20
413회	휴식시간에 게임을 강요하고 소액결제까지 강요하는 선임 사례	2023.05.28	55:08
415회	포상휴가 조작에 가담한 병사들 사례	2023.06.11	55:27
433회	중대장의 도를 넘는 질문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2023.10.15	55:11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인권교육의 세부적인 목표는 해당 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군도 인권교육의 목표를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확산’으로 제시하고 있다.
- 다수의 콘텐츠 교육목표를 정리하면,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서 법률 위반과 조치 사항에 대해 숙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법교육 또는 군법교육의 틀에서의 교육목표일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교육의 목표로 적절하다 보기는 어렵다.
- 첫째, 법 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를 주목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정법상의 권리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인권교육의 목적은 군 인권교육 목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이수경, 2022). 인권교육은 법제화되지 않은 인권에 대한 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구제 방안과 절차를 확인하고, 인권적 상황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콘텐츠는 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는 유효하지만 인권교육에 적합한 목표로 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권교육에서 법 규정에 근거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때로는 유용할 수 있다. 법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중요성과 가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단순히 법 위반의 문제로만 이해되면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군법교육은 인권교육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 둘째, 인권 사례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비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콘텐츠에서 인권침해의 원인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의 왜곡이 일어난다. 많은 사례에서 인권침해의 원인은 ① 가해자의 인성 문제 ② 가해자의 병리적 문제 등 한 개인적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권의 개념

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인 국가의 책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면, 인권교육이 목표하는 변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도모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사람을 선별해 배제하는 방법만 남게 된다. 본 콘텐츠에서 계속 등장하는 응징, 처벌에 대한 강조는 인권 제도를 죄질이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왜곡시킬 위험성이 크다.

- 셋째, 결과적으로 군대 내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안 모색 훈련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사례와 비슷한 유형의 인권침해를 표면적으로 예방할 수는 있겠으나, 군 내 인권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괴롭힘 문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인권에 반하는 행동 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괴롭힘의 문제의 원인과 배경,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권력 구조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신고 이외에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방송 예능 형식으로 한 편당 25~30분 내외로 구성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기에 용이하고, 자료화면 제공, 법률의 쉬운 해설, 이미지 자막 등 세련된 영상화면 구성이 돋보인다. 또한 영상 마무리에 혐오 표현, 문제점 요약, 구제 절차와 시스템 안내 등을 일관되게 포함하여 시청자의 콘텐츠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교육 구성 측면에서 ‘행군기’ 영상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인권침해 사례를 사건 재현하여 흥미와 이해를 높인다는 점이다. 예능 방송 구성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다양한 역할의 패널리 등장하여 사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 그러나 재현 과정에서 가해자의 맥락이나 서사가 삭제되고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뒤 프로그램의 내용이 반복적이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전개 등이 시청자의 흥미를 반감하는 요인이 된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교육 내용 측면에서 적합성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

- (인권 보장 책무에 대해 누락) 헌법 10조를 통해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인권 보장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인권 보장 의무자에 대한 내용인 인권의 구조가 누락되면서,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나 인권침해의 사회구조적 원인이 드러나지 않고 인

권 문제가 사적 또는 법적 문제로 귀결되는 한계가 있다(396회).

- (인권을 개인 간 갈등 수준에서 해석함) 집단 내 괴롭힘의 원인을 '가학적 성격장애'로 규정하는 것과 개인 간의 갈등 수준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준다(403회).
- (권리보장 주체를 개인으로 인지) A 병사가 침해당한 권리의 보장 주체로 가해자인 B 병사를 지목하고 있다. 인권 보장 의무는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준다(403회). 인권의 개념과 구조가 잘 제시되지 않으나, 장병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무성을 부대 내 상관, 관리자의 역할로 언급하고 있다(413회).

### ○ 인권침해 발생 이유와 배경에 대한 해설

- (원인 해설이 없는 경우)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를 괴롭힌 이유에 대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원인을 알고자 한 질문이 아니라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내용이 전개되는 아쉬움이 있다(396회).
-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경우) '군기를 잡기 위한 악습',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군 문화'가 인권침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이러한 악습과 군 문화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시된 대안(악습과 군 문화 변화를 위한 모든 병사의 노력 필요) 역시 피상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396회).
-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에만 찾는 경우)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병사의 인식 변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방관하지 않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 제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을 은폐시키고 병사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396회).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피해 병사를 돕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것의 사회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인권적 관점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405회).
-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하는 경우) 해당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구조적·문화적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문제를 가진 개인이나 개인들에 의한 일탈로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은 한계이다(398회), 인권침해의 원인을 개인의 인터넷 중독 현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413회).
- (관행의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우) 여군에게 주어지는 특혜에 대해 여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특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관례가 만들어진 부대 내 시스템의 문제를 꼬집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399회).
- (다양한 해결안이 없는 경우) 인권침해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점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영상의 교육목표가 군조직의 성평등 문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개인적 특성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412회).

### ○ 군 문화, 군 조직의 특수성



- 군기라는 이름으로 발생한 많은 군대 내 악습과 문화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 많으므로, ‘군’이라는 조직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 목적에 맞는 군 문화는 무엇인지, 현재의 군 문화가 정말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행이나 부적절한 군 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다(396회).

### ○ 인권침해의 해결과 대응 방식에 대한 안내

-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 인권 보장 체계(환류)에 대한 이해 없이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콘텐츠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396회에서 인권침해를 한 선임 병사가 어긴 법률이 무엇이고, 이에 따라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인권교육은 인권을 침해했을 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를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하거나 학습자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기반하여 인권을 지키게 한다. 이런 방식의 인권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반감 또는 피로감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주체적인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396회).
- (인권 보장 체계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인권 보장 체계(환류)의 핵심은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발생시킨 사회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시스템적 대안 마련을 통해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405회).
-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과 대안이 부족한 경우) 대안이 “피해자가 조금 더 목소리 낼 것”, “스포츠 경쟁의 과열을 방지할 것” 정도에서 일반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가혹한 사적 지시를 내린 개인이 어떻게 그런 권력을 일상적으로 휘두를 수 있었는지 조직 문화 성찰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가 가해자 개인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처벌한다는 점만 부각되는데, 문제를 가능케 한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과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398회).
- (인권 문제 해결을 개인적 관점에서만 접근) 집단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구성원들의 배려 부족으로 몰고 가는 문제가 있다. 약한 처벌 때문이라는 시각을 제시한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인권침해 문제를 너무나 개인적인 인성에 책임 전가하고 있다(403회).
-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 필요) 해결책이 법률적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406회).
- (법률정보를 넘어 인권 이해 중심으로) 상관 면전 모욕죄, 상관 공연 모욕죄 등의 법률적 정보를 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412회).

### ○ 인권 보호의 모범이 되는 선사례 필요

- 군 내 헬프콜이 존재함을 알리는 것은 좋았으나 선사례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아쉽다(398회).

### ○ 인권침해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

- (사건 설명 시 새로운 이슈 등장) 성 관련 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시스템이 또 다른 인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399회).

○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

-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표현) ‘병사들이 상점 없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이 멘트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병사들의 생활이 상점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은 인간을 타율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본다(415회).
- (비하 발언 사용) 사례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 소감, 논평 등에서 재미 요소를 위한 ‘자기 비하’ ‘다른 패널 비하’ 등의 발언이 있다. 패널 간 주고받는 대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405회).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교육 내용에서 정확성 영역에서 영상화면 구성 시 자막, 법률 설명,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인용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어 시청자에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해설이 없고,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확한 원인, 배경, 대응 방안을 담고 있어 시청자가 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 **개념어 사용 주의**

- (소시오패스) 415회의 경우처럼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등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병사는 소시오패스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개인의 피박한 성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개념어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

-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 콘텐츠 내에서 인권 사례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사례를 다룰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서 출발하여 침해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 권력, 제도, 규정, 인권의 원칙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인에 대한 배제나 처벌보다는 공동체 내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해당 행위가 잘못된 것이 단순히 법률을 위배해서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의 존재 이유를 인권적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406회).

○ **단편적 사례 해석으로 인한 오해**

- (단편적 해석) 406회의 사례는 종교가 개인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의 영역임에도 계급 등의 권력을 이용하여 종교를 강요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말미에 종교 권유 = 인권침해로 마무리되는 점은 학습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 행정법원 판결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를 선전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이야기하므로 앞의 종교 권유 = 인권침해의 내용과 상반되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406회). 이는 맥락을 포함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권력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종교 권유는 인권 침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상급자의 의도와 달리 하급자 입장에서는 선뜻 거절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 등)는 식의 설명이 있다면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윤리성

- 최신성과 관련해서는 TV방송 형태로 매주 1회 방송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개발된 영상들이다. 사례 구성 시 사용된 사례의 발생 연도는 특정되지 않고 있다.
- 윤리성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욕 사용 주의) 군대 비속어인 ‘예수’에 묵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406회) 하지만 패널 및 진행자의 비속어 사용 시 자막에서의 XX 처리나 음성에서의 무음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사용은 듣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 내용 연결에 상관없이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묵음 처리, 자막에 XXX 처리한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396회), 사례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 소감, 논평 등에서 재미 요소를 위한 ‘자기 비하’ ‘다른 패널 비하’ 등의 발언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405회).
  - (여군에 대한 편견 주의) 여군에게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을 더 심화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399회).
  - (자극적인 재구성 주의) 사례를 재미를 위해 과도하게 재구성하여 정확한 사건 맥락 파악이 어렵다(403회).
  - (선정적인 이미지 주의) 선정적인 사례,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412회), 잘못된 남성성을 강조하는 이미지와 노출이 심한 자료화면의 경우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415회).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본 콘텐츠는 병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마주하기 쉬운 예시를 사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평가한다(398회). 영상 속 패널의 성비가 균등한 것 역시 장점이다(398회). 또한 형식 면에서 인터넷(유튜브)로 서비스하고 있어 접근 가능성이 뛰어나며(399회), 짧은 시간 내에 교육적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398회), 이야기 구조 속에서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03회).
- 반면 교육 방법이 모두 동일하게 인권침해 사례제시-분석-결론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고, 시청자가 생각하고 질문할 여지를 남겨 놓지 않는다(398회). 또한 개인의 특성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인권적 접근으로서 국가의 책무에 대한 해석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406회). 어떤 행동을 하

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서 혐오, 차별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조직, 개인, 공동체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412회).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TV 방송, 유튜브와 같은 형식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흥미롭게 인권교육에 다가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기존의 강의형 인권교육에서 벗어나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재현과 연예인 패널 등이 등장하는 방식 역시 인권교육 콘텐츠 구성에서 이점이 많다.
- ▶ 본 콘텐츠는 군법교육에서 지향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윤리적인 지향과 법 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을 상세히 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인권교육 콘텐츠로 보기는 어렵다.
  - 인권교육의 목표는 법 규정의 맹목적인 옹호나 범죄행위의 냉소적인 비판을 넘어서 인권적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교육의 방향은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응보적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지금의 제도와 법률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체로 서도록 하는 데 있다.
  - 군법 안내만으로는 인권교육의 효과를 낼 수 없다. 법이라는 강제 규범에 대한 단순한 숙지가 장병들의 인권 역량을 강화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을 잘못 이해하면 인권적 접근을 방해하기도 한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인권침해 사례를 다룰 때 유의점

-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려면 적어도 다섯 가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첫째, 해당 사례가 드러내는 인권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시민성의 관점에서 존엄, 평등, 자유, 연대 등 인권의 가치를 포함하면 좋다.
  - 둘째, 인권의 구조와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권리의 주체, 의무의 주체, 권리의 근거,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 셋째, 인권침해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권 문제 해결을 처벌 등 응징이나 개인의 인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
  - 넷째, 학습자를 인권침해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인권을 불편한 것, 행동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 다섯째, 공동체가 가진 인권 보장 체계 안에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가는 방

법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와 효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 ○ 〈인권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 개발 가이드〉

- ①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다.
- ② 인권침해 발생 이유와 배경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제시한다.
- ③ 군 문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한 해석을 제시한다.
- ④ 인권침해 해결과 대응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 ⑤ 인권 보호의 모범이 되는 선사례를 포함한다.
- ⑥ 사례를 다루면서 새로운 인권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 ⑦ 영상에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표현에 대해 점검한다.
- ⑧ 근거가 빈약하거나 잘못된 인과관계가 없는지 점검한다.

## 5

## 육군 인권 웹툰

### 1) 기초 정보 및 특징

육군 인권툰은 육군인권준중센터에서 제작한 자료이다. 군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웹툰이라는 비교적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육군 인권툰 1화부터 33화의 내용을 검토했다. 전반적으로 인권툰은 최신화된 정보나 인권 관련 결정례, 국방부의 판단을 근거로 사병의 다양한 권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병, 부사관, 지휘관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육군 인권툰의 교육목표는 제대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추정하건대 군인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수동적인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고, 구체적인 인권 사항이 무엇이고 실제로 군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웹툰의 형식으로 쉽게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결정례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병사와 간부가 현장에서 조금 더 권위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인권 보장에 대해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쉽게 만화로 풀어내 전달하면서도, 근거도 충분히 제공하려는 교육목표는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인권툰은 (1)제목 (2)사례 제시 (3)법령 혹은 결정례 해설(인권 길라잡이) (4)인권 관련 기관 정보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을 통해 해당 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명시하고, 만화 형식으로 사례를 제시한 다음 텍스트를 통해 법령과 결정례를 제시하며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군인권존중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마무리한다. 한 화를 다 보는 데 5분도 소요되지 않음에도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구체적인 근거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을 받거나 문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연계한 것도 매우 적절한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 다만 이 구성은 정보제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의 주체로서 사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제시되지 않아 자칫 학습자가 인권에 대해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객체 혹은 피해자의 태도로만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특히 인권툰 모든 화 공통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해설하기보다 기존의 법령과 결정례를 비추어서 문제를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 더 그 위험성을 강화하고 있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인권툰은 2차 가해, 성차별, 휴가, CCTV 감시, 관물대 검열, 폭언·폭행, 사생활, 명예훼손, 연대책임,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일상적으로 군대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군인들에 관해서 행복추구권, 정보인권, 평등권, 휴식권, 법률에 근거해 정당한 내용으로 지시받을 권리,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피해자 권리 등 아주 구체적인 권리들과 연관되어 다뤄지고 있다. 일상적인 내용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판단 근거와 함께 해설하고 있어 주제가 매우 적절하고 해설도 대체로 준수하다.
- 기존에 군 인권교육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뤄지는 것이 매우 좋았다. 국가배상 책임을 언급하는 27화 “국가배상으로 인한 권리보장”은 기존 군 인권교육에서 잘 다뤄지지 못했던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으로 참신하고 적절했다. 기존 군 인권교육은 주로 병사나 간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해와 피해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는 잘 다루지 못했던 측면이 한계였는데, 인권툰이 이를 잘 짚어준 것으로 보인다.
- 같은 화에서 국가배상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왜 국가가 적극적인 배상의 책임을 지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권툰 전반적인 한계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법령이나 판례, 결정례, 지침 등 기존에 이미 있는 근거를 통해서만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그 인권 보장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이라는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법령과 결정례를 중심으로만 해설하다 보면 인권적 관점에서 해설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옳은 것이라는 인식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기존의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기 쉽지 않아 오히려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인권의 객체로 인식하게 하는 권위주의적인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다.
- 군인들은 누구나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상급 기관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훈령과 지침을 근거로만 일괄적으로 인권 문제를 해설하게 되면 하급자 입장에서 그런 행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떤 관점에서 도출된 결론인지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나 질문을 함께 첨부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없는 경우 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말 것만을 권고하고 있다. 성차별을 다루고 있는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10화)에서는 여성 군인이 복무할 시 듣게 되는 일상적인 차별 언행과 회식 시 성별 분리하여 자리를 마련하는 것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제기하고 있으나, 해설에서 이 사례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할 뿐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군 당사자 혹은 동료 군인, 지휘관이 취해야 할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
- 다른 경우, 생활관을 같이 쓰는 한 병사의 잘못으로 생활관 전체가 열차려를 받는 사례(30화)에서는 연대책임이 부당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사례로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정도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구체적인 대안 사례 제시라고 평가하기에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대안 사례 제시 없이 문제 상황만을 제기하는 방식의 내용 기획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을 금지의 언어나 행동 교정을 위한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문제 제기 성격의 회차와 대안 사례 제시의 회차가 어느 정도 변갈아 발행된다면 보완될 수 있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인권툰은 인권 길라잡이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결정례를 토대로 구성해 놓은 점이 인상 깊다. 정확한 법령과 결정례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인권툰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툰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높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념 오남용이 보이지 않는 점을 높게 평가할 만하다.
- 휴가권을 다루는 26화 “이른바 짝턴으로 인한 인권침해”에서는 일부 해설에 대해서 “육본 인사참모부 검토 완료”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는 상급 기관의 권위를 빌려 이 정보의 신뢰와 권위를 더해주고 있어서 효과적이다. 명확하고 권위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현장의 군인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로 다가갈 것이다.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윤리성

- 교육 내용들은 비교적 최근 군 생활에서도 공감할 수 있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들이 얼마나 최신화된 정보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장의 군인들이라면 익숙한 상황과 문제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
- 다만 해설 부문에서 20여 년 가까이 지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고 있어 오래된 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훈령들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 훈령이 언제 개정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최신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다만 해설에 있어서 그 훈령들이 얼마나 최근에 개정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근거의 경우 정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윤리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기 쉬운 집단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30화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관련, 생활관 전 인원 연대책임>은 한 병사의 행동 때문에 연대책임을 받게 된 사례인데, 이는 군대에서 흔히 ‘민폐를 끼치는 병사’를 연상케 한다. 이런 경우 학습자는 연대책임이 부당하다는 생각 외에도 이런 행동을 보이는 병사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낙인찍는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 공동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단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군대에서 일부 병사를 소외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감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인권툰은 문제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법령과 결정례를 참조해 해설하고 있는데 이를 웹툰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매우 훌륭하다. 짧은 시간에 학습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오히려 카카오톡 채널 등 일부 매체를 통해서만 전파되고 있는 것이 아쉬울 정도이다. 육군훈련소나 각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구독을 권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웹툰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를 만화책으로 발간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전반적으로 인권툰은 최신화된 정보나 인권 관련 결정례, 국방부의 판단을 근거로 사병의 다양한 권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며 사병, 부사관, 지휘관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특히 휴가나 핸드폰 사용, 처벌 연좌제, 정치적 중립 준수 등 실제 군대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풀어내어 훨씬 와닿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군 현장의 병사와 간부의 이해 수준에 맞도록 쉽게 웹툰 형식으로 인권 문제를 알리려고 시도한 점이 매우 좋았고,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수준도 대체로 준수했다.



- ▶ 한편 웹툰이라는 형식상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인권에 관한 구조적 이해를 돕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아쉬움이 있다. 가령 병사와 간부에게 인권 침해나 정신적, 신체적, 관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배상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왜 국가가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관점을 전달하지는 못했다(27화).
- ▶ 마찬가지로 병사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인권 의식과 지식수준의 함양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일선 간부들만의 책임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휴가권과 관련해서 휴가는 최대 15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전 휴가를 나가는 병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정정보급관에 대해서, 휴가에 관해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문제일 수 있음에도 해당 행정정보급관이 최신화된 정보를 알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읽혀 개인의 문제로 귀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28화).
- ▶ 또한 문제의식을 전달하되 마땅한 대안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보여 이는 보완이 필요하다(10화, 30화).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일정 정도 분량이 쌓였을 때 이를 만화책 형태로 발간하여 부대 내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현행처럼 일부 SNS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접근성도 높아지고, 정리된 발행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을 것이다.
- ▶ 화를 구성할 때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화와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화가 번갈아 제시된다면 교육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 ▶ 자칫 정보전달에만 치중하여 수동적인 학습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문제는, 웹툰 내용으로 직접 다루지 못하더라도 학습자가 인권의 주체로서 사유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정 해결될 수 있다.
- ▶ 또한 민감한 문제더라도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구성원 등 군대 내 소수자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인권툰이 훨씬 더 선진화된 인권 콘텐츠로 자리 잡고, 이 인권툰을 읽은 군대 구성원들이 단지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군대 밖 사회에서도 더 나은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V 각 군 인권 소식지

## 1 분석 개요

### 1) 분석 대상

- 다음과 같이 각 군 인권소식지를 분석하였다. 실제 군 인권교육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각 군 인권 현장 사례 등을 시의성 있게 담고 있는 중요 자료라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5〉 각군 인권소식지\_분석 대상

생산단위	콘텐츠 목록	형태
육군	인권교육용 소식지형 교육자료 육군 인권소식(2022)	소식지
해군	인권교육용 소식지형 교육자료 해군 인권뉴스(2023)	소식지
공군	인권교육용 소식지형 교육자료 공군 인권레터(2022)	소식지

### 2) 분석 기준

- 본 연구에서는 군 인권교육에서 활용되는 각 군 소식지의 인권교육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군 인권교육 점검지표를 활용하였다.
- 연구진이 개발한 점검지표 11개 중에 학습환경 영역을 제외하고 9개 점검 항목을 사용하였다(교육 목표의 적절성, 교육 구성의 적절성, 교육 내용의 적합성, 교육 내용의 정확성, 교육 내용의 최신성, 교육 내용의 윤리성, 교육 방법의 적절성, 종합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등).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결과를 3개 영역(교육목표 및 구성/교육 내용 및 방법/가이드라인을 위한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2

## 육군 인권소식

## 1) 기초 정보 및 특징

분석에 활용된 콘텐츠는 육군 인권존중센터에서 개발한 ‘육군 인권소식’이다. 이 콘텐츠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콘텐츠는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다룬다.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각 사례의 마지막에는 ‘인권 길라잡이’ 코너를 통해 사례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목표는 장병들이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병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절차를 교육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적 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교육 자료의 구성은 병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실적인 ‘사례’를 소개한 후, ‘관련 법령’ → ‘사례의 해설’ → ‘인권 길라잡이’ 순서로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는 학습자가 사례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2개의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어 매월 1개씩 다루어지고 있다. 현실의 이슈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인권소식이 지속적으로 연재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자료의 끝에는 해당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육군 인권존중센터의 홈페이지 위치가 제공되어 있어, 교육 내용 관련 질문이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문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교육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군 ‘인권 소식’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표 26〉 2022년 육군 인권소식(1~12월) 주제

〈2022년 육군 인권소식(1~12월) 주제〉
□1월_장병의 보건의로 접근권 보장
□2월_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3월_연대책임 부과로 인한 인권침해
□4월_과도한 생활관 순찰로 인한 인권침해
□5월_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6월_징계항고권 보장 관련 인권침해
□7월_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재로 인한 인권침해
□8월_의료 접근이 필요한 동료 장병에 대한 배려
□9월_병 상호간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10월_휴가단축 집행을 위한 특별휴가 삭감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월_체력단력 시간에 부당한 장병의 의료선택권 보장
□12월_개인정보가 포함된 마음의 편지 조치결과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사례의 해설’에서 대부분 법률과 규정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상황에는 정해진 답이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법률과 규정 중심의 설명은 학습자의 인권적 사고력을 활성화하거나 인권적 해석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다양한 답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인권 길라잡이’ 코너에서는 ‘~ 해야 한다.’, ‘~ 하면 안 된다.’ 등 가이드라인 식의 내용을 제안한다. 인권교육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거나, 현재 사례와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찾도록 하는 것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인권적 사유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 자료가 헌법과 법률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국제인권협약 등 다양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접근이다. 이러한 다원적인 근거의 활용은 학습자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의료접근권에 대한 설명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와 ‘질병 발생 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 등 ‘국제사회권규약’의 내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표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법률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규범을 고려하며 학습자가 다양한 시각에서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사례는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등 다양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 선거관련행위 금지’ 안내 책자 등 다양한 근거를 활용하여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군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정당 및 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학습자가 인권의 가치를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군인의 정당 지지는 어떠한 지점이 문제인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교육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고 정리하면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형성하고, 국제적인 맥락에서 군인의 정치적 표현과 중립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를 다룰 때 지휘관 및 당직근무자가 생활관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병사들의 휴식권과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는 자율활동 시간에 생활관 순찰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실시하거나, 출입문 창을 통해 생활관 내부를 ‘오랫동안’ 관찰하는 순찰방식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빈번하게’, ‘오랫동안’이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찾고 생활관 내부 순찰의 허용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적 문제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생활관 내부 순찰이 필요한 경우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재로 인한 인권침해’를 설명 시 휴대전화 사용 제재에 대한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었으나, 이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의 고찰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부대관리 훈령」 제35조의3 제3항에 따른 휴대폰 사용 제재가 가능한 기간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휴대폰 사용 제재가 군인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보인다. 각각의 사례를 다룰 때 법률의 내용뿐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도 더 깊은 분석을 통해 해당 인권침해의 의미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위에서 제시된 사례 외 나머지 사례에서도 인권침해를 주로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 지식에 한정되어 인권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대책임 부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서는 자기책임의 원리와 연대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인권침해의 영향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휴가단축 집행을 위한 특별휴가 삭감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서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군인의 복지와 휴가 권리에 대한 인권적 고찰이 더 필요하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목표는 장병들이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군 인권교육의 목표와 부합하며,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에 기반한 군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교육 구성의 적절성:** 교육 자료의 구성은 병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사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인권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의 끝에 교육 내용에 대한 문의 창구를 마련하여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이다.
- ▶ **교육 내용의 적합성:** 교육 자료는 헌법과 법률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국제인권협약 등 다양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각도로 논의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인권의 가치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교육 내용의 정확성:**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서 ‘빈번하게’, ‘오랫동안’과 같이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생활관 내부 순찰의 허용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적 문제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교육 내용의 보완:** 교육 자료의 교육목표와 부합하는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다.
  - ‘사례의 해설’에서 법률과 규정 중심의 설명을 지양하고, 인권적 사고력을 활성화하거나 인권적 해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인권적 사고력과 인권적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
    1. 다양한 관점의 제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여 교육 대상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인권적 탐색: 사례의 윤리적·철학적 함의를 탐색하여 인권의 가치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권적 대안 모색: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인권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인권 길라잡이’ 코너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고려하여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인권적 측면의 고찰을 강화한다.
- ▶ **교육 방법의 개선:** 교육 내용의 보완과 더불어, 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학습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

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교육 내용을 토론, 역할극,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자료에 대한 예습과 복습을 권장한다.
- 교육 후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도와 교육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 군 인권교육은 군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육군의 ‘인권 소식’은 현실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보완과 교육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인권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더욱 효과적인 교육자료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3 해군 인권뉴스

#### 1) 분석 대상

● 해군 인권뉴스는 해군 인권센터에서 매달 발간하는 인권 소식지이다. 이 중 2023년 1~8월(6월 제외)까지 발행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지난해(2022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그림·표어를 게시함으로써 인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례를 통해 수병이 향유할 권리를 상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인권뉴스라는 제목에 걸맞게 군 내외 인권과 관련하여 전달할 소식들이나 정보들을 함께 게시하고 있다. 2023년 해군 인권뉴스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7〉 2023년 해군 인권뉴스(1~8월) 주제

〈2023년 해군 인권뉴스(1~8월) 주제〉
□ 1월_징계위원회 회의내용 유출과 인격권 침해, 선후임 간 가스라이팅에 대한 인권에세이
□ 2월_24시간 당직 근무와 휴식권 침해, 청원휴가 불허와 의료접근권 침해
□ 3월_23년 상반기 UFS특집(제네바협약 등 국제인도법)
□ 4월_(비인가)휴대전화 열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징계와 적법절차의 원칙
□ 5월_다자녀 부모의 당직근무 면제와 평등권, 인권교육 이수 관련 세부사항 안내
□ 7월_휴가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개인 부채 현황 파악과 사생활 침해
□ 8월_23년 하반기 UFS특집(산레모 매뉴얼)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2023년 해군 인권뉴스에서 다루는 주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군 구성원 모두가 사소한 언행에서부터 인권 존중을 실천하여야 한다.
- 타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유포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상급자는 적극적인 의료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한다.
- 「국제인도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존재 의의에 관해서 확인한다.
-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의무에는 국민의 인권을 지킬 의무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였어도 개인의 사생활을 담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경우라는 것을 알게 한다.
-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등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주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당직 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한다.
- 공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소속 군인의 개인 연가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인증사진 전송 등을 요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 「해상무력분쟁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 배포되는 소식지(뉴스)라는 특성상 인권교육을 목표로 한 주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내용과 군인 직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군 인권교육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사례로 생각해 보는 인권>의 경우 사례에 따른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해설을 함께 달아 군인 역시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교육 목적보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에 글이 많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긴 편이라 교육 활용 시에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내용이 인권역량 증진을 위한 내용이 아닌, 단순한 정보전달을 위한 내용도 있어 적절한 가공을 통해 인권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군인도 국민이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주체임을 제시한다. 사례 해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고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군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국가(국방부)의 인권 보장 의무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인권모니터단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소개하며 인권모니터 요원이 150여 건의 제안을 주었고, 그중 20건의 제안을 선별하여 해군 주요 정책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통해 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만 신고자 생략되어 있으나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참고하여 어떤 정책 반영이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소개되었다면 어떤 환류체계가 작동되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의무대 근무 중인 수병의 사례에서 과도한 24시간 응급대기가 당직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 합당한 근무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당직 근무자의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와 장기적으로는 인력 보충을 통해 당직자들의 휴식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부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연결하여 관련 사례 속에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윤리성

- 주요 전쟁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데 있어 그저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법의 존재 목적이 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전투원과 비전투원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포로·부상자 및 민간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평화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 데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뉴스의 구성에 수병들의 작품이나 글을 포함해 학습자(수병)들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수병이 만든 인권 작품(포스터), 에세이 등 병사가 직접 참여한 것을 함께 게재하여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돋우며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 다만 ‘가스라이팅’에 대한 에세이 같은 경우 해당 에세이에 대해 인권적으로 접근하고 풀어낼 수 있는 해설을 함께 덧붙인다면 에세이 소개에서 그치지 않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 ▶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인권모니터단의 활동 및 제안에 대한 상세 설명과 그것을 반영한 정책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같이 소개한다면, 학습자가 일상에서 인권을 지향하는 군 문화를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인권교육에서 활용할 부분) 소식지에 실린 사례를 참고하거나 현재 해군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공군 인권레터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공군 인권레터는 인권을 주제로 한 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공군 구성원에게 배포하는 소식지이다. 2022년 1월~12월에 게재된 총 11편(6월 인권레터 부재)의 인권레터를 분석하였다.
- 인권레터의 주제는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자유와 평등, 기업과 인권 등 다양하다.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독자가 인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인권의 이야기기를 풀어낸다는 점이다. 각 편의 제목과 주제, 주요 키워드, 소재는 아래와 같다.

〈표 28〉 인권교육용 소식지형 교육자료 2022년 공군 인권레터(1~12월) 개요

발간 연월	제목	주제/주요 키워드/소재
2022년 1월	아는 것이 힘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존엄성</li> <li>• 학습권</li> <li>• 드라마 &lt;SKY 캐슬&gt;</li> </ul>
2022년 2월	Pick me! Pick 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다수결의 함정</li> <li>• 영화 &lt;12명의 성난 사람들&gt;</li> </ul>
2022년 3월	인권과 인권 그 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인권선언 제1조</li> <li>• 「대한민국헌법」 제10조</li> <li>• 인간존엄성</li> <li>• 모든 사람, 인권의 보편성</li> <li>• 난민</li> <li>• 전시 &lt;아이웨이웨이: 인간미래&gt;</li> </ul>
2022년 4월	삐빅! 탈락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라마 &lt;오징어 게임&gt;을 통해 본 인권 이야기</li> <li>• 인간 존엄성, 생명권(헌법 제10조)</li> </ul>

발간 연월	제목	주제/주요 키워드/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li> <li>•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li> <li>• 사생활 자유 및 비밀보장(헌법 제17조)</li> <li>•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li> </ul>
2022년 5월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본 공군 내 인권 이슈</li> <li>• 군인의 권리와 의무</li> <li>• 관물대 검사: 사생활 침해?</li> <li>• 언어폭력, 사적 지시, 휴식권</li> <li>• 신고 의무</li> </ul>
2022년 6월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li> <li>• 인권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의 실천, 사회 참여</li> <li>• 대상화/타자화</li> <li>• 인권 보장 체계, 인권 매커니즘, 제도 변화를 통한 인권 보장</li> <li>•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li> <li>• 영화 &lt;매트릭스&gt;, 인권 에세이</li> </ul>
2022년 8월	우영우 따라하기 논란을 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li> <li>• 대상화/타자화</li> <li>• 표현의 자유</li> <li>• 인권 문해력: 목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 구조 바라보기</li> <li>• 드라마 &lt;이상한 변호사 우영우&gt;</li> </ul>
2022년 9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li> <li>• 국가의 보호 의무</li> <li>• 시민성</li> <li>•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 속에서 군의 역할, 군의 인권적 의미</li> </ul>
2022년 10월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한 자유의 의미</li> <li>• 공동체 속 개인, 사회적 존재, 관계 속 개인</li> </ul>
2022년 11월	월드컵과 표현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과 정치적 표현</li> <li>• 군의 역할</li> <li>• 군인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li> </ul>
2022년 12월	인권, 그게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인권, 인격권, 평등</li> <li>• 인권 보장을 위한 공군의 노력</li> <li>• 드라마 &lt;재벌집 막내아들&gt;</li> </ul>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에 따르면 군 인권교육 목표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 군 조직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공군 인권레터는 인권교육 목표에 부합하다. 각 편마다 다양한 권리를 소개하고, 해당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전시켜 독자가 인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소식지 마무리로 주제와 관련한 군인의 권리,

부대 내 관련 인권 이슈를 떠올리게 하여 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 제시하는 군 인권교육 목표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직위, 업무 등 제한 없는 포괄적 주제를 설정하여 모든 학습자를 위한 자료이다.
- 분량은 편당 8페이지 내외로, 10분 내외로 글을 읽을 수 있다. 분량이 긴 것으로 보이나, 관련 이미지를 포함되어 있어 글의 양이 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각 자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에 대한 지루함을 해소하고 있다.
- 각 편마다 주요 인권 주제를 설정하고,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규범, 데이터 등 근거를 뒷받침하여 논리가 탄탄하다.
-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인권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가 쉽게 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글 전반이 인간 존엄성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계속해서 인간 존엄성이 밑바탕이 되어 이야기가 풀어져 독자는 자연스럽게 인권의 개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난민, 장애인, 급식 소수자, 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인권교육에서 자주 범하는 문제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인권의 주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통해 실현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짚는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존엄하고 평등하며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나와 다른 이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의 원칙인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나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져 있다.
- 군의 인권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 편에 나온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이다. 재난 상황 속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군인의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군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짚어낸다. 또한, 재난의 불평등과 회복성까지 다루며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입은 이들의 위치와 사회구조의 문제 및 국가의 역할을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재난은 자연만의 문제가 아닌 인재의 영역이기도 하고, 따라

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짚어낸다는 점에서 인권 문해력을 높인다.

- 군 인권 업무를 하며 병사식당 음식이 너무 짜 음식을 못 먹는 병사의 사례를 하며 인권 보장 체계를 설명한다. 군인권업무 담당자로서 ‘이것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식사는 매일 겪는 문제이고, 부대에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음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 건강과 연결된 사안이기에, 해당 부대의 급양 담당자를 만나 병사식당에 대한 만족도 시행 계획 여부, 저염 식당 정책 등을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인권적 문제해결이란 위법 행위를 가르는 것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교육 내용의 의미와 표현상에서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윤리성

- 뉴스레터 작성자가 군인 당사자이면서도 인권업무를 하며 경험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성과 최신성을 담보하고 있다.
-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 편의 시각 자료가 자극적이고, 개인의 신상을 보여주는 자료여서 향후 뉴스레터를 작성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4) 교육 방법의 적절성

- 월 1회 인권 주제에 대한 인권 소식지를 배포하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인권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사회 전반의 인권 이슈와 병사들이 공감할 만한 현장 사례를 연결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에 빚대어 인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권레터 말미에 ‘공군에서는 이 사안의 일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질문을 넣어 독자가 해당 사안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작성자가 공군으로 복무 중이고 인권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군의 사례를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내재화된다면, 군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군인 당사자가 군 인권교육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주체라 생각한다.
- ▶ 드라마, 영화, 전시회, 관련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재로 인권 이야기를 다루어 인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글에 몰입하여 인권의 주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졌다. 군에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 글 마무리에서 글의 주제와 관련된 이슈가 공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질문을 함으로써 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닌 군의 인권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 공군 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인권 이슈가 무엇 일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 ▶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기업과 인권, 기후 불평등 등 군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인권 주제를 군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는 군 인권교육에서 시민성을 기반으로 인권교육 주제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군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권 이슈도 군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 전체적으로 군 역시 사회 속 연결된 존재임을 보여주고, 인권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 ▶ 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군 조직 구성원이기에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군 사례와 함께 연결하여 군 인권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인권교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인권의 원칙인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인권교육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 ▶ 각 사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인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향후 사례를 활용하여 군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면, 사례 또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인권 주제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정한 뒤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편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의 내용을 제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군인(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에 방점을 맞추어 풀어낸다는 점에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의미를 가장 잘 살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군 인권교육에서도 「군인복무기본법」을 주제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면, 사례와 생각해 볼거리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사유의 확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하도록 한다.

# V

## 군 인권교육 현장 인권콘텐츠

### 1 분석 개요

#### 1) 분석 대상

- 공식적으로 생산된 군 인권교육 콘텐츠가 어떤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생산된 군 인권교육 콘텐츠 이외 어떤 콘텐츠가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군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교육 현장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표 29 > 군 인권교육 현장 강의\_분석 대상

연번	현장 강의 대상	일정	조사자
1	수사직 종사자 과정	2023. 8. 3.(목)	인권교육 연구자 2인
2	수사직 종사자 과정	2023. 8. 4.(금)	인권교육 연구자 2인
3	국방대) 인권교관 과정	2023. 8. 30.(수), 오전	인권교육 연구자 1명, 인권활동가 1명
4	국방대) 인권교관 과정	2023. 8. 30.(수), 오후	인권교육 연구자 1명, 인권활동가 1명
5	해군) 3함대	2023. 9. 1.(금)	인권교육 연구자 1명, 인권활동가 1명
6	육군) 28사단 정보통신대대	2023. 9. 5.(화)	군분야 인권강사 1명, 인권활동가 1명
7	해병) 해병대사 본부대대	2023. 9. 5.(화)	인권교육 연구자 2인
8	공군) 방공관제사34전대 302대대	2023. 9. 12.(화)	인권교육 연구자 1인, 인권활동가 1인
9	육군) 5기갑여단 866포병대대	2023. 10. 31.(화)	군분야 인권강사 1명, 인권교육 연구자 1인
10	해병) 해병대 1사단 32대대	2023. 11. 6.(월)	군분야 인권강사 1명, 인권활동가 1인
11	공군) 항공대대 7186부대	2023. 12. 06(월)	인권교육 연구자 1인
12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2023. 12. 14(목)	인권교육 연구자 1인

#### 2) 분석 기준

- 연구진이 개발한 점검지표를 활용하여 군 현장 인권교육을 점검하였다. 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 구성의 적절성, 교육 내용의 적합성, 교육 내용의 정확성, 교육 내용의 최신성, 교육 내용의 윤리성, 교육 방법의 적절성, 종합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연구는 군 인권교육 콘텐츠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콘텐츠는 전체적인

구성이나 운영과 완전히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현장 모니터링은 교육 운영적인 측면을 같이 분석하였다.

## 2 군 인권교육 현장 콘텐츠

### 1) 기초 정보 및 특징

- 현재 군에서는 다양한 형태, 대상, 규모, 방식의 군 인권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 즉 각 군, 국방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각각 방문하고, 직무종사자 교육, 일반 병사교육, 교관 교육을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 군 인권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 2) 교육목표 및 구성 분석

#### (1) 교육목표의 적절성

- 현장 교육의 교육목표는 아래 표와 같다. 교육목표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교육의 경우 그 교육목표를 그대로 적었고,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교육은 조사자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목표를 정리하였다.

〈표 30〉 군 인권교육 현장 강의\_교육목표

교육 대상	교육목표
수사직	수사 직무 관련 사례 소개와 쟁점 토론을 통해 군대 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병사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군대 내 인권 증진을 위한 역량을 증진한다.
	인권친화적 대화 기법 습득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인권 및 지휘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감수성을 향상한다.
군 간부	인권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한다.
인권교관	군 인권교육가로서 알아야 할 인권의 개념 및 인권교육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군 인권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에 충실한 교육목표 :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에 의하면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 이번 연구 과정에서 살펴본 12개의 군 인권교육 현장 강의 역시 교육대상에 따라 각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목표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에 규정된 인권교육



목표의 틀 안에서 그 목표가 설정되고 있었다.

- **교육목표로 제시되는 인권감수성 의미** : 위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교육목표로 인권감수성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군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전반에 있어 나타나는 경향이다.
  - 인권감수성의 의미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감각을 가지도록 돕는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을 상호존중과 배려의 틀에 가두고 인권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왜곡시키는 요인인데 군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된다.
  - 군 인권교육 목표 설계도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인권감수성의 의미를 인권교육 목표에 맞게 인권 문해력 수준으로 해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 구성의 적절성

- **교육목표를 뒷받침할 인권교육 내용인지 점검** : 교육목표 자체는 군 인권교육의 지향을 따라가고 있으나 교육 내용이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지는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 먼저 군 내부 강의자의 경우 주로 법무 업무자가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병행하면서 인권교육의 변별점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 외부 강의자 인권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소재나 강의 진행 방법 설정에 있어 학습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적절한 교육목표 제시가 무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학습자 중심 교육**: 군 내부 강의자는 주로 군 내부 자료(표준 교안 등)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 주제 및 사례가 군의 특성을 잘 반영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가능성이 높다.
  - 반면 외부 강사에 의한 일부 교육의 경우 군인이라는 학습자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군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권강사에게 강의 의뢰 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소통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12회차 교육의 모니터링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은 학습자 중심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육 진행이 가능한 것은 교수자가 사전에 학습자의 근무 조건과 환경, 업무 내용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자신이 설정한 인권교육의 흐름에서 조사한 내용을 끊임없이 소재로 녹여가며 풀어냈기 때문이다.

- 학습자중심 교육은 강의나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본 수업에서 강사는 항상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실을 단순하게 정제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복잡함 속에서 사례를 풀어간다. 인권 문제는 항시 실제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이해되어야 할 개념을 설명한다. 이런 상황은 학습자 스스로 수업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이 문제와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게 한다. 사실상 이것이 학습자 중심 수업의 핵심이다.

- 본 강사가 그것을 아주 간결하게 잘 적용하고 있다. 개념과 상황을 떨어뜨려 놓지 않고, 현실 사례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을 갖추고, 배운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해 보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옹호자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현실 속 학습자의 역할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설명한다. 이에 학습자는 인권옹호자라는 개념어를 자신의 상황과 맥락에 적용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어 습득은 잊혀지지 않는다. 강사가 보여준 맞춤형 교육의 핵심은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강사는 학습자와 자신이 가진 경험, 지식과 정보를 하나의 방향 안에서 이해하고 설명했다. 다양한 학습자들의 경험을 자신이 설정한 교육 방향에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문화적 동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다.

- **학습 분량 및 교육 시간의 적정성:** 각 교육마다 달라 일반화하여 언급할 수 없으나 학습자가 병사인 경우에는 20~30분으로 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도 있었다.
  - 한편 일부 교육의 경우 전체 교육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었으나 학습자 간 토론 시간이 짧아 현장에서 학습자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논리적 구성:** 대부분의 교육이 대체적으로 내용의 논리적 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 극히 일부 교육의 경우 학습자에게 왜 이 내용이나 활동이 필요하며 앞뒤 내용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전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에 제시한 외부에 인권교육 의뢰 시 필요한 시스템적인 소통 체계 안에 이와 관련한 점검지표를 포함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 **가독성 있는 교육 자료 구성:** PPT에 대한 가독성은 각 교육마다 달리 평가되었다. 주로 글자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PPT가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 인원이 많아질수록 스크린과 학습자 사이 거리가 멀어 즐길보다는 단어나 이미지 중심의 슬라이드가 효과적이었다.

### 3) 교육 내용 및 방법 분석

#### (1) 교육 내용의 적합성

- **군과 내 업무의 인권적 의미 인식 지원에 적합:** 군 내부 인권교육 자료로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헌법 조항을 통해 군의 역할과 사명을 설명하면서 인권의 구조(국가의 책무성)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군의 인권적 사명과 업무의 인권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에 적합한 내용이다.
- **인권의 개념과 구조의 이해를 돕는지의 점검:** 단편적인 사례 소개와 나열식의 교육 구성의 경우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내용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군법 교육의 내용으로 채워질 경우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 군의 각 직무자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내재화한 인권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분야 실무사례를 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 한편 실무와 관련된 사례들로 채워진다고 해도 이것이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담고 있지 않

다면 마찬가지로 학습자에게 오히려 인권을 금지 가이드라인, 단편적인 매뉴얼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대한 이해 토대 위에 자신의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 **국가의 인권 책무성 이해:** 인권교육에서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성’이다.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권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 교육이 있는 반면, 인권의 개념과 구조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상호 존중’, ‘신뢰’, ‘경청’, ‘소통’이 중심이 된 교육도 있었다. 다만 이는 군 인권교육 현장만의 현상은 아니고 한국사회 인권교육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한계가 그대로 반영된 문제라고 보인다.
  - 인권의 구조가 명확한 교육의 경우 인권 보장의 궁극적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국가와 군대(군인)의 관계도 명확히 제시하였다.
  - 인권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교육의 경우, 그 콘텐츠가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상호 존중 교육이나 좋은 의사소통 교육은 될 수 있을지라도 좋은 인권교육이 될 수는 없다.
- **사례 나열식 구성:** 일부 교육의 경우 관련 사례의 나열식 구조로 진행되기도 했다.
  - 사례형 인권교육의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나 맥락이 빠지면 단편적으로 사례의 결론만 나열하게 된다. 즉 금지 가이드라인 숙지 교육이 되면서 자칫 이것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낳을 수 있다.
  - 또한 인권 문제의 본질인 구조적 관점이 소거되면서 인권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만 보게 하거나 피해 가해의 이분법에 가두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몇 사례라도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는 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 구성 시 사례의 인권적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준비와 시간 안배 등 조정이 필요하다.
- **군 인권 제한에 대한 설명:** 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군인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인권에 대한 설명과 사례가 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률 규정만 설명할 뿐, 그러한 제한이 왜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이해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제한이라면 그 제한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있어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 기본권을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법률로 제한한다 해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인권의 제한을 설명함에 있어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설명하는 교육보다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인권 구제의 특성과 환류 구조:** 권리구제 부분의 경우 인권 구제의 특성이나 그 환류 구조가 드러나

지 않은 채,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사법처리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인권의 권리구제는 인권침해 발생 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와 인권침해가 발생한 후 권리를 구제하는 사후적 조치가 있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구제 조치와 사후구제 조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군 인권 보장 체계’로 교육 내용을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류 체계와 관련한 선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 내용의 정확성

- **인권에 대한 오류적 인식이나 함정 점검 필요:** 모든 권리 주장을 인권과 동일시하거나 자유권과 사회권을 완전히 별개의 인권으로 상호 배척하는 인식,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가 따른다는 내용의 교육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것은 인권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이고, 강사들 역시 많이 실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인권에 대해 학습자가 흔히 가지기 쉬운 이와 같은 오해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 어떤 인식의 오류로 인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가지는 모순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 적지 않은 군 인권교육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 국가체계 내에서 인권의 이름이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명문화된 권리일 뿐, 근본적으로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다르지 않다. 따라서 기본권과 인권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 내용 안에서는 그 필요성이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 전체 교육 내용의 구성과 흐름으로 봤을 때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제한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권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점, 인권 역시 관계적 개념으로 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구별의 실익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인권인 기본권의 위상을 왜곡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미 인권과 기본권이 같은 개념임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특수성에 따른 인권의 제한 문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 **사례에 대한 인권적 관점과 지향 제공:** 사례를 인권적 관점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교육 내용이 필

요해 보인다.

- 인권 사례를 인권적 관점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학습자가 사안을 단순하게 인식하거나 기존의 인권적이지 않은 관점이 가지는 문제점을 환기할 기회를 잃는다.
- 임신 중단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강사는 명확한 인권적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 다만 학습자에게 인권적 해석과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지, 생각과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지휘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지휘권 및 훈육권을 이야기할 때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지휘권은 군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직무상 권한이다. 따라서 군 조직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장병의 인권 보장은 지휘권이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지휘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하여야 지휘관과 병사 상호 간 신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어 사용에 유의:** 일부 교육에서 교육가나 특정 집단만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언어나 의미가 모호한 개념어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복 입은 시민’의 의미 검토:**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에 대한 설명에서 제복을 입었기에 권리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 ‘제복 입은 시민’은 군인 역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따라서 ‘제복 입은 시민’이 의미하는 것은 군인 역시 시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오류이다.
  - 어떤 용어나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그 용어의 뜻이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권의 개념 또는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나 인권을 수단화하는 내용, 학습자를 무시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강의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 누군가를 희화화하거나 대상화하는 콘텐츠
- 인권침해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 인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것
-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나눠 피해자의 인권만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
- “모르셔도 돼요. 이걸 넘어가도 돼요.” 와 같이 학습자를 무시하는 표현

### (3) 교육 내용의 최신성

- 대부분의 교육에서 최근 2~3년 이내의 사례와 통계자료, 정책 등이 제시되어 교육 내용의 최신성

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일부 직무 교육에서 다뤄진 인권위 결정례의 경우 2016년 결정례 등 10년 가까이 되거나 그 이상 된 자료도 있어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 (4) 교육 내용의 윤리성

- **익명성 처리 등:** 일부 교육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설명할 때 지역이나 부대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익명성과 개인정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이나 부대명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문화 콘텐츠 사용 시 유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를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다양한 인권 문제(경찰 공권력 사용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 미흡/피해자를 전시하듯 기사를 쓰는 언론의 문제/수사 절차와 인권 등)를 제대로 다뤄내지 못한 채, 학습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알아채기 위한 소재로만 사용되었다.
  - 영화에서 제기되는 이슈가 어떠한 지점에서 인권의 문제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습자가 영화를 보고 느낀 심리적 변화에 집중한다면, 영화 안에 담긴 인권 문제에 둔감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 **선정성 등:**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PT에 욕설의 내용을 기입하는 것은 선정성과 폭력성, 특정 집단 및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지양할 필요가 있다.

#### (5) 교육 방법의 적절성

- **교육 조건과 환경:** 다수의 교육이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교육 장소 등의 한계로 주로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군뿐만 아니라 직무자 인권교육 현장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대규모 집합교육으로는 인권을 내재화하여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학습자가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교육 진행 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교육 조건과 환경 내에서의 방법 모색:** 일부 강사의 경우 대규모 집합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질문, 간단하게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여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학습자와 최대한 소통하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 소규모의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좋기는 하겠으나, 불가능하다면 이와 같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하다.
- **사례의 인권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 등 교육 기재:** 일부 직무 교육에서 2016년~2022년까지 약 7년간의 결정례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 현재 해당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권 주제에 맞춰 사례 수를 줄이고, 학습자에게 단계별 질문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인권적 함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학습자 참여적 활동 진행 시 유의점:** 학습자 참여 패들렛(padlet, 온라인 메모장)을 활용한 학습자 참여 교육에서 인권에 반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 이 경우 인권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정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인권적 의견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용적 문화를 만들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되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활동 참여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 규칙(혐오, 차별, 인신 공격 금지 등)을 공유하고, 아직 서로 배워가는 과정인 만큼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도 완전히 인권적일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나눠 모든 학습자가 안전한 공간이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 인권교육의 목표는 교육실행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권 의식 향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4) 시사점과 활용 방안

##### ① 시사점

- ▶ 헌법을 통한 군의 존재 목적(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 질서 수호)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인권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 인권의 이해에 기반하지 않는 실무교육은 인권을 직무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 할지라도 인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권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 ▶ 교육 대상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군 인권교육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군인이라는 단순한 집단의 특성만을 고려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교육 대상자의 인권교육 경험, 나이, 계급, 성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 ▶ 교육 내용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 보장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무성, 인권의 원칙(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인권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 ▶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학습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어렵다. 토론, 역할극, 실습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여건(교육 시간, 교육 장소, 교육 인원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 군인 인권의 제한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설명하는 교육보다는 그러한 인권의 제한이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지를 적용해 보는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권을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법률로 제한한다 하더

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 권리구제와 관련한 내용은 사전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군 인권 보장 체계’로 교육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들이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류체계와 관련한 선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 ▶ 사례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많았는데, 사례 교육의 경우 사례에 대한 나열이 아닌 해당 사례가 발생한 구조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 외부 강사가 강의하는 경우 군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군 특성에 맞춰 교육을 만들기가 어렵다. 외부 강사 교육에서의 군 인권교육의 특수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② 활용 방안(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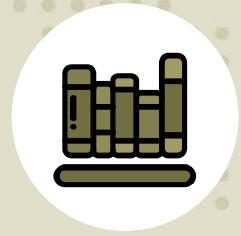
- ▶ 학습자의 나이, 성별, 계급, 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별로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 설정 및 개발이 필요하다.
- ▶ 군의 존재 이유와 인권적 사명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한다.
- ▶ 교육 내용 중 인권의 이해(개념, 구조, 역사, 원칙-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
- ▶ 인권과 기본권 관계를 구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기본권과 인권을 계속해서 구분하여 쓴다면, 기본권의 지향이 인권임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 ▶ 직무별 실무교육일지라 하더라도 인권의 이해 내용을 포함한다.
- ▶ 군인 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교육을 구성한다.
- ▶ 사례 교육은 사례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인권침해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한다.
- ▶ 권리구제와 관련한 내용은 사전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군 인권 보장 체계’로 교육 내용을 확장하고 이에 대한 환류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 제4장

## 군 인권교육 수요조사 결과



- I. 교수자 수요조사 결과
- II. 학습자 수요조사 결과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제4장

## 군 인권교육 수요조사 결과



# I 교수자 수요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내재화하기를 기대하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능, 태도 등 학습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교수자의 특성과 교수 환경 등 군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학습환경을 파악하고자 교수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 2) 조사 개요

〈표 31〉 군 인권교육 교수자 면접조사\_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시기	2023년 9월 19일(화) - 12월 8일(금)
조사 참여 규모	• 교수자 43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인권교육의 의미, 목표와 내용</li> <li>• 군 인권교육에 필수적인 교육 내용</li> <li>• 군 인권교육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내용</li> <li>• 인권교육에서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li> <li>• 인권교육에서 학습자를 이해시키기 어려운 내용 등</li> </ul>
조사 방법	• 면접조사
질문 문항 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li> <li>• 담당 연구진 설문지 설계</li> <li>• 연구진 회의에서 설문지 초안 보완 및 최종질문지 완성</li> </ul>
분석 방법	• 면접조사 : 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 해제와 클리닝(Cleaning) → 질적 코딩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1) 조사시기

2023년 9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 (2) 조사대상과 참여규모

조사대상군은 교수자군 43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교수자는 군 인권교관으로 2023년 9월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진행된 군 인권교관 심화과정에 참여한 군 인권교관 13명과 각군에서 활동하는 군인권교관 30명으로 총 43명이다.

### (3) 조사 내용과 분석방법

#### ▶ 질문지 내용 구성

질문지는 교수자의 교육환경 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수차례 연구진들의 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공통적으로 대분류 항목을 마련하고, 교수자에 해당하는 설문 내용에는 차이를 두었다. 대분류 범주 항목은 교육목표(인권교육의 의미), 교육경험(긍정적인 부분, 어려움), 기타(교육주제 및 교육 방법 제안 등)으로 구분하였다.

#### ▶ 분석방법

대면인터뷰의 경우 녹음된 음성파일을 워드파일로 전사하고 데이터를 의미단위로 세트멘팅하여 코딩해 나갔다. 질적 코딩을 통해 NODE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여 더 큰 의미로 범주화하여 의미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질적내용 분석을 통해 맥락과 주제어를 도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 2 교수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군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여 군 인권교육 학습환경, 목표와 내용, 의미 있는 교육경험, 군 인권교육 개선 및 제안 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 1) 군 인권교육 목표와 내용

#### (1)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으로 군인권개념 이해, 인권의 함양, 권리의 이해, 공동체 질서유지 및 밝은 병영문화, 인권침해 구제 등이 도출되었다.

##### ① 공동체 질서유지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밝은 병영문화 형성

교수자들이 인식하는 교육목표 중 두드러지는 것은 공동체 질서 유지와 공감, 배려, 상호존중 문화가 갖추어진 밝은 병영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MZ세대의 개인화된 의식변화) **교수자1** |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

이 목표예요. 솔직히 애들이 MZ세대니까 핸드폰만 보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것도 모르죠. 서로의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만큼 누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애한테 인권침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라고 생각하면서 침해했을 때 애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걸 인권적인 차원에서 생각 못하면은 내가 침해받는다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침해받았을 때 너 왜 침해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이 부분은 그래 내가 인권 침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서로 생겨야 되는데, 저희가 인권만을 강조하니 애들은 오히려 그래 왜 내 자율권 침해해 왜 내 휴식권 보장 안 해줘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오히려 개인주의에 빠지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 (밝은 병영문화) **교수자10** | 저는 이제 교육할 때 마지막에 엔딩 부분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육군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던지는데 마지막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이 행복하라고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머물러서도 안 되고 밝은 병영 문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인권으로 밝아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 (상호존중과 배려) **교수자40** | 서로가 존중하고 협조하고 배려하여 동료 간의 우정을 돈독히 쌓아 군생활을 멋지게하는 분위기 조성

☺ (상호존중) **교관3** | 저는 상호존중이 목표예요. 그 뜻이 뭐냐면 역지사지, 상호존중 그런 같은 맥락과 같아요.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은 없지만, 계급사회에 대한 공경을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애네들도 끌려왔잖아요. 애네들도 의무를 하고 있으니 국가의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기본권을 지키고 너희들도 우리 간부에 대한 예우나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 ② 군인권 개념 이해

교수자들이 가진 교육목표로 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인권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인권지식과 군대와 인권과의 관계, 군대의 목적과 인권과의 관계, 권리 주체자와 권리 이행자로서 자신의 역할 이해, 군의 목표와 존재의 이유에 대해 인권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었다.

☺ **교수자11** | 군대 내에서 인권적 행동

☺ **교수자18** |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군의 존재 이유

☺ **교수자27** | 군인들에게 인권 관련 지식 함양

☺ **교수자30** | 권리주체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이행 대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통해 장병 개인의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려는 방안으로 구체화하는 것

☺ **교수자38** | 군대와 인권의 관계 이해

☞ **교수자42** | 군 조직 및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제한

☞ **교수자31** | 군 입장에서는 전투력 강화와 임무 완수, 시민사회 요구 수준에 맞는 상호존중 인권 보장

### ③ 인권의식 함양

교수자들이 가진 교육목표로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인 존엄, 문화 다양성, 소수자 이해, 인권의식 개선과 인권침해, 인권감수성 증진 등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을 제시하였다.

☞ **교수자2** |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와 저 사람과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른 걸 좀 인정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권교육의 핵심인 것 같아요. 성소수자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교육목표예요.

☞ **교수자42** | 시민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

☞ **교수자43** | 인권감수성 성장

### ④ 권리의 이해

교수자들이 가진 교육목표로 군인이 가진 권리에 대해 인식하도록 교육한다고 답하였다. 군인의 기본권, 군인으로서 권리 이해, 각종 생활 규칙과 절차 등 자신의 권리의 제한을 인권적으로 이해하기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

☞ **교수자7** | 일단은 이제 용사들을 주로 이제 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용사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자기한테 이제 어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일단은 저기 다른 생각하거나 이제 다른 행동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 사항을 봐도, 휴가라던지, 외부 진료 나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물어보죠.

☞ **교수자38** | 개인의 존엄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용사, 초급간부, 간부)의 위치와 그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아는 것.

### ⑤ 인권침해 시 행동요령과 구제방법

교수자들이 가진 교육목표로 인권침해 발생시 행동요령과 같은 구제방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구제 관련해서는 군대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홍보가 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 **교수자7**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듯이 교육 같은 게 많아져야 애들이 이제 내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받았을 때 인권적인 침해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어디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교

육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지고 필요하다고 생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자12** |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권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저는 전달할 때 하는 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앞에 거 기억 못해도 된다. 근데 저희가 신고하는 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호가 다 있지 않습니다. 다 명시를 해주고 그냥 어제 내가 몰랐지만, 피해자였을 수도 있고 내일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피해자가 됐지만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나의 전후를 지키는 거는 이 변호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변호를 통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해줍니다.

## (2) 교육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교육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령 관련, 인권침해 판단, 권리 이해, 군인으로서 인권의 제한, 군인권의 이해, 군 특성에 맞는 인권사례, 시민의식/공동체 의식, 군대 내 인권 문제 다루기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추가하고 싶은 교육 내용으로는 다문화, 평등권, 전쟁법, 군대 내 관행, 인권의 역사 등이 제시되었다.

### ① 어려운 용어의 법령 내용에 대한 쉬운 설명

교수자들은 인권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령을 꼽았다. 어렵기도 하고, 해석해야 하는데 쉽게 설명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교수자6** |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결국은 법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령이라는 게 너무 해석이 너무 방대해서 답변해 주기가 정말 어떻게 이거를 답변해줘야 되나 내가 괜히 또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어둡지 않게 알아가지고 이거를 잘못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데에서 또 위축이 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쉽게 좀 풀이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자7** | 법령 같은 게 제일 어려워. 아무래도 저희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지 이제 다들 교관을 이제 해와서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단순하게 교육을 하라. ppt를 거의 ppt 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죠.

### ② 군대 내 인권 문제 다루기

(인권 문제 발굴) **서면9** |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이나 불합리한 군 내 시스템을 고찰하고 문제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문제는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군대 내 다양한 주제 토의) **교수자21** | 구체적인 사례를 다 적을 수 없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거나 모종의 개입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때문에 혹은 정치질로 인해 어떤 사건에서 들어

다 봐야 할 본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개인의 인권과 그 중요성은 강조가 많이 되지만 정작 시스템과 조직에 의해 구성원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구성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전투력의 핵심 주축들이 대거 이탈되고 있습니다. 군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선 투명하게 다 드러내고 다방면의 주제로 토의하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 (군대 내 불조리한 관행) **교수자2** | 그런 게 두발은 그래도 규정이라도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딱히 이거를 그래 법적 근거나 이거 딱히 통제할 수 있는 그건 없어. 그냥 군대가 그렇게 흘러와서 그렇게 된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직 고쳐지지 않은 규정에 없는 관행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규정에 없다고, 다 허용할 수 없으니까요.

☺ (군대 내 인권현안) **교수자23** | 문제 발생을 억제, 해소를 위해 1303 헬프콜을 운영하면서 콜을 받고 문제 해소를 하는 상담관의 인권에 대해 들여다보지 못하는 실태(많은 업무와 적은 상담인력으로 강도 높은 노동력을 요구), 의식주 개선이 우선 반영되어야 할 창끝 전투력에 대해서는 예산을 앞세워 미루고 해당 제대의 실무자 또는 지휘관 관심 부족으로 치부하고 책임을 돌린다거나 비리나 낭비되는 예산은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않고 실상을 명확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 군에서 사거나 질병을 얻어 적시 적절한 조치나 보상을 요구하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 (군인 처우와 관련된 인권이슈) **교관1** | 군인들이 겪는 인권 문제 중에서 주거권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현재 제도가 너무 힘들어요. 처우 관련한 문제를 다루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이 군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인권 보장 차원에서 다루면 좋겠어요.

☺ (군인 처우와 관련된 인권이슈) **교관3** | 이제 현역은 줄어듭니다. 용사들은 줄어들고 간부들은 늘어날 겁니다. 군무원도 늘어날 거고 부사관도 당연히 늘겠지만, 장교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병사가 줄어들면 부사관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는 용사 위주가 아니라 간부가 더 많은 시대도 오겠지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인권 문제로 다루고 싶어요.

### ③ 인권침해 판단기준과 적용

교수자들은 인권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는 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교수자7** | 제일 좋은 건 당사자 들어서 서로가 양보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저에게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나마 제기한 두 명이 수증할 수 있는 게 법률 이런 법이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걸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하다 보면 다 이제 규정이라든지 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단순한 교육은 됩니다. 법이 뭐고 뭐고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해주는 거. 이게 맞는 건지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 이



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당황스러운데 그냥 단순하게 ppt를 애들한테 교육 할 때 애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끝 수고했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면 단순한데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이게 내가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면 법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인권 침해가 맞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법무실이나 이런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실한 게 아니까 답변을 못 해줘. 그럼 이제 그럴 때는 되게 당황스럽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애들은 저 교관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죠.

#### ④ 10대 기본권과 직무 수행시 요구되는 권리보장

교수자들은 인권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10대 기본권과 관련된 것과 직무수행시 요구되는 권리보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 교수자18 | 장병 10대 기본권의 최신화

☺ 교수자26 | 저는 의무병과입니다. 환자의 인권, 알권리, 진료권 보장 /그러나, 한편으로 의료법과 환자 정보 보호법과 지휘관의 부대원 권리가 충돌 \* 지휘관은 군에서 부대원의 보호자 역할 따라서, 환자의 수술 및 진료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⑤ 군인으로 인권의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

군이 가진 권리와 함께 군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인권을 제한할 때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교수자19 | 인권과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진권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 제한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기본권이라는 연결고리를 이해 함으로써 교육의 방법론을 해결했습니다.

☺ 교수자27 | 인권을 제한할 때의 인권침해 요소

#### ⑥ 군인권의 이해

교수자들은 인권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군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 군인권에서 원칙, 군대에서 인권 보장의 관계, 군대 내에서 여러 신분에서 갈등 부분 등 군인권의 이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 교수자23 | 군에 인권이 필요한 이유,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

☺ 교수자17 |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줄어들고 대체직인 군무원, 공무원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권이라고 해서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신분에서 느끼는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괴롭힘, 인격모독 등의 군 변화에 따른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 교수자38 | 전투 지휘관 인권의 적용부대 관리관 인권의 적용 지휘관 · 참모의 인권 존중과 보호와 실현 방법

☞ **교수자36** | 저 스스로 징병제에 대한 부분을 명징하게 정리하지 못하니 위축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 ⑦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상생활 속 사례

교수자들은 인권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현 교안에 제시하고 있는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교수자7** | 이론과 개념들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잘 안보게 되죠. 그리고 사례가 있긴 있죠. 사례가 있고 있는데 그 사례가 너무 좀 극단적인 소수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보통 이제 용사들이 관심 있는 게 내가 이제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나는 뭔가 내 기분은 인권 침해를 당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들어보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저 또한 또 헛갈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저도 애매하죠. 답변하기도 그렇고. 책자에서 그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극단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잘 안맞죠.

☞ **교수자16** |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발생한) 다양한 사고사례, 부조리 등에 대한 개선 방법 / 줄일 수 있는 방법

### ⑧ 시민의식/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의 가치 영역

교수자들은 인권교육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인권의 가치 영역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예로는 시민의식, 차별과 혐오, 민주적 태도,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평등, 존엄과 차별 등이 제시되었다.

☞ **교수자26** | 사회적 이슈와 대응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예, 집단 따돌림,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등)

☞ **교수자30** | 혐오와 차별입니다.

☞ **교수자35** | 의사결정과 적법절차

☞ **교수자41** | 인권감수성 및 인권옹호의 목적

☞ **교수자43** | 직위는 있으나 평등한 존재

☞ **교수자34** | 공동체 속에서의 역할

☞ **교수자30** | 존엄과 차별입니다.

### ⑨ 추가 요구1\_차별과 전시 상황에서 인권적 접근 등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의 이해에 속하는 기본적인 인간존엄, 평등, 차별과 같은 인권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다수 제시되었다. 특히, 차별 관련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전시 상황에서 인권 보장, 전쟁법과 국제적 인도주의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 (평등권 관련) **교수자2** |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평등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항상 교육 마무리에 이걸 보여주면서 평등 교육을 하거든요. (공정과 공평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 애들이 평등을 다 물어보면 100이면 100 잘못 알고 있어요. 기계적인 평등만 생각하고요.

☺ (차별) **교수자3** | 차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저희조 발표할때는 차별과 평등을 엮어서 설명했는데, 우리 교육 내용에는 내용이 부족해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군대에서 그 단어 자체가 좀 거슬립니다. 계급사회와 상반되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지휘체제안에서 움직이는 평등, 차별을 다루려면 지휘관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거죠. 간부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해 이럴 때 저희가 피드백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그러면 너도 간부 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인권에서 딱 지침처럼 나오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기 어려울 거죠.

☺ (전쟁법) **교수자26** | 전쟁법(고군반 등 대위이상 지휘참모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 전시 부대원 인권 보장(예, 영화에서 전시 즉결처분이라해서 지휘관이 부대원을 사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이고. 있을 수 없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의료시설을 점령군이 사용할 것인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⑩ 추가 요구2\_다문화, 변화가 필요한 군관행, 해외사례 등

이 밖에도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으로 다문화, 변화가 필요한 군 관행에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참고가 될 만한 해외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다문화) **교수자3** | 다문화에 대한 인권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인권소식지에서는 다룬 내용이 있었거든요.

☺ (군대에서 변화가 필요한 관행) **교수자3** | 예를 들면 군대에서 다, 나, 까로 말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 말하도록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거죠. 군문화 속에 있는 것들 한꺼번에 바꾸기란 어려운 거죠.

☺ **교수자26** |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권 보장이 가장 우수한 나라이면서 노숙자가 많고, 총기사고 등 악성사고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교육생들과 토의시 제기)

## 2) 군 인권교육에서 의미 있었던 교육 경험

군 인권교육에서 의미 있었던 교육 경험으로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인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원칙을 갖게 되었던 점, 병사들과 긍정적 관계 형성, 군의 관행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 ①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권적 판단이 가능할 때

교수자들은 자신의 교육 경험에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는데, 장병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 교관 스스로 인권적인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갖게 되었을 때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교수자2** | 왜냐하면 교육을 했을 때 그건 딱 소수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수는 절대 그럴 때는 되지는 않고 소수일 때 이번에 어제 교육을 했을 때 인원도 적고 하니까 이제 또 예시도 막 들어가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다 쳐다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인마 이것이 인권이야 이러면서 딱 해서 딱 보여주고 이거 보고 딱 쉬어, 이랬을 때 딱 뒤돌아 나올 때 나 혼자만의 뿌듯함 하지만 개네들이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모르죠.

**교수자4** | 저는 다른 분들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보수적이게 적용하거든요. 기본권을 지켰냐 안지켰냐고 판단합니다. 원칙을 지킨 상태에서 인권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인권을 알기 전에는 가장 무서웠던 것이 인권이었고, 두렵웠던거고 제일 멀리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인권교육을 받다보니까 제 주변 분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핸드폰이나 마음의 편지를 보면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자기에 대한 표현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인권인 것 같은데, 우리는 군인이다보니까 규칙과 규율이 있으니 이걸 적용해서 자를건 자르고 이것은 규칙이고 기본권이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여기까지다 혹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 ②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행동을 선택할 때

교수자들은 자신의 교육 경험에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는데,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상대적 평등을 강조하다보면, 합리적인 판단에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권원칙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교수자4** | 그냥 소소한 건데요. 환자가 발생해서 훈련에서 열외 되었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목발도 짚잖아요. 어느 순간 목발을 가까이 안 지는 걸 애들한테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재, 계단 내려갈 때 뛰어가는 것 봤다고요. 이제 근무표에 넣어야 하지 않냐고 하기도 하구요. 군의관 처방은 휴식이고, 아직 근무설때가 아니라서 제가 근무표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뭘 것 맞아. 뛰었는데, 너무 급하게 누가 불러서 자기 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간거고 다 나온건 아니었던거죠. 그래서 행보관님이 근무를 세울 줄 알았는데,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믿어줘서. 그래도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진 것인가는 군의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거죠.

### ③ 장병들과 인권교관으로 긍정적 관계 형성이 되었을 때

교수자들은 자신의 교육 경험에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는데, 장병들과 인권교육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장병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병사들과 관계 형성) **교수자3** | 이게 맞는 사례인지, 부딪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권 교관일을 하다 보니까 행보관이나 중대한테 말하지 못할 걸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애들과 관계 형성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난 인상을 제가 막 욕을 해도 애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고 애들도 제 앞에서 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약간 부딪힘 느껴요. 저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거든요.

☺ (병사를 도울 수 있는 관계) **교수자7** | 근데 솔직히 이렇게 교육 같은 게 이제 과거에 비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내 주변 내 위에 있는 간부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폐쇄적이랑 핸드폰도 못 쓰고 전화도 다 이게 도청이 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막 이런 교육도 알게 되고 이제 요즘에는 애들이 핸드폰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어떠한 부당한 그거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없으면 그런 교육을 좀 못 받은 애들은 이런 것들(자신의 권리)을 모르게 된다는 거지

### ④ 군대 내 관행을 개선할 때

의미 있었던 교육 경험으로 제시된 마지막 유형은 실제로 인권교육으로 인해 군대 내 관행이 개선될 때였다.

☺ **교수자3** | 저희 부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개 덕에 모두가 앉아서 근무를 했어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요.

## 3) 군 인권교육 학습환경

### (1) 군 인권교육 실행

군 인권교육 실행에서 ❶ 개인적 차원에서는 군 인권교관 자신감의 부족, 인권교육을 위해 학습해야 할 방대한 내용, 직접 교안을 제작해야 하는 문제, 교육 내용을 재구성의 어려움, 교안 숙지의 어려움, 학습자 분석의 어려움, 동기부여 되지 않은 학습자, 흥미, 재미가 떨어지는 교육 주제, 흥미 재미가 없는 교육방식 등 어려움을 꼽았다.

❷ 군대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는 전문성을 향상하기 힘든 구조\_전출, 군 인권교관 임의 배정,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인권교관 업무, 내부강사와 외부 특강자의 역할 구분이 부족,

형식적 교육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③ 군 인권교육 교재/교안 등이 갖는 어려움으로 표준교안의 현장성 부족, 획일적인 교안 내용, 적절한 자료의 부족, 정해진 교안이 없는 문제, 교육 내용이 방대한 문제, 온라인 교육 형식적 한계, 내용적으로 빈약한 영상자료 등이 제시되었다.

이 부분은 인권교육 콘텐츠 분석보다는 교육 운영의 내용이긴 하나 교수자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여 담았다.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진술 요지만 간략히 제시하였다.

### ① 개인적 차원에서 어려움

#### ○ 군 인권교관 자격에 대한 자신감 부족

- 군 인권교관으로서 자신이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옛날에 인권침해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싶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인권교육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걱정하고 있었다.

#### ○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아 부담감

-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가진다. 법적인 것, 개념적인 이해 부분 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강의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학습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간단히 교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다. 또한 교육 내용이 많아서 다 외워서 교육을 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 ○ 교안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

- 지금 제공되는 인권교육 교재는 도서형으로 되어 있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안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전문교육자와 달리 교관의 역량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 ○ MZ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 학습자 파악의 어려움

- 교육할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요즘 MZ세대에게 인권을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산만하기도 하고, 자신이 궁금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학습 태도를 갖고 있어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 흥미, 재미를 못 느끼고 동기부여 되지 않는 학습자

- 인권을 받아들이는 데 학습자마다 편차가 있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학습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흥미를 가질 수 없는 교육 내용은 물론 들었던 내용의 반복이 이루어지거나 자신들과 상관없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 강의하는 경우가 있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참여형 교육 운영 역시, 흥미와 재미를 느끼지 못해 학습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 ○ 인권교육 평가/피드백에 대한 어려움

- 인권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피드백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② 군대의 사회구조적 차원의 어려움

### ○ 군 인권교관 전문성 향상을 힘들게 하는 전출/겸직/강제 배정

- 군 인권교관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해야 하지만 군대 특성상 보직이 변경이 많고, 타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교관들이 대부분이며, 전출하면 군 인권교관으로 연속성을 갖고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 업무 특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 인권교관이 되고 싶게 하는 인센티브나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에는 다수의 교관들이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강제로 군 인권교관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 군 인권교관과 외부 특강자의 역할이 구분되지 못함

- 군 인권교관의 강의와 외부 특강자의 강의를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강의를 하던 특강자들에게 맞춰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군 인권교관이 담당해야 할 분야가 정리되면 외부강사 초빙할 때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 ○ 형식적 교육 운영

- 군 인권교육 자체가 주입식이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으로 형식적 교육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교관업무를 시간 때우기 교육이나, 의미 없이 진행하는 전달식 교육을 지양하는 것이 좋고, 구체적이 커리큘럼을 제시해서 체계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③ 군 인권교육 교재/교안 등이 갖는 어려움

### ○ 표준교안의 현장성 부족

- 교육할 때 2시간을 진행하라고 내려오지만 표준교안으로 진행하면 교육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 PPT 앞부분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교육환경이 부대마다 다르고, 활용가능한 시간도 달라, 표준교안을 활용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표준교안을 쓰는 일이 별로 없고, 1-2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표준교안이 현실적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이다.

### ○ 정해진 교안이 없는 문제

-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새롭게 진행하기는 어렵다. 훈련소 교관을 6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

다른 교육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인권교육은 해마다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그렇지만 정해진 교안이 없고, 교관이 알아서 선별하다보니 교육의 체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 **획일적인 교안 내용**

- 인권교육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어 기본적인 교육은 가능하다. 그러나 표준교안 내용이 똑같다보니, 신병 때 받았던 것이라 완전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상병이 되어서도 제대를 몇일 앞둔 병장들도 표준교안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이 인권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으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의견이었다.

○ **우리 부대 교육에 적합한 자료는 없음**

- 표준교안을 쓰지 않고, 외부의 교육자료를 사용하려고 해도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의 콘텐츠가 우리 부대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쓸 만한 영상 자료는 길이가 길고, 해상도가 낮아 쓸 수가 없고, 통신 지원이 안 되어서 활용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고, 인권교육 자료로 받아보면, 군법 관련한 내용만 있어 사실상 적합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군법자료에 섞여서 진행되는 수준으로 제공된다. 우리 부대 교육에 적합한 인권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빈약하거나 실효가 없음**

- 인권교육용으로 제시되는 온라인 교육 역시 틀어놓고 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내용적으로 빈약해서 교육자료로 쓰기도 어렵다. 흥미 위주로 만들어진 예능형 프로그램은 교육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2) 군 인권교육 운영**

군 인권교육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인권강사, 예산,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등 인권교육의 정보공유 부족과 교육대상과 인원, 시간, 횟수, 주기 등을 예상하기 어려움, 교육인프라 부족(프로젝트/프린트/인터넷망/강의장) 등이 제시되었음.

○ **인권강사, 예산 등 정보공유 부족**

- 인권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니 강사풀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관련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강사 정보도 인맥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 교육 내용 적합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 **교육대상과 인원, 횟수, 주기 등을 예상하기 어려움**

- 교육 운영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교육 대상의 구분이 없고, 대상을 미리 특정할 수 없는 등 교육이력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매번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



이 빠지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 교육 대상 인원, 횟수, 주기 등의 예상이 어려워 학습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교육 운영은 계급별, 직급별로, 특히 초급 간부에게 필요**

- 군에서는 다양한 계급이 있고, 직급별로도 처우가 달라서 인권교육을 세분화해서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초급간부의 경우에는 군대 내에서도 처우 개선이 절실하고, 문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진술하였다.

○ **교육인프라 부족\_프로젝트/프린트/인터넷망/강의장 등 개선 요구**

- 군에서 프로젝트, 프린트, 인터넷망, 강의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대가 너무 많다.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의식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교육 공간 부족과 개인용 수업자료가 없는 것은 교육의 효율을 떨어트린다고 진술하였다.

**(3) 군 인권교관 양성/운영**

군 인권교관의 양성에 있어 이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양성과정 학습량에 부담감이 있고, 양성과정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요구, 군 인권교관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등 항목이 도출되었다.

○ **군 인권교관 양성 시 학습이력 관리가 안됨**

- 기본과정을 듣고, 심화과정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본도 안들었는데, 심화과정을 듣고, PPT 만드는 것도 처음인데, 시연도 해야 해서 힘들었다. 또 10년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기본과정을 다시 듣고 싶었지만, 이미 이수해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관과정의 학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 학습량 부담감**

- 인권교관 양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량이 너무 많다고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기본적인 내용 숙지도 어려운데, 인문사회학 관련 내용까지 등장해서 소화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또한 양성과정 중에 시험평가까지 진행된다고 해서 부담감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관 양성과정 맞춤형, 단계별 운영 필요**

- 군 인권교관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이루려면 인권 교관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관역량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교관들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 **인권교관 양성과정 방식의 변화 요구**

- 인권 교관 양성과정을 쉬어가는 시간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주입식이나 강의식 교육훈련 방식에

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군 인권교관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인권 교관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이수자에게 인권 교관직 유지를 보장하고, 성과인증이나 경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권 교관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보직률 인상, 포상제도 등 적극적으로 인권 교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실질적으로 인권 교관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하였다.

**(4) 군 문화적 특성**

- 지휘관에 따라 규정이 다르고 교육 내용에 영향을 받는 점, 병사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 고충, 군문화와 신분의 차이에 따른 문제, 병사들의 학습자로서 갖는 특성 등이 도출되었다.

○ **지휘관이 규정과 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침**

- 지휘관이 교육 내용에 간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은 빠자. 적당히 알려 줘.’ 정해진 규정이 없다 보니 교관들도 헛갈리고 어려운 내용은 교육 내용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특히,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규정 등과 기본권 보장을 설명할 때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다.

○ **부대마다 규정이 다른 문제**

- 휴대전화 사용이나 생활 규칙이 부대마다 다른데, 여러 부대가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사실상 이러한 생활 규정이 군인의 기본권을 설명할 때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게 한다는 의견이었다.

○ **병사들의 제기하는 민원 고충**

- 병사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꺼리는 간부가 많고 최근 악질적인 민원이 많아서 간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최대한 문제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요구한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대다수는 착하고 성실하지만 몇몇의 병사들의 이기적인 권리 주장에 지치는 것이 현실이며, 인권교육에서 군인의 권리보장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민원제기로 해결하다 보니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도 소극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이런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상관과 병사들 사이에 중견간부가 제일 심하고, 명령과 민원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는다고 진술하였다.

○ **복종하는 군문화와 신분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 직업 군인인 지휘관과 선택이 아닌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온 장병 사이에는 군대를 바라보는 인식도 다르고,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다. 휴대폰 사용 같은 경우도, 장교들은 일과 시간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장병들은 규정이 더 엄격한 편이다. 장병들의 경우에 이런 신분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군대의 복종문화가 있고, 간부에게 휴가권, 업무지시권이 있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지시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은 직업군인 세계의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하다는 의견이었다.

#### ○ 사회과 군대의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

- 장병들은 사회와 군대에서 권리가 다르다고 느끼고, 군인으로 제한되는 권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 ○ 인권의 원칙과 군 관행이 상충할 때, 이의제기에 답하기 어려움

- 인권의 원칙과 군 관행이 상충할 때나,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병사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간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나 잘못된 지휘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 인권의 원칙과 현실적용 사이의 시간차 문제

- 이미 언론보도로 인해 개선된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군대에 모든 부대가 일순간에 바뀌지는 않는다. 개선이 느리고, 권고 이행의 경우 제도 개선이나 운영 준비 등으로 시간 차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해를 구해야만 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병사들이 있으면 인권교육할 때 어려움이 있다.

#### ○ 교수자가 생각할 때 인권교육에 부정적인 학습자

- 교수자가 생각하는 학습자의 특성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자신의 권익만 생각하는 병사들,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는 병사들, 인권을 알게 되면서 민원으로 자기 권리라 주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 인권과 권익을 구별하지 못해 문제를 만들어내는 신입병들, 악성 민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긍정적인 특성으로는 요즘 군대에 오는 신입들은 대학생이 많기도 하고 학습자 수준이 높아서 인권에 대해 잘 아는 경우도 많아서 어설픈 교육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 4) 군 인권교육 개선 및 제안

#### (1) 교육 방향

- 군 인권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방향으로는 신분별, 직급별 콘텐츠 차별화, 간부/지휘관 중심의 인권교육으로 변화, 교육 내용 확대보다는 핵심 내용 전달과 내재화하는 방법, 의무교육화 필요, 유사교육과 통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 ○ 신분별, 직급별 콘텐츠 차별화

군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입장에 따른 교육 내용의 차별화, 지휘관/간부용 교육을 별도로 진행, 신분별 교육 내용의 차별화 등을 제안하였다.

☺ (입장에 따른 내용 차별화) **교수자8** |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 군 인권 거기다 상담을 넣었는데 답변이 안 와요.

☺ (지휘관용 내용 필요) **교수자18** | 콘텐츠들이 나오는 병사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쓰기에 조금 주기가 좀 애매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그 사례에 맞는 그건데 그런 영상들이 좀 병사들 생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괴리감이 너무 커요.

☺ (신분별 교육 내용 차별화) **교수자17** | 군내 조직개편에 따른 신분별(현역, 군무원, 공무원 등) 교육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간부/지휘관 중심의 인권교육 활성화

군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병사들은 잠시 군대에 머물렀다 가지만 직업 군인인 간부들에 의해서 군대에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인권교육을 장병들보다는 간부/지휘관 교육에 집중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초급 간부나 중견간부들의 의견도 같았다.

☺ (간부교육에 집중 필요) **교수자3** | 간부들이 왜 필요하냐면, 병사들은 1년 있으면 갑니다. 전역하는 애들이예요. 근데 간부는 기본 10년입니다. 최소 4년이고 그러면 이 조직 분위기 자체가 병사보다는 그 분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융합이 돼서 개인 그중에서 조직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 사람한테 인권을 주는 것처럼 이 조직을 하려면 일단 간부들이 먼저 이걸 알고 인식되고 그러면 이게 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애들 용사들 교육하는 거는 그리고 용사들이 다 이제 우리 나이도 많고 계급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면 아예 앞에서는 다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 (지휘관 교육 필요) **교수자1** | 이런 인권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사실, 저희는 인권에 대해 굉장히 무뎠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용사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어불성설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막 맞으면서 군생활 배우고, 욱먹으면서 군생활 배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야!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말하면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교육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걸 바꾸려면 저희도 바뀌어야 하지만 지휘관이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니 지휘관 교육을 많이 해야 합니다.

### ○ 현재 교육 내용으로 충분함

교육 내용은 현재 개발된 교육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 주제도 현재 교안이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인권교육의 성패는 상부 기관의 교육의지나, 지휘관 재량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 **교수자4** | 현재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알짜

배기만 넣어놓은 거여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야 한다까지 수준이 된 것도 아니고요.

☞ **교수자11** | 주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제는 너무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양이 인원들이 입대해서 병장까지 1년 6개월 기간 동안 그 주제를 전부 다 써도 주제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분야를 이렇게 인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습득될 수 있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저희가 우선인 거지 주제에 관한 부분은 사실 이미 많이 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 **교수자36** |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함. 이 내용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강사의 역량과 교육에 좀 더 많은 시간, 환경, 조건을 투여할 국방부, 각 부대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음.

### ○ 교육 내용보다 내재화 방안 필요

교육 내용을 개선하는 것보다 교육 방법에 대한 것과 실습을 통해 내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교수자8** | 법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인권 교육은 무대의 기본권을 지키고 또 몇조 헌법 몇 조에 있고 다 알거든요. 사실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건 머리는 다 아는데 쉽게 이렇게 공감이가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죠. 사실 그래서 좀 교육 인권 교육을 할 때 약간 인성교육도 넣고, 아까 말한 대로 아이스브레이킹도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서 동영상도 많이 틀고, 그걸 좀 머리를 잘 써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걸 아까 지금 교육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교육 체계들이 이걸 잘 써먹으면 되겠다 해서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 녹음해서 이걸 써먹으려고요.

☞ **교수자38** | 다양한 직책 속에서 인권 존중·보호·실현하기 실습 ex, 전투 지휘관 인권책무 부대 관리관 인권책무 등

### ○ 의무교육화할 필요

교수자들은 공통적으로 성인지 교육이나 자살예방 교육처럼 시수를 확정하여 의무교육으로 운영하면 실효를 갖출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 **교관3** |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 필수 과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 교육받으면 사인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아예 인사에 넣어버리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럼 절대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 **교수자3\_교수자4\_교수자1** | 아니 그래도 필수교육은 성인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홀을 빌려서 사단 전체 간부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달라요. 장소부터요. 간부들 해야 되니까 연안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거죠.

☞ **교수자32** | 실질적 의무교육(폭력예방 교육처럼)

☞ **교수자35** | 지휘관의 관심과 인권교육 제도화

### ○ 유사교육의 통합 필요

성인지 교육, 정신전력 교육, 인성교육과 통합하여 운영하면 장병들 입장에서 반복되는 의무교육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교관3** | 성인지가 2시간인데, 1시간으로 줄이고 거기서 인권을 1시간으로 해서 딱 2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간부들이 교육받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업무도 바쁘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거 집합 이거 싫어해요. 솔직히 뭐 일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가야 돼요. 근데 난 이걸 안 하면 또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부대 특성상 저희도 그래요. 저는 정비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꼭 오늘 출고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내일 또 와야 되니까요. 어차피 성인지랑 인권교육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과제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좀 합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 **교수자15** | 매주 정신전력 교육 시간 인권 콘텐츠 시청 시간 부여

☺ **교수자16** | 집중 인성교육, 집중 정신교육 등과 같이 집중 교육 주를 활용해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2) 교육 형식

군 인권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형식에 대한 제안으로는 짧은 형식의 교육 내용 필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 📍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프로그램 필요

교육형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제안은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였다.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활동형으로 진행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도 높았다고 진술했다.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교수자 역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강의식을 벗어나 참여형 필요) **교수자6** | 부대에서 저희도 이런저런 교육을 연 2회~3회씩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좀 활기차고 좀 쾌활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항상 보면 대부분 ppt 넘기면서 진행되는데요. 노래도 좀 틀어주시고, 시작할 때 노래도 틀어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노래하면서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강의를 하시니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좀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현실을 고려한 참여형 프로그램) **교수자10** | 저희는 여기 와 전용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데 야전 부대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을 모아 하는 형태여서 그 참여형이라는 게 소그룹화되지 않으면 교관 한 사람이 그 인원을 통제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권 교육을 해라라고가 아니고, 용사들도 간부들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30명씩 기수가 편성이 돼서 이렇게 교육이 진행이 된다가나 그래야지 양질의 교육이 되지. 군대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떠들고 하는 거는 임팩트 있는 한마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교수자34** | 참여형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험

### ○ 소규모 대상으로 운영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교육인원이 소규모로 진행되어 상호작용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교수자32** | 교육인원 소수(50명이 넘지 않도록)

☞ **교수자42** | 40명이하의 구성

☞ **교수자39** | 소규모 그룹교육 강화

### ○ 짧은 형식의 교육 내용 필요

다수의 교수자들이 교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짧은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시간 단위보다 15분 30분 단위로 콘텐츠를 세분화 해달라는 의견이었다.

☞ **교수자11** | 대규모로 하는 게 어차피 강의의 질도 떨어지고 하니까 하기 싫어서 그냥 10분씩만 할 애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 근데 성과는 남길 수 있으니까 몇 회 교육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애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도 본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나머지 외의 정보들은 걸러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분이나 10분정도 이렇게 해서 끊고 끊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괜찮은데 싶으면 그냥 그날 써먹는 겁니다.

☞ (짧은 단계별 콘텐츠 제공) **교수자10** | 간부들은 1시간짜리 2시간짜리를 소화할 수 있는데 용사들은 그 피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인 어떤 열의와 동기부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강의는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보여주고 그 선상에서 마무리를 하지 시간은 1시간이 부여가 돼도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로 이렇게 좀 단계별 목표를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분기 때는 인권 교육 인권교육을 해라 이인데 1분기 때는 어떤 인권의 기본이면 2단계 3단계 4단계 1년 농사를 지어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면 교관들도 했던 거를 또 울귀 먹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활동형 프로그램이 필요) **교관8** | 그래도 이렇게 막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생각의 틀을 깨자 이런 건데 좀 와서 즐겨라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게 저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약간 그런 거를 좀 교묘하게 잘 섞어서 얘기를 해야겠죠.

☞ (활동, 참여형 프로그램 필요) **교관12** | 육군에는 인성주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 민간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심리 테스트 같은 거 그림 그려보면서도 하고 아니면 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어찌 됐든 인성 교육 주관은 되게 참여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권을 참여형으로 하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참여형 학습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짧은 콘텐츠 활용) **교관11** | 저도 그쪽으로 사례 위주로 되어있는 인권 소식지 같은 걸 활용해요.

이제 각 부대에 게시판에도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도 항상 올라오는데 그걸 중심으로 하죠.

### ○ 지속적인 영상 콘텐츠 및 자료 개발 필요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자료는 CD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영상 콘텐츠를 주제별로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 **교수자6** | 저는 제가 받았던 입장에서 뭐가 재미있었지 뭐가 안 좋았지 이거를 이제 기준을 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료를 찾고 이런 게 좀 국방부가 아예 협의가 돼서 M무크나 이런 데 계속 최신화되면 업로드만 계속 좀 해주시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수자5** | cd로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에서 18개월입니다. 18개월만 있고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와도 교육을 받고 왔다가 좀 있으면 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교육 다시 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 1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들 쉽게 말해 양성 교육을 받고 와도 좀 있으면 저는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대로 인권 교관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대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른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런거죠.

☞ **교수자7** | 그래서 아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이번에는 휴가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휴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또 노무사들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도 있어가지고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번 1분기 교육은 휴가 관련된 거 2분기는 의료권 관리 3분기는 종교 관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트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교수자18** | 인권 관련 영화소개 등 쉽고 흥미 있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영화 리뷰 소개 등 방송 프로그램처럼) 현재 몇몇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으나 사실상 찾아볼 정도의 수준이 아니며, 용사들의 자발적 시청을 유도할 흥미로운 분야가 아님.

### (3) 교육 지원

군 인권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지원 방안으로는 인권 교관 교안 중 검증된 우수한 콘텐츠 공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통합된 콘텐츠 플랫폼과 개발된 콘텐츠의 홍보가 필요하고 나아가 교수법 지도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 인권교관 교안/콘텐츠 공유 필요

교수자들이 제안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다른 인권교관들이 사용하는 교안, 콘텐츠, PPT를 공유하고, 각군에서 활용하는 소식지 같은 형태의 정기간행물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교수자2** | 인권교육 콘텐츠라는 것이 있어요. 육본에서 하는 것인데 FT라는 분들도 계시구요. 콘테스트 해가지고 1등, 2등 3등을 뽑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분이 해주는 게 좋았던 이유가 그분이 현역이다 보니 본인이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겪었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면서 이제 교육하면서



이제 군에 대한 이제 특성을 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딱 알맞게 교육을 하시니까 저희 눈에는 딱 맞았고, 저렇게 교육을 하는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대에서 교육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줬으면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순회 교육이나 초빙 교육 방식으로요.

**교수자3** | 그리고 그분들이 자료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니까 저희가 솔직히 ppt 만드는 게 교안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솔직히 설명하는 거는 아까 말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교안 같은 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건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얻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짰구나.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교육을 짰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눈에 볼 수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안심도 되고, 저렇게 교육을 하는 거로구나 싶기도 하고 이제 흐름을 이해하니까요.

**교수자12** | 참고가 많이 되었던 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센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제가 따오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하신 분들 거를 위해 제가 제 걸로 만들어서 하는 게 수월해요. 보통 여기 있는 ppt들이 있고, 표준교안이 있잖아요. ppt랑 스크립터 사이가 이제 그 선 안에서 좀 만들어고 있습니다.

**교수자2** | 제가 일일이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러 이런 게 있으니까 인권교관님들은 이런 걸 참고하셔서라. 이런 거를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공지사항으로 띄워주는 거죠.

#### 📍 검증된 콘텐츠 필요

학습 콘텐츠와 자료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고, 핵심요약된 표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수자17** |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지만, 인터넷, 유튜브 내용의 적절성 등을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에 의한 자료검증 및 알기쉬운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교수자1** | 군인권 교안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 우리가 될 교육할지에 생각해보고 빼내서 교육하는 게 다고, 그리고 내부 망에 들어가면 이런 교육받으신 분들 자기 강의안들 다 올려놔서 뽑아서 참고하고 그래요. 물론 중점이 다 다르니까 혼돈이 오죠. 너무 많은 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딱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게 딱 이것만 보면 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저희야 그래 그것만 교육하면 1년이고 10년이고 물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 📍 통합된 콘텐츠 플랫폼과 홍보 필요

인권교육 자료가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인권교육에 특화된 공식 자료실이 필요하며, 개발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교수자7** | 군의 인권센터들이 있어서 그 종합된 인권센터에도 자료실이 있고 그러니까 자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다운도 너무 힘들고 솔직히 자료들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국방부에서도 cd를 인권 담당관에서 보내주고요. 저희는 국직이니까 바로 이제 다이렉트 오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그쪽은 그럴 수도 있어요. CD가 저희한테 이만큼 와요. 이거를 이제 예하부대에 뿌려주라고 그러는데 뿌려주죠. 근데 저도 예전에 사병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상급 부대에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나는데 그게 단계 단계 거치다 보면 밑에는 거의 안 가요.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 그래도 gop 생활할 때도 용사로 있을 때에도 거의 뭐 그런 보급품 같은 건 없었거든요. 상급 부대에서 보면 왜 보고 다 나눠주는데 너희들은 없어 이런 식인거죠.

**교수자17** | 콘텐츠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자24** | 요즘 공문으로도 소식지가 내려오는데 각 군단 및 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주 시면 더욱 많은 인원이 활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 교수법 교육 필요

교수자들의 인권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권교육 방법과 관련된 교관교육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수자6** | 이렇게 몸짓이나 제 신 눈빛 하는 거 이런 것들 강사님들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달력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화면보다는 강사님 몸짓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나 이렇게 톤이나 높낮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떨 때 내가 잘 더 경청이 잘 되는가.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 3 시사점

### 1) 군 인권교육 환경적 측면

#### 교육목표와 내용 등 기본적인 교육범위 제시 필요

- 군 인권교육 실행에서 군 인권교관으로서 갖는 개인적인 차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활용하는 교육목표와 내용을 제시하여 기본적인 교육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군 인권교육에 특화된 학습자용 교안/교재의 형태로 제공한다면, 교관으로서 참고하기 유용할 것이고,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부 인권강사의 강의 주제의 체계가 갖추어지면, 외부 강사와 차별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군 인권교관 배정과 교관 활동 지원의 개선 필요**

- 군 인권교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군 인권교관 배정문제에 좀 더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군 인권교관의 겸직, 강제 배정, 한 사람에게 과중한 업무로 주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군 인권교관의 학습이력 관리와 교육 기회를 확보, 교관활동 지원(보직률 인상, 포상 등) 등의 군 인권교관 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성과정 운영 시에도 기본과 심화과정을 차별을 두고, 단계적으로 군 인권교관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 **군 인권교육을 자치활동과 연계 필요**

- 인권교육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환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인권교육을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대안적 방법을 제안하는 자치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기된 의견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고, 반영해 나간다면 실효성을 갖출수 있을 것이다.

○ **인권교육 인프라 확보 필요**

-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교육대상과 인권, 시간, 횟수 주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각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 인프라(강사 정보, 활용 콘텐츠 등)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기자재, 인터넷망을 비롯하여 교재, 도서 지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용 교재개발과 보급은 시급한 실정이다.

○ **지휘관의 재량 따른 교육운영 개선**

- 군 인권교육의 특성상 지휘관에 따라 교육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휘관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하겠지만, 군에서 교육해야 할 필수 주제와 내용을 확정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군 인권교육 연간 중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이 있다.

○ **군대 내 악질적인 민원문제, 갈등문제 대책 필요**

- 군대 내에서 악질적인 민원문제로 인한 간부 및 장병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점은 인권교육 차원을 넘어 군문화 개선을 위해 별도의 방안이 요구된다. 군 인권교관이 가지는 어려움 중에는 인권의 원칙과 군관행이 상충할 때 느끼는 무력감이 크다. 하지만 사실상 어떤 현상이던,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인권교육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되, 변화의 씨앗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군관행을 바라볼 때도 개인차원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군관행이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 **학습자 이해를 위한 군 인권교관 콘텐츠 필요**

- 군 인권교관을 위해 장병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대의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환경에서 온 장병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장병들을 자기권리주장만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기적인 행동만 일삼는 등 오해와 잘못된 일반화로 인해 배타적인 관계가 되기 쉽다. 달라진 세대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과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교육을 교관과정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 군 인권교육 내용적 측면

### ○ 군인의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목표 수립

- 군 인권교관이 가진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인권의식 함양하기 위한 교육목표, 군인권과 관련된 목표로 권리와 군인으로서 전문성 등에 대한 교육, 공동체 질서유지와 밝은 병영문화와 인권침해시 구제방법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의 목표로 구분된다. 군 인권교육 목표는 군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 ○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적 관점 확보

- 군 인권교육 내용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은 이론적인 영역에서는 인권 개념, 권리 이해, 관련 법령 영역과 군인으로서 갖는 인권적 지위와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침해 판단과 군대 내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군 특성에 맞는 인권 사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인권적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실제화할 수 있는 인권적 관점을 확보하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 ○ 인권적 가치에 대한 기초 이해와 인권교육의 목적과 이유 선명히 제시

- 인권교육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인권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인권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본권, 존엄성, 평등, 차별에 관한 이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시상황에서 인권 보호, 국제적 사례 등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는 교육목표를 인권침해 방지에 두기보다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인권적 가치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 장병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인권역량 제시

- 군 인권교관의 의미 있었던 교육경험에서도 병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병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할 때, 군의 관행 개선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때와 같이 교육효과를 체감하고 교육의 실효가 있었던 경우와 자신이 스스로 인권적 판단기준을 갖추었다고 생각될 때 등 구체적인 인권역량이 확보되었을 때이다.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병사에게 필요한 구체적

인권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교육을 통해 변화된 선사례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긍정적인 군대문화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 3)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선 측면

#### ○ 신분별, 직급별 콘텐츠 차별화

- 군 인권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방향으로는 신분별, 직급별 콘텐츠 차별화, 간부/지휘관 중심의 인권교육으로 변화, 교육 내용 확대보다는 핵심 내용 전달과 내재화하는 방법, 의무교육화 필요, 유사교육과 통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시급한 것은 장병과 간부/지휘관의 교육 내용을 차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인권교관으로서 가르쳐야 할 내용적 파악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실습이나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 현장 맞춤형 자료로 짧은 형식, 참여형 콘텐츠 제안

- 군 인권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형식에 대한 제안으로는 짧은 형식의 교육 내용 필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소규모 참여형 인권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 교육활용 시간을 고려하여 컴팩트한 교육 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콘텐츠 역시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적정하게 구조화하여야 한다.

#### ○ 군 인권교육을 위한 콘텐츠 지원 시스템 마련

- 군 인권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지원 방안으로는 인권교관 교안과 콘텐츠 공유할 필요, 검증된 콘텐츠가 필요하며, 통합된 콘텐츠 플랫폼 필요, 개발된 콘텐츠의 홍보, 교수법 교육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다른 교육에 비해 군 인권교관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고, 범위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관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전담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군 인권교관이 되는 것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의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루기 어려운 미션이기도 하다. 군 인권교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목표와 내용뿐 아니라 교육 방법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II 학습자 수요조사 결과

### 1 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 조사의 목적

병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군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 있다.

#### 2) 설문조사 개요

〈표 32〉 설문조사\_조사 개요

분류	내용
조사 기간	• 2023년 9월 20일 ~ 12월 11일
조사대상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사
조사규모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 인원: 502명(육군 219명, 해군 81명, 공군 91명, 해병대 111명)</li> <li>• 기본 층위 - 신분(병사)</li> <li>• 추가 층위 - 없음</li> </ul> <p>*** 군 조직의 특성상 보안 등의 상황으로 군별 모집단 규모에 기반한 유효한 표집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조사 규모도 500명 안팎으로 평균값을 도출하거나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을 할 수 없었음. 따라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 문항별 빈도를 중심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p>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li> <li>• 인권 이해도</li> <li>• 인권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li> <li>• 필요한 인권교육 내용 등</li> </ul>
설문유형	• 구조화된 설문지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coding, edit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 분석 진행
기대효과	• 군 인권교육 콘텐츠의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

#### (1) 조사 시기

병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 (2) 조사 대상과 참여 규모

### ▶ 설문인원

총 502명으로 육군 219, 해군 81, 공군 91, 해병대 11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 ▶ 주의 사항

군 조직의 특성상 보안 등의 상황으로 군별 모집단 규모에 기반한 유효한 표집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조사 규모도 500명 안팎으로 평균값을 도출하거나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각 군, 남녀, 계급 등)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 문항별 빈도를 중심으로 경향성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

### ▶ 조사 내용

아래 설문조사 문항 구성 표 참조

### ▶ 분석 방법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코딩(coding), 입력 파일 데이터 편집(data editing),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통계 분석 진행하였다.

## 2) 설문조사 문항 구성

〈표 33〉 설문조사\_문항 구성

구분	문항
1	• 인권의 궁극적 보장 의무자는 국가임을 이해하고 있다.
2	• 군인의 인권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인권과 같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3	• 인권은 개인적 차원의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4	• 군 조직과 업무는 우리 사회 인권을 보장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5	• 지휘권은 군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6	• 인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7	• 군 인권 보장이 궁극적으로 우리 군 조직의 모든 역량(전투력 포함) 증진을 가져옴을 이해하고 있다.
8	•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 조직문화와 제도 등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9	•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기관) 및 제도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이해하고 있다.
10	• 인권교육이 내 군 복무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왜 그러한지 작성 바랍니다.
11	• 병사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는데 포함할 인권교육의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작성 바랍니다. (주제, 소재, 내용, 사례 등)
12	• 군 인권교육 방법으로 추천하실 내용을 작성 바랍니다.
13	• 마지막으로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3) 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 조사에 참여한 병사의 인권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군 조직과 업무의 가치에 대해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조사 참여 병사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교육 내용 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군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병사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 ▶ 인권 의식

- 설문대상 병사 502명 중 488명이 국가가 인권 보장의 궁극적 책무자이며, 군인도 시민과 동등한 인권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로써 조사에 참여한 병사들은 인권이 권리로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권 보장을 향한 지휘권의 행사, 인권 제한의 한계, 인권의 군 조직 역량 기여 등에 대해서도 설문 대상 병사 502명 중 각각 490명, 491명, 485명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로써 조사에 참여한 병사들은 군 인권 내용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군 조직과 업무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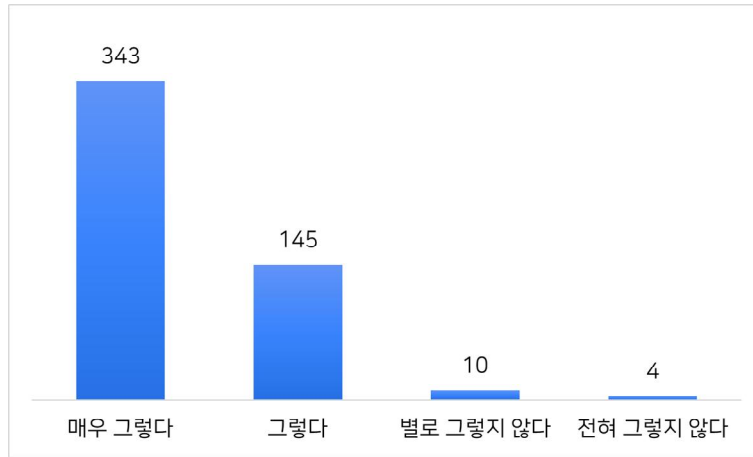
#### ▶ 군 인권교육의 효과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군 조직문화와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문 대상 병사 502명 중 498명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기관) 및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사도 486명이다.
- 군 인권교육은 군 복무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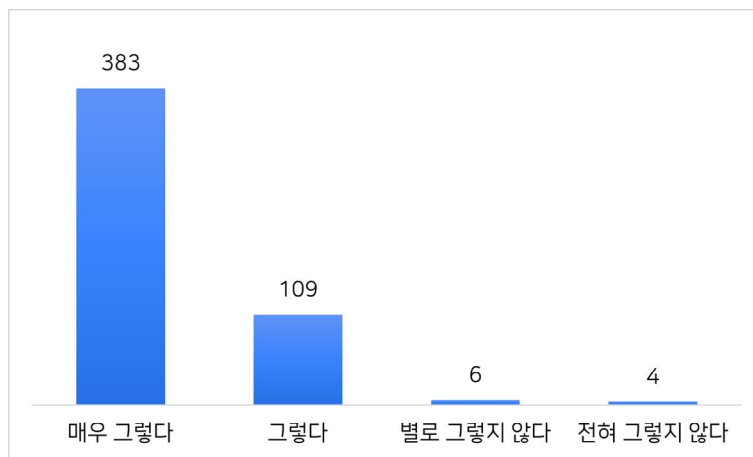
#### ▶ 군 인권교육 개선 요구

- 군 인권교육의 새로운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토의, 인권을 지킨 실제사례, 성 관련 인권 문제,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의 충돌 등을 제안하고 있다.
- 군 인권교육 방법으로는 토론식, 발표식, 프린트물 배부, 영상물 제작 등을 들고 있다.
-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요청할 사항으로는 병사 상호 간의 존중, 인권이 없는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인권의 중요성 인식, 인권교육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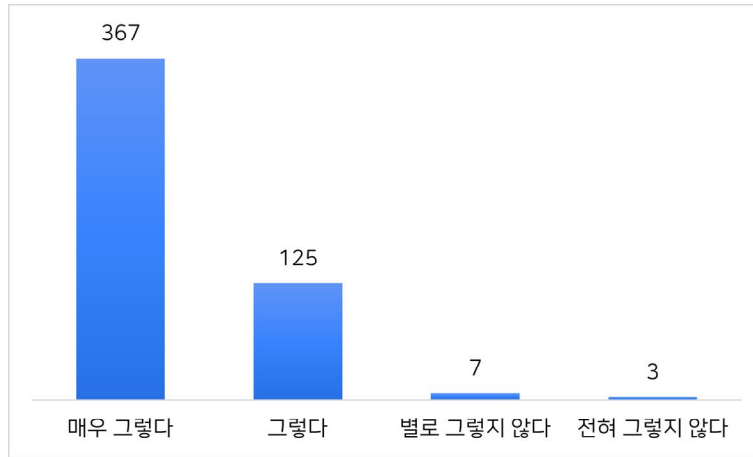
**문항1 | 인권의 궁극적 보장 의무자는 국가임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3] 설문조사 결과\_인권 보장 책무자에 대한 이해**

- ▶ ‘인권의 궁극적 의무 이행자는 국가임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43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45명,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0명과 4명이다.
- ▶ 인권 보장의 책무자가 국가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병사는 전체 조사 대상 502명 중 488명으로 나타났다.

**문항2 | 군인의 인권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인권과 같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4] 설문조사 결과\_군 인권에 대한 이해**

- ▶ ‘군인의 인권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인권과 같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83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09명,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6명과 4명이다.
- ▶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인권 보장도 시민의 인권 보장과 같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사는 조사 대상 502명 중 49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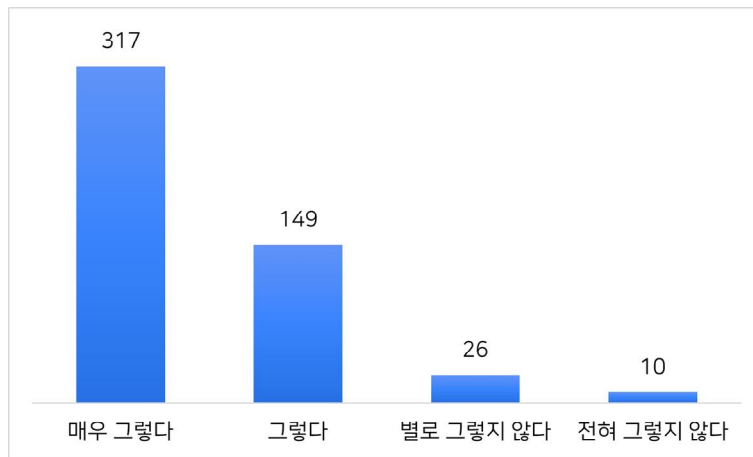
**문항3 | 인권은 개인적 차원의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5] 설문조사 결과\_권리로서 인권

- ▶ ‘인권은 개인적 차원의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367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2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7명과 3명이다.
- ▶ 인권이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병사도 조사 대상 502명 중 492명이다.

**문항4 | 군 조직과 업무는 우리 사회 인권을 보장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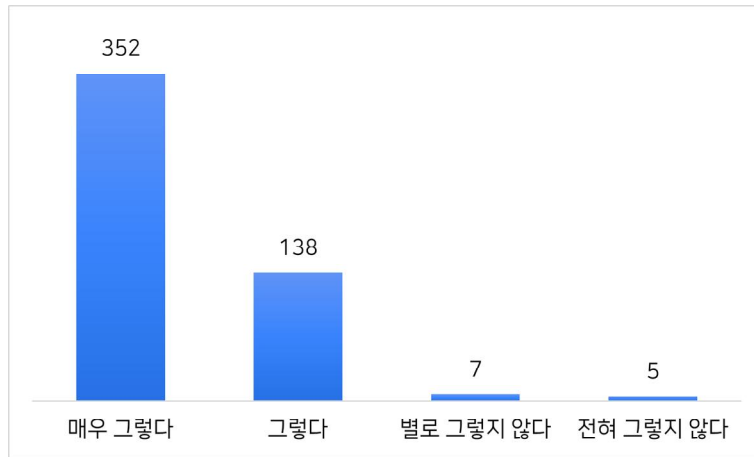


[그림 6] 설문조사 결과\_군 업무의 인권적 의미

- ▶ ‘군 조직과 업무는 우리 사회 인권을 보장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17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49명,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26명과 10명이다.
- ▶ 군 조직의 업무가 사회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병사는 조사 대상 총 502명

중 4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 병사도 36명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설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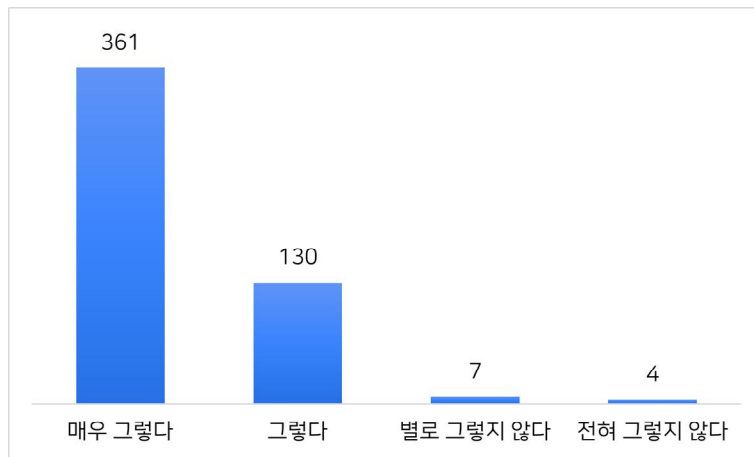
**문항5 | 지휘권은 군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7] 설문조사 결과\_군 조직의 인권적 의미

- ▶ ‘지휘권은 군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52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38명,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7명과 5명이다.
- ▶ 인권 보장을 향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병사 502명 중 490명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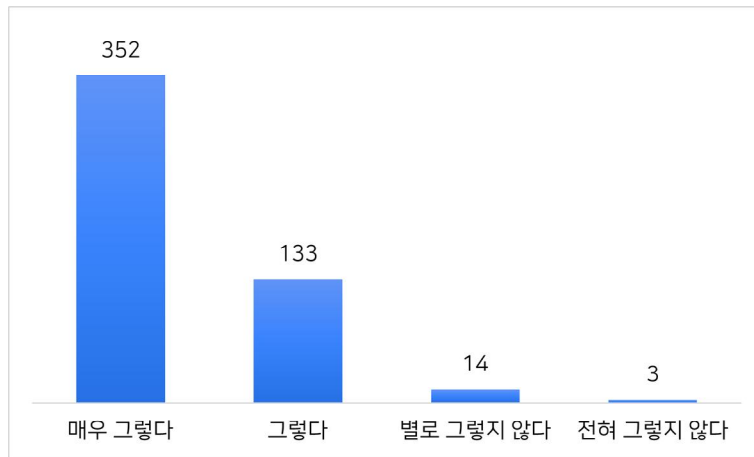
**문항6 | 인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8] 설문조사 결과\_권리의 제한

- ▶ ‘인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61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30명,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7명과 4명이다.
- ▶ 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502명 중 491명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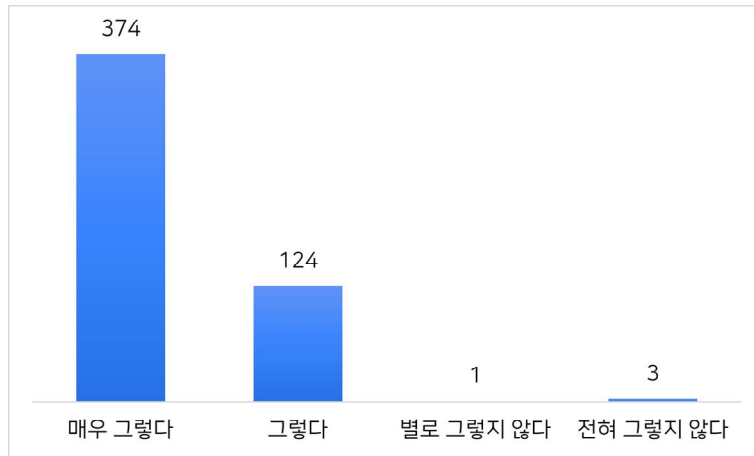
**문항7 | 군 인권 보장이 궁극적으로 우리 군 조직의 모든 역량(전투력 포함) 증진을 가져옴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9] 설문조사 결과\_군 인권 보장과 군 역량

- ▶ ‘군 인권 보장이 궁극적으로 우리 군 조직의 모든 역량(전투력 포함) 증진을 가져옴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52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33명,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14명과 3명이다.
- ▶ 인권의 군조직 역량 증진 기여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병사 502명 중 485명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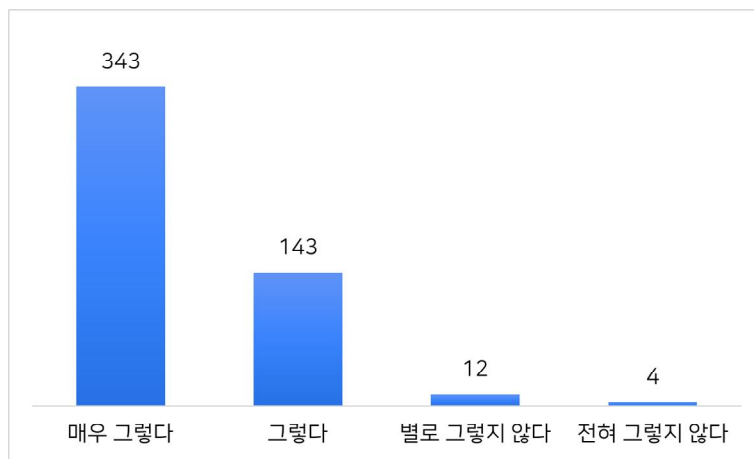
**문항8 |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 조직문화와 제도 등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10] 설문조사 결과\_제도 개선의 중요성

- ▶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 조직문화와 제도 등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74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24명,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1명과 3명이다.
- ▶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군 조직문화와 제도 등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병사 502명 중 498명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항9 |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기관) 및 제도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11] 설문조사 결과\_군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 및 제도의 필요성과 유익성

- ▶ ‘군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기관) 및 제도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343명이고,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43명, ‘별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각각 12명과 4명이다.
-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군 조직문화와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 대상 병사 502명 중 486명이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문항10 | 인권교육이 내 군 복무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왜 그러한지 작성 바랍니다.**

◉ 설문을 분석하면 '인권교육이 내 군 복무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이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군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 군대에서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
-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면 군인의 사기와 복무의 질이 향상된다는 인식
- 다만 조사 참여자의 일부는 인권을 국방력 강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 내용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주요 응답 내용

- 군대라는 곳은 인권이 없는 곳이라고 인식되어서
- 군인의 인권이 인정되어야 군인의 복무요건이 좋아져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 인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데에 더 조직력 있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데에 더 도움을 줄 것이라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② 군인의 권리 옹호 역량 강화

-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주요 응답 내용

- 스스로 권리를 챙기고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어서.
- 인권교육을 받음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것 같아서.
- 인권교육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소 간과할 수 있는 점들을 다시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③ 군 조직의 민주화 및 인권 문화 확산

- 상명하복 위주의 군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확산
- 군 내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 주요 응답 내용

- 인권이 보장되면 군인들의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
- 군 조직이 막연하게 상명하복으로만 운영되어 복무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라 여겼었는데, 교육을 통해 군에서 나 스스로의 가치와 내가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어서.
- 인권교육은 군 복무 중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며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임.

④ 군인의 사명감 고취

- 자신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사명감 고취
- 인권이 보장된 군대가 국가를 더 강하게 한다는 인식

④ 주요 응답 내용

- 인권을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니 사명감 있게 군 복무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임.
- 군인이라는 직업에 더욱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서.
- 인권이 보장된 군대가 국가를 더 강하게 한다는 인식

⑤ 군 복무의 질 향상

- 군 복무에 대한 이해와 동기 부여 강화
- 군 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 예방

⑥ 주요 응답 내용

- 인권교육을 통해 군 복무할 때의 마음가짐을 알게 되어서.
- 인권에 대한 이해가 쉬워서.
- 군 복무에 대한 의무성을 알게 되어서.

※ 위의 5가지 분류는 각 내용이 하나의 분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류에 걸쳐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 교육을 통해 군 복무할 때의 마음가짐을 알게 되어서"는 군인의 사명감 고취와 군 복무 질 향상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 문항11 | 병사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는데 포함할 인권교육의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작성 바랍니다. (주제, 소재, 내용, 사례 등)**

▶ 설문을 분석하면 '인권교육의 새로운 내용'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인권의 이해

- 인권의 중요성과 의미: 군 복무를 통해 국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 군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
- 인권의 종류: 일반적인 인권과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인권에 대한 이해
- 인권의 침해와 보호: 인권 침해의 유형과 대응 방법에 대한 이해

② 주요 응답 내용

- 인권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인간다운 행동을 하여야 인간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음.
- 인권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해 교육하면 좋을 것 같음. 인권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고, 인권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지를 느낄 수 있음. 이를 통해 병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인권 증진이 군 내부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인간본성이 가진 자유와 주체성을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
-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교육권, 노동권, 복지권
- 인권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강연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 부당한 지시, 폭언, 성범죄, 차별, 노동 착취

- 인권침해 요소를 해결했던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요소 신고 및 해결 과정 등).
-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 할 경우에 대해서 강의했으면 좋겠음.
- 병사라는 이유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등 (폭언,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미 보상 등).

② 군 인권의 특수성

- 군인의 임무와 인권과의 조화: 군인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 군 내 인권 침해의 유형: 부당한 지시, 폭언, 성범죄 등 군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한 이해

📍 주요 응답 내용

- 군인의 임무와 인권과의 조화
- 군인의 임무 특성을 고려한 인권과의 마찰이 일어날 경우 우선순위나 인권 보장의 경계선, 군인 임무수행과 인권과의 상관관계(임무와 권리)
- 군내 사고 사례, 이에 투명한 해명, 언론화의 필요성
- 전쟁에 따른 병사인권의 변화
- 병사와 지휘관과의 관계
- 병사 간의 계급 차이로 인한 일 강도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음.
- 부당한 지시, 폭언, 성범죄, 차별, 노동 착취
- 이해를 돕기 위해 군인권에 관한 사례가 더 필요할 것 같음.
-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 할 경우에 대해서 강의했으면 좋겠음.
- 인권침해요소를 해결했던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요소 신고 및 해결 과정 등).
- 병사라는 이유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등 (폭언,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미 보상 등).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등 (폭언,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미보상 등).

③ 인권침해 대응

- 인권 침해 신고 및 구제 절차: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이해
-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군의 노력과 개인의 노력에 대한 이해

📍 주요 응답 내용

- 인권침해요소를 해결했던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요소 신고 및 해결 과정 등).
- 병사라는 이유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등 (폭언,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미 보상 등).
-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충돌 할 경우에 대해서 강의했으면 좋겠음.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등 (폭언, 과도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미보상 등).



④ 인권 교육의 개선

- 교육의 대상 및 내용: 군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인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인권 침해 대응 방법을 교육
-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실제 사례를 활용한 교육, 참여형 교육 등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활용

📍 주요 응답 내용

- 휴대폰 자유화, 입대 전 사업을 하던 병사의 휴대폰을 뺏아야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임.
- 인권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인간다운 행동을 하여야 인간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음.
-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토의와 수렴, 개선방안 토의.
- 인권을 지킨 실제 사례가 궁금함.
-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
- 설문조사(지금처럼), 이유는 내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며 얼마나 알고 있고 새로운 인권을 알 수 있었음.
-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의 의미에 관해 교육하면 좋을 것 같음. 인권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고, 인권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지를 느낄 수 있음. 이를 통해 병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 군내 사고 사례, 이에 투명한 해명, 언론화의 필요성
- 군인의 임무 특성을 고려한 인권과의 마찰이 일어날 경우 우선순위나 인권 보장의 경계선, 군인 임무 수행과 인권과의 상관관계(임무와 권리).
-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복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해도 비속어, 욕설, 언어폭력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함.

| 문항12 | 군 인권교육 방법으로 추천하실 내용을 작성 바랍니다.

- 📍 설문을 분석하면 '군 인권교육 방법'으로 토론회와 강의식이 가장 많이 추천되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 게시판 게시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제시되었다.

① 설문 응답에 제시된 군 인권교육 방법

- **강의식**: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 **토론회**: 교육생들이 참여하여 쟁점에 관한 찬·반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
- **영상 시청**: 교육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 **게시판 게시**: 교육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
- **퀴즈 형식**: 교육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학습하는 방식
- **포스터 그리기 대회**: 교육 내용을 포스터로 표현하는 방식
- **찾아가는 인권 교육**: 교육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수자가 학습자(그룹)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

※ 교육 방식의 적용은 학습자의 이해도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에 제시된 방식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13 | 마지막으로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설문을 분석하면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 관련 요청사항’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인권의 기본 개념

📍 주요 응답 내용

- 인권이 무엇인지와 왜 중요한지 내용 구성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음.
- 군인의 자존감을 높여주자.
- 군인권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지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으므로 군인만이 아닌 시민들도 알게해 주어야 함.
- 지휘권과 인권제한에 관하여 더 자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함.
- 징병제로 인한 불편한 점들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음.
- 군인의 인권이 무시받지 않도록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것 같음.
- 군인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군인의 인권이 보장 받아야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함.

② 군대 내에서의 인권

- 군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 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방법

📍 주요 응답 내용

- 군인도 인권을 보장받는다라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조금 더 인지시켜 주었으면 함
- 크루근무자 수면권 보장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 병사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않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군 내 사고 사례 설명
- 인권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하면 좋을 것 같음.
- 인권침해나 기타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음.
-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개정 내용을 교육하면 좋겠음.
-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3) 인권 감수성

- 타인의 인권 존중 태도
- 인권 침해 예방 방법

📍 주요 응답 내용

- 모두가 같은 인권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병사 상호 간에 좀더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음.
- 서로를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 모두가 같은 인권을 알고 실천을 해야 할거 같음.
- 타인을 위한 배려심, 소중한 인격, 군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 교육이 많았으면 함.
- 군인권 관련해서 침해당하면 안 되는 내용
-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인권 침해를 용인하지 않는 군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병사들은 인권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병사 인권 교육은 인권의 기본 개념, 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 제 1 장
- 제 2 장
- 제 3 장
- 제 4 장**
- 제 5 장
- 제 6 장
- 참고문헌 및  
 해설

## 2

## 학습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 조사 목적

학습자가 내재화하기를 기대하는 인권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능, 태도 등 학습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상황, 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수요 등과 군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학습환경을 파악하고자 학습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서면/면접조사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방향성에 대해 양적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구체적인 수요를 추가 파악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었다.

### 2) 조사 개요

〈표 34〉 군 인권교육 교수자 면접조사\_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시기	2023년 9월 19일(화) - 12월 8일(금)
조사 참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20명 서면/면접조사</li> <li>- 병사 14명(육군, 해군, 공군)</li> <li>- 직무자 6명(의료직, 법무직, 상담직, 수사직)</li> </ul>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생활에 있어서의 또는 직무에 있어서의 군 인권교육의 의미</li> <li>• 직무에 필요한 교육 내용</li> <li>• 인권교육에서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li> <li>• 직무별 특성화된 콘텐츠의 필요성</li> <li>• 인권교육 관련 알고 싶은 주제 및 교육 형태</li> <li>• 향후 인권교육 참여 의사 등</li> </ul>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조사 및 면접 조사(직무자 6명)</li> </ul>
질문 문항 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li> <li>• 담당 연구진 설문지 설계</li> <li>• 연구진 회의에서 설문지 초안 보완 및 최종질문지 완성</li> </ul>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조사 : 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 해제와 클리닝 (Cleaning) → 질적 코딩(Nvivo 프로그램 활용)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li> <li>• 서면조사 : 서면 취합 → 내용의 엑셀 분류 → 질적 내용 분석</li> </ul>

#### (1) 조사 시기

2023년 9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 (2) 조사 대상과 참여 규모

조사 대상군은 학습자군 20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학습자는 육군, 해군, 공군의 일반 장병과 직무별 담당자(의료, 수사, 상담, 법무)로 표본을 나눠 계급별, 군별, 소속 부대 등을 배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

### ▶ 질문지 내용 구성

질문지는 학습자의 학습환경 분석을 위해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수차례 연구진들의 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와 교수자의 공통적으로 대분류 항목을 마련하고, 대상자에 따라 설문 내용에 차이를 두었다. 대분류 범주 항목은 교육목표(인권교육의 의미), 교육경험(긍정적인 부분, 어려움), 기타(교육주제 및 교육 방법 제안 등)으로 구분하였다.

### ▶ 분석방법

서면조사는 서면 취합된 자료의 내용을 엑셀로 분류하여 질적 내용 분석을 하였다.

녹취 해제된 면접조사 자료도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맥락과 주제어를 도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면접조사의 경우 녹음된 음성파일을 워드파일로 전사하고 데이터를 의미 단위로 세트멘팅하여 코딩해 나갔다. 질적 코딩을 통해 노드(NODE)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여 더 큰 의미로 범주화하고 의미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맥락과 주제어를 도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 3) 학습자 군 1. 각 군 병사

### (1) 교육목표

- 교육목표: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인 병사는 인권교육을 통해 병사들의 인식 전환과 군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권 문화 정착을 인권교육의 목표로 보고 있었다.
- 인권교육의 의미: 인권교육의 의미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인권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인권에 대한 자기 진단의 시간이라고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 내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을 통해 나와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의미라는 의견이 있었다.

### (2)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 긍정적인 점(유익한 내용): 조사 참여자들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

권교육 전에는 인권이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미였으나 교육 후 실천적 인권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인권 측면에서 전투임무 수행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해결책을 제시한 것, 세계인권선언, 헌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인권 규범에서 말하는 나 자신의 존엄성 및 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미흡한 점 : 적지 않은 조사참여 학습자들은 인권교육의 구성이 인권의 개념과 구조보다는 상호존중, 소통, 배려, 상대에 대한 이해 등으로 채워지는 것, 단순히 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고 예방식 인권교육 내용 등을 현 인권교육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였다.

### (3) 군인권 교육 콘텐츠 개선 제안

- 개선이 필요한 교육 내용 : 기존 인권교육은 생명존중 교육 등의 명칭으로 사고 예방 교육이나 병영 갈등 관리 교육 등으로 진행되거나 상호존중, 배려 등 인권감수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군 전반에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군인은 군복 입은 시민이며 국가는 인권 보장 의무를 진다는 국가의 인권 책무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권을 고려한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 관계, 상호배려보다는 연대와 인권옹호자 관련 내용, 기본권 제한의 틀에 갇히지 않는 확장적 인권교육 내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향후 인권교육에서 알고 싶은 주제 및 내용 :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인권의 개념과 구조(세계인권선언과 연관성 등), 제대 후에도 실천할 수 있는 진보적인 인권교육 내용, 성소수자 관련 내용,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의 내용과 적용에 관한 콘텐츠, 외국군의 인권 관련 선사례,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 혐오와 차별 등의 주제와 내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군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토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교육 형식 및 방법 : 기존의 강의식보다는 참여형을 제안한 학습자가 적지 않았고, 부대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인권교육 포맷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학습자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상황극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동영상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극장보다 소규모 토의식이나 도서형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직급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4) 학습자 군2. 직무자(수사, 상담, 의료, 법무)

### (1) 교육목표와 의미

조사에 참여한 직무자들은 군 인권교육을 통해 직무의 인권적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업무 관련 어려움이 직무 관련 지식의 지원으로 많이 해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평소에 잊고 있었던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2)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 **긍정적인 점** : 해당 분야 직무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하였고, 평소 이해하기에 이론적 기반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의료직이나 상담직의 경우 지휘관이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 지원에 필요하다는 개인정보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교육을 통해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진술하였다.
- **미흡했던 점** :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입각한 사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근본적인 예방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피해 가는 방법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된 점, 사례의 이면에 있는 맥락이나 구조보다는 사례 자체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점 등을 미흡한 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관련 규정상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거나, 부정적인 사례 중심으로만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군 인권 관련 규정이나 사례의 요점식 설명만으로는 인권 문제의 맥락이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교육의 비중이 높다면, 법령 해석에 치우친 인권교육 진행을 미흡한 점으로 제시하였다.

### (3) 기타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강사의 학습자 파악이 미흡한 점과 인용했던 사례 및 정보의 출처가 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점, 강의 자료의 적지 않은 오타 등을 아쉬운 점으로 진술하였다. 그 외 대면 교육의 필요성과 학습자에게 맞는 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교육 일정이 내용을 소화하기에 다소 짧았다고 하였다.

### (4) 군인권 교육 콘텐츠 개선 제안

- **기존 교육 내용의 보완** :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직무자)들은 인권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기반해 사례와 예규를 설명해 줄 것, 인권침해 구제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제 관련 핵심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줄 것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직무자는 장병들과 관련하여 10대 기본권 중 의료권에 관해 관심도 높고, 복무 기피 식별 문제와 연계되다 보니 오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의료권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인권교육에서 알고 싶은 주제 및 내용** : 인권의 이해, 인성 및 기본권과 인권의 관계적 측면, 기본권 및 인권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 지휘권에 대한 내용,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내용, 전쟁과 무력 충돌 그리고 민간인 보호 등과 관련해 전쟁법과 국제인도주의, 인권 등을 비교하면서 알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교육 형식 및 방법** : 조사 참여자들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교육 내용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토론식 교육을 강조하였고 교육이 인권적 가치에 기반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교수자의 강의 속도가 학습자의 이해 정도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강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기타 제안 : 직무자 인권교육은 인권의 기본적 개념을 현장에서의 직무에 연관시켜 활용성이 높고 직무자 간의 정보교환과 사회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참여하고 싶은 교육이라 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첫째 해당 부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참여를 허락받기가 어려우므로 교육의 중요성을 예하 부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둘째 교육 실시에 대해 정보전달 체계가 미흡해 전달체계의 구조화와 실효적인 교육 참여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 3

## 시사점

#### ○ 인권의 이해에 대한 탄탄한 콘텐츠 적용 - 인권의 구조와 개념,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기본권의 제한의 전제조건 등

- 기존의 군 인권교육은 인권의 이해(인권의 개념)에 기반한다기 보다는 상호존중, 배려, 소통, 상호 이해 등의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인권을 군인 개인 군인 간의 문제로 귀착하게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률과 규정의 교육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인권교육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재까지의 군 인권교육은 사례와 예규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인권교육이 아니라 군법교육으로 내용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이해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모든 군 인권교육의 기본 콘텐츠로서 자리 잡고 그 구조 위에서 기본권 침해, 기본권 제한 등의 주제와 사례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콘텐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인권의 이해에 대한 탄탄한 구조를 가지게 하는 인권교육은 병사들의 바람대로 제대 후에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이 될 것이다.

#### ○ 군인의 정체성(권리주체 등)과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콘텐츠 보완

- 인권교육이 군의 특성상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보기보다는 군인의 정체성을 기본권 제한의 틀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권리주체로서 인식이 시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교육이 기본권 제한의 틀에 갇히지 않고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을 권리주체로서 그리고 국가를 인권 보장 책무자로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인의 정체성을 콘텐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 외국군의 인권 관련 선사례 적용

- 어떤 맥락에서 외국군과 인권 관련 선사례를 제안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외국의 다양한 선사례를 군 인권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인식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콘텐츠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의 내용과 적용**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거치면서 장병들이 전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휴전상태로 언제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전쟁과 무력충돌 그리고 민간인 보호 등과 관련해 전쟁법과 국제인도주의, 인권 등을 비교하고 인권의 관점으로 전쟁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소수자 관련 내용**

- 일반 사회와 같이 군에도 다양한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수자 관련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내용 구성 시 ‘모든 인간의 존엄함’과 연계시켜 소수자가 배제되고 분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혐오 차별 관련 내용**

- 군의 특성상 차별은 장병들에게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권교육에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

-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 등이 계속 대립구조로 비치면서 교육에 난항을 겪는 것은 인권의 개념과 구조가 제대로 인권교육의 중심 콘텐츠로 자리 잡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 등이 단순한 한 주제로 따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인권의 이해를 탄탄하게 콘텐츠화해서 연계하여 그 속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 이해,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이 다루어지도록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인권침해 구제의미와 구체적인 절차**

- 지금까지는 구제 관련하여 장병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다는 신고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위주로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장병들이 구제의 인권적 의미를 내재화하고 예방 중심의 환류 체계로 이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콘텐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특정 직무와 관련한 내용의 보완적 생산 - 10대 기본권 중 의료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콘텐츠 포함**

- 특정 직무와 관련해 예컨대 의료직과 상담직 등은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데 지휘관이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요구할 때가 적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직무자들은 군대의 상황상 복무 기피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도록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오진이 많은 관계로 의료권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직무자들에게 애매하거나 또는 군 환경의 특성으로 고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내용을 콘텐츠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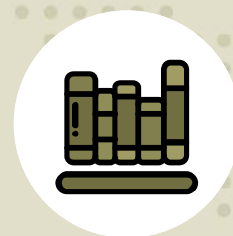
○ 제도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방부 권고는 장병들의 삶과 관련된 인권적 제도 개선의 내용들이므로 비록 수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제5장

## 군 인권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 I. 군 인권교육 FT 심층면접조사 결과
- II. 군 인권교육 전문가 정책토론회 결과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제5장

## 군 인권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 I

## 군 인권교육 FT 심층면접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이 조사의 목적은 현재까지의 군 인권교육 환경과 콘텐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콘텐츠, 개선이 필요한 콘텐츠, 추가되어야 할 콘텐츠 등에 대해 군의 핵심적인 인권교육 교수자인 군 인권교육 촉진자(Facilitator, FT)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 2) 조사 개요

〈 표 35 〉 심층면접조사\_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시기	2023년 10월 12일(목) - 10월 25일(수)
조사 참여 규모	• 국방부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촉진자(Facilitator, FT) 4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의 목적 및 의미</li> <li>• 국방부, 각군 표준교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인권교육 콘텐츠</li> <li>• 군 인권교육 시 공유하고자 하는 사례, 콘텐츠</li> <li>• 인권교육 시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콘텐츠</li> <li>• 학습자(병사, 지휘관, 직무자 등)에게 설명이 어려운 내용</li> <li>• 군별, 부대별, 직무별 특성화된 콘텐츠의 필요성</li> <li>• 향후 인권교육 콘텐츠로 설계하고자 하는 주제 등</li> </ul>
조사 방법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Focus Group의 의미는 일반적인 집단을 의미하기 보다는 특정 경험이나 사건의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임.
질문 문항 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구조화된 질문지</li> <li>• 담당 연구진 질문지 설계</li> <li>• 연구진 회의에서 질문지 초안 보완 및 최종질문지 완성</li> </ul>
분석 방법	• 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해제와 클리닝(Cleaning) → 질적 코딩(Nvivo 프로그램 활용)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1) 조사 시기

2023년 10월 12일(목)부터 10월 25일(수)까지 진행되었다.

## (2) 조사 대상과 참여 규모

심층면접의 조사 대상은 부대 내 교관과 국방부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를 겸하고 있는 4명의 군 인권교육자로 하였다.

## (3)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

### ● 질문지 내용 구성

- 심층면접의 질문지는 교수자가 생각하는 군 인권교육 콘텐츠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진행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진 논의를 거쳐 질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대분류 범주 항목은 교육목표, 내용 관련하여 표준 교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교육 시 교수자에게 또는 학습자에게 어려운 내용, 군별, 부대별, 직무별 등으로 특성화된 교육 내용, 향후 인권교육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주제 등을 포함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특성상 대분류 항목 중심으로 질문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맥락과 관련 추가 질문을 진행하였다.

### ● 분석방법

- 녹취 해제된 심층면접자료를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맥락과 주제어를 도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심층면접 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워드파일로 전사하고 데이터를 의미 단위로 세그먼팅(segmenting)하여 코딩해 나갔다. 코딩을 통해 노드(NODE)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여 더 큰 의미로 범주화하여 의미체계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 3) 키워드 분석

### (1) 군 인권교육의 의미와 목표

-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 온전한 지휘권의 회복
- 전투력 향상

### (2) 군 인권교육 활용 콘텐츠 자료

- 국군교재
- 국방부\_각군 표준 교안 및 자료
- 관련 부서 자료
- 군 인권 관련 온라인 자료

- 군내 생산 UCC 및 군 인권교육 FT 자체 제작 동영상 등
- 2023, 2023 영상(인권왕)
- 인터넷 교안

● 외부 기관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 민간 기관 자료

● 외부기타 자료 - 온라인 또는 문화(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3) 군 인권교육 필수 콘텐츠**

●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과 구조
- 인권과 기본권의 이해
- 쟁점 -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구분 필요, 구분 불필요)

● 기본권의 제한

● 군인의 권리

- 군인의 권리
- 법규에 기반한 사례

● 인권침해 권리 구제

**(4) 교육하기 어려운 콘텐츠**

● 교수자로서 어려운 콘텐츠

- 인간의 존엄
- 기본권(헌법)과 인권의 관계
- 지휘관과 장병의 인권
- 차별

● 학습자의 이해, 공감하기 어려운 콘텐츠

- 기본권 제한
- 지휘권과 인권의 관계

### (5) 부대별\_직무별 인권교육콘텐츠 차별성

- 군별 상황과 문화에 따른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 필요
- 직무별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 필요
- 기타\_추가 학습자 구분 및 콘텐츠 개발 필요
  - 지휘권 행사 주체\_행정업무자\_병력통제 관리 간부
  - 부대별 보직자에 따른 학습자 구분
  - 훈련병 교관 추가

### (6)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선 보완점

- 인간의 존엄
- 기본권 제한 중심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를 기본으로
- 인권개념과 구조의 기반 위에 법령과 사례 교육
-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
- 인권침해 구제 절차 - 시뮬레이션
- 인성, 감수성보다는 인권에 기반한 콘텐츠
- 소수자 관련 콘텐츠
- 제도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권고 이행(불수용 점검)
- 토론식, 사례별 수업 등의 인권적 마무리 콘텐츠

### (7) 기타

- 접근성 고려
  - 국군인권 교재 수량 확충
  - 군 인권영상 콘텐츠의 (기술적) 접근성 높일 필요
- 포켓북/주제(챕터)별 형태 고려
  - 언제, 어디서든 활용가능하도록
  - 주제별로 볼 수 있도록
- 외부 콘텐츠 활용 방안 고려



## 2

## 군 인권교육 FT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 1) 군 인권교육 콘텐츠 현황

## (1) 군 인권교육의 의미와 목표

군 인권교육 FT들이 생각하는 군 인권교육의 의미와 목표는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온전한 지휘권의 의미 인식 및 전투력 향상이 제시되었다.

## ① 제복입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

군 인권교육 FT\_02는 폭력, 폭언, 욕설 등 예전에도 군에서 발생했으나, 사회에서와는 달리 묵인되었던 인권침해를 군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인식하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3은 인권교육의 목표가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시스템의 개선이라고 밝히면서 그 전제로서 군인의 (인권)역량을 증진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2** | “그전까지는 사실 인권이라는 말이 좀 군에 적용되기가 또는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와 닿는 게 좀 불편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장병들이 군 생활하면서 예전에 흔히 발생했었던 구타 및 가혹행위라든가 폭언, 욕설로부터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왜 군에서는 그게 좀 묵인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이어졌던 게 점점 우리 모두가 알게 되면서부터 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그때부터 대두되기 시작했구요.”

☞ **군 인권교육 FT\_03** | “군에서 인권 교육의 어떤 목적은 결국에는 권리 주체자, 의무 이행 대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직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펼쳐서 침해의 구조를 개선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략...)”

## ② 온전한 지휘권에 대한 인식 확산


군 인권교육 FT\_01은 인권교육의 목표가 온전한 지휘권의 회복 및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을 상충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문화조성이라고 하였다. 이어 인권교육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지휘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지휘권임을 이야기한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그래서 간부 교육할 때도 제가 이 표현을 항상 씁니다. 인권 교육을 용사들한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사들의 인권을 제대로 알고 온전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교육 시간을 통해 마련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휘관들도 모르고 용사들도 모르고 상호 간에 모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인권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군에서 뭐든지 발생하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조치를 취하는 단계는 누군가를

꼭 징벌을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수 있는데 모름으로 해서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인권 교육의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군의 이런 교육들 때문에 지휘권이 너무 뒤쳐지는 거 아니냐, 점점 하락되는 거 아니냐, 획일된 군의 기강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우려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교육을 해야지만 온전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지휘권이 뭐냐 하면, 제가 군 생활을 한 ○○년 정도 하고 있는데 여지껏 바라본 지휘권은 자기 스스로가 지휘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휘권 남용이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산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다 지휘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근데 50명, 60명, 100명의 우리 용사들을 거느리면서 용사들의 예만 들어가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온전한 지휘권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권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가 군 기본법으로 해서 받을 권리가 이 정도가 있구나 우리가 보장받을 권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맞는 거구나를 느끼게끔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떠한 형식이냐면 뭔가 안 맞으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중략...) 그러면 제 경험상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2명은 소위 말하면 뭐 어찌라고 그런 식인데 대부분의 한 80% 이상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지휘권을 행하지를 못했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교육이 좀 더 심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온전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하나로 되는 군대의 문화가 조성이 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③ 전투력 향상

군 인권교육 FT\_04는 군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군 조직이 성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전투력 향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교육의 목표를 전투력 향상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군 인권교육 FT\_04** | ① “군에서 갖고 있는 군 인권 교육의 목표는 결국은 전투력 향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를 믿을 수 있고 서로가 존중받는 병영 생활이 정착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인권의 기본적인 본질의 의미라기보다는 결국은 저희 조직은 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려면 인권이라는 부분이 갖춰진 군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목표로서 인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② “일부 설문 내용을 보더라도 ‘군에서의 인권이 향상된다면 그러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긍정적인 효과다’ 라는 설문도 상당히 높기도 하

고, 그다음에 제가 인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내 인권이 과연 언제부터 강화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간부들한테 던집니다. 던졌을 때 전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최강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건 그 누구도 미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군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했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의 패배를 분석한 결과 중에 당시 미군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했던 현상이 패배의 현실을 만들어낸 일부의 기록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 인권이 가장 크게 향상됐던 시기가 이 베트남전의 결과를 토대로서 발전했다는 분석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군에서의 인권 교육의 목표가 저희 조직이 맡고 있는 전투력 향상, 군의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해야지만 군 조직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군 인권교육 활용 콘텐츠 자료

군 인권교육 FT들이 군 인권교육 활용 콘텐츠 자료로서 제시한 것은 국방부 국군 인권교육 교재, 각군 표준 교안 및 자료, 군인권 관련 온라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 인권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자료, 드라마와 유튜버 등 외부 기타 자료 등이다.

### ① 국방부 국군 인권교육 교재

군 인권교육 FT\_02와 군 인권교육 FT\_03은 본인들이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고 기본방향이나 틀이 교관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국군 인권교육 교재의 콘텐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국방부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기본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 기본 교재를 따라가지만, 그 기본 교재를 따라가면 제가 이거 군법 교육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② “메인은 저도 국방부 소속이니까 표준 교재를 기준으로 하되 (... 중략...) 인권과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발표한 자료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걸로 표현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기본 방향이나 틀은 결국에는 양성되는 교관들을 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2** | 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국방부 표준 교안을 제작할 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교안을 위주로 일단 내용이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 교안의 내용을 토대로 쓰되 보통은 인권 교육 자체가 우리 장병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② “대부분의 전문 인권 교관님들은 그 교안을 기본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 기본 교안을 토대로 본인의 부대와 본인의 역할에 맞게끔 본인이 추가적인 자료를 그쪽에 삽입해 자기화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 ② 각군 표준 교안 및 자료

군 인권교육 FT\_01과 군 인권교육 FT\_03은 인권교육 교안을 작성하는 데 각 군의 표준 교안이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1은 제한된 표준 교안만으로는 다양하고 폭넓은 콘텐츠 활용이 어렵다고 덧붙였고, 군 인권교육 FT\_03은 실제 부대나 상급 부대에서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군의 인권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한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1** | “교관 같은 경우는 부대에서 우리 용사들이나 그 다음에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권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소위 말하면 내부 직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폭넓게 하고 싶은 교육들을 못하는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 주로 육군 본부 인권 존중 센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기본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육군에서도 이번에 지휘권과 관련된 교육 교안을 만들었고, (... 하략 ...). ② “예전에는 그냥 전쟁 영화를 하나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실 거냐, 한번 토의를 해보자 해서 관련 법령을 몇 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로 했는데, 실제의 부대나 상급 부대 법리적인 부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사례들을 토의 주제로 가져가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인권과 관련된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보고요.”

### ③ 군 인권 관련 온라인 자료

군 인권 관련 온라인 자료로는 군 내부에서 제작한 UCC 등 자체 동영상 제작물, 2022년 인권왕 등 군인권 영상물, 인터넷에 탑재된 교안 등을 제시하였다. 군 인권교육 FT\_04는 군대 내에서 장병들이 자체 제작한 UCC 등은 주변의 친근한 동료 전우가 만들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군인권 영상물에 대해서는 군 인권교육 FT별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군 인권교육 FT\_01과 군 인권교육 FT\_02는 콘텐츠의 만족도가 높고 영상물 제작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군 인권교육 FT\_04는 군 내부 영상물 활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주로 외부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교안의 온라인 공유와 관련해 군 인권교육 FT\_03은 육, 해, 공군의 인권교관 경연대회 입상자들의 교안이 인터넷에 탑재되어 교관들이 인권교육 교안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안 수정이 어려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술했다.

**☞ (군내 생산 UCC 등 자체 동영상 제작물) 군 인권교육 FT\_04** | ① “최근에는 제가 저희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저희 군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UCC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군 내에서 짧은 UCC 동영상, 그다음에 그냥 공감되는 웃긴 영상 같은 것들을 군 내에서 좀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영상들이 군의 특정 계급인이나 특정 조직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의 모든 장병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일병, 이병, 병장 우리 셋이서 동영상 찍어서 올려서 군에서 채택이 되면,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보니 군내 인권 UCC를 많이 활용을 하

고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 거의 99% 이상이기 때문에 더 친근감이 느껴질 거고. 내가 내 동기, 내 전우, 내 선배, 내 후배가 만든 영상들 드라마들 이러한 주제로 간다면. 최근에는 그거를 조금 많이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 ② “군내에서는 많이 장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연대회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구구절절 말로 수십 분을 떠드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특정 영상에서 주는 임팩트 하나가 잔향을 더 남길 때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 (군내 생산 UCC 등 자체 동영상 제작물) **군 인권교육 FT\_01** | “네 그렇죠. 통상 소위 말하는 육군은 저희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제가 부대에서 교육할 때는 현장에 그 인원들을 동영상에 참여를 시키거든요. 동영상에 참여를 시켜서 항상 그 침해 사례, 구제 사례 교육을 하면서 그 영상을 숏컷으로 한 3분 정도 제가 직접 편집해 교육을 할 때 띄우면 용사들은 열광에 난리가 나죠. 본인 얼굴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3번 띄워놓으면 3분짜리 촬영은 거의 한 1시간 남짓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짜깁기해 갖고 3분 컷으로 줄이는데 교육은 3분만 하면 거의 끝날 정도로 용사들한테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 거의 매 분기 때까지는 못하고 1년에 두 번씩은 제가 꼭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 편집을 해서 1년에 두 번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그런 거죠. 해병대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유튜브라든가 각종 해병대 이런 신문들 거기서 스크랩 자료라든가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해병대 특화적으로 만들어 본인들이 화면을 봤을 때 친숙해야 되거든요.”

☞ (군인권 영상 활용 - 2022년 ‘인권왕’, 2023년 영상) **군 인권교육 FT\_01** | “그것을 저도 봤는데 많은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거든요. 충분히 그 몰랐던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대리인들이 나와서 설명해 준다. 이런 개념인데 소위 말하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문제화가 되는 저희 부대의 사례들을 저희 부대 인원들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대표가 되는 그룹에서 이런 것들 사례를 모아서 조금 이런 거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다. 저희가 보면서도 대리만족을 느끼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걸 내가 몰랐었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휘관이나 간부들 일부는 그 불편함조차도 지금 이 시간에 느낀다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 불편함조차도 여지껏 못 느끼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 (군인권 영상물 - 2022년 ‘인권왕’, 2023년 영상) **군 인권교육 FT\_02** | “제가 사실 그거를 진짜 저희가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저도 딱 대표적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좀 썼는데, 일단 저는 이제 같은 군의 소속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점만 봤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약간 대답하고는 약간은 좀 멀지만 그런 자료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육군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뿌려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 (군인권 영상물 - 2022년 ‘인권왕’, 2023년 영상) **군 인권교육 FT\_04** |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어서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인권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데 인권 영상 자체를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한테 필요성 자체를 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권이라는 주제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바깥의 영상들을 더 찾아보고, 인권 단체들에서 이런 통계나 사례 같은 것들을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인권의 사회에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찾아봤지. 군내 인권왕, 저는 일단 본 적은 있지만 끝까지 본 적은 솔직하게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대에 있는 장병 300명한테 이거 본 인원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 손에 꼽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인터넷 탑재된 교안) **군 인권교육 FT\_03** | “육해공군 다 마찬가지로 인권교관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 경연대회에 입상한 교관들은 물론 동의를 구하고 인터넷에 그걸 다 띄워줍니다. 띄워주는데 결국엔 개인의 교안이다 보니 폰트들이 많지 않고 본인의 말로서 스크립트 거의 잘 작성되지 않은 교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를 하더라도 이 화면에서 무슨 이야기지, 이게 무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자료지? 예전 17년도 18년도 자료는 이미 공지가 돼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보시고. 가끔씩 제가 인권교육 교관들 교육 시간에 보면 이거 제 자료가 이렇게 띄워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것만은 확실히 나만의 색깔이야라고 이렇게 딱 띄우기에는 저도 다 참조해서 만들어낸 재산물이라 제 언어로 만들긴 만들었지만 다 참조한 내용이라 딱히 이걸 나만의 언어로 만들었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④ 외부 기관 자료

군 인권교육 FT\_03은 외부 기관 자료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와 인권 관련 민간연구소의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는 공인된 인권교육 자료라는 측면에서, 민간연구소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인권 표준교재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하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례별 내용들 나와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거 조금 사용하면 이해되기 쉽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가져오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인권적인 자료를 가져오자. 그러면 그 인권적인 자료는 뭐냐, 한번 검증이 돼서 누군가가 인권적으로 바라본 자료를 가져오자.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소처럼 이런 곳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인가 □□□□□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서 한 거 있잖아요, 그 공무원인권교육 프로그램 그거요. 그것도 제가 이번에 보고 여기에 토론 주제를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중략…) 하여튼 최대한 인권적인 자료를 가져오자. 그러면 그 인권적인 자료는 뭐냐, 한번 검증이 돼서 누군가가 인권적으로 바라본 자료를 가져오자.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소처럼 이런 곳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② “메인은 저도 국방부 소속이니까 표준 교재를 기준으로 하되 딱딱한 주제 이걸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거는 인권과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발표한 자료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걸로 표현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기본 방향이나 틀은 결국에는 양성되는 교관들을 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저는 양성되는 교관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교안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냥 양성될 교관에게 전수하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 더 많은 부분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그대로 이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족하다, 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성되는 교관이나 양성된 교관이 활용하기에는 적합한 교재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교재만을 가지고 교관들에게 설명한다면 좀 부족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많은 양념을 가져오는 겁니다.”

### ⑤ 기타 외부 자료 - 온라인 또는 문화(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군 인권교육 FT\_02는 개인적으로 인권교육에서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사프로그램의 쇼츠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을 활용하거나 최근에 군 관련 사례를 내용으로 제작된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한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2** | 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육을 쉽게 풀어나가고 공감을 얻기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가 어떤 장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중간에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최근에 예체능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시사 프로그램을 통한 어떤 쇼츠 영상이라든가 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인권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위한 감수성 향상을 위한 소재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는 편이에요.”, ② “개인적으로 저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③ “두 번째는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만든 자료들을 보면 정말 시대가 변하면서 콘텐츠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영화도 새롭게 나왔고 최근에 개봉한 ‘DP2’라든가 ‘군 검사 도베르만’ 같이 최근에 나오는 어떤 사례를 다루면서 이런 영상 콘텐츠라든가 사진 자료들을 교육생들을 통해서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3) 군 인권교육 필수 콘텐츠

군 인권교육 FT들은 군 인권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콘텐츠로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기본권의 제한, 군인의 권리, 인권 침해 구제 등을 제시했다.

#### ① 인권의 이해

군 인권교육 FT\_03은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는 사례에 치중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인권침해 사례 등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군 인권교육 FT\_02는 인권과 기본권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근거가 되는 국제인권규범 등에 관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3** | “실제로 교관님들이 야전에서 필요한 교육은 인권 침해 사례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대에서도 인권 교육을 요청하거나 할 때 사례별 교육을 자주 해당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권 교육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좀 사례적인 교육으로 가야 되

는데, 인권의 어떤 본질이나 인권의 구조나 침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짧게 하고 그냥 운전 면허 시험 합격하듯이 이권 인권 침해다, 이권 아니고. 4번 5번 정도의 교육으로만 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교육으로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인권 교육을 하는 데에서는 조금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고, (…하략…).”

☞ **군 인권교육 FT\_02** | “첫 번째는 일단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학문적인 지식이지만 인권이 뭐고, 기본권이 뭔지는 우리 장병들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교육할 때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는 헌법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조항이라든가 그리고 유엔 인권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콘텐츠가 첫 번째로 좀 필요하겠고 (…하략…)”

## ②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는 군 인권교육 FT들 사이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졌다. 군 인권교육 FT\_01은 종국적으로 기본권이 확장하면서 인권과 기본권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군 인권교육 FT\_03은 기본권은 헌법에 명문화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분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군 인권교육 FT\_02는 군인이 가진 임무의 특수성상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 인권교육 FT\_04는 인권은 확장성이 있는 반면 기본권은 절차적인 문제로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과 기본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1** | “솔직히 구분할 필요가 없죠. 구분할 필요가 없고, 제가 추구하는 가장 큰 것은 인권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기본권이 들어 있는 통상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결국에 종지부로 가서는 인권과 기본권이 똑같이 동심원이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강제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래서 교관들이 이 바깥에 테두리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교육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성 교육 쪽으로 흘러가는 면이 분명히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서 거의 동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인권하고 기본권은 당연히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관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 **군 인권교육 FT\_02** | “인권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군인이나 모든 민간인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 인권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민간인이 갖고 있는 인권과 군인이 갖고 있는 인권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데 근본 모태는 모든 사람이라는 게 일단 전제가 되고 그다음에 군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인권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런 기본권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 차이점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군 인권교육 FT\_03** | “자꾸 이렇게 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권을 이야기하는데 근거를 찾다 보니 군인복무기본법으로 들어가고 헌법으로 들어가서 분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내용이 명문화된 거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용어적으로 아니면 학습자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병들이 얘기하는 게 기본권이라는 법령적인 본인의 실질적인 권리, 진료권 의료권 아니면 본인의 자유권 이렇게는 잘 학습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칭으로 이거 인권 안 지켜지네, 이거 내 인권이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분은 필요하되 그냥 통칭적으로 장병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부분으로도 해도 되지 않을까.”

☞ **군 인권교육 FT\_04** | “보통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 자료에서는 인권의 틀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법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권의 틀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교육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인권이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교육 자료가 상당히 많기는 하는데, 맞죠. 사회가 발달되고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법이라는 것들이 바뀌어가고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합리적이었던 내용들이 변화된 환경과 세상에서는 불합리가 되기 때문에 또 바뀌어가는 것처럼 인권은 그래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권을 법으로서 제정을 하다 보니 법이라는 거는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절차들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감히 따라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 자체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때로는 교집합이 될 수도 있고 합집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큰 타이틀 안에 있는 기본권이 아닌 이 큰 타이틀까지를 똑같이 기본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도와 법령이 현실화돼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③ 기본권의 제한

군 인권교육 FT\_04는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한 교육 시 법적 근거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군인 역시 기본권 제한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4** | “네, 지금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특히 군내 인권 교육에서는 기본권 침해와 제한에 따른 차이, 그다음에 조직의 특수성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권 침해가 뭐고 제한이 뭐다, 침해와 제한의 차이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제한이라는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던 군 조직의 특수성에 따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 부분은 법적 근거를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는 시선이 더 많이 퍼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④ 군인의 권리

군 인권교육 FT\_02와 군 인권교육 FT\_01은 군인의 권리가 인권교육의 필수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 인권교육 FT\_02는 군인의 권리 특히 10대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 등을 인권교육의 필수 콘텐츠로 선정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1은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군에서 군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군인의 권리) **군 인권교육 FT\_02** | “세 번째는 군 인권이라고 하면은 장병들이 갖고 있는 군 인권 권리와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10대 기본권 그리고 10대 기본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자신들의 권리가 세 번째 콘텐츠가 되겠고요.”

☞ (법규에 기반한 사례) **군 인권교육 FT\_01** | “군 인권교육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법규를 기반으로 한 사례거든요. 통상 법무관님들이 와서 법무 교육을 하실 때 이 피해 사례를 교육하면 이러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인권 교육은 그게 아니고, 이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공감감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간부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군이라는 데가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이다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됐다고는 하지만 상하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중략...)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

#### ⑤ 인권침해와 권리 구제

군 인권교육 FT\_02와 군 인권교육 FT\_04는 인권침해와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교육의 필수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군 인권교육 FT\_02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진술했고 군 인권교육 FT\_04는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2** | 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게 인권 침해인지 아니면 인권인지 내가 몰라서 못한 건지에 대한 어떤 인권에 관련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두 번째로 필요하겠고 (...하략...)”, ② “마지막으로 내가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내가 침해인 거를 알고 이것을 극복하고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구제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권리,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군내 인권 교육 자료 중에 제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은 저희가 1년에 총 4번을 교육하게 돼 있고 한 번 교육했을 때 보통 2시간을 교육하게 되는데 그 2시간이라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구제 절차 반드시 교육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동영상들 보여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면 (...하략...)”

#### (4) 교육하기 어려운 콘텐츠

군 인권교육 FT들은 교수자가 이해하거나 교육하기 어려운 콘텐츠와 학습자가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콘텐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교수자로서 이해하기/교육하기 어려운 콘텐츠

군 인권교육 FT\_03은 인간의 존엄이 교육하기 어려운 콘텐츠라고 하였고, 군 인권교육 FT\_04와 군 인권교육 FT\_01은 군 인권교육의 특성상 기본권이 주제가 될 때 헌법과 국제규범 등을 연관시켜 교육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군 인권교육 FT\_01은 교육 시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률 위반 여부에 관심이 높다보니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군 인권교육 FT\_03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인권이라는 전제 하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설명해야 하는데 다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 학습자를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군 인권교육 FT\_02는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의 관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군 인권교육 FT\_03은 차별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 (인간의 존엄) **군 인권교육 FT\_03** | “(인간의 존엄) 존엄 부분은 어디에 기술되어 있는 명확한 존엄은 뭐다, 일단 근거를 찾게 되잖아요, 이 기술되어 있는 게 자유와 평등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고, 그래서 존엄을 교육하기가 제일 어려워서 이게 다행인지 다행은 아닌데 군 내의 교육에서 존엄이라는 부분은 퍼센테이지가 1%도 되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방부 표준 교안에서 존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존엄이 어떻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지 않아서 존엄이라는 부분을 제가 잘 소화해야 이야기를 할텐데 그래서 존엄이 제일 저는 어렵습니다. 존엄만큼 어렵습니다.”

☺ (기본권 콘텐츠 연계) **군 인권교육 FT\_04** |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처음 저 스스로도 처음에 인권교육이라는 단상에 섰을 때에는 그 법령이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군은 이제 기본권이라는 타이틀을 별도로 갖고 가다 보니까 헌법에서 명시돼 있는 거, 그다음에 어디 법령에 명시돼 있는 거, 국가인권위에 적혀 있는 글, 그다음에 이 세계 선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 것들을 자꾸 짜맞춰 가지고 같은 급으로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생각한다면 그래요.”

☺ (기본권과 헌법 연계 설명) **군 인권교육 FT\_01** | “글쎬요 이해하기 어렵다 하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질문들을 할 때 이게 질문들이 들어오거든요. 교육을 할 때 질문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이게 법의, 기본법에 위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인권교관들이 부대에서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냐면, 대대급 저희 창끝 부대 가장 말단 부대라고 하죠. 대대급에서 근무하는 인권교관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본인이 법무장교인 줄 안다. 부대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지. 근데 본인은 인권과 연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꼭 나중에 물어보면 이거 법적으로 맞아 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맞아? (...중략...) 지휘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변호사라든가 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법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본권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자유, 용사들의 자유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주는데 물론 지휘관께서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질문을 한 사람은 답을 원하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건지, 된다는 건지,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예,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법이랑 같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 갔다 오고 나서는 희한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군인복무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계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그림이 그려져요. 헌법하고 기본법하고 이렇게 차트가 나름대로 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발전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제가 인권교관 양성 교육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교관님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되게 어렵다고. 자기가 부대에서 법무관도 아닌데 자꾸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그런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콘텐츠로 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분명히 저희는 교육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나마 조금 해소를 해 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갈급함 들이 많아요.”

☞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 **군 인권교육 FT\_03** | “인권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기본권을 제한을 한다, 그게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받는 거라는 부분으로 인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인권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자라는 걸 교육하기가 이게 논리상 어떻게 보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는 우리는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데 약간 인권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본 교재에 등장하는 기본권 제한 관련 법령은 이렇고 해서 우리가 제한받는다. 제한받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권리가 모두에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은 하지만 그걸 뒷부분에 다시 우리가 인권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봐줘야 된다는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 부드럽게 넘어가기는, 딱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의 구조 및 관계) **군 인권교육 FT\_02** | “보통 군 인권교육을 왔을 때 교육을 받고 있는 교관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과 지휘권의 구조 관계이거든요. 민간인들하고는 다뤄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지휘권이라는 건데, 군이라는 게 일단 지휘관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부하들이 있고 또 지휘관도 인권을 갖고 있고 부하들도 인권을 갖고 있지만은 보통 군에서는 정답은 아니지만 인권을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부대의 어떤 교육 훈련을 위한 지휘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너무나 또 지휘권만 강조하게 되면 그 장병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상하 공존 관계에서 우리는 부대 인권교관이자 내가 또 지휘관을 모시는 하나의 부하 간

부로서 또 장병을 다루는 또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리더이자 팔로워이자 인권 교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기 때문에 지휘관에게 올바른 인권 향상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부대 임무를 위해서라면 그에 적절한 엄중한 지휘권도 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대부분 교관님들이 바로 인권과 지휘권의 상충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 (차별) **군 인권교육 FT\_03** | 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에는 지금의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더욱 차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하고 있고.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싶은데 저도 차별에 대한 내용을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겁니다. 존엄과 반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많아서.”, ② “거의 휴가권과 관련된 내용에서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차별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고 인권이란 큰 범주 내에 외부에서의 차별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고 군 인권에서 차별을 다뤄야 하나,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존엄만큼 어렵습니다.”

## ② 학습자의 이해가 어려운 콘텐츠

군 인권교육 FT\_03과 군 인권교육 FT\_04는 학습자가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기본권의 제한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인권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지만 학습자의 충분한 이해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1은 지휘권과 장병 인권의 관계가 학습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콘텐츠라면서, 지휘관인 학습자와 장병 학습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지휘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 (기본권의 제한) **군 인권교육 FT\_03** | ① “맨 앞에서는 우리는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데 약간 인권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본 교재에 등장하는 기본권 제한 관련 법령은 이렇고 해서 우리가 제한받는다. 제한받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권리가 모두에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은 하지만 그걸 뒷부분에 다시 우리가 인권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봐줘야 된다는 부분을 알리는 부분이 부드럽게 넘어가기는, 딱 잘라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② “예를 들면 진료권에 보면 법적으로 개인의 진료권, 휴가 가서 청원 휴가가 3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한받는 건데 그걸 인권적으로 풀어보면 지휘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명령이니 법령이 3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야 30일까지밖에 안돼’라고 끊지 말고, 30일이라는 것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더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일 외출 제도를 통해서 진료권을 계속 보장해 주면 되지 않나, 다만 다른 장병들이 그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인권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하는데. 딱 잘라 말하면 30일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인원은 3일을 넘어서 다른 부분으로 보장하고 있냐라고.”

☞ (기본권의 제한) **군 인권교육 FT\_04** | ① “네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부분을 공감시키는 게, 제가 아무리 인권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얘기하고 인권이라는 주제를 친근하

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조직의 특성상 앞에서 있는 교관 또한 군복을 입고 있는 상급자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 군 내 인권교육 자료에 상관 임무, 정당한 명령, 그럼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제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달하기 어렵다라기 보다는 청중의 공감을 얻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② “맞습니다. 저 또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계급을 갖게 된 순간부터는 저도 특정 기득권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의 관계) **군 인권교육 FT\_01** | ① “지휘권과 인권의 사이죠. 모든 학습자들은 머릿속에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갖고 있어요. 인권 때문에 지휘권이 하락하고 있다고. 이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② “간부 교육할 때 지휘권에 관해서 설명할 때는 그 표현을 제가 처음 썼거든요. ‘온전한 지휘권’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온전한 지휘권이 뭘지,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온전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데, 이 온전한 지휘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 문제를 사례별로 매번 하기 때문에 종교 문제에서 가장 많이 와 닿던 것 같아요. 대부분 지휘관들은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종교에 대해서 같이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마음 속으로 본인이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같이 해주면 정말 좋은데, 대부분 같이 안 하죠. 같은 종교 갖고 있어도 지휘관이랑 같이 안 가거든요. 통상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하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본인은 강제한 건 아닌데 한 번 권유를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때 뭐를 예를 들었냐면, 과거 안희정 지사 그 관련 사건을 예로 들었거든요. 카톡에다가 ‘크크’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처음에 재판부의 무죄를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냐 그 사이에 있는 암묵적인 존재만으로도 그러지는 그러한 강압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휘관과 부하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언정 우리 관료 세계에서는 암묵적인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휘관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한마디 던지더라도 여기에 대한 지시 사항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부하의 입장에서는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면 그 와중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당연히 발생되게 된다는 거를 놓고 그럼 온전한 지휘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적으로 대화하는 와중에 이것이 상대방에서 대화의 주제가 나와 가지고 그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모르겠으나, 지휘관이 의도를 가지고 가서 대화의 주제를 꺼내버리면 이미 모든 대화의 주제는 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침해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는 다분한 요지가 있다.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주 있어요. 또 안희정 지사의 예를 들으면서 암묵적인 강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깐 모든 간부들이 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죠. 간부하고 용사하고 있었을 때도 분명히 저는 농담을 하고 저는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지만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 했었죠.”

### (5) 부대별\_직무별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

군 인권교육 FT들은 군별 상황과 문화 그리고 직무에 따른 인권교육 콘텐츠의 차별성이 필요하고, 기

존의 학습자 분류에 추가학습자 그룹을 보완하고 추가학습자 그룹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① 군별 상황과 문화에 따른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 필요

군 인권교육 FT\_01은 해병대, 공군과 육군의 군과 장병업무의 특성, 조직문화에 따라 인권교육 콘텐츠의 차별성과 콘텐츠별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예컨대 해병대의 경우는 명령과 복종의 획일적인 지휘가 강조되는 문화로 사고 발생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인권교육 콘텐츠의 방향과 중심을 잡아가야 하고, 공군의 경우 다른 군보다는 자유롭고 선진적으로 사회와 발맞추어 가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교육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군 인권교육 FT\_02는 해병대, 공군, 해군 등 부대별 업무 공간과 업무 내용의 특성을 파악하여 인권교육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해군의 경우 좁은 선상에서 사생활의 보호가 미흡한 채로 장기간 선상에 고립되어 생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군과 차별성을 가지고 인권교육 콘텐츠를 기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병대의 예) **군 인권교육 FT\_01** | “그리고 여기서 해병대는 교육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병대 교육을 가면 귀신 잡는 해병 하면서 이게 하나의 팀 단위 문화, 그다음에 지시하면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런 강인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사이사이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각종 사례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 들어가서 군 인권 정책 권고 사항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고 나서 거기에 해병대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가 이번에 인명구조 나갔다가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획일적인 지휘사항으로 인한 사고들, 물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병대 측에서도 공감할 수 있게끔 그 포인트를 맞춰주고. (...하략...)”

☺ (공군의 예) **군 인권교육 FT\_01** | 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상 큰 테두리 안에서 해병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네 군으로 나뉘지고요. 제가 교육을 다닌 게 공군의 초빙 강의 갔었고, 제작사 그러니까 지휘부죠, 지휘부도 갔었고, 그다음에 해병대도 다녀왔었고, 외부 초빙 강의를 또 몇 번 이렇게 갔었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마다 조직 문화가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퇴근제 생활관 개념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기생활관 공군 같은 경우는 다, 나, 까를 예전부터 안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로 짧게 안 깎죠. 공군은 어느 정도 두 발의 자율화가 있습니다. 스포츠형의 자율화 단정한 머리, 그다음에 퇴근제 생활관이기 때문에 16시가 되면 저희는 그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하고 체육 활동을 하죠. 공군은 예전부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② “공군의 문화 중에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면 거기에 대한 내가 지켜야 될 책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포인트를 맞춰서 살짝 강의 포인트로 넣어서 교육을 해주고. (...하략...)”

☞ (육군의 예) **군 인권교육 FT\_01** | “거기에 반해서 육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다,나,까 사용하고 있었고 퇴근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러 가지가 동기생활관제도도 없었고 그러다가 17년부터 그게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영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육군에서 내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공군의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육군도 다,나,가가 없어지고 또 압존법이 폐지되고, 16시 되면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자기 개인 체력 단련하면서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게 17년부터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정착된 거는 불과 한 3년밖에 안 돼요.”

☞ (해군의 예) **군 인권교육 FT\_02** | “저는 일단 국방부 FT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육군 소속이기 때문에 물론 해군, 공군, 해병대가 다소 부대 환경에 따라서 콘텐츠가 다른 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이라는 배를 타면서 배 안에서 생활할 때의 그런 병영 생활이 육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 안에서 자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자는 거와는 다르게 배 안에서는 침상 자체가 굉장히 비좁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침해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 (공군과 해병대의 예) **군 인권교육 FT\_02** | “공군도 마찬가지로 또 해병대 같은 경우는 섬이라든가 도서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외부하고 굉장히 많이 차단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군별로 그 상황에 맞는 사건 사례가 다를 것이고 그에 걸맞는 대응책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이 각 군별로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② 직무별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 필요

군 인권교육 FT\_04는 직무자 과정 교육이 인권업무 종사자라는 과정명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콘텐츠에 있어 차별성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4** | “제가 지금 23년도 국방부 인권교육 보니까 수사, 의료, 법무, 모니터링, 상담관, 교도관, 훈육관, 예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권 업무 종사자라는 교육 타이틀로 교육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 ③ 기타\_추가 학습자 그룹 분류 및 콘텐츠 개발 필요

군 인권교육 FT\_01, 군 인권교육 FT\_03 그리고 군 인권교육 FT\_04는 기존의 학습자 그룹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몇 그룹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학습자 그룹으로 추가 분류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군 인권교육 FT\_03은 지휘권 행사 주체인 행정업무자와 병력통제관리간부를, 군 인권교육 FT\_01은 부대별 보직자를, 군 인권교육 FT\_04는 훈련병 교관을 학습자 그룹으로 추가 분류하여 각각에 필요한 인권교육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휘권행사 주체\_행정업무자/병력통제관리간부) **군 인권교육 FT\_03** | “각 군까지는 제가 생각



을 못해봤는데 직무라도 병사들과 밀접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대대급 이하 제대 그러니까 육해공군 다 비슷한데, 병력들을 지휘하거나 병력들을 통제하는 부서에 있는 그 직책에 있는 간부들과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렇게 한 3개 분류로 나누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권 교육은 말 그대로 지휘관이.”

☞ (부대별 보직자에 따른 학습자 구분과 콘텐츠 개발) **군 인권교육 FT\_01** |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군 인권교관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탱크 부대를 갈 때가 있고 항공기 부대를 갈 때가 있고, 일반 소총인 보병을 갈 때가 있고, 산악에 있는 특공대를 갈 때가 있고, 그 부대마다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만약에 교관들이 초빙 강의를 가겠다, 탱크 부대를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화 특징을 빨리빨리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육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 부대 조회를 다 해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막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강의 계획을 잡거든요. 그래서 물론 강의하면서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핫 스팟들이 딱 하면서, 똑같은 콘텐츠 가지고 전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벌써 한 30분 지나면 꼬박꼬박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집중이 딱 오고 있구나,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육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 (훈련병 교관 추가) **군 인권교육 FT\_04** | ① “제 경험상으로 보자면 저는 ○○년이라는 군생활 중에 ○년 반이라는 시기를 훈련소에서 보냈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서 ○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그 ○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군복을 처음 입고 군부대를 처음 밟고 결국 사회에서 이 군대라는 식사를 처음으로 뜨는 인원들을 가르쳤는데도 ○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② “제가 그 인원들의 교관이 되기 위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을 자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도 하루에 취침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만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만큼의 완성된 교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훈련병들을 가르치는데도 내가 받았던 그 4개월이라는 지옥 같은 교육 어느 곳에서도 이 인권이라는 주제를 빠져리게 느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③ “근데 제가 인권이라는 주제를 최근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시간이 ○년 반입니다. 나를 보는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내가 군의 첫 이미지고 때로 누군가한테는 마지막 군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당시 저는 강한 군인이라면 당연히 버텨야 된다,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당연히 누릴 수 없다, 라는 인식으로 제가 그 인원들을 교육했고 그 인원들에 대한 인권이나 기본권 침해도 무수히 많았던 걸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는 지금도 1년에 부사관 학교라는 곳에서 8개월이라는 그러니까 4개월씩 두 번을 최고의 우수한 교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양성되는 모든 인원들이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부사관학교 등에서 처음 군복을 입는 인원들의 교관이 되는데 거기서 인권이라는 주제가 더 많이 신념화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④ “지금 국방부에

서 주관하고 있는 군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의 훈육관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훈육관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단이나 신병교육대대에 교관을 하고 있는 훈련부서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 교관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 2) 군 인권교육의 도약을 위한 논의

### (1) 군 인권교육 콘텐츠 발전 방향

군 인권교육 FT들은 군 인권교육 콘텐츠의 발전 방향으로 군 인권교육 내용의 확장, 선사례와 긍정적 내용의 콘텐츠 개발, 기존 인권교육 콘텐츠의 업데이트, 맥락과 배경 중심의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 ① 군 인권교육 내용의 확장

군 인권교육의 확장을 위해, 군 인권교육 FT\_04는 세대별로 차별화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술했고, 군 인권교육 FT\_02는 장병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초급 간부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거나 미흡하므로 이 부분 콘텐츠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3는 지휘권 교육이 법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초급 간부와 행정가 각각 현장에서의 인권 적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다른 부서 등과 협업해 다양한 인권 주제를 포함하는 교재를 제작한다면 더 많은 군관계자가 접할 수 있는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세대별 매체 특성 고려) **군 인권교육 FT\_04** | “근데 이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대부분의 장병들이 독서라는 주제보다는 스마트폰과 모바일이라는 주제에 더 친근해져 있는 상태인데 군부대 도서관도 거의 무용지물화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사회에서도 1년에 읽는 건수의 책이 한 권이 안 되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는데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책의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는 인원들은 자기 자격증 취득과 자기 공부를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지 (...)”

💬 (특정 학습자군 추가 및 콘텐츠 개발) **군 인권교육 FT\_02** |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콘텐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뿌린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군에서 가장 많이 인권을 제시하고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병사들이죠.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 바로 초급 간부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하사 중사 중위 소위들. 인권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취약하고 노출돼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개 그룹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 그룹에 대한 스페셜한 어떤 영상 쇼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군은 장병들 우리나라 병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권이 완화돼 있고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는데 그들을 관리하고 밀접하게 생활할 수 있고 가장 최전선에서 생활하는 초급 간부들에 대한 인권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것 때문에 요즘에 초급 간부들이 애로사항이며 건의 사항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초급 간부들에 대한 이런 인권 콘텐츠 영상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거에 대한 사례가 만약에 필요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병사들은 정말 항상 고충을 당하고 힘들 거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그들의 인권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간부들이 많다 보니 이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라든가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특정 학습자군 추가 및 콘텐츠 개발) **군 인권교육 FT\_03** | “지휘관은 지휘권에 관련된 교육 받기는 하는데 이렇게 법령에 의한 교육만 받다 보니 이걸 침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걸 제한이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정도의 교육이고, 나머지 두 부류는 통합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 직무적인 인권의 내가 뭐 어떤 부분을 봐줘야 되지, 어떤 부분을 생각해줘야지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제한이, 이걸 침해, 정도로만 됩니다. 그래서 병력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제대들은 병사들의 기본권을 시행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봐주고,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시행하는 제도에서 올라오는 건의 사항이나 아니면 시행하는 어떤 제도를 내릴 때 인권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야전 제대에서 제한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인권적으로 봐줘야겠다라고 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이렇게 한 3개 분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각 직무에 맞는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군인권 교재 기획) **군 인권교육 FT\_03** | ① “결국에 국방부의 기본 인권 교재를 다양한 인권 연대들이 같이 만들면, 최근 작년에 처음으로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이 군대 내의 책자에 들어왔어요.”, ② “좀 더 확장된 인권을 바라보려면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만들어서 인권 교재가 만들어진다면 기본 양성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활용하고 야전에서 그 교재를 보고 이러한 부분도 인권에 대한 범주에 속하는구나, 우리가 알아야겠구나라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표준 교재는 제가 알기로는 인권 교관이 아니고서는 안 보는 교재입니다.”

## ② 선사례와 긍정적 내용의 콘텐츠 개발(긍정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은 소재 발굴)

군 인권교육 FT\_04는 뉴스에서 나오는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그것이 군 전반의 인권상황의 바로미터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어 인권교육의 주요한 사례로 소개되는데 그러다 보니 군 인권교육 사례 내용들이 자극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부정이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보다는 군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4** | ① “그러니까 군내 인권이 좀 대한민국 국내 인권이 화두가 됐던 거는 결국 20년도 초반 때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특정 사고 사례들이 가시화가 돼서, 인권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발전이 되다 보니 특정 안 좋은 사건

사례들이 교육 자료에 탑재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는 뉴스화 된 사건들 결국은 특정 사건들이 뉴스화됐을 때 군 조직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탑재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는 부정적인 내용의 교육 자료로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안 좋은 사건 사고에서 의미를 찾아서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다로 발전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내용들을 전파해서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 또한 이제 군내 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빨간 글씨가 아닌 파란 글씨 안에서의 의미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의료권이 보장받지 못해서 그냥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아프고 사고 났던 사례들을 얘기한 다기보다는 저는 변화돼온 의료권 보장을 위해서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발전시켜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즉 긍정적인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긴 합니다.” ② “군내 교육 자료에서는 사고 사례들이 많이 탑재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론 특정 이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하긴 하지만 뉴스 기사의 제목들이 노출됐을 때에는 저희도, 사회에서 봤을 때도 가해자가 뉴스에 뜨는 게 아닌 피해자 이름이 뜨면서 무슨 무슨 사건으로 뜨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이긴 한데 군내에서 아직까지 효과를 봤을 때에는 조금 그런 의미가 (...)”, ③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뉴스에서 들어왔던 사건들, 과거에 들어왔던 사건들, 가십거리가 한 번 썩은 뻤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게 과연 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 ③ 기존 군 인권교육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군 인권교육 FT\_01은 군 인권교육이 국방부와 각 군이 생산한 콘텐츠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은 인권의 콘텐츠가 최대한 집약적으로 모아져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랜 세월이 누적된 콘텐츠들의 업그레이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2는 군인권 환경이 개선되었고 세대가 달라진 상황에서 기존 사례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거의 60~70%는 거기(국방부와 각 군이 생산한 콘텐츠)에 기반하죠. 거기에 기반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진짜 집약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활용을 하더라도 근데 단지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는 단점은 있어요.”, ② “그래서 제가 쓸 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60%를 놓고 쓴다면, 나머지 10%는 거기에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만드는 거, 30%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만의 스피치들이 녹아들어가는 거 중간 중간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군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책자라든가 동영상 그다음에 ppt 자료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마 대부분 대대에서 처음에 강의 시작하는 교관님들은 제가 장담하건데 100% 활용합니다. 그거 활용 못하면 강의 못합니다.”, ③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내용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조금 너

무 비약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근무를 하던 시절의 버전이 아니고 디지털 전투복을 입고하는 지금 현재의 버전으로 문구부터 시작해서 관련 내용부터 시작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우리 군 인권 표준 교재 196페이지짜리 5페이지짜리 있잖아요. 그 버전 자체도 이미 과거 버전이라는 거죠.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과거 버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현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상당히 과거 버전이란 거죠.”, ④ “그런 것들을 콘텐츠 자료로 해서 묶어놓으면 교관들은 그거 아마 활용 안 할 겁니다.”

☞ **군 인권교육 FT\_02** | “발간물은 일단은 저희가 종합적인 우리 교안에 보시게 되면 사례가 있는데 사례가 점점 진화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침해 사례가 예전에는 a 병사가 b 병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그간 약간 고정화돼 있는 틀에 있는 사례지만은 지금은 장병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계속해서 젊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관련된 사건 사례들을 조금 더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④ 원인과 맥락 중심의 교육

군 인권교육 FT\_01은 군법교육은 결과에, 인권교육은 원인과 맥락에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과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법교육과 달리 인권교육은 사안의 원인과 맥락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1** | “우리 군법 교육할 때는 원인은 이미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인권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저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원인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합니다. 일반 법무교육가들의 사례를 딱 열어놓고 보면 적어도 저희 FT 4명이 보는 시선은 살짝 다른 데 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 (2) 군 인권교육 콘텐츠 심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 ① 인간의 존엄

군 인권교육 FT\_03은 교안에 ‘인간의 존엄’이 나오기는 하지만 존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면서 교수자로서 ‘존엄’이라는 주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강의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3** | “그리고 국방부 표준 교안에서 존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존엄이 어떻다라는 것을 교육하고 있지 않아서 존엄이라는 부분을 제가 잘 소화해야 이야기를 할텐데 그래서 존엄이 제일 저는 어렵습니다.”

## ② 기본권 제한 중심의 한계 극복

군 인권교육 FT\_03과 군 인권교육 FT\_04는 군 인권교육은 군의 특성상 기본권 제한이라는 콘텐츠가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통해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기본권 제한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거의 권리 주체자의 교육은 하고는 있는데 권리 주체자의 교육이 인권 제한이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 값으로 그냥 우리는 인권,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뒤에 할 이야기인데 인권 침해, 인권 제한이 기본 옵션으로 교육을 먼저 다들 하시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제한받는 게 당연하고 제한 받을 때 이 부분은 좀 덜 제한 받는구나, 라는 이런 교육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② “지휘관은 지휘권에 관련된 교육 받기는 하는데 이렇게 법령에 의한 교육만 받다 보니 이걸 침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걸 제한이니까 가능하구나 이런 정도의 교육이고, 나머지 두 부류는 통합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 직무적인 인권의 내가 뭐 어떤 부분을 봐줘야 되지, 어떤 부분을 생각해 줘야지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제한이 이걸 침해 정도로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제대들은 병사들의 기본권을 시행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봐주고,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시행하는 제도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시행하는 어떤 제도를 내릴 때 인권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야전 제대에서 제한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인권적으로 봐줘야겠다라고 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이렇게 한 3개 분류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각 직무에 맞는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네, 지금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특히 군내 인권교육에서는 기본권 침해와 제한에 따른 차이, 그다음에 조직의 특수성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권 침해가 뭐고, 제한이 뭐다, 침해와 제한의 차이도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제한이라는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금 말했던 군 조직의 특수성에 따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 부분은 법적 근거를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선이 더 많이 퍼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③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이해에 기반한 법령 및 사례 교육

군 인권교육 FT\_03은 군 인권교육이 법령과 사례교육 중심으로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지만,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과 사례교육이 우선된다면 운전면허와 같은 기술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군 인권교육 FT\_04는 더 나아가 이런 법령과 사례 교육 위주의 군 인권교육을 인권의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콘텐츠 중심의 교육으로 재기획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실제로 교관님들이 야전에서 필요한 교육은 인권 침해 사례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대에서도 인권교육을 요청하거나 할 때 사례별 교육을 자꾸 해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권교육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좀 사례적인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인권의 어떤 본질이나 인권의 구조나 침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짧게 하고 그냥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듯이 이걸 인권 침해 아니 이걸 4번 5번 정도의 교육으로만 하고 마무리되는 그런 교육으로 조금 진행되는 부분이 인권교육을 하는 데에서는 조금 현장의 목소리일 것이고.” ② “지금 현재 저희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운전면허식 그 사례만 있고 그 뒤에 내용이 너무 짧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권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나다 보니까 토의한 학습자들도 알고 있는 답을 교관이 다시 말하는 부분이라서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교관이 좀 더 이야기한다면 학습자들도 우리의 이야기가 이러한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된 얘기구나, 맞구나 아니구나,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다. 그게 부족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③ “좀 변화된 게 예전에는 법적인 거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수행하는 적이 많았는데, 이거는 어떤 어떤 조항 때문에 안 돼, 이거는 가능해, 이렇게 딱딱 끊어서 밖에 할 수 없는 약간 법리적인 거였다면, 이제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이 부분이 법령에는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지휘권이라는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해석하면 충분히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건의도 하게 됐고 (…하략…)”

**☞ 군 인권교육 FT\_04** | “특정 자료들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저는 인권을 저 또한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하다는 게 분명히 알고 있지만 군내 인권교육 자료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인원들한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에 집중시켜서 뭔가를 전달을 해 주려고 한다면 저는 법령에 대한 해석 위주의 교육 자료들 또는 특정 사례나 역사들이 반복돼서 나열되는 자료들은 조금 과감하게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④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

군 인권교육 FT\_02는 야전의 현장에서는 인권과 지휘권이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해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2** | “인권과 지휘권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실제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필드라고 하죠, 실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이 야전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에도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격 훈련을 할 때 정말 실제

로 정말 사격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좀 큰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랬을 때 정말 이게 본인이 이 사람이 너무나 크게 말하고 나한테 폭언을 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격의 안정성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이런 진짜 군인들이 겪을 수 있는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인권과 지휘권에 연계해 지휘권이 우선이냐 인권이 보장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⑤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구체적 이해

군 인권교육 FT\_02는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교육이 단순히 어디에 신고하면 된다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떠한 구제절차가 있는지, 그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시뮬레이션 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2** | “마지막으로 실제로 내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 절차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 당했을 때는 몇 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도 보고 응대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명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구제 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플로우차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⑥ 인성, 감수성보다는 인권에 기반한 콘텐츠

군 인권교육 FT\_01은 군에서의 인권교육이 인성교육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하면서 인성교육과 구분이 필요하고 분명한 구분점이 있다고 진술했다. 군 인권교육 FT\_03은 군의 UCC 등의 대부분의 내용이 존중과 배려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마치 서로 존중하면 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인권교육을 보니까 너무 감수성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인권하는 사람들은 감수성 쪽으로 많이 치우쳐버리면 인성 교육이 돼버려요. 그래서 군에서도 인성 교육하고 인권교육은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않지만 분명히 구분점은 있어요. 저희 군인들은 항상 인성 쪽으로 한 90% 치우쳐 가지고 교육하는 경향이 있어요.”, ② “교육 자체가 자꾸 인성 쪽으로 살짝 흘러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제 스스로가 받았거든요.”

**☞ 군 인권교육 FT\_03** | “인권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문화를 조금 넓히기 위해서 인권송이나 인권UCC 이런 거 국방부에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뽑고 상금도 주고 이렇게 각 공지도 하는데,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존중과 배려만 있는 거 아닌가. 존중만 하면은 인권적으로 다 보장되는 거 아닌가. (...중략...) 그렇게 가면 활용성이 더 있을



텐데, 그냥 서로 하하하호하면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인권 존중합시다, 나 너 좋아해 아니면 나 너 존중할게 그러면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막 웃는 모습 나오면서 대상 참 인권 소중하구나 좋구나. 근데 법과 기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그런 거는 전혀 약간 상반된, 그래서 예를 들면 감성 자극하는 권리로만 가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해서 상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활용할 때, 우리 야전부대 교관님들이 그거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인권송 국방부에서 대상 줬는데 그럼 해야지, 인권송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하면서 인권송 다 들어보면 결국엔 남는 건 존중과 배려인데 그런 것도 있고. 인권 영상 대상했다고 해서 딱 틀어서 딱 보여주면 다 좋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쉬워서 (...중략...) 본질적으로는 웃고 하는 게 다 좋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도 봐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영상은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봐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교관들도 그 콘텐츠를 제대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⑦ 소수자 관련 콘텐츠 보완

군 인권교육 FT\_03은 군대 내의 인권 교재에서 최근 혐오와 차별이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소수자에 대한 콘텐츠는 국방부의 특성상 전면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인권교육 중에 소수자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군조직이라는 이유로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해 다루지 않는 것은 인권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고, 소수자의 인권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다룰지 교관들이 알아야 인권교육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결국에 국방부의 기본 인권 교재를 다양한 인권 연대들이 같이 만들면, 최근 작년에 처음으로 혐오와 차별이라는 것이 군대 내의 책자에 들어왔어요. 되게 발전된 거죠. 근데 소수자나 이런 얘기들은 정말 한 페이지 될까?”, ② “급식 소수자, 성소수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국방부라는 조직이 다루기가 어려워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볼 때는 국방부라는 조직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려면 좀 더 확장된 인권을 바라보려면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만들어서 인권 교재가 만들어진다면 기본 양성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활용하고 야전에서 그 교재를 보고 이러한 부분도 인권에 대한 범주에 속하는구나,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표준 교재는 제가 알기로는 인권 교관이 아니고서는 안 보는 교재입니다.”, ③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교관님들도 일부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이러한 소수자가 있는데 어디 명료하게 이걸 어떻게 해줘라,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라, 뭐 이런 내용이 근거적인 게 없다 보니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라는 큰 조직 내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다루어서 인권교관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부대에서 인권적인 부분을 어떤 부분을 더 봐줘야 될지 라는 것을 좀 확장하려면 국방부에서 그걸 다뤄줘야 부대에서 계속 말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참고문헌 및 별첨

다. 지금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줄이 아니라 단어로 정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대신 급식 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루기 쉬워서인지 급식 소수자는 어떻게 해서 급식 절차를 어떻게 해줘라라는 절차까지도 조금 있습니다.”, ④ “많다라기 보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소수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텐데, 존재하기 때문에 교관님들이 우리 부대에 이런 인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도 그래도 FT의 어떤 법적인 근거나 국방부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논리나 기술된 내용이 적다 보니, 법령에는 예를 들면 다문화 장병은 차별하지 않고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 동등하게 장병을 대우해야 된다는 그런 국방부 훈령이 있다, 규정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다문화 장병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장병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분명히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발언밖에 하지 못해서, 국방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다뤄주면 좀 더 인권적인 내용의 어떤 학습이나 해당 부대에서도 교관님들이 활용하기에도 조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⑤ “네, 다른 교관님들도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라는 표현상의 소수자이지만, (... 중략 ...) 그게 식별이 되었건 안 되었건에 차이일 뿐이지. (... 중략 ...)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군이라는 게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 급식 소수자 이런 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인권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볼 때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넣어야 되고. 제가 교육을 할 때 한두 분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질문을 하셨다면 특정 부대의 이야기겠군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질의하신 것을 옆에서 듣는 교관님들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걸 볼 때 꼭 필요하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혐오와 차별이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국방부에서 바로 넣지는 않겠지만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⑥ “네, 교관님들이 많이 참조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참조를 해야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방향이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더 알아야 인권적인 눈이 생긴다라는 부분으로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⑧ 토론식, 사례별 수업 등의 인권적 마무리 콘텐츠

군 인권교육 FT\_03은 교관들이 토론식이나 사례별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마무리는 학습자의 발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학습자들의 토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권적으로 마무리하기에는 교관들의 역량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교관들의 입장에서 사례교육이나 토론식 수업의 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군 인권교육 FT\_03** | “꼭 다뤄야 할 것들이 인권 교관님들이 어떤 침해 사례나 아니면 토의 과정을 거쳐서 본인들끼리 어떻게 개선할지 방안들을 생각하게 하는 토론식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토론식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권적으로 풀 수 있는 교관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직무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을 인

권적으로 풀고 부대는 이랬으면 좋겠고 법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잘 토의는 했는데 강사 교관 입장에서 그걸 인권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그냥 각자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수준으로밖에 갈 수 없는 역량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토의하는 거를 인권위이나 국방부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사례별 지금 인권 사례별 조치 사항이 아니라 뒷부분에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조금 더 여러 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교관들한테 주시면 교관들이 토의는 이렇게 시키고 마무리는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 교관 입장에서도 조금 덜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 또 교육받는 학습자들도 저 사람도 잘 모르면서 교육하는 것 같더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별 교육을 하되 그 사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교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3) 기타

#### ① 접근성 고려

군 인권교육 FT\_03과 군 인권교육 FT\_04는 현재 국군 인권 교재는 발간되는 부수가 한정되어 있고, 특정 단위 배부선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일선 부대에서 교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최근의 국방부 인권 교재는 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권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4는 온라인콘텐츠는 IPTV로 국방 TV까지 찾아들어가 시청해야 하는 구조로, 현재 컴퓨터가 없는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장병이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국군인권 교재 수량 확충) **군 인권교육 FT\_03** | “광고처럼 예를 들면 노출되는 빈도 수에 따라서 활용성이 또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국군 인권 교재는 대대급에 발간되어서 배부되는 그 배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부가 만들어지면 어디 어디에 몇 부씩 대대에 한두 권 올까요?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대에서 한 권인가 두 권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많이 배부된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배부선이 조금 더 늘어야 되고, (...하략...)”

☞ (국군인권 교재 수량 확충) **군 인권교육 FT\_04** | ①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한데 부대의 병력이 300명이라 한다면 과연 이 책자가 그 부대에 몇 개가 있을 것인가”, ② “과연 몇 개 있어야지만 결국은 그러한 교재들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국방부에서도 정성을 다 해서 만들고 있고 저 또한 갖고 있는데, 결국 책이라는 거는 누군가 펼쳐서 봐야지 그 내용이 지식이 전달이 되고 함양이 되는 건데 과연 300명 400명이 있는 부대에 이 책이 몇 권이 있어야지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어떠한 대상들을 지칭해서 비치가 돼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배치되고 있는 수량들이 상당히 극소수의 수량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장병들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라기보다는 (...하략...)”, ③ “일단은 지금의 수량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 대대의 병력이 300명인데 그 책이 저희 대대에 3권 있습니다.”, ④ “문제는 그 책 세 권이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닌 한 권은 인사 실무자 자리에 있고 한 권은 지휘관 자리에 있다

면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과연 어디 있냐, 인권 교관인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책의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봤자 이 책을 펼치고 읽어야지만 지식이 전달이 되고 함양이 되는 건데 접근성 자체가 지금은 높지 않다라고.”

☞ (군인권영상 콘텐츠의 기술적 접근성 높일 필요) **군 인권교육 FT\_04** | ① “근데 인권왕이라는 영상을 저 책상과 컴퓨터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육군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인권왕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컴퓨터가 없는 현실 속에서 생활관에 있는 IPTV로 국방 TV까지 들어가서 국방 TV에서 인권왕이라는 주제까지 찾아가서 인권왕을 시청을 한다? 생활관에서 TV를 나 혼자 보는 게 아닌데 평소에 국방 TV도 안 보는데 국방TV 안에서 제작돼 있는 인권왕이라는 주제까지 접근해서 본다?”, ②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용사들 또는 저희 군 장병들 또한 결국은 스마트폰이 보급돼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군내 컴퓨터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IPTV로 찾아가서 봐야 되는 영상과 이러한 접근이 장병들 또한 전역하기 전까지 총 3회 또는 4회에 걸쳐서 또는 분기별로 내가 찾아 들어가서 시청을 하게 만드는 제도 절차가 생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② 포켓북/주제(챗터)별 형태 고려

군 인권교육 FT\_02는 앞으로 만들어질 교재는 항상 휴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포켓북 형태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군 인권교육 FT\_01은 인권 콘텐츠가 상호연관되어 있어 분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군 인권교육이 사례 학습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제별이나 챗터 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교관들이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 (언제,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도록) **군 인권교육 FT\_02** | “저도 충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재를 보게 되면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읽거나 아니면 그거를 교육 전에 그 책을 내가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여건상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간략한 핵심 내용 위주로만 정리된 포켓이라고 할까요? 카드처럼 생긴 어떤 그런 식으로 휴대하면서 내가 좀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강의 중간에 끼입어낼 수 있도록 포켓북 형식으로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주제별로 참고하여 볼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 FT\_01** |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공 작업을 해서 이거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챗터별로 뭔가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장황하게 쪽 흘러가거든요.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전형적인 책이죠, 책.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은 항상 케이스 스터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띄워 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뭐 뭐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챗터를 나눠 가지고 구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분을 주면 안 되고 다 호환 연관이 되고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없지 않긴 한데, 만약에 교관들로 하여금 교육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챗터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교관으로 하여금

이번 교육은 제가 이 챗터를 가지고 정독을 하고 공부를 해서 참고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 책에서 내가 공부할 방법을 찾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넘기다 보면 다 읽어야 돼요. 연결성이 돼 있어서 그걸 중간에 빠지는 못해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만들어주신다면 훨씬 더 윤택하게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거라도 정독하게 되거든요. 명확하게 근데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연관성이 다 있는데 하나로만 편중될 위험이 없지 않아서요.”

### ③ 외부 콘텐츠 활용 방안 고려

군 인권교육 FT\_04는 부대에서 UCC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유익한 군대 밖 사회의 자료들을 부대 내로 가져와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외부 콘텐츠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나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2** |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다른 인권 교육 연구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 활용을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군이라는 거는 인터넷망이 일단 차단돼 있고 또 군 내부 자체 망을 쓰다 보니까 자료 다운받기라든가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제도적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① “UCC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결국은 UCC를 많이 활용하게 된 목적 자체는 저희 군내는 또 보안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외부의 자료들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② “바깥의 사회에서도 인권이라는 주제로서 상당히 많은 강의 자료와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겠지만 그거를 군내로 갖고 오는 거는 이 보안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어내기가 그리고 저희 국방부 쪽이랑 얘기하시면 쉽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급 부대로 갈수록 그러한 타이틀을, 문제점을 풀어내는 데 솔직히 쉽긴 한데 결국은 이 군내 인권 교육의 목적은 이 말단 부대 최하급 부대에서부터 이러한 인권 교육이 체계화적으로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하급 부대로 가면 갈수록 외부의 교육 자료를 받기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가져와서 써먹기도 쉽지 않고 (...하략...)”, ③ “주제를 문제 삼거나 그런 타이틀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오는 절차상의 문제들도 있고 제도에 대한 보안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고 있는 보안 빨간 거 안 돼 이러한 법률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자료들을 전환시켜서 우리가 제대에서 활용하기에는 그런 자료를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부대도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갖고 와서 내 컴퓨터로 틀어준다면 군내에 있는 노트북으로 틀어주려면 저희는 당연히 USB 같은 부분들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료를 바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바꾸려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특정 부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부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3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 1) 주요 조사 결과

#### ① 군 인권교육의 의미와 목표

- 군 인권교육 FT는 군 인권교육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첫 번째,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두 번째 온전한 지휘권의 회복, 세 번째 전투력 향상 등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인권과 전투력 향상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당시 미군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했던 원인에 있다는 분석을 인용하며 강조하기도 하였다.

#### ② 현재 군 인권교육 활용 콘텐츠 자료

- 군 인권교육 FT는 국군교재, 국방부의 각군 표준 교안 및 자료, 관련 부서 자료, 군 인권 관련 온라인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자료는 군 인권교육 FT 또는 교관 등이 해당 부대의 장병들과 함께 자체 생산하여 동영상 자료로 활용하거나, 군내 생산된 각종 UCC를 활용하거나 ‘인권왕’ 등 2023년 영상물 등과 인터넷에 업로드된 각종 교안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진술하였다.
- 다만 인터넷에 업로드된 교안은 개인 교안이라 내용을 재구성해서 쓸 수는 없고, 국방부 각군의 표준 교안들에 기반해 교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표준 교안을 따라가면 군법교육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 한편 인권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 군에서 생산된 자료를 기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및 민간 인권 관련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그 외에도 필요할 경우 온라인 또는 문화(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도 수집하여 활용한다고 하였다.

#### ③ 군 인권교육 필수 콘텐츠

- 군 인권교육 FT는 군 인권교육 시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내용은 인권의 이해, 기본권의 제한, 군인의 권리, 인권침해와 권리구제 등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권의 이해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인권과 기본권의 이해, 쟁점에 해당하는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 특히 군 인권교육에서는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 인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당연히 제한될 수 있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다루는 내용은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되도록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절차와 효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규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할 경우, 단순히 금지되는 것을 도식적 또는 단답형으로 전달하는 방식(군법교육)이 아닌, 사안의 원인과 맥락 분석을 통해 인권적 기준을 습득하는 연습 과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④ 교육하기 어려운 콘텐츠

- 조사에 참여한 군 인권교육 FT는 ‘인간의 존엄’, ‘기본권(헌법)과 인권의 관계’,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 ‘차별’ 등을 교수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인간의 존엄은 국군 인권 기본교재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어의 나열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 군 인권교육 FT는 군 인권교육 내용 중 ‘기본권 제한’, ‘지휘권과 인권과의 관계’ 등이 학습자를 충분히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 ⑤ 부대별\_직무별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

- 군 인권교육 FT는 기본적으로 군별 상황과 문화, 직무별로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추가 학습자군 선정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지휘권 행사 주체, 행정업무자, 병력통제·관리간부 등 일군과 부대별 보직자에 따른 학습자 구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특히 훈련병 교관은 군의 첫 관문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교관으로서 군의 첫인상에 해당하고 훈련병들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으나, 훈련병들의 상황이나 맥락과 상관없이 ‘힘들지만 무조건 버티어야 한다’,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당연히 누릴 수 없다’는 등 비인권적이고 심지어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취할 경우 군 생활 내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훈련병 교관도 추가 학습군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⑥ 군 인권교육의 개선방향 및 콘텐츠 개선 과제

##### ○ 군 인권교육 개선방향

- 조사참여자들은 군 인권교육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무엇보다 우선 학습자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군 특성상 집체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인원을 최대 50명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으로는 인권교육의 확장성을 위해 세대별 매체 특성을 고려하고 특정 학습자군을 인권교육의 추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들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군 인권교육의 내용적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군 인권 교재 개발 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 한편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은 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자극적인 소재로 주목하게 하는 등 부정적인 콘텐츠가 적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선사례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도 능동적으로 제시해 보는 인권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결과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서사와 맥락을 기본으로 인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볼 수 있는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 ○ 군 인권교육 콘텐츠 보완 사항

- 조사참여자들은 군 인권교육 콘텐츠 보완 사항으로 인간의 존엄을 첫 번째로 제시했으며 존엄은 교안에는 단어로 등장하지만, 존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교육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기존의 교육은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신고처에 대한 단순 예시들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보완적으로 구체적인 절차 및 절차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거나 터부시되어 왔던 소수자 관련 콘텐츠는 군의 현실상 소수자가 통계적으로 일정 수를 넘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장병군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선 사항

-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선 사항으로는 우선 기본권 제한 중심에서 인권과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의미를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 또한 인권 개념과 구조의 기반 위에 구체적인 법령과 사례를 활용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상충관계로 오해하기 쉬운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를 인권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 2) 시사점(콘텐츠 개발 시 적용)

### ①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국방부 교재에도 '존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교관이 이를 활용해 인권교육 교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간 존



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교수자인 교관의 이해를 도우면서도 교관이 직접 인권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 ② 인권의 이해(인권의 개념과 구조)

군 인권교육 콘텐츠에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군 인권교육이 상호존중, 배려, 병영 갈등 해결 등이나 군법교육으로 흐르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관련 자료에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제대로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시에는 어떤 부분에서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 ③ 인권과 기본권

먼저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과 관계 매물되다 보면 인권과 기본권이 다른 것처럼 그 개념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권과 기본권은 본래 같은 의미라는 전제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헌법 제37조 제1항 등).

또한 군 인권교육의 경우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본권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는 중요한 인권교육 내용이다. 다만 그 설명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군인의 인권 제한이 당연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군 인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목적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것이지, 당연히 제한될 수 있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④ 군인의 정체성

군인의 인권 주체성과 기본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군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은 상충한다거나 인권이 전투력을 감소시킨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효율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는 앞에서 인권 개념과 구조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면 상당 부분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

## ⑤ 인권침해와 권리구제

군 인권교육에서 매번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는 하나 주로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구제를 포함한 군 인권 보장 체계의 인권적 의미와 절차에 대한 학습자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군 인권 보장 체계 속 절차와 연결된 실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거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론적 전략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 ⑥ 소수자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는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군대 내 소수자가 차별이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군조직 내 인권의식과 문화, 제도를 구축하는 토대로서의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 인권의식이나 문화는 아직도 많은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와 같이 군에도 다양한 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군에서의 관련 인권교육이 중요하다. 향후 정확한 콘텐츠에 입각한 소수자 관련 군 인권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소수자 인권 교육에서의 유의점이 여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즉 소수자를 대상화하여 인간 존엄을 손상하는 교육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도록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 인권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학습자가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구분 짓고 배제하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내용 구성이나 진행 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권의 핵심 개념과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인권교육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한다.

### ⑦ 차별

차별은 장병들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군의 특성상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육 내용 구성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교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차별의 명확한 의미와 군의 특성에 따른 차별 사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 II

## 군 인권교육 전문가 정책토론회 결과

### 1 정책토론회 개요

#### 1) 조사 목적

이 조사의 목적은 군 인권교육의 목표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인권교육 콘텐츠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핵심 주제들에 대해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 2) 조사 개요

〈표 36〉 군 인권교육 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23. 12. 6. 20:00-22:00 (2시간)
조사 참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인권교육 관계 전문가 4명</li> <li>국방부 군 인권콘텐츠 관계자, 전 군법무관</li> <li>국방부 군 인권콘텐츠 관계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li> <li>국방부 군 인권콘텐츠 관계자, 이주인권 전문가</li> <li>인권교육 및 정책 전문가,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li> </ul>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인권교육 목표 점검</li> <li>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li> <li>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설명</li> <li>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별</li> <li>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별</li> <li>기타 내용 제안</li> </ul>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심층토론(FGD) 방식의 정책토론회</li> </ul>
질문 문항 유형과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구조화된 질문지</li> <li>담당 연구진 질문지 설계</li> <li>연구진 회의에서 질문지 초안 보완, 최종질문지 완성</li> </ul>
분석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터뷰 녹취 → 녹취 해제와 클리닝(Cleaning) →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li> </ul>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참고문헌 및 별첨

### (1) 조사 시기

군 인권교육 전문가 정책토론회는 집단심층토론(FGD)형식으로 2023년 12월 6일 진행되었다.

### (2) 조사 대상과 참여 규모

군 인권교육 전문가 정책토론회는 군 인권콘텐츠 관계자, 인권교육 및 정책 전문가 등 4명의 군 인권교육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 (3) 조사 내용과 분석 방법

#### ● 토론회 내용 구성

- 토론회의 내용은 군 인권교육 목표 점검, 내용 구성, 군 인권교육의 쟁점 정리(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별,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별 등)로 구성하였다.

#### ● 분석방법

- 녹취 해제된 토론자료를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맥락과 주제어를 도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 2 주요 결과 분석

### 1) 군 인권교육 목표 설정

- 전문가 A는 단순한 지식정보 차원의 교육이 아닌 인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군이라는 조직에도 마찬가지로 인권규범이 필요하며 이것이 오히려 군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 등이 군 인권교육의 목표라고 제시하였다.

**💬 전문가\_A** | ①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 혹은 규범이 군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권이 군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를 설득시키는 작업, 인권이 군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 공유하는 것이다.”, ② “인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인권의 주체가 자신의 생활과 삶을 인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걸 도와주는 것”, ③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이 권리 주체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하고 인권의 수범자들에게는 당신들이 인권의 수범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④ “인권 감수성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극복하자는 주장이 필요하다.”

- 전문가 B는 인권교육이 개인적인 권리 차원에 머무는 인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시민성, 공동체

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차원에서 군의 경우 군 문화를 인권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군 인권교육의 목표라고 제시하였다.

**☞ 전문가\_B** | ① “인권교육에서는 개인적 권리 자유주의에 기초한 개인적 권리로서의 인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어떤 시민성이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부채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② “폭력이라든가 위계라든가 그리고 군대에서 비합리적인 것들을 결국은 군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인권 교육의 목표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민성을 기르느냐가 인권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 전문가\_C**는 간부 위주의 인권교육 운영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병사들에게) 어떤 인권내용을 보장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_C** | “간부 위주 인권교육 콘텐츠, 군에서 보장돼야 될 인권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사실상 지금 부분적인 어떤 콘텐츠를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 전문가\_D**는 군 인권교육은 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핵심은 병사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전문가\_D** | “병사는 징병이라고 하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생각한다. 지휘관들에게는 지금의 인권 교육 콘텐츠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특히 이 병사들의 입장에 대한 공감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국가안보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과연 합리적으로 형성되어서 분배되었는지조차도 지금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스스로가 이 병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인식하는 교육이 인권교육의 콘텐츠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 2) 군 인권교육에 담겨야 하는 내용

**☑ 전문가\_B**는 인권교육이 금지 가이드라인 숙지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소통과 합의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이어야 하며,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한 권리 교육이 아닌 각 권리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회 풍토로 만들어가는 인권교육으로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_B** | ① “인권 교육이 이렇게 규율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걸 인권 침해가 되고 이걸 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한국 사회의 교육으로서 바람직하긴가라는 고민과 회의가 든다. 어떤 아래로부터의 자기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민주적으로 합의되고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런 작은 사안 하나하나라도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합의해내고 그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② “노동하는 인간과 더

불어 어떻게 휴식하는 인간이 권리로서 중요한지, 그냥 군에서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사회로 돌아가서도 함께 이 권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 풍토로 만들어가는 이런 고민들이 조금 담겼으면 좋겠다.”

☑ 전문가 C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피해, 휴식권의 범위, 보상의 문제가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전문가\_C** | “말’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휴식을 침해한다든지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휴식권을 좀 더 너희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 역할 수행 자체가 휴식권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병사들 입장에서는 간부가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할 수 있고, 간부들 입장에서는 뭔가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나 피해를 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제가 최근 화두이다.”

☑ 전문가 A는 군 인권교육에는 군 조직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지휘권과 인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가\_A** | ① “인권 교육이 또 하나의 권리 교육을 뛰어넘어야 한다. 인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인데, 군대는 적의 살상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이 인권 특히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군 조직의 운영 원리인 지휘권과 인권의 관계는 어떤지와 같은 군 구성원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다.”, ② “가치와 권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군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인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장애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수용하는 걸 꺼리게 만들고 인권의 눈으로 자신의 삶과 생활을 바라보게 하는 걸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③ “이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군 조직 운영 원리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존재 목적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3)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이해

☑ 전문가 A와 전문가 D는 우리 헌법상으로도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은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었다.

💬 **전문가\_A** | “기본권은 헌법이 실정법으로 받아들인 인권이다. 더군다나 우리 헌법은 37조 1항을 두고 있어서 기본권에 대해서 오픈된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권리를 근거 없이 차등화 시켜가지고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해서 기본권은 보장이 됐는데 인권은 좀 후순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 전문가\_D** | “인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고 기본권은 기본적 인권의 줄임말이고 그럼 다 된다.”

☑ 전문가 B는 기본권이라고 불렀던 것을 인권으로 전환하고 인권에 대한 생각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적 해석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 체계의 한계를 확장하는 인권적 해석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전문가\_B** | ① “기본권이라고 사용해 왔던 것을 이제는 인권으로 표기하고 좀 계속해서 사유의 확장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국민국가 중심의 법체계 헌법 중심에서의 오리엔티드된 생각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인권교육의 원래 목표를 잘 이행하는 차원에서 어떤 국제적인 레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쟁점이 되고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유보된 내용들은 뭔가 이렇게 해서 좀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② “지금의 인권은 굉장한 사회권 중심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본권으로서는 아무튼 헌법에서 유보될 수 있는 사회권 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로 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에서 끊임 없이 사회적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저는 지금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유권과 함께 사회권 강의로 지금 군인들에게 좀 다뤄져야 되고 그리고 인권의 이름으로 조금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③ “사회권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수준을 어떻게 확보해내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 인권의 이름으로 확장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헌법 기본권의 보장이 안 되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권리가 너무나 배타적 권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인권의 이름으로 만들어갈 것이냐가 인권 교육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게 고민이다.”, ④ “그리고 기본권으로 얘기를 했을 때 헌법 1조 2항 등을 얘기할 때는 꼭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실 기본권으로만 얘기하면 이주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은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전문가 C는 인권과 기본권을 사실상 같은 것으로 교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한편 현실에서 현재 보장할 수 있는 인권과 보장해야 하지만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의 범위 사이에 갭이 있어 이 둘을 포함관계로 도식화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점이 현재 군 인권교육의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지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면서 보장을 조금 늦추겠다, 보장을 미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인권교육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고민이 있었다.

**☎ 전문가\_C** | ① “군인의 인권들을 실무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를 열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이라는 그 개별적인 내용들을 끄집어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법무관들이나 실제 군에서 법적인 업무를 종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보다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인권위의 결정례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좀 많이 존중을 하는 편이다.”, ② “사실상 구별이 되지는 않는다.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서 모든 인권적인 부분은 보장이 된다.”, ③ “「군인복무기본법」에 나와 있는 인권 개별 조항들이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 외에 다른 조항들도 인권적인 형태로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거는 왜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이나 실제 교관들이나 부대에서 그걸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④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인권적인 관점으로 따지면 언제든지 바뀌어야 한다. 언제든지 바꾸고 수용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국방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국제인권 쪽에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향후 적극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가치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보장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장을 조금 늦추겠다 보장을 미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교육으로서의 어떤 적절한 목적 달성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인권과 기본권을 사실상 같다고 그냥 뭉쳐놓고 다 교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장될 수 있는 인권과 아직 보장되어야 될 인권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약간 좀 포함 관계처럼 도식화가 돼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지금 군 인권 교육의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

#### 4)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변별

전문가들은 인성교육이 나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인성교육의 내용으로만 채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공동체 윤리 차원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존중과 배려 등은 인성교육의 내용이고, 인권교육은 이것을 국가와 사회의 역할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라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_A** | ①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이 뭐가 다른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다. 인성교육은 공동체 윤리를 가르치는 교육이고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그 공동체 종속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별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체 독립적으로 그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개인을 별개로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인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두 교육이 뭐가 다른지를 명료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다만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중요한 인권 교육이 있다. 공동체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존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② “우리 헌법은 이미 37조 2항에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 교육할 때 개인적으로 헌법의 태도를 함께 설명을 하면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



나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③ “인권 문제를 선과 악이 아니라고 하는 걸 항상 강조한다. 지금 인권 침해 사안은 그건 악이고 인권 보장은 선이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인권 강의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고 선과 악이 아니라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 지금 이야기한 균형이 뭐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를 정답이 없는 문제 그리고 균형을 찾아나가는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 전문가\_B** | 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이 상호 존중과 배려로 나가는 교육이 문제인 건데 그렇다면 상호 존중과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의 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권력의 위기 관계 속에서 어떤 관점을 보게 하느냐가 인성이냐 인권이냐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인성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화해롭고 조화롭고 야 이거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권리라면 사회적 약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무기는 인권 개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②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양쪽으로 날아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냥 인성은 어떤 양보와 배려 이런 것들 어떤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로워질 때에 우리 군이든 뭐든 이 사회가 인간다운 존엄이 같이 유지되는 사회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문가\_D** | “기업에서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인성을 갖춘 인재라고 한다. 우리 군에서 그냥 말 잘 듣는 순종적인 복종적인 인권교육은 안된다 생각한다.”

**☞ 전문가\_C** | ① “군에서 가장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인성 교육 차원에서 공동체 윤리인 것이고 인권 같은 경우도 군에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같이 인권을 함께 보장받아야 된다는 부분이다. 개별적으로 수용하거나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권의 수준은 다 다르다. 내가 보장받아야 될 인권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기준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균형 있게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군에서는 솔직히 필요하다.”, ② “이 공동체 윤리에 대한 부분의 인성 교육 차원의 관점만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가치 권리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를 속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③ “사람마다 제한의 어떤 기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제한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어떤 관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에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간부라든지 지휘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합리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그리고 그거를 좀 이야기해 주려면 결국은 인성 교육에 있는 공동체적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 5)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변별

☑ 전문가 C는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별개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두 교육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 구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인권이 ‘보장된다’는 내용과 징계나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충되기 마련이라 더 문제라고 하였다. 군법교육은 간단한 자료 배포 형식으로만 진행되어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전문가 A는 인권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전문가\_C** | ① “군에서 존재하는 징계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형법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절차적 기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장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교육을 하는 거 군법 교육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군인 기본법에 주어진 어떤 기본권, 인권적인 가치 부분들은 인권교육으로 빼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 ② “군형법 또는 군 징계 군 인사법에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보장받고 어떤 절차에 따라 구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만 군법에 빼놓으면 된다. 거기다 더해서 전쟁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또 군법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권적인 부분으로 다루는 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③ “총 2시간 3시간씩 교육을 여건을 주면은 다 보장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뒤쫓에는 이게 처벌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다. (...) 이게 그냥 군법무관 같은 경우는 법을 다루고 처벌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인권 교육을 하기에 솔직히 말하면 적절한 지위에 있지는 않다. 법무관들한테 가장 먼저 내려가는 거는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되니까 군법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건데 막상 가보면 그냥 종이 한 장 나눠주고 이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만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전문가\_A** | “인권 문제를 선과 악이 아니라고 하는 걸 항상 강조한다. 인권 침해 사안은 그건 악이고 인권 보장은 선이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인권 강의할 때는 항상 강조한다. 선과 악이 아니라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 지금 이야기한 균형이 뭐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를 정답이 없는 문제 그리고 균형을 찾아나가는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 6) 군 인권교육 콘텐츠 구성에 대한 제안

☑ 전문가들은 인권교육은 전문적 영역이라 단시간내 표준교안만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보다는 지금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통해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내용을 단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

였다.

**전문가\_A** | “이 인권 교육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간 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교안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그게 과연 적당한 방식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표준교안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휘관이나 부지휘관들이 교육하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전문가\_B** | “읽는데도 자기가 읽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지금의 교육이다. 기존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내용을 살려가면서 깊이 있게 해야지 똑같은 걸 읽더라도 반복적으로 읽어야지 전달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새로운 걸 갖다가 또 읽으라 그러면 정말 소화 불량에 걸리고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문제가 엄청 많지만 새로운 콘텐츠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_C** | ① “조금이라도 단편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겠다. 일단은 쉽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도 쉬워야 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도 일단 쉬워야 한다. 그게 정말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라 하더라도 그냥 많은 걸 주기보다는 핵심적인 거 하나를 가르쳐주는 걸 쉽게 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②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지금 기존 콘텐츠들이 많다. 인권위 쪽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조금 괜찮은 것들을 추려서 그거에 대한 장점만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다. 예를 들어 2시간짜리 콘텐츠도 인권위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정말 30분 만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인권위에서 2시간 정도 설명하는 것 중에 군과 관련된 콘텐츠만 딱 빼서 이 부분만 좀 바꿔서 한번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③ “분명한 거는 외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축소해서 정말 지엽적으로 가야 된다”, “병사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지금은 지휘관이나 간부들을 가르쳐놓고 그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1년 반이나 2년 사이에 거쳐가는 병사들한테 그냥 안내해 주는 것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좋다.”

### 3 시사점

#### 1) 군 인권교육의 목표 설정 시 참고할 사항

- 단순한 지식정보 차원의 교육이 아닌 인권이라는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군이라는 조직에도 마찬가지로 인권규범이 필요하며 이것이 오히려 군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 인권교육은 개인적인 권리 차원에 머무는 인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시민성, 공동체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군의 경우 군 문화를 인권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군 인권교육의 목표이다.
- 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병사들에게 어떤 인권 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 군 인권교육의 목표**

인권교육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군의 역할을 인권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럴 때 군내 인권 규범의 확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권리교육이 아닌 시민성 함양 차원에서의 교육목표를 가지고 군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휘관들에게는 병사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 2)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 시 참고할 사항

- 인권교육이 가이드라인 숙지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소통과 합의의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을 통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권리 교육이 아닌 각 권리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여 그것이 사회 풍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되기 위한 내용적 고민이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피해, 휴식권의 범위, 보상의 문제가 다뤄질 필요가 있다.
- 군 인권교육에는 군 조직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지휘권과 인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 내용 구성 가이드**

단순한 가이드라인식 콘텐츠는 인권교육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가지고, 인권교육이 구체적인 실생활 사안 등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군 조직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의 조화, 지휘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 가이드가 필요하다.

## 3)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콘텐츠 구성 방향

- 우리 헌법상으로도(제37조 제1항 참조 등)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은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다.
- 기본권이라고 사용해 왔던 것을 인권으로 전환하고 인권에 대한 생각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적 해석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 체계의 한계를 확장하는 인권적 해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것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하는 콘텐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현실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인권 문제를 숨기거나 다루기를 피하기보다는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전략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인권의 원칙과 가치, 관련 선사례는 제시하되 사안에 대한 결론을 정답식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4)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별 필요성

- 인성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인권교육을 인성의 내용으로 채워서는 안된다. 공동체 윤리 차원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존중과 배려 등은 인성교육의 내용이고, 인권교육은 이것을 국가와 사회의 역할로까지 확장시킨다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 → 인성교육이 아닌 인권교육!

이러한 점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이 단순히 개인 간의 존중과 배려로 마무리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 공동체에 대한 윤리를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에 대한 사명(duty)으로 확장하여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성과 개인의 시민성을 연결하고 균형을 맞추는 콘텐츠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 5)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구별 필요성

-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 인권이 '보장된다'는 내용과 징계나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충되기 마련이고, 인권 침해 사안은 그건 악이고 인권 보장은 선이라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군법교육과 인권교육은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되어야 한다.
- 인권교육에서 법 규정에 근거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때로는 유용할 수 있다. 법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중요성과 가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단순히 법 위반의 문제로만 이해되면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군법교육은 인권교육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 군법교육이 아닌 인권교육!**

위반해서는 안 될 법 규정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지는 군법교육은 인권교육과는 전혀 다른 결의 교육이다. 인권 문제는 개인의 일탈에 의하여만 촉발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군법교육의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면 인권침해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한 조직 문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즉 군 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 문화의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6) 군 인권교육 콘텐츠 구성에 대한 제안

- 인권교육은 전문적 영역이라 단시간 내 표준 교안만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보다는 지금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의 콘텐츠 개발이 인권의 이해에 대한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매우 구체적 내용으로 단편적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현장 인권교관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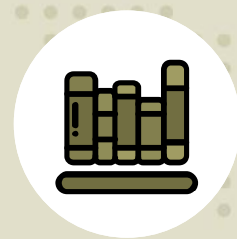
**→ 기본적인 내용을 컴팩하게 제시하는 콘텐츠 개발**

인권교육의 고도 전문성에 비추어 보건데, 새로운 콘텐츠 개발보다는 인권교육을 처음 준비하는 교관이 단시간 내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는 방식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야 한다.



# 제6장

## 군 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및 구성 가이드



- Ⅰ. 군 인권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 Ⅱ.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
- Ⅲ. 시험판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제6장

## 군 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및 구성 가이드



# I

## 군 인권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 1 군 인권교육의 목표

#### 1) 군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

#####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군 인권교육의 목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 ▶ 우리 군은 현재 인권교육과 관련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 구성원들의 인권역량을 통하여 우리 군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공동체로 끊임없이 전진하기 위한 것이다.
- ▶ 이는 「군 인권업무 훈령」 제12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군 인권교육 현장 교육을 준비하는 교수자는 이 조항에서 제시하는 같은 군 인권교육의 목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국내외 인권교육 문서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이 실현되는 공동체 구현, 인권교육의 목표는 이를 위한 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sup>13)</sup> 안에서 해석하도록 유의한다.

##### 군 인권교육의 목표-군인으로서의 인권 역량 지원을 통한 인권적 병영 문화 구축!

###### ◆ 군인의 권리와 책임 인식

군 인권교육을 통해 군인도 일반시민과 동등한 기본권의 주체인 동시에 국가를 대리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인권의 책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과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갖춘다.

###### ◆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확산

-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라는 것은 군 조직의 운영을 위한 각 제도와 정책이 군 구성원의 인권을 실현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성원의 인권적 역량이 필요하다.

13)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의 내용 참고

## 2) 군 인권교육 현장에서의 학습 목표 점검

- ▶ 현장에서 군 인권교육을 준비하는 교수자는 앞에서 확인한 군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진행할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학습목표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인권교육의 첫 단계-학습목표 세우기

#### ❶ 군 인권교육의 목표 재확인

- 군인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일차적인 목표와 이를 통하여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기른다는 궁극적 목표를 다시 확인한다.

#### ❷ 이번 교육에서의 구체적인 학습목표 세우기

- 위와 같은 군 인권교육 자체의 목표 안에서 자신이 진행할 구체적인 교육의 세부 학습목표를 세워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 ❸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학습목표

- 이번 교육에서 학습자가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권적 태도 변화나 실천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교수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교육의 결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 ❹ 교육상황과 학습자 분석에 기반한 학습목표 설정

이러한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교육 상황과 학습자 특성 분석(사회적 이슈, 군과 부대의 인권 상황 등 포함)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만일 준비되어 있는 교안 등 인권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자료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화와 실천력은 어떠한 것인지를 스스로 파악해 정리한다.

## 2

##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

### 1) 국가의 인권 보장 업무를 이행하는 실행자로서 책임

- ▶ 「대한민국헌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군의 역할은 국토방위와 국제 평화를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군 구성원이 이러한 군의 인권적 사명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역량은 인권교육을 통해 증진할 수 있다.

- ▶ 국가는 군 구성원이 이러한 군의 존재 이유 및 군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이해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군 인권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유엔 역시 「제2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2010~2014) : 고등교육에서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에서 군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다.

## 2) 군 구성원의 인권 보장

- ▶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이기 전에 시민이다. 모든 사람은 인권의 주체이며, 군인 역시 당연히 이 모든 사람에 해당한다.
- ▶ 군인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군 인권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구성원 스스로의 인권 역량 및 군 조직의 인권 문화를 증진하는 이와 같은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 ▶ 이와 같이 군 구성원의 인권적 관점과 생각, 실천력이야말로 군의 인권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는 진단이 거듭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이 우리 군을 진정하게 강한 군으로 만든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군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 Q | 군 인권교육을 법정 의무사항으로 둔 이유가 뭘까요?

☞ A | 군 인권교육을 의무사항으로 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 군이 수행하는 직무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군을 포함한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인데, 군인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권 보장의 업무를 하는 공직자이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공직자로서의 필수적인 인권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 제한이 아닌, 공직자로서 맡은 권한과 업무를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은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 군 구성원은 이러한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 II 군 인권교육 내용 구성


## 1 인권에 대한 정확한 내용

### 1) 인권의 개념: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 보장

- ▶ 인권의 개념 자체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존엄한) 삶’ 보장을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것이다.
- ▶ 인권교육에 있어 출발이 되는 이와 같은 기본적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 ▶ 많은 인권교육 콘텐츠가 이러한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서 많은 오류를 낳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인권의 구조: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 ▶ 인권교육에서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성’이다. 이러한 인권의 구조를 잃게 되면 ‘상호 존중’, ‘신뢰’, ‘경청’, ‘소통’ 중심의 인권교육이 아닌 교육이 된다.
  - 인권의 구조가 명확한 교육의 경우 인권 보장의 궁극적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국가와 군대(군인)의 관계도 명확히 제시하였다.
  - 인권의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 교육의 경우, 그 콘텐츠가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상호 존중 교육이나 좋은 의사소통 교육은 될 수 있을지라도 좋은 인권교육이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3)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와 개인의 도덕적 사명 구별

- ▶ 인권 보장의 책임을 지는 국가의 의무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도덕적 사명은 다르다.
- ▶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와 달리 시민성에 입각한 이러한 개인의 인권 존중 사명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 (물론 개인의 행위가 타인의 존엄의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는 국가 형벌권이 발동하

게 되는 것으로 인권적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4) 인권 ≠ 권익·이권·이익

- ▶ 모든 권리 주장이 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Human Rights)의 rights는 올바른·정당한(right)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권익·이권·이익 ≠ 인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이나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 자체로 인권으로 보장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 모든 이익, 권익, 이권, 권리 주장이 인권이라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 5) 인권의 역사

- ▶ 인권의 역사에서는 인권의 실현과 확장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인 사회 구성원의 끊임없는 인권적 자각과 희생을 감수하는 노력에 의한 것임을 공유하여야 한다.
- ▶ 우리 군의 역사를 다룰 때도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인권적 군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2

## 군인과 인권

### 1) 군인의 정체성

- ▶ 군인의 인권적 정체성을 기본권 제한의 틀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권 보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인권이 제한될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군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지휘권과 장병의 인권은 상충되거나 전투력을 감소시킨다는 쟁점을 지속적으로 낳을 수 있다.

### 2) 군 직무의 인권적 의미

- ▶ 「대한민국헌법」 제5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군의 역할은 국토방위와 국제 평화를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군 구성원이 이러한 군의 인권적 사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 군대의 존재 목적

헌법 제5조에 따르면 국군은 국제 평화유지 노력과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가집니다.

### 국가권력과 군대, 민주주의의 관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를 헌법의 전문, 제5조, 제10조와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우리 군 역시 시민에 속한 주권으로부터 나온 '시민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인간안보(Human Security)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군사적 침입으로부터 대응하는 전통적인 무력충돌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민주화, 법치, 정치적 자유, 문화 발전, 경제발전 및 복지, 인권 보장, 환경권 등을 포괄하는 인간안보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안보의 요소들이 불안정할 때 일어난다는 점에서 인간안보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 역시 전시상황이 아니더라도 재해 복구 작업, 민간인이 하지 못하는 위험 업무 등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간안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희 외, 2022: 229

## 3) 군 역사와 인권

- ▶ 군의 존재 이유, 군의 목적을 상실하고 군이 국가 권력을 위해 동원될 때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군 인권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 교육을 듣고 있는 학습자가 스스로를 가해자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의 의의를 해외사례와 함께 제시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럴 때 국가 폭력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이 국가폭력에 동원된 사회적 구조와 맥락을 살피는 사회적 성찰이 가능하다.

## 4) 군 인권 보장의 원칙과 제한과 그 한계

-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의의 설명을 통해 군인 역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임을 밝힌다.
- ▶ 그런 점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군인 인권 제한을 당연시해 왔던 지난 관행에 대한 사회 전체적 성찰과 경계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확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해석을 강조하면 효과적이다.
- ▶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한 논증 시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제한이 필요한 상황인지,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정도의 제한인지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한다.

## 5) 지휘권과 인권

- ▶ 지휘권과 인권에서 가장 핵심은 지휘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과 권리 제한의 정도를 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지휘권 행사에 있어 원칙과 사례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휘권은 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므로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지휘권의 역할임을 제시하여 지휘권과 군인이 인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6) 구체화가 필요한 군인 인권 분야

### ○ 의료권

- 의료권의 경우 사례 분석 방향 제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군대 내 의료권 보장 현실은 국가 책임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를 간부 개인의 책임으로만 읽히게 하는 것은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인 개선 모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 성희롱, 성폭력

-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를 포함해 다룰 필요가 있다.
-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최근 판례가 변경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 차별과 소수자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시혜적으로 접근하거나 대상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습자 중에 관련 당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고려가 필요하다.
- ‘도움’이나 ‘배려’와 같은 표현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시혜,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왜곡해 인식하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존재하게 되는 사회구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차별의 문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와 연결해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에 이를 실현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인권의 개념 및 구조에 맞춰 설명한다.

### ○ 통신의 자유

- 휴대폰 등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군 문화의 변화와 관련하여는 인권적 분석에 좋은 소재이다.
-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관행에 대한 성찰적 반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상황 조건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 **외국군의 인권 관련 선사례**

- 외국의 다양한 선사례를 군 인권교육의 콘텐츠로 활용하여 인권적 인식의 확장을 촉진한다.

**7) 권리구제 및 제도 개선**

- ▶ 권리구제의 인권적 의미와 절차 중심으로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곁들여 구제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 더 나은 군 인권 보장을 위한 주체로서 함께 하는 것이지 문제자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 ▶ ‘신고 의무’가 병사 간의 감시처럼 느껴지거나 군대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동료 병사의 책임으로만 이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이러한 제도를 통한 실제 인권적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여 제도에 대한 효용감을 높인다.
- ▶ 사법적 권리구제와 인권적 권리구제의 차별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교육 전반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

**1)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

- ▶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 ▶ 우리 헌법상으로도(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은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모두 보장함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002. 1.31.2001천바43)”

**2) 인성교육 및 군법교육과 구별되는 인권교육**

- ▶ 공동체 윤리 차원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존중과 배려 등은 인성교육의 내용이고, 인권교육은 이것을 국가와 사회의 역할로까지 확장시킨다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 위반해서는 안 될 법 규정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지는 군법교육은 인권교육과는 전혀 다른 결의 교



육이다. 인권 문제는 개인의 일탈에 의하여만 촉발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군법교육의 내용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면 인권침해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한 조직 문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즉 군 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 문화의 구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인권교육에서 법 규정에 근거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때로는 유용할 수 있다. 법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중요성과 가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단순히 법 위반의 문제로만 이해되면 위반 사실을 숨기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군법교육은 인권교육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 3) 인권은 수단이 아닌 목적

- ▶ 작은 표현의 차이가 인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인권과 전투력, 인권과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을 설명할 경우, 인권적 군조직의 결과로 전투력 향상과 국민적 신뢰 확보가 달성되는 것은 맞다. 반면에 이를 위해 인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 4) 인권(기본권)의 충돌

- ▶ ‘기본권 충돌’, ‘인권의 충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해결의 책임이 당사자인 개인에게로 옮겨지며, 인권 보장의 궁극적 책임을 진 국가의 작용은 퇴색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인권(기본권) 충돌은 모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이라는 인권의 구조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 ▶ 인권 보장은 개인들 상호 간에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에 작용하는 의무이므로 적어도 인권교육에서 ‘인권(기본권) 충돌’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

### 5) 사례를 통한 인권교육 진행 시 유의점

- ▶ 사례를 활용하는 인권교육은 사례 속 상황이 관련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인권 훈련,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해 그 대안을 모색하는 인권문해력 함양이 두 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한다.
- ▶ 인권교육은 관련 상황이 누구의 어떤 인권을 왜 위협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직 내 개선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 ◆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 선택의 5가지 기준

1.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사례인가?
2. 학습 내용과 관련이 깊은 사례인가?

3.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사례인가?
4. 인권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인가?
5. 현실의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례인가?

◆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 학습 4단계**

1. 사례의 명시적 내용 파악하기(표면적 읽기)
2. 사례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분석적 읽기)
3. 사례를 비교, 종합하여 의미를 해석하기(해석적 읽기)
4. 사례의 함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창의적 읽기)

◆ **인권교육을 위한 사례 구성 시 유의점**

1. 1. 인권의 의무주체에 대해 오해를 가져오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례를 가해자(개인)-피해자(개인)을 대립 관계로 두고, 가해자의 인성, 성향에 해당 사건의 초점을 두는 경우이다.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일깨우는 구조적 시각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인권침해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이 문제는 이점보다는 해가 많다. 폭력이 나쁘다는 걸 폭력적인 장면을 소환해서 교육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례의 재구성 시, 선정적이고 혐오표현 등이 노출되어 의도와는 다른 교육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지점을 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군 문화를 미화하는 언어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눈물 젖은 초코파이, 맞코, 비실비실 등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재미를 위한 감정적 발언, 사람을 희화화하는 발언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패널이 등장하여 감정적 발언, 혹은 재미를 위해 희화화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콘텐츠 내용 전달에 있어 유익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패널의 역할 등을 분명하게 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4. 중요한 사례를 다루되 선사례를 포함하고 학습자의 행동과 실천 방안을 염두에 둔다. 선사례 등을 제시하여 벤치마킹하도록 안내되어야 한다. 해당 사례의 배경과 이 사건이 지속되는 이유 등을 이해하게 하고, 이 사례들로 빠지지 않도록 개인이 해야 할 행동 가이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공동체의 인권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
5. 인권침해에 대응 방법으로 신고의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문제해결이 곧 신고, 처벌하는 것의 공식보다는 다양한 해결책 들을 제시되어야 한다.
6. 사례 재구성에서 악당이 등장하는 선악 구조, 원인분석이 잘못된 경우 등 사례를 재구성할 때, 단편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법적 방법으로 인권구제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군 인권침해 사례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의 상황 맥락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6) 이외 인권교육 시 교수자가 유의해야 할 점

1. 교육가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참여자들과 나눠야 한다.  
단어나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용어는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한다.
2.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나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 있을 때, 인권의 개념과 원칙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3. 교육 내용은 정확한 정보로 구성한다. 교육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교육자료 중 시간이 지난 내용은 다시 확인해 최신화한다.
4. 근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분류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5. 부대 일상에서 장병·지휘관이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인권침해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 실제적 방식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유엔도 인권교육에서 학습자가 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교육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0)

### 인권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 개발 가이드

- ① 인권의 개념과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다.
- ② 인권침해 발생 이유와 배경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제시한다.
- ③ 군 문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한 해석을 제시한다.
- ④ 인권침해 해결과 대응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 ⑤ 인권 보호의 모범이 되는 선사례를 포함한다.
- ⑥ 사례를 다루면서 새로운 인권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 ⑦ 영상에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표현에 대해 점검한다.
- ⑧ 근거가 빈약하거나 잘못된 인과관계가 없는지 점검한다.

# III 시험판

## 1 콘텐츠 내용 구성

▶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군에서 실행하는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교육대상에 따라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휘관과 병사에게 실시해야 하는 군 인권교육의 목표 설정이 다르다. 지휘관의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인권적 방법의 이해와 실천 영역에서, 일반병사의 경우는 인권의 가치와 태도의 이해와 실천 영역에 비중을 높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한 직무영역이 있다면 업무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 인권역량이 무엇인가에 따라 콘텐츠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본 시험판 개발을 위한 교수설계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 목적과 목표

#### ① 자신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한 인권역량 강화

- 지휘관 대상: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인권적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지휘관으로서 군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책임을 갖는다.
- 직무별 대상: 자신의 전문적 역할 내에서 인권 가치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문영역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책임을 갖는다.

▶ 설계 방향: 전문적인 역할 내에서 인권 가치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

#### ②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인권역량 강화

- 장병 대상: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인권 문제에 대응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쟁점의 맥락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행동 실천을 모색할 수 있다.

▶ 설계 방향: 학습자와 관련된 인권 내용으로, 학습자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 내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며 조화를 이루는 행동 요령 중심으로 설계

## 2)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 주요 내용과 주제

▶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휘관/장병/직무병에게 제공되어야 할 군 인권교육 주요내용과 주제(강의형식으로 제안)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7〉 군인을 위한 인권교육 주요 내용과 주제 예시

대상	주요 내용	주제(강의 제목으로 예시)
지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개념과 원칙</li> <li>• 인권의 가치와 태도</li> <li>• <b>직무의 인권적 의미와 역할</b></li> <li>• 인권침해의 개념과 기준</li> <li>• <b>군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b></li> <li>• 군의 인권 보장 체계와 제도</li> </ul>	
장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개념과 원칙</li> <li>• <b>인권의 가치와 태도</b></li> <li>• 인권침해의 개념과 기준</li> <li>• <b>군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b></li> <li>• 군의 인권 보장 체계와 제도</li> </ul>	1강 예시. 인권의 개념과 구조-인권이 뭐지? 2강 예시. 차별과 혐오에 대처-무엇이 차별인가? 3강 예시. 기본권 보장과 제한-인권에도 원칙이 있어? 4강 예시. 군인의 인권과 지휘관-군 인권은 달라? 5강 예시. 군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슬기로운 인권 생활 6강 예시. 인권침해 판단과 대응-우리 부대 인권은 내가 지킨다! 7강 예시.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왜 변화가 필요해?

## 2 콘텐츠 형식 구성

▶ 본 시험판에서는 장병을 위한 개념적 인권지식을 선별하고, 내용에 접근하기 쉬운 사례로 주제를 제시한 후 구체적인 활동을 제안하여 인권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모색하고 일상에서 인권을 적용해 나가는 방법에 주안을 두었다.

- 학습시간: 40~60분 이내
- 학습대상: 병사, 5명~25명
- 학습구성: 주제-문제제기-개념-활동-정보-교관 가이드(내용/운영 가이드) 순으로 배열
  - (1) 오늘의 인권 주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으로 구성된 사례 중심
  - (2) 생각해 볼 문제: 주제의 논의 방향에 대한 질문 설계
  - (3) 알아야 할 내용: 주제와 연관된 인권의 개념과 정보
  - (4) 추천 활동: 주제와 연관된 교육활동 제안
  - (5) 추가 정보: 관련 정보와 교육자료 목록 제공
  - (6) 군 인권교관 가이드: 내용 가이드와 운영 가이드 제공

# 3 콘텐츠 시험판 해설

## 1) 전체 구성

### ① 공통 - 군의 사회적 역할

**군대의 인권** + 군 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해설**

**인간안보 보고서(Human Security Report)**  
2005년 발간된 '인간안보 보고서(Human Security Report)'는 "민수정부의 중기 시 인 제적으로 부역충돌의 담요를 가세했다는 점을 통해 공격과 민주적인 정부운영 간에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군대**  
 ● 사회적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기능적 요인, 민주주의 수호라는 사회적 요인에 부응하는 것이 군의 사명  
 ● 이러한 사명을 임무로 하는 조직의 구성원 **군에서 시선으로** **가장적인 인권보장자에게 의하여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군대에서 인권을 말하는 이유**  
국가의 존속 여부는 인권 보장이다. 국가의 실체는 사람들이며 군인 인권은 보편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원: (광명 군대는 인권이 만다다다 제1, 제2, 2023 제4차 방정)

### ② 오늘의 인권 퀴즈

**오늘의 인권퀴즈** +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확인

**[오늘의 인권퀴즈]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인권일까?**  
(다음 질문, 인권 보장은 누구의 책임일까?)

국군에서도 병용 시간 소가... 저는 병에서 배대원의 식사를 담당하는 조공방입니다. 저는 병의 동료에게 맛있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보장을 느끼고 공생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팔고 조리한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 하고 건강한 공생함을 해 나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군복무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화안함을 지켜나가고 생각하니 이제 제법 사명감으로 안 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제와 친한 전우가 어떤 식사를 흥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계량식을 해야 하는데 병사사당의 음식이 너무 짜서 양껏 먹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늘 부족할 듯 하는 전우와 건강에 더 걱정되어 '병사사당'으로 여겨져 것 같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병사사당'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안락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전우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하다 누군가 이렇게 일에서 장거 중거나 본인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고민이 됩니다.  
출처: 인권위원회 2022.6.6. '병역 자유, 차관 자유' 관련 풍토적 개혁

### ③ 알아야 할 내용

**오늘의 인권퀴즈** + 알아야 할 내용

**인권**  
인권을 제대로 알기 위한 핵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게 존엄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 모든 사람은 인권을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의 주인  
●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확인하는 인권**  
인권이 권리로서 모든 사람  
인권이 권리로서 모든 사람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④ 사례 제시

**사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인권일까?**

국군에서도 병용 시간 소가... 저는 병에서 배대원의 식사를 담당하는 조공방입니다. 저는 병의 동료에게 맛있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보장을 느끼고 공생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팔고 조리한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 하고 건강한 공생함을 해 나가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군복무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화안함을 지켜나가고 생각하니 이제 제법 사명감으로 안 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밤, 제와 친한 전우가 어떤 식사를 흥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계량식을 해야 하는데 병사사당의 음식이 너무 짜서 양껏 먹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늘 부족할 듯 하는 전우와 건강에 더 걱정되어 '병사사당'으로 여겨져 것 같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병사사당'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안락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전우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하다 누군가 이렇게 일에서 장거 중거나 본인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고민이 됩니다.  
출처: 인권위원회 2022.6.6. '병역 자유, 차관 자유' 관련 풍토적 개혁

### ⑤ 인권토크(사례 토의/토론)

**오늘의 인권퀴즈** + 알아야 할 내용 + 인권토크

**사례 토의/토론**  
● 군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할 시민입니다.  
● 모든 사람은 인권을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의 주인/토론의 진행합니다.

1. 모둠 구성/역할 주기  
2. 개인의 존엄과 배려만으로 충분할까?  
3. 인권 강령에 보장이 있다면 무엇이 화란되어야 할까?  
4. 인권 보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 ⑥ 강의 마무리 - 학습내용 정리

**오늘의 인권퀴즈** + 알아야 할 내용 + 인권토크 + 학습내용 정리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  
인권교육  
...  
**존엄과 배려가 인권이 되려면...?**

대중의 시선을 끄기 위해 인권을 과잉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것은 원인과 대안을 먼저 공유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나와 너, 우리 - 국민자 참여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정리한다.

▶ **장병** ▶ **부대** ▶ **국방부**

▶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만큼 힘을 늘리는 것이 인권의 길입니다.**

### ⑦ 공통 - Q&A 인권 확장 질문

**인권교육**  
**Q&A 인권 확장 질문**

Q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책 만드는 것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모든 국민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만큼 존엄을 보장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은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인권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인권이 될 수 있다.

Q **군인의 인권과 사형권은 충돌할까요?**  
A 사형권은 범죄자에 대한 극한의 처벌이다. 하지만 군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인권 보장을 해야 한다. 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Q **필요조건 인권은 보장되는 것일까?**  
A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인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인권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인권이 될 수 있다.

### ⑧ 공통 - 관련 자료 소개(인권 더 알기)

**인권교육**  
**관련 자료 소개(인권 더 알기)**

▶ **인권교육**  
▶ **인권교육**  
▶ **인권교육**

### ⑨ 체크 아웃 활동(설문)

**오늘 참여한 인권교육을 통해 ...**

인권의 궁극적 보장은 의무는 국가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의 인권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인권과 같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개인적 차원의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권은 군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 조직문화와 제도 등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권보장을 위한 기구(가관), 제도와 정책 관련한 인식에 동의 부분의 제시되어 그런 제도와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권 보장이 궁극적으로 우리 군 조직이 모든 역량(전투력 포함)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2) 들어가기 전에-공통

### (1) 군 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이해

**군대와 인권** × + 군 조직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군대**

-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기능적 요청, 민주주의 수호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군의 사명
- 이러한 사명을 임무로 하는 조직의 구성원 **군인 역시 시민으로, 기본적인 인권보장체계에 의하여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

**인간안보(Human Security)**

유엔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 '인간의 안전 보장' 기준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의 보완적 개념  
각 개인의 안전, 풍요, 행복 추구 등을 안보화시킨 개념

**요한 갈통의 '평화'**

<b>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b>	<b>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b>
형의적 개념의 평화는 공포로부터 자유(freedom from fear)로, 폭력, 전쟁, 테러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광의적 개념의 평화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로, 경제적 풍요, 사회적 안정 등을 포함

**인간안보(Human Security)**

“역설적이게도 집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안보가 국가의 안보를 만든다.”  
Louise Arbour. 2005. 전 UN인권최고대표.

“인간안보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안보를 국제적 우선순위의 핵심에 두며, [...] 국제적인 인권 표준과 법의 지배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응집된 [...] 국제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다”  
Lloyd Axworthy. 캐나다 전 외교부장관.

“진정한 안보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Sérgio Vieira de Mello. 2003. 전 UN인권최고대표.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담고 있다.”  
2차 인간안보네트워크 각료회의. 2000. 루체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안보를 누리지 못하는 한 세계평화는 불가능하다.”  
UN개발계획(UNDP). 1994. 인간개발보고서.

- ▶ 군의 인권적 역할, 군과 인권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그간 군과 인권은 맞닿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군대와 인권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제공된 콘텐츠이다.
- ▶ 직무자 인권교육 첫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학습자 스스로 인권옹호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2) 군 인권 보장 체계 설명

**군대와 인권** × **인간안보와 평화** × **군인권보장체계**

**군인권보장체계**

국방부 → 군인권보호관 (독립기구(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 군인권개선추진단 → 국방부 내 인권전담조직

국방부 내 인권전담조직 → 각군인권센터 (육군인권센터, 해군인권센터, 공군인권나래센터, 해병대인권센터)

국방인권전담조직: 국방인권 모니터링단, 국방인권 실태조사, 군인권 개선협의회, 각 군 인권지원센터, 군인권 개선협의회, 군인권 지원본부

**군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개선추진단**

**각군인권센터** (카카오톡 상담채널 운영)

**육군인권센터**, **해군인권센터**, **공군인권나래센터**, **해병대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기능 설정**

국방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별도 예산이나 타부서 협조 등의 절차 없이 각 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휘관에 의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외 예산마련 등 중장기적 과정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각군 인권센터 및 부대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군인권지원본부와 연계하여 군인권 증진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국방 인권 모니터링단 제도는 군 인권정책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중이며, 장병과 시민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 부사관 모집-선발 과정에서 색각이상자에 대한 규제 개선
- 쌍둥이, 국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육·국적 부대 선발 제한 개선
- 정치 또는 이념집단 및 관련 동아리 활동자의 동반입대 선발 제한 개선
- 군인권지킴이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7cm 이상 문신장병의 간부 선발 기회 제한 개선
- 훈련병 대상 '요원성' 강요 등 개인 자유권 및 사생활 침해 개선

- ▶ 군 인권 보장 체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간략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이후 제시되는 사례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함이다.
- ▶ 학습자가 군 인권 보장 체계와 인권교육에 대한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군 인권의 증진에 각 체계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두었다.

### 3) 오늘의 인권 퀴즈

<p>오늘의 인권 퀴즈 × +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확인 ×</p> <p><b>[오늘의 인권퀴즈]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인권일까?</b> [도움 질문. 인권 보장은 누구의 몫일까?]</p>  	<p>오늘의 인권 퀴즈 × +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확인 ×</p> <p><b>[오늘의 인권퀴즈] 인권과 인권이 충돌한다?</b> [도움 질문. 인권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일까?]</p>  
<p>오늘의 인권 퀴즈 × +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확인 ×</p> <p><b>[오늘의 인권퀴즈] 군인의 인권은 제한이 디플트값?</b> [도움 질문. 군인은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p> <p><i>기본 설정함</i></p> 	<p>오늘의 인권 퀴즈 × +</p> <p><b>[오늘의 인권퀴즈] '선한 의도'였다면, 관행이라면 인권침해가 아닐까?</b> [도움 질문. 행위자 입장에서 인권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당사자의 인권피해가 없어질까?]</p> 

- ▶ 이 시험판은 전제적으로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기반해 군 인권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 ▶ 먼저 주어지는 사례를 인권의 개념과 구조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흔히 가지기 쉬운 인권에 대한 오해와 함정 부분에 대한 질문을 퀴즈로 제시하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구성하였다.

### 4) 알아야 할 내용

<p>오늘의 인권주제 × 알아야 할 내용 1 × +</p> <p><b>인권 교육</b> <b>군인 인권 보장</b> <b>군인, 제복입은 시민의 인권 보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도 인권의 주인 (헌법제10조)</li> <li>● 국가는 이러한 군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0조)</li> <li>● 「군인복무기본법」은 이러한 군인의 인권보장을 구체화한 법률!</li> </ul> <p><b>헌법 제10조 - 국가의 인권보장의무!</b></p> <p>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p> <p><b>「군인복무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b></p> <p>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오늘의 인권주제 × 알아야 할 내용 2 × +</p> <p><b>인권 교육</b> <b>군인, 제복입은 시민의 인권 보장</b> <b>인권의 보장과 제한, 제한의 한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인권 역시 국가가 보장한다!</li> <li>● 군인 인권 역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li> <li>● 인권의 제한은 원칙이 아닌 예외.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li> </ul> <p><b>인권의 보장과 제한-헌법 제37조제2항</b></p> <p>"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p> <p><b>「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b></p> <p>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p> <p><i>한부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i></p> <p><i>반으로 해석!</i></p>
---	--



<p>오늘의 인권주제 × <b>알아야 할 내용 3</b> × +</p> <p><b>인권 교육</b> <b>군인 사생활권 제한과 그 한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인 역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li> <li>인권의 제한은 원칙이 아닌 예외,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li> <li>인권 제한의 필요성(목적),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충족해야!!</li> </ul> <p><b>인권의 보장과 제한, 제한의 한계</b></p> <p><b>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b></p> <p>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역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p> <p><b>인권의 제한과 침해 구별!!</b></p> <p>"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p> <p>"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p> <p><i>그 어떤 인권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i></p>	<p>오늘의 인권주제 × <b>알아야 할 내용</b> × +</p> <p><b>인권 교육</b> <b>인권을 제대로 알기 위한 핵심!</b></p> <p>"모든 사람은 태어남서부터 동등하게 존엄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사람은 인권을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b>인권의 주인</b></li> <li>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b>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b></li> </ul> <p><b>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확인하는 인권</b></p> <p><b>인권의 권리자로서 모든 사람</b></p> <p><b>헌법 제10조 제1문</b></p> <p>"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b>인권보장 의무자로서 국가</b></p> <p><b>헌법 제10조 제2문</b></p> <p>"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p>
<p>오늘의 인권주제 × <b>알아야 할 내용</b> × +</p> <p><b>인권 교육</b> <b>인권을 제대로 알기 위한 핵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li> <li>인권과 인권이 충돌한다는 표현이 가지는 위험성, 민민감들의 착시, 국가책임 약화</li> </ul> <p><b>인권의 충돌이 아닌 인권보장 부족 상황!</b></p> <p><b>인권보장 의무자로서 국가(헌법 제10조)</b></p> <p>"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p> <p>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의 문제를 개인간의 갈등으로 보게 하는 합정을 경계하시!</p> <p><b>인권의 충돌이 아닌 인권보장 부족 상황!</b></p> <p>- 국가가 책임자야 할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보장이 부족한 상황을 민민감대화하지 말 것!!</p> <p><b>인권에 대한 오해와 함정에 빠지지 말자!</b></p>	<p>오늘의 인권주제 × <b>알아야 할 내용</b> × +</p> <p><b>인권 교육</b> <b>개인정보와 인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의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li> <li>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li> <li>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li> </ul> <p><b>개인정보보호의 인권적 의미/범위</b>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참조</p> <p><b>개인정보보호의 인권적 의미</b></p> <p>"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의 당사자(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p> <p>- 일반적 인권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는 인권!!</p> <p><b>개인정보의 개념, 범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li> <li>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li> </ul>

▶ 사례 제시 전 이 사례를 인권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오늘의 인권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인권의 개념과 지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선별하여 간단히 제시하였다. 핵심 개념은 최대 4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 자료 영역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 앞의 인권 퀴즈와 이 알아야 할 내용은 이 연구 결과를 참조해, 어떤 부분에 대한 인권적 이해를 돕는 것이 시급한지를 선정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과 핵심 내용을 교안에 담았다.

1. 먼저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에 입각해 인권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인성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질문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인권의 개념과 구조 자체가 국가를 향한 권리, 국가가 그 보장 의무를 지는 권리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질문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3. 군 인권과 관련한 가장 큰 고정관념이기도 한 군인의 인권 제한에 대한 관점을 환기할 수 있는 질문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4. 관행과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의 환기를 통해 인권적 군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질문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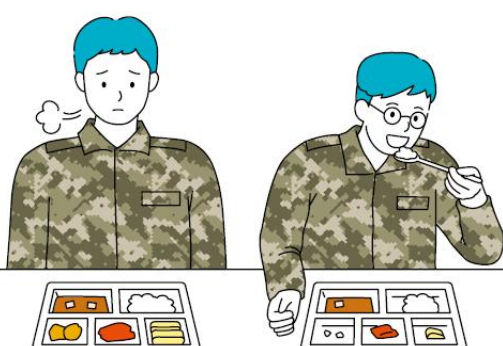
## 5) 사례 제시

- ▶ 전체 강의안 중 ‘군의 인권적 역할’을 제외한 영역은 각기 다른 인권의 주제와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주제에 5개 사례를 담았다.
- ▶ 오늘의 퀴즈와 알아야 할 내용에서 제시한 인권적 쟁점을 고민하기에 적합한 군 현장 인권사례를 선정하여 각색한 것이다.
- ▶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기반해 군 인권 현장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 사례 소개를 읽고, 현재 군에 필요한 주제와 사례를 선택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 배려인가, 인권인가 <콩 한쪽도 나눠먹는 것이 인권인가?>
- 인권과 인권이 충돌? <의료권과 휴식권 사례>
- 군인,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사례>
- 관행/선한 의도가 가지는 인권적 함정 <개인정보와 인권 사례> ①
- 관행/선한 의도가 가지는 인권적 함정 <개인정보와 인권 사례> ②

**사례1.**

☞ 배려인가, 인권인가 <콩 한쪽도 나눠먹는 것이 인권인가?>



**국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부대에서 부대원의 식사를 담당하는 조리병입니다. 저는 우리 전우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맘둘려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해 나가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군복무가 우리 사회 안전의 최전선을 지켜낸다고 생각하니 이제 제법 사회인으로 한 몫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례2.**

☞ 인권과 인권이 충돌? <의료권과 휴식권 사례>

**국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의무대에서 근무 중인 수병입니다. 저희 의무대는 인원이 적어 당직이 자주 돌아오는 편입니다. 심지어 당직 때마다 24시간 응급 대기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전우들 인권만 있고 내 인권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풀리지 않네요.

이러한 24시간 당직이 휴식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가, 당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전 우 누군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또 그 전우의 건강권이나 진료권이 침해되는 상황일테고 말입니다. 결국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인권은 충돌하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누군가 희생하면서 다른 이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사례3.

☞ 군인, 제복입은 시민의 인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사례>

극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00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00 중사입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이나 당직 근무자가 수시로 생활관을 순찰해 왔습니다. 순찰의 방식은 주로 생활관 출입문의 작은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 혹시 이것이 병사들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려나 걱정되었습니다. 관련 규정도 찾아보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례4.

☞ 관행/선한 의도가 가지는 인권적 함정-개인정보 ①

극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저는 현재 00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A소위입니다. 전입 후 얼마되지 않아 과장님께서 저를 포함한 초급 간부들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부서는 전부터 이렇게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역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출하라는 지시는 관참을 것일까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 513 참조)”



사례5.

☞ 관행/선한 의도가 가지는 인권적 함정-개인정보 ②

극군라디오 방송 사연 소개

저는 △△사단에 근무하고 있는 B소위입니다. 전부터 앓아왔던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져 집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휴직 신청 후 사단 인사처 주거시설담당관으로부터 건강상황을 염려하는 전화를 받았습니. 관련 업무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 건강상황을 알게 되었는지 다소 불쾌한 생각이 들어 확인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단 실무자가 제 병원 진단서가 첨부된 휴직의뢰 공문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고, 인사처 실무자도 그대로 공문을 접수하여 인사처 직원들이 그 공문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됩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 513 참조)”



- ▶ 사례를 활용하는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알만한 현실적인 생각해 볼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권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 사례 속 주어진 상황이 관련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인지 훈련과 인권침해의 원인과 대응을 분석하는 비판적 분석 훈련으로 인권문해력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 ▶ 사례는 인권교관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고,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시험판에서는 텍스트로 구성된 읽기자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였다.

## 6) 인권 토크(사례 토의/토론)

The screenshots show a web interface for 'Case Discussion/Debate'. Each window has a title bar with '오늘의 인권 퀴즈', '알아아할 내용', and '인권토크'. The content includes a case scenario and a list of discussion questions.

- Top Left Screenshot:** Case scenario about military service and human rights. Question 3 is circled in yellow: "인권 진정하게 보장이 되려면 무엇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 Top Right Screenshot:** Case scenario about military service and human rights. Question 3 is circled in yellow: "어떻게 하면 사원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장병들의 의료권 보장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 Bottom Left Screenshot:** Case scenario about military service and human rights. Question 3 is circled in yellow: "어떻게 하면 병사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군생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 Bottom Right Screenshot:** Case scenario about military service and human rights. Question 3 is circled in yellow: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조직에 필요한 개선 찾기".

- ▶ 오늘의 인권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참여적 방법으로 제안하고, 활동 진행 방식을 가이드하였다. 참여적 인권교육 활동은 사례토론에서부터, 쟁점토론, 마인드맵, 라디오극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사례 1. 가이드

- 우리 헌법 제10조가 확인하고 있듯이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다.
- 더구나 사례와 같이 군복무 중인 군인의 인권 보장에 대하여는 국가가 더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 국가가 이러한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주변의 개인적인 배려에만 의존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 장병 개인 간의 존중과 배려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 전체의 인권 증진으로 확장될 수 있기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일지 토의해 본다.

### ☉ 사례 2. 가이드

- 군인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나아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실행하는 한 현상이기도 한 군복무 과정에서의 인권도 보장받는다.
- 사례자의 경우 국가의 의료권 보장이라는 인권업무를 실행하는 업무자인 셈이다. 국가는 시민이자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실행자인 사례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 사례에서 장병들의 의료권과 사례자의 휴식권은 모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이다. 그럼에도 인권과 인권이 충돌한다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의 문제에서 진정한 보장 의무자인 국가의 자리를 잊게 할 위험성이 있다.
- 사연 속의 문제는 인권과 인권의 충돌로 누군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할 문제이다.

### ☉ 사례 3. 가이드

-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보장받는 인권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 「군인복무기본법」 역시 제4조에서는 군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제10조에서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인권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즉 「군인복무기본법」은 헌법상 보장된 군인의 인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법률이지, 군인의 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의 경우 군인의 인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사례의 순찰 목적은 무엇이고, 이러한 순찰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치인지, 장병의 사생활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등을 함께 토의해 본다.

☞ '시민의 군대'의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은 방위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군인이 조직 내에서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군대의 핵심 역할임을 학습합니다(김은희 외, 2022:240).

☞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규범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군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범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제4조 국가의 책무에 적혀 있습니다. 군인의 기본권은 점점 더 풍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김은희 외, 2022:243).

○ 사례 4-5. 가이드

- ▶ 때로는 인권이 오해를 받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다. “아니, 여태 다 그렇게 해왔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뭘 그리 까다롭게 구냐”,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데 뭘 그렇게 비딱하게 보냐” 등등 인권이 상당히 예민하고 불편한 존재로 오해받는 순간에 듣는 말들이다.
- ▶ 하지만 오히려 더 이상 이런 말들로 인권적 피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조직과 같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수적인 공적 조직은 인권적 조직 문화와 운영이야말로 군조직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다. 인권적 토대가 단단할수록 임무수행의 효율성도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군조직 가지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만큼 모델링의 사회적 효과도 클 것이다.
- ▶ 엄청난 속도의 기술 발전으로 ‘빅브라더’(정보의 독점과 통제로 인한 관리체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인권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인격체를 구성하는 부분인 만큼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많은 법률과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도 기존의 관행과 문화 속에 잠겨 있기도 하다.
- ▶ 각 사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각각 분석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사례 ①

- 금융거래정보 제출 지시를 내린 이유,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 금융거래정보 제출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합한 수단일까?
-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례 ②

- 정보주체인 사연자 입장에서 어떤 인권적 피해가 있었나?
- 이러한 개인정보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정보인권에 대한 조직 차원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7) 강의 마무리 - 학습내용 정리

<p>오늘의 인권퀴즈 × 알이아할 내용 × 인권토크 × 학습정리 ×</p> <p><b>군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b> 인권교육</p> <p><b>존중과 배려가 인권이 되려면...?</b></p> <p>다들 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정한 인권 보장을 고민하자. 팀에서 찾은 원인과 대안을 전체 공유하고, 모두가 찾은 대안을 다음의 세 속에서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나와 동료 - 부대 - 국방부 차원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정리합니다.</p> <p>▶ ▶ ▶ 장병 부대 국방부</p> <p>공 안쪽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만큼 공을 늘리는 것이 인권의 길입니다.</p>	<p>오늘의 인권퀴즈 × 알이아할 내용 × 인권토크 × 학습정리 ×</p> <p><b>군 오늘의 학습 내용 정리</b> 인권교육</p> <p><b>인권과 인권의 충돌이 아닌 인권보장의 부족!</b></p> <p>다들 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정한 인권 보장을 고민하자. 팀에서 찾은 원인과 대안을 전체 공유하고, 모두가 찾은 대안을 다음의 세 속에서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나와 동료 - 부대 - 국방부 차원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정리합니다.</p> <p>▶ ▶ ▶ 장병 부대 국방부</p> <p>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족한 보장을 채우자!</p>
---	---



- ▶ 군 인권교관이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 가이드에서 제시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을 통한 인권 개선 방향을 고민함에 있어 장병-부대-국방부 각각의 역할을 떠 올리면서 학습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성교육 및 군법교육과 구별되는 인권교육의 의미를 확보하고, 시민성과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라는 인권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 8) 공통-Q&A 인권 확장 질문

**인권 목표** Q&A 인권 확장 질문

**Q**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제도와 정책을 통하여 인권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어갈 사명을 갖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간의 상호존중과 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체 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차원에서 군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인권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군인의 인권과 지휘권은 충돌할까요?

**A** 지휘권은 지휘관에게 부여된 직무상 권한을 말합니다. 지휘관은 군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군 조직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휘권은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즉 직권으로서의 지휘권은 인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Q** 혐오표현도 인권으로 보장되는 것일까?

**A** 인권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권리 주장이 인권은 아닙니다. 특히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교육 상황에 따라 교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권 및 군 인권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궁금할 수 있는 질문과 답을 제시하였다.
- ▶ 인권의 주체와 인권 보장에 있어 국가의 책무, 군인의 인권과 지휘권,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9) 공통-관련 자료 소개(인권 더 알기)



- ▶ 인권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싶은 학습자에게 추천할 자료를 소개한다.
- ▶ 오늘의 인권 주제를 확장할 때 필요한 관련 추가 정보와 교육자료 목록을 제공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인권기관에서 생산한 자료 중 활용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 10) 공통-체크아웃 활동(설문)

- ▶ 강의 마무리에 강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교육 내용을 상기하고 학습자와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상호 점검한다.
- ▶ 군 인권교과관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설계하여 제시하였으며,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과 핵심을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가 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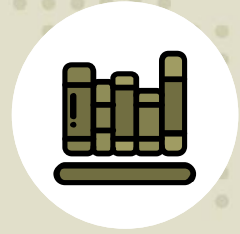
오늘 참여한 인권교육을 통해 ...

인권의 궁극적 보장 의무자는 국가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의 인권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의 인권과 같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개인적 차원의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보장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휘권은 군인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 조직문화와 제도 등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권보장을 위한 기구(기관), 제도와 정책 관련한 선사례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 그런 제도와 정책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권 보장이 궁극적으로 우리 군 조직의 모든 역량(전투력 포함)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및 별첨자료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참고문헌 및 별첨자료



## 참고문헌

### ▶ 문헌 및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22). 군 인권교관 역량강화 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발행되지 않은 내부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20). 인권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 기획·운영·평가를 위한 지표.
- 국방부(2023). 국군 인권교육 교재-군인의 인권, 함께 가는 길.
-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2020). 군 인권교육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
- 김은희(2023). '역할과 목적 확인을 통한 인권교육의 정체성 정립'. 2023 한국인권교육포럼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5-24.
- 김은희 외(2023). 법집행 공무원 인권역량 함양을 위한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훈련 과정. 법무부 연구보고서.
- 김은희 외(2022). 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
- ㈉인권정책연구소(2021).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 이수경(2022). 사회과에서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방향성 연구. 교원교육. 38(2). 457-471.
- Cremer, Hendrik(2020). Politische Bildung in der Bundeswehr. Zum Umgang mit rassistischen und rechtsextremen Positionen von Parteien. Berlin : 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 Equitas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2014). 인권교육활동 평가 길라잡이(국가인권위원회 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2011).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2018). 유엔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국가인권위원회 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2006).
- Politische Bildungsstätte Helmstedt & Bundeswehr(2023). Leben und Lernen unter einem Dach-Musterprogrammheft Bundeswehr 2023.
- Riedl, Helga(2019). Beispiele der Menschenrechtsbildung in Nürnberg. In : HR Training Sess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Workshop.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 United States Southern Command(2011). HUMAN RIGHTS AWARENESS EDUCATION FOR GENERAL OFFICERS AND FLAG OFFICERS.

## ▶ 인터넷 자료

<https://armyuniversity.edu/whinsec/en/chrd>. 최종검색일 : 2023.11.30.

<https://www.dscu.edu/documents/diils-documents/diils-catalog-2023.pdf>. 최종검색일 : 2023.11.30.

<https://www.dscu.edu/diils-about>. 최종검색일 : 2023.11.30.

<https://www.bpb.de/die-bpb/foerderung/foerdermoeglichkeiten/140007/foerderrichtlinie-n/>. 최종검색일 : 2023.11.30.

<https://www.deutsche-digitale-bibliothek.de/item/QRMFTHXNQDW6PMN3GBVCKFYS4ZQQ7GDS?lang=de>. 최종검색일 : 2023.11.30.

※ 분석대상 자료물은 참고문헌으로 별도 표시하지 않았음.

# 별첨 1

## 군 인권교육 콘텐츠 모니터링지

▶ 점검대상 :

▶ 작성자 :

범주	점검 항목	세부 항목	세부 질문(예시)	점검 여부
교육 구성	교육 목표의 적절성	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목표가 군 인권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교육 구성의 적절성	내용 선정 및 구성의 적합성	기획자가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구성되었는가?	
		학습자 특성 적합성	학습자의 특성(예: 각군, 직위(급), 업무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학습 분량의 적절성	교육시간 및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 분량이 적절한가?	
		내용의 논리성	동일한 콘텐츠 내에서 반복되거나 앞뒤 내용에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가독성 확보 등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 내용의 체계성	교육목표 및 교육 내용, 학습자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교육 내용	인권의 개념과 구조	인권의 보편성(모든사람)과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잘 제시하고 있는가?		
		인권의 원칙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 포함)을 적절하게 다루어내는가?		
	인권의 관점	직무의 인권적 의미	군 업무의 역할과 사명을 인권적으로 제시하는가?	
		대상화, 수단화, 서열화, 타자화, 시혜적 접근 등의 내용은 없는가? 인권침해의 원인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을 지목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돕고 있는가?		
			단순한 사례 소개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사례의 인권적 맥락을 읽어내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돕는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연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인권 보장 체계 (환류)	군인권 보장제도와 정책 및 관련 선사례를 제시하고 있는가?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첨기 마련된 판 권정

범주	점검 항목	세부 항목	세부 질문(예시)	점검 여부
	정확성	교육 내용의 표현상 정확성	표현상(용어 설명, 맞춤법, 외래어 표기, 오타자 등)의 오류는 없는가? 인용하고 있는 사례, 정보, 인권관련 용어의 표현과 사용이 정확한가?	
		교육 내용의 의미상 정확성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정확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예, 인권의 상호존중성, 권리와 의무 등)	
	최신성	교육 내용·자료의 최신성	내용(사례 업데이트, 쟁점의 현재성 등) 자료(사진, 통계, 도표, 지도, 지명, 각종 용어, 법령 및 각종 인용 자료)	
		윤리성	선정성 및 폭력성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용어, 이미지,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가?
	편견과 고정관념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임의적 사용(공인이 아닌 사람의 실명이나 연락처, 사진 등)		
교육 방법	방법 적절성	효과성	교육목표, 학습자 특성, 학습 경험 등을 고려한 교육의 흐름과 방법배치인가?	
		효율성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장애, 성, 연령, 문화 등)을 고려한 자료나 활동 구성인가?	
		참여성	학습자의 의견 초대, 비판적 사고의 확장, 생각의 전환, 스스로 문제와 해결 방안 발견 등을 돕는 질문이나 활동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는가?	
		실천성	교육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 이후 삶에서 이어질 실천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학습 환경	학습 분위기	인권친화적 학습 분위기	인권친화적 학습분위기(민주적, 협력적, 상호존중 등)를 유지하고 있는가?	
		학습자 편의	교육 진행에 필요한 준비물과 공간 배치 등을 미리 확인하였는가?	
총평				
개선을 위한 제언				

## 별첨 2

# 군 인권교육 FT 심층면접조사(FGI) 질적 분석 결과

## 1. 심층면접 조사 결과 분석 - 핵심 키워드 버전

### 1) 교수자로서 교관과 군 인권교육 FT

#### ①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Facilitator, 이하 FT)가 된 계기

- 인권교육활동 기반 - 개인의 역량 강화 노력
- 인권교관 경연대회
- 국방부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 선발 및 위촉

#### ② 군 인권교육 FT의 역할

- 교관의 교수자 역할
- 인권교육 콘텐츠의 방향성 제시

#### ③ 교관/군 인권교육 FT의 역할의 한계 및 상황 변화

- 인권교육 교관/군 인권교육 FT - 주(고유)업무 외의 직무
- 보직 이동과 지휘관의 변화(관점)에 따른 업무 단절
- 내부 직원\_폭넓은 교육 내용의 활용 제한
- 스스로 콘텐츠화 되지 못하는 것
- 교관/군 인권교육 FT 및 군 환경의 변화
  - 교관/군 인권교육 FT 스스로의 변화와 소명의식
  - 군의 전반적 인식의 변화와 전망(고유 직무)

#### ④ 군 인권교육 FT의 네트워크 활동

- 교안작성 리허설 및 세미나
- 교육주제 상호 토의
- 자료 공유\_네이버 카페

### ⑤ 군 인권교육 FT에게 인권교육의 의미

- 인권교육을 하면 변화된다는 믿음
- 필수불가결 - 당연했어야 한 것.
- 지금 우리 군에 갖추어져야 할 분야.
- 이전 군 생활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
- 내부의 전쟁\_문화 시스템

## 2)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

### ① 군 인권교육의 의미와 목표

- 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 온전한 지휘권의 회복
- 전투력 향상

### ② 군 인권교육 활용 콘텐츠 자료

- 국군교재
- 국방부\_각군 표준 교안 및 자료
- 관련 부서 자료
- 군 인권 관련 온라인 자료
  - 군내 생산 UCC 및 군 인권교육 FT 자체 제작 동영상 등
  - 2023, 2023 영상(인권왕)
  - 인터넷 교안
- 외부 기관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 민간 기관 자료
- 외부기타 자료 - 온라인 또는 문화(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③ 군 인권교육 필수 콘텐츠

-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과 구조
  - 인권과 기본권의 이해
  - 쟁점 -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구분 필요, 구분 불필요)
- 기본권의 제한
- 군인의 권리
  - 군인의 권리
  - 법규에 기반한 사례
- 인권침해 권리 구제

④ 교육하기 어려운 콘텐츠

- 교수자로서 어려운 콘텐츠
  - 인간의 존엄
  - 기본권(헌법) - 인권과의 관계
  - 지휘권-지휘관과 장병의 인권
  - 차별
- 학습자의 이해, 공감하기 어려운 콘텐츠
  - 기본권 제한
  - 지휘권과 인권의 관계

⑤ 부대별\_직무별 인권교육콘텐츠 차별성

- 군별 상황과 문화에 따른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 필요
- 직무별 인권교육 콘텐츠 차별성 필요
- 기타\_추가 학습자 구분 및 콘텐츠 개발 필요
  - 지휘권 행사 주체\_행정 업무자\_병력 통제 관리 간부
  - 부대별 보직자에 따른 학습자 구분
  - 훈련병 교관 추가

### 3) 군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 및 콘텐츠 개선 과제

#### ① 군 인권교육 개선방향

- 교육의 소규모화
- 확장성 고려
  - 세대별 매체 특성 고려
  - 특정 학습자군 추가 및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군인권 교재 기획
- 선사례와 긍정적 내용 중심(긍정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은 소재 발굴)
- 기존 군 인권교육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 결과보다는 맥락과 배경 중심

#### ② 군인권 교육 콘텐츠 개선 보완점

- 인간의 존엄
- 기본권 제한 중심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를 기본으로
- 인권개념과 구조의 기반 위에 법령과 사례 교육
-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의 관계
- 인권침해 구제 절차 - 시뮬레이션
- 인성, 감수성보다는 인권에 기반한 콘텐츠
- 소수자 관련 콘텐츠
- 제도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권고 이행(불수용 점검)
- 토론식, 사례별 수업 등의 인권적 마무리 콘텐츠

#### ③ 군인권 교육 방식의 변화

- 참여형(토론/토의식 등)에 대한 다양한 형식 고민
- 사이버 콘텐츠 활용 및 교육관리
- 다양한 도구, 기법 도입

#### ④ 기타

- 접근성 고려
  - 국군인권 교재 수량 확충
  - 군인권영상 콘텐츠의 (기술적) 접근성 높일 필요
- 포켓북/주제(챗터)별 형태 고려
  - 언제, 어디서든 활용가능하도록
  - 주제별로 볼 수 있도록
- 외부 콘텐츠 활용 방안 고려
- 군 인권교육의 필수 교육화(의무화)
- 인권교육 역량 강화(프로그램 확충)

## 2. 군 인권교육 FT 심층면접조사 질적 분석 결과

### 1) 교수자 환경

군 인권교육 촉진자(Facilitator, 이하 FT)가 설정하고 있는 교육목표로는 군인권 개념 이해, 인권 증진, 권리의 이해, 공동체 질서유지 및 밝은 병영문화, 인권침해 구제 등이 도출되었다.

#### (1)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Facilitator, 이하 FT)가 된 계기

##### ① 교육활동 기반\_역량 강화 노력

군 인권교육 FT\_01과 군 인권교육 FT\_04는 교육활동을 하다보니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이 결국 FT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저는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비자격, 그냥 경력 삼아서 부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가 뭔가 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에 가서 인권 과정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국방부에서 하는 심화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중략...) 육군에 종합행정 학교가 있거든요. □□□□교육단에 가서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또 별도로 제가 이수를 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인권과 인성이 약간 구분이 되면서 상호 이렇게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② “지금까지 한 ○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 **군 인권교육 FT\_04** | ① “실제 제가 이러한 인권 교관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교관 양성

과정 교육을 받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직접 교육을 하다 보니, 저는 군 생활이 그때가 벌써 한 ○○년째를 한 상태였는데 내가 이 ○○년 동안 군내 인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었고, 그때부터는 저 스스로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인권 교육을 다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다 들어보면서 인권이라는 주제를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구요.”, ② “FT는 20○○년도 말에 지원을 해서 20○○년도에 선발이 돼서 20○○년도 □분기부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 ② 인권교관 경연대회 및 국방부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FT)선발

군 인권교육 FT\_02와 FT\_04는 육군 인권교관 경연대회에서 우수 교관으로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군 인권교육 FT로 선발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군 인권교육 FT\_01은 교관활동 중 국방부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 선발에 응모하여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2** | “아시다시피 우리가 20○○년도에 육군에서 임병장 윤일병 사건이라고 굉장히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20○○년도에 육군 본부에서 군 인권 향상을 위해서 육군 인권 교관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대 대표 교관으로 나가게 되었고,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었고. 우리 군의 지휘 체계라는 것이 대대급 연대급 사단 군단 그리고 군사령부 육군 본부 이렇게 총 6개의 체계로 나뉘는데, 이렇게 하위 대대부터 상위 대대까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고 거기에서 우수 교관으로 선발이 돼 상장 수여를 받고 그 이후부터 국방부에서 교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FT로서 임명된 이후로 ○○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그러다 보니까 FT의 기회도 찾아오면서 그때 FT인원들을 보통 그냥 보편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인권교관 경연대회라는 것을 육군 본부에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인원들을 국방부에서 FT 권유로서 한번 모집을 했었는데, 저 또한 우연치 않게 제가 인권 공부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경연대회에서 좀 높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그러한 계기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 **군 인권교육 FT\_01** | “교관은 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교관이 되어서 부대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가 국방부 FT 선발 공고를 보았죠. 그래서 육해공군 전군에 국방부 FT를 모집한다는 정보를 받고 여기에 응시를 해서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강의 시연하는 것까지 다 통과해서 위촉을 ○○년도 그 때 한번 받은 것 같아요.”

## (2) 교관/군 인권교육 FT의 역할

### ① 교관의 교수자 역할

군 인권교육 FT\_01과 FT\_04는 국방부의 군 인권교육 FT는 인권교관을 양성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 즉 교관의 교수자 역할이 부여된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군 인권교육 FT\_04는 장병을 교육할 때보다는 폭넓은 지식과 각종 노하우를 전수하여 교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1은 교육이 강의를 통한 지식 전달에 머물면 교관들이 강의 콘텐츠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참여형 강의를 지향한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더 폭넓게 확장해

서 하는 교육 활동이 저희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4명의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들의 역할입니다. (...중략... ) 그래서 저희 4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당연히 매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매번 들어오는 교관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② “학습자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뀌어야 되는 고민을 교관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지 군대와 인권이라는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ppt 자료 만들어서 띄워놓고 30분에서 1시간 대부분 떼우기 식의 교육,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1시간 해야 되니까 하는 교육으로 흘러가 버리면 지금까지 군에서 이런 투자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은 다 뭐라 그래야 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저희 FT도 뽑은 이유가 그래서 뽑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인권교육 FT잖아요. 저희가 그군 인권교육 FT 그래서 촉진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것을 교관들한테, 교관이 되고 싶어서 오는 분들한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똑같이 서 가지고 이거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강의식으로 해버리면 교관님들도 얻어가는 것도 없고 부대 가서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저희 강의할 때도 저도 그 참여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관님들하고 참여 실습도 시켜요. 교관님도 이런 실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①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제가 인권 교관이 되었을 때는 저희 부대에 있는 장병들을 교육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FT로 선발이 되고 FT임무를 수행하러 가면 거기 저희 주변에 있는 장병들이 아닌 인권 교관이 되기 위한 분들을 위한 표현과 언어 그리고 제가 지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 교관의 교관으로 그렇게 질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② “이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들은 조금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권 교관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게, 저희들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이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똑같이 인권교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1년에 매월 단위로 양성 과정에 들어오는 교관들을 저희가 각종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좀 폭넓은 지식들을 더 전수를 해서 교육에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② 인권교육 콘텐츠의 방향성 제시

군 인권교육 FT\_03은 법조항들을 중심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군법교육과 침해 구별하는 인권교육의 편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군법교육과 군 인권교육 콘텐츠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가 군 인권교육 FT의 역할이라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3** | “결국에는 군법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병사들이 가져가는 남는 거는 죄짓지 말아야 겠다, 잘못했으니까 법령 어기지 말아야겠네 정도이고, 인권 교육을 받고 나면 대다수가 자꾸 침해를 구별하는 생각이 인권 교육으로 갑니다. 이걸 인권 침해, 이걸 인권 침해 아니야, 이걸 가능하네 정도로 가는 부분을 조금 바꾸려면 내가 이러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봐줘야 되지 또는 우리 부대는 우리 법령은 우리 외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침해 아니야라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어떤 사례가 생겼을 때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어떤 체계에서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지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략...)”

### (3) 교관/군 인권교육 FT 역할의 한계 및 상황 변화

교관과 군 인권교육 FT는 시스템적으로 주업무 외의 직무, 보직이동과 지휘관의 관점에 따른 교관/군 인권교육 FT로서 직무의 단절, 콘텐츠적으로는 폭넓은 교육 내용의 활용에 있어 제한을 받는 내부 직원이라는 지위가 교수자로서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진술하였다.

#### ① 인권교육 교관/군 인권교육 FT - 주(고유)업무 외의 직무

조사에 참여한 군 인권교육 FT들은 인권교육 교관과 군 인권교육 FT는 주업무인 고유업무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직무이기 때문에 한계를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 인권교육 FT\_01은 주업무가 아닌 인권교육 교관/군 인권교육 FT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개인의 휴가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였다. 군 인권교육 FT\_02는 인권교육이 고유업무가 아니기에 본인의 역량과 시간을 온전히 투여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인 열정 없이는 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군 인권교육 FT\_03과 군 인권교육 FT\_04는 고유업무와 관련해 직장이나 직책이 바뀌면서 교관/군 인권교육 FT의 직무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4는 고유업무 담당자로서 교관/군 인권교육 FT로서의 역할 사이의 괴리 때문에 힘든 상황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그래서 본인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교관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모든 교관들의 애로사항이죠.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고유의 업무가 다 있는데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는 교관 플러스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활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부대 눈치가 좀 많이 보이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본격적으로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위촉된 지가 한 0년 조금 더 돼 가는데 처음에 위촉됐을 때는 1년에 제 개인 휴가를 다 썼어요. 00일 일년 휴가를 다 써서 활동을 했구요.”, ② “왜냐하면 휴가를 내서 원하는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눈치가 보여서요.”, ③ “저희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FT들은 초반에 다 그랬을 거예요. 전부 다 개인 카드로 다 쓰고 나중에 휴가도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쓰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 **군 인권교육 FT\_02** | ① “네, 사실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권 교관이라는 게 본연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온전히 인권 교육을 위해서만 본인의 어떤 역량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는 없습니다.”, ② “또 군이라는 곳이 훈련이라는 걸 기본으로 두고 있는 일단 직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용사들을 관리하고, 또 몇 주 단위로 또 야외에 나가서 총도 쏘고 또 기동도 하기 때문에 인권 교육은 부대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열정 없이는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포기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수차례 오고 있지만, (...하략...)”, ②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 교관님들을 만나보면 보통 한 1~2년 내에 최대한 2년 내에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① “보통은 이 직책을 인권 교관이나 이러한 부수적인 타이틀들을 2년, 3년 동안 하는 간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② “괴리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0000이라는 직책이 항상

주변에 있는 용사와 간부들한테 따뜻한 말만 해주기 어렵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질책성 표현과 또는 잘잘못을 바로잡거나 또는 업무적인 지시를 상당히 많이 내려야 되는 직책인데, 오늘은 잘못된 거 또는 생활관 정리 정돈 청소 안 됐다 훈련 분위기 모습이 왜 이러냐? 등을 지적하고 그다음 날은 인권교육을 하고 있으니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는 하는데 (...하략...).

## ② 보직 이동과 지휘관의 변화(관점)에 따른 업무 단절

군 인권교육 FT\_02와 군 인권교육 FT\_03은 고유업무의 보직이동이 부수적인 업무인 교관/군 인권교육 FT 직무의 단절로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3은 보직이동뿐만 아니라 부대 지휘관의 관점에 따라 인권교육이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휘관의 변화도 교관/군 인권교육 FT 직무 단절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2** | “군의 특성상 흔히 말하는 보직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보직을 갖고 있을 때 인권교관이 됐을 때 1~2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동하는 장교분들 같은 경우는 A 부대에서 B 부대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그 보직이 바뀌는 순간 인권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수명이 어떤 분들은 길고 어떤 분들은 좀 짧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그럴 수도 있죠. 지휘관이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결국엔 회사 사장이 계속 바뀌는 거죠. 회사 사장에게 우리 회사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이게 필요하니 이걸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거의 뭐 잘 되고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은 제가 있어야 더 이렇게 인권적인 교육이 잘 될 텐데,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 교관님들을 만나보면 보통 한 1~2년 내에 최대한 2년 내에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② “그만두는 이유가 일단은 육군 국방부라는 조직 내에서 인권 교관의 기간은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관의 임무 수행의 어떤 직능이라는 자체가 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2년에서 3년 내에 본인이 임무 수행하던 직장이든 직책이 바뀌어버리니까 본인이 더 하고 싶어도 굳이 내가 이러한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권 교관이라는 직책은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권 교관이라는 직책이 계속 있다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텐데 인권 교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과업인데, 그게 주어지는 사람은 주어지고 난 다음에 2년에서 3년이라는 본인의 직책이 바뀌면 이 일을 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요소가 있고, (...하략...).

## ③ 내부 직원 지위 - 폭넓은 교육 내용의 활용 제한

군 인권교육 FT\_01은 교관/군 인권교육 FT는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군 인권교육의 콘텐츠를 폭넓게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1** | “교관 같은 경우는 부대에서 우리 용사들이나 그 다음에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소위 말하면 내부 직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폭넓게 하고 싶은 교육들을 못하는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죠.”

## ④ 교관 스스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는 문제

군 인권교육 FT\_01은 교관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지치게 되고 급기야 교육 내용이 인권교육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였고, 군 인권교육 FT\_02는 교관 스스로 인권교육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 교수자로서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3은 교관양성의 현실상 교관들이 스스로 역량 강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야전으로 파견되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인권교육을 하다가 지치거든요. 계속 또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고 한 4~5개월 지나니까 했던 것도 다시 하게 되고, 이런 한계점에 붙들리게 되니까 사람들 시선 자체도 느껴지고요. 그냥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죠.”, ② “네 그러다가 순간 번뜩 뜬 게 뭐냐 하면 한 2000년도인 것 같아요. 이 교육 자체가 자꾸 인성 쪽으로 살짝 흘러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제 스스로가 받았거든요.”

☞ **군 인권교육 FT\_02** | ① “인권 교관이라는 것 자체가 인권 교육의 콘텐츠 중 하나이거든요. (...중략...) 교관 스스로가 그렇게 콘텐츠화 되지 않게 되면 교관으로서의 어떤 수명이라고 그러죠. 인권 교육을 1년, 2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수명을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콘텐츠적으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②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의 어떤 제한된 콘텐츠 이용에 한계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그만큼 닿지 못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3** | “본인이 더 역량을 넓히려면 결국엔 자기 공부를 하고 넓혀야 되는데 그 만큼의 소명의식이 생길 만큼의 자극을 주고 야전으로 보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대부분 인권 교관님이 양성되고 자대에 가서 길어야 2년에서 3년이 되면, 3년도 하지 않는 분이 계실 겁니다.”

## ⑤ 교관/군 인권교육 FT 및 군 환경의 변화

군 인권교육 FT\_03과 군 인권교육 FT\_01은 교관/군 인권교육 FT 스스로의 변화와 소명의식과 더불어 군의 전반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교관/군 인권교육 FT의 직무에 대한 군 내에서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군 인권교육 FT\_01은 인권교육업무 관련 출장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군 인권교육 FT\_03은 부대 내에서 교관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면서 양성평등 상담관, 병영생활 상담관처럼 인권교관도 향후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직무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교관/군 인권교육 FT 스스로의 변화와 소명의식) **군 인권교육 FT\_03** | “그런데 한 번 하면 하면 할수록 주변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이게 군 생활을 제가 길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식을 조금 더 넓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 (군의 전반적 인식의 변화와 전망-고유 직무) **군 인권교육 FT\_01** |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 (군의 전반적 인식의 변화와 전망-고유 직무) **군 인권교육 FT\_03** | ① “나 이거 직장에서 이렇게 눈치 주는데 왜 하나라는 게 한 5년 정도 할 때까지는 있었고, 한 6년차 이후부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저분은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게 인식이 돼서 제가 어떤 교육을 한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뭘 한다, 그러면 거의 다 90% 이상은 다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② “이제 조직적인 논리로 본다면 양성평등 상담관, 병영 생활 상담관처럼 많지는 않더라도 인권 교관 예를 들면 그런 누군가가 직책이 있어서 최소한 사단이나 여단 내에 그분이 인권 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루면서 지금 현존하는 인권 교안들을 수시로 이렇게 학습하는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게 되면 그나마 좀 잘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4) 교관/군 인권교육 FT 네트워크 활동

교관 및 군 인권교육 FT 네트워크 활동으로는 학습자로 참여한 교관들과 교육 중 교안 작성 후 리허설을 함께 진행하는 것, 군 인권교육 FT들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교육주제 및 쟁점에 대한 토의, 네이버 카페에 교관들 간 자료 공유 등을 제시되었다.

##### ① 교안작성 리허설

군 인권교육 FT\_02는 교관양성과정 중에 학습자인 교관과 교수자인 FT가 교안 설계 리허설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2** | “물론 제가 다다음 주에 또 이번에 올해 16기와 17기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기수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발표하는 마지막 매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데, 발표하기 전날에 저 FT와 함께 교안 작성 리허설을 합니다. 각 조별로 만든 교안을 보고 슬라이드 하나 하나를 보면서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적절한 콘텐츠는 무엇인지 슬라이드에 대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시간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② 교육주제 상호 토의 및 세미나

군 인권교육 FT\_01은 군 인권교육 FT들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비정규적인 상호토의를, 군 인권교육 FT\_04는 군 인권교육 FT들의 정규적인 세미나 개최를 예로 들었다. 특히 군 인권교육 FT\_01은 상호 토의를 통해 결과에 주목하는 기존 인권교육 내용에 관한 원인을 살펴보게 된다고 진술했다. 군 인권교육 FT들이 각자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내용을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저희 4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콘텐츠도 당연히 매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매번 들어오는 교관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호 간에 토의하면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②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끼리 토의할 때는 어떤 토의를 하나면 ‘원인이 뭐냐고’ 그거를 항상 주의 깊게 보거든요. 우리 군법 교육할 때는 원인은 이미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냐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인권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나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저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충

분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원인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합니다. 일반 법무교육가들의 사례를 딱 열어놓고 보면 적어도 저희 FT 4명이 보는 시선은 살짝 다른 데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 **군 인권교육 FT\_04** | ① “세미나도 작년이랑 올해 실시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이 배우는 입장입니다.”, ② “네, 저희가 작년에는 주기적으로 모임 때 매 교육마다 4명이 다 모였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교육마다 2명씩 그룹을 지어서 2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특정 인권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 ③ 자료 공유\_네이버 카페

군 인권교육 FT\_01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교관과 군 인권교육 FT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권 교육 자료를 전체 교관들과 공유한다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육군 인권교관 양성, 국방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국방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제가 FT로 활동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 네이버 카페에 자료를 올리죠. 교관 자료들을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가 나름대로 서약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써서 그 자료들을 전 교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전 교관들이 공유하고 그 이전 선배 자료들도 다 탑재가 돼 있거든요.”, ② “나름대로 이것도 진짜 한 10년 정도 되면 하나의 또 빅데이터로 이걸 쌓으면 한 해에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내심 저는 그 욕심도 좀 있거든요.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뭔가 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5) 군 인권교육 FT에게 인권교육의 의미

군 인권교육 FT에게 인권교육의 의미는 ‘인권교육을 하면 변화된다는 믿음’, ‘필수불가결한 것 - 당연히 해야 한 것’, ‘지금 우리 군이 갖추어야 할 분야’, ‘이전 군생활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 ‘내부에서의 전쟁’ 이라고 제시하였다.

### ① 인권교육을 하면 변화된다는 믿음

군 인권교육 FT\_03은 인권교육의 의미는 ‘인권교육을 하면 변화된다’는 믿음이며, 함께 외치고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적용을 통해 인권적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3** | ① “네네. 꺾이지 않는다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② “변화된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변화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저 혼자 외치면 변화는 더딜 거다. 같이 외쳐보자. 그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제 주변에 그리고 우리 부대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다. 그 선한 영향력이 권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될 수도 있고. 더 확장되어서는 진짜 인권 침해 받은 인원이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걸 진짜 인권침해 구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봐주는 부분도 있어서 저에게도 좋

은 영향력이 있고 주변에도 좋은 영향력이 있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② 필수불가결한 것 - 당연했어야 한 것

군 인권교육 FT\_02는 인권교육은 당연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2** | “일단 좀 약간 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필수 불가결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이미 당연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미 아주 옛날부터 당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요. 필수불가결이라는 게 자연히 없어지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군을 대표해서도 노력하는 교관이 되겠습니다.”

## ③ 지금 우리 군이 갖추어져야 할 분야

군 인권교육 FT\_04는 기본권의 침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대의 일상에서, 군조직이 존재하고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분야가 인권교육이라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군 인권 교육이란 말에 교육이라는 걸 빼고 저에게 군 인권이란 갖춰져 있었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분야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인권 교육은 저희 조직이 존재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갖춰줘야 하는 분야이지 않을까. 아직도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 무대에서 느낀 현실 속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그러니까 인권, 기본권을 군에서는 나누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저는 오늘도 이 부대에서 기본권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아무 고민 없이 침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고 내가 인권 교관으로서 몰랐으면 차라리 몰랐을지언정, 알게 된 이상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잘못된 점들을 고쳐갈 것인가. 진짜 어제오늘 특정 사건이 있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던 한데 그러한 현실을 본다면 우리 조직이 앞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더 긍정적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가 조금은 더 빠르게 수준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군 인권 교육의 시작점인 것 같긴 합니다.”

## ④ 이전 군 생활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는 것

군 인권교육 FT\_04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기 전의 후회스러웠던 행동들에 관해, 인권교육을 통해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인권교육의 의미라고 진술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저는 제가 후회하고 있는 ○년이란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군복을 입은 신병이 처음 본 군복의 군인 간부가 나왔는데, 내가 행했던 행동에 대한 ○년 당시 인권이라는 주제를 모르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이 행했던 행위들을 저는 앞으로 제 후배나 제 주변의 동료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⑤ 내부 전쟁\_문화 시스템

군 인권교육 FT\_01은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었지만 부대 내에서는 폭력, 폭언, 권력구조를 통한 인권 침해 등이 항상 있어 왔다고 밝히면서 이것을 부대 내의 전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군대가 민주주의

를 되찾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것은 인권이라고 진술하면서 부대 내에서 인권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1** | “지금까지의 관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육군 문화는 과거에 이런 걸로 돌려야 되거든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되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확실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목숨을 바쳐야 되고 이것은 망설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온전한 전투력을 보존하는데 있어가지고 과거의 이런 문화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미 부대에서는 과거에는 항상 전쟁이었어요. 항상 맞고 때리고 욱하고 이런 침해에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다수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에 회사라든가 군이라든가 모든 조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에 놓인 조직은 항상 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판단이 모든 게 정확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되면, 만족 모형이 되면 상관없는데 그거는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군대도 마음속으로 신념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내 민주주의는 없다.” 예전에 맥아더 장군이 했던 얘기인데요. 군대의 민주주의 있어야죠. 민주주의 군대에서 군대 내 민주주의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지휘관들은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면 너희가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하실래요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희 교관들은 그 문제의 발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지휘관들한테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용사들한테는 이렇게 개선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정말 오로지 군 생활의 목표만 가지고 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의무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교관 활동을 했다가 피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생각이 뭔가 좀 바뀌듯이 총 쏜 사람도 분명히 침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총 맞아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 영문도 모르고 죽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전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군대 내에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군대를 만들려면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초가 인권이거든요. 인권 표현을 쓰기 시작한 지 불과 10년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불과 몇 년 안 됐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막 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여건도 보장해 주고 있거든요. 부대에서 앞으로 더 확산시켜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발전이 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군 인권교육 콘텐츠 점검

- 해당 내용은 본문 제5장 I. 2. 군 인권교육 FT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참고하세요.

## 3) 군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 및 콘텐츠 개선

### (1)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선 및 보완점

- 해당 내용은 본문 제5장 I. 2. 군 인권교육 FT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참고하세요.

### (2) 군 인권교육 방식의 변화

#### ① 소규모화

군 인권교육 FT\_02는 군부대는 여건상 소규모 교육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집합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교관들에게는 50명 이내의 소규모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소규모 교육을 진행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2** | ① “가장 인권 교육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거는 부대 특성상 만약에 부대원들이 만약에 300명이면 부대 여건상 따로따로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집합을 시켜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늘 교관님들에게 50명 이내가 가장 교육 효과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최대한 50명 이내로 교육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교육 소감문을 직접적으로 나눠 줘가지고 서면으로나마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했길 바라는 게 좀 있고요.”, ② “저도 제가 처음 했을 때는 거의 400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어떤 큰 시설에서 한꺼번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좀 힘들더라도 좀 2분의 1 또는 3분의 1, 4분의 1로 나눠서 하기 시작했고. 그게 정말 안 하지만 못하는 교육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② 참여형(토론/토의식 등)에 대한 다양한 형식 고민

군 인권교육 FT\_01은 군 인권이 대부분 교수자의 일방적 강의형식으로 진행되고 학습자들도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실질적인 참여도를 높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교수자가 단순히 질문을 던져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참여형이 아니라, 학습자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의 형식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1** | “우리 군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들은 아마 80% 이상 제가 장담컨대 강의식 교육을 주로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관들끼리도 얘기하고 양성 과정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교육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학습자, 용사, 군무원 각자 부대의 간부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하고, 양성 과정에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하고는 들어오기 전에 마음가짐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미 여기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듣고 싶어서 오게끔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내가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봤을 때는 지금까지 육군은 적어도 강의식 교육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다. 자기 나름대로의 ppt를 만들어서 그냥 설명하고 끝내고 그런 교육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은 여러 가지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제가 잘못 설명을 해버리면 참여시킨다. 그러면 자꾸 질문을 던지죠.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 교육받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강사들이 자꾸 질문 하면 그거 되게 싫거든요. 괜히 또 틀리면 창피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러면 호응도 참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 군 인권교육 FT\_02** | ① “가장 좋은 게 조별 모둠 토의라고 하거든요 어떤 한 사례에 대해서 이게 침해냐 아니면 아니냐 또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지 10명 단위 또는 12명 단위로 모둠으로 토의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 다음에 이 사례를 제가 던져줍니다. 사례를 던져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부대의 임무 특성상 어떤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숙제 내준 걸 그 조에서 토의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말 들어서 1조와 2조를 같은 질문을 줘요. 제가 주제를 그러면 서로 만든 정답을 크로스해가지

고 서로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발표를 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② “시간과 공간이 허락한다면 오늘 제가 만약에 1시간 교육을 했으면 각 조별로 대표자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는 교관이 만약에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교관이 교육한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5분이라도 허심탄회하게 그 내용을 제가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③ 사이버 콘텐츠 활용 및 교육관리


군 인권교육 FT\_04는 대면 교육의 빈도와 횟수를 늘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현재 장병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매체의 특성에 맞는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인권교육에 대한 관리를 모바일화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 인권교육 FT\_04** | “물론 지금 동영상 시청하는 거에 인권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서 인권 동영상을 시청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간부들뿐만이 아닌 용사들도 이러한 인권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을 저는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는 게 저희 병사들 다 휴대폰 사용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강당 같은 데 소집시켜서 받는 교육만으로 만족을 할 것인가. 용사들 또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야 되는 인권 영상이나 홍보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러한 인권 교육을 본인이 수강했던 기록들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돼야지만 더 변화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모바일화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대면 교육이 그래서 필요가 없어진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접촉하는 빈도와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 ④ 다양한 도구, 기법 도입

군 인권교육 FT\_02는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 도입부에 마음 열기 등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법이나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3은 교재보다는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군 인권교육 FT\_02** | “그 기본 틀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딱딱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군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하신다면,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장병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는 호기심 있고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콘텐츠처럼 어떻게 이들을 우리가 인권을 끌어들이는 것인가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 인권교육 FT\_03** | “예를 들면 카드 뉴스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노출되어야 교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 간부들이 인권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을까 싶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커처로 만든 만화 형식의 웹툰 형식의 그런 것도 짚막하게 게재를 합니다. 근데 확실히 글로 된 것보다 요즘 장병들에게는 웹툰이나 카드 뉴스처럼 법률적인 근거는 밑에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표현하는 방법들은 그래도 접근성은 조금 높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인권 교재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인포그래픽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범위

가 크다 보니 카드 뉴스나 웹툰처럼 각각의 권리들에 대한 내용이나 사례를 살짝 넣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봐야 된다는 것을 계속 노출시키면 지금처럼 인사과나 어디 무슨 창고에 이렇게 꽂혀 있지 않고 혹여나 꽂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네 하면서 찾아보는 교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3) 기타

#### ① 접근성 고려

군 인권교육 FT\_03과 군 인권교육 FT\_04는 현재 국군 인권 교재는 발간되는 부수가 한정되어 있고, 특정 단위 배부선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일선 부대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최근 국방부 인권 교재는 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권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잘 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4는 온라인 콘텐츠는 IPTV로 국방 TV까지 찾아 들어가 시청해야 하는 기술적 구조상 현재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장병이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국군인권 교재 수량 확충) **군 인권교육 FT\_03** | “광고처럼 예를 들면 노출되는 빈도 수에 따라서 활용성이 또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국군 인권 교재는 대대급에 발간되어서 배부되는 그 배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부가 만들어지면 어디 어디에 몇 부씩 대대에 한두 권 올까요?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대에서 한 권인가 두 권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많이 배부된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배부선이 조금 더 늘어야 되고, (…하략…)”

☹️ (국군인권 교재 수량 확충) **군 인권교육 FT\_04** | ①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한데 부대의 병력이 〇〇〇명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책자가 그 부대에 몇 개가 있을 것인가”, ② “과연 몇 개가 있어야지만 결국은 그러한 교재들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국방부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 저 또한 갖고 있는데, 결국 책이라는 거는 누군가 펼쳐서 봐야지 그 내용이 지식이 전달이 되고 함양이 되는 건데 과연 〇〇〇명, □□□명이 있는 부대에 이 책이 몇 권이 있어야지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어떠한 대상들을 지칭해서 비치가 돼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배치되고 있는 수량들이 상당히 극소수의 수량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장병들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라기보다는 (…하략…)”, ③ “일단은 지금의 수량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 대대의 병력이 〇〇〇명인데 그 책이 저희 대대에 3권 있습니다”, ④ “문제는 그 책 세 권이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닌 한 권은 인사 실무자 자리에 있고 한 권은 지휘관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과연 어디 있냐, 인권 교관인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책의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봤자 이 책을 펼치고 읽어야지만 지식이 전달이 되고 함양이 되는 건데 접근성 자체가 지금은 높지 않다라고.”

☹️ (군인권영상 콘텐츠의 기술적 접근성 높일 필요) **군 인권교육 FT\_04** | ① “근데 인권왕이라는 영상을 저는 책상과 컴퓨터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육군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인권왕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컴퓨터가 없는 현실 속에서 생활관에 있는 IPTV로 국방 TV까지 들어가서 국방TV에서 인권왕이라는 주제까지 찾아가서 인권왕을 시청을 한다? 생활관에서 TV를 나 혼자 보는 게 아닌데 평소에 국방TV도 안 보는데 국방TV 안에서 제작돼 있는 인권왕이라는 주제까지 접근해서 본다?”, ②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용사들 또는 저희 군 장병들 또한 결국은 스마트폰이 보급돼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군내 컴퓨터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IPTV로 찾아가서 봐야 되는 영상과 이러한 접근이 장병들 또한 전역하기 전까지 총 3회 또는 4회에 걸쳐서 또는 분기별로 내가 찾아 들어가서 시청을 하게 만드는 제도 절차가 생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② 포켓북/주제(챕터)별 형태 고려

군 인권교육 FT\_02는 앞으로 만들어질 교재는 항상 휴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포켓북 형태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 인권교육 FT\_01은 인권의 콘텐츠가 상호연관되어 있어 분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군 인권교육이 사례 학습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제별이나 챕터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교관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 (언제, 어디서든 활용 가능하도록) **군 인권교육 FT\_02** | “저도 충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재를 보게 되면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읽거나 아니면 그거를 교육 전에 그 책을 내가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여건상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간략한 핵심 내용 위주로만 정리된 포켓이라고 할까요? 카드처럼 생긴 어떤 그런 식으로 휴대하면서 내가 좀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강의 중간에 끼집어낼 수 있도록 포켓 북 형식으로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주제별로 참고하여 볼수 있도록) **군 인권교육 FT\_01** |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공 작업을 해서 이거를 마련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챕터별로 뭔가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장황하게 쪽 흘러가거든요.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전형적인 책이죠, 책.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은 항상 케이스 스터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띄워 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뭐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챕터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분을 주면 안 되고 다 호환 연관이 되고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없지 않긴 한데, 만약에 교관들로 하여금 교육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만들어진다고 하면 챕터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교관으로 하여금 이번 교육은 제가 이 챕터를 가지고 정독을 하고 공부를 해서 참고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 책에서 내가 공부할 방법을 찾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넘기다 보면 다 읽어야 돼요. 연결성이 돼 있어서 그걸 중간에 빼지는 못해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만들어주신다면 훨씬 더 윤택하게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거라도 정독하게 되거든요. 명확하게 근데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연관성이 다 있는데 하나로만 편중될 위험이 없지 않아서요.”

## ③ 외부 콘텐츠 활용 방안 고려

군 인권교육 FT\_04는 부대에서 UCC의 활용도가 높은 것은 유익한 군대 밖 사회의 자료들을 부대 내로 가져와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때문기도 하다고 하면서 외부 콘텐츠 자료를 들여오는 절차상의 문제나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 인권교육 FT\_02** |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다른 인권 교육 연구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 활용을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군이라는 거는 인터넷망이 일단 차단돼 있고 또 군 내부 자체 망을 쓰다 보니까 자료 다운받기라든가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제도적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4** | ① “UCC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결국은 UCC를 많이 활용하게 된 목적 자체는 저희 군내는 또 보안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외부의 자료들을 가져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② “바깥의 사회에서도 인권이라는 주제로서 상당히 많은 강의 자료와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겠지만 그 것을 군내로 갖고 오는 거는 이 보안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어내기가 그리고 저희 국방부 쪽이랑 얘기하시면 쉽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급 부대로 갈수록 그러한 타이틀을, 문제점을 풀어내는 데 솔직히 쉽긴 한데 결국은 이 군내 인권 교육의 목적은 이 말단 부대 최하급 부대에서부터 이러한 인권 교육이 체계화적으로 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하급 부대로 가면 갈수록 외부의 교육 자료를 받기는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 가져와서 써먹기도 쉽지 않고 (…하략…)”, ③ “주제를 문제 삼거나 그런 타이틀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가지고 들어오는 절차상의 문제들도 있고 제도에 대한 보안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고 있는 보안 빨간 거 안 돼 이러한 법률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자료들을 전환시켜서 우리가 제대에서 활용하기에는 그런 자료를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부대도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들 갖고 와서 내 컴퓨터로 틀어준다면 군내에 있는 노트북으로 틀어주려면 저희는 당연히 USB 같은 부분들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료를 바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바꾸려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특정 부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부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④ 군 인권교육의 필수 교육화(의무화)

군 인권교육 FT\_04는 인권교육이 성인지교육처럼 필수교육으로 의무화되어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4** | “필수 교육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게 효과가 높아졌다. 이런 부분보다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 군내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내가 인터넷으로 수강하는 성인지 교육, 그리고 직접 강사를 대면하는 성인지 교육이 두 번의 성인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에도 불이익이 생기고 장기에도 내 월급에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 부대 간부가 ○○○명이다 하면 이 ○○○명의 간부 중에 성인지 교육을 안 받은 간부를 한 명 한 명 다 찾아서 성인지 교육 받아야 돼, 너 이거 무조건 내일까지 받아야 돼, 그래요. 근데 저는 인권교관으로서 인권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조금 많이 군내 인권 교육 변화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성인지 교육처럼 인권 교육도 필수 교육의 하나로서 반영이 돼야 된다.”

#### ⑤ 인권교육 역량 강화(프로그램 확충)

군 인권교육 FT\_03과 현재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관 역량 강화 교육이 많지 않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계속 새로운 교관이 양성됨에 따라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심화와 업무 연계성이 떨어진다 고 진술하였다. 특히 군 인권교육 FT\_02는 교관 역량 강화 과정이 확충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안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 인권교육 FT\_04는 군의 교관 역량 강화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내외부의 역량 강화 과정에 참여하여 인권교육 콘텐츠를 학습하고 있다고

하였다.

☞ **군 인권교육 FT\_03** | “두 번째는 저도 느끼는 것인데, 본인이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려고 해도 국방부나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관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많지 않고, (...중략...) 아마 보통 2년 내에 직책이 바뀌면 그만두고 새로운 교관님이 양성 교육을 받고 또 임무를 수행해서 연계성도 조금 떨어지고 인권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전달 방법은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로 국방부에 있는 표준 교안을 가리키는 정도기 때문에 (...하략...)”

☞ **군 인권교육 FT\_02** | “그런 각자 역할을 맡고 있는 교관님들이 이제 연 4회 이상 교육하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르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완벽하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군 인권교육 FT\_01** | ① “네 그렇죠. 민망한 말씀이지만은 제 스스로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한 거는 불과한 4년 정도, 나머지 4년은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비자격에 의한 떠돌아다니는 잡지식을 가지고 짜깁기 한 그 정도의 수준.”, ② “그러다가 순간 번뜩 뜬 게 뭐냐 하면 한 2021년도인 것 같아요. 이 교육 자체가 자꾸 인성 쪽으로 살짝 흘러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제 스스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종합행정학교 법무팀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원래 법무관들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이 각 육군의 전체 부대에 법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서 받는 교육인데 이거를 열어주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관심 있으면 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거기를 가서 일주일 교육을 받고 오게 되니까 제 나름대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계획이 잡히고 체계가 잡히고 법규를 기반으로 한 이런 인성이 가미된 이런 교육, 감수성이 가미된 교육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딱 그림이 그려지니까 지금은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상대방이 저를 보기에 전문성이 보인다는 게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교육하면서 교육생들이 짝 달려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제가 강의하면서 그걸 느꼈을 때 엄청난 희열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③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을 해볼까 해서 처음에 했던 것이 국방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관 기초 과정이 있어서 거기를 먼저 갔거든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기초 교수법부터 시작해서 인권의 다양한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오셔서 가지고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을 교육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인권에 대해서 바로 알기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죠.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솔직히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100% 소화해서 받아 갖고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절반도 못 받았죠. 머릿속으로는 한 30% 정도 남아 있구요. (...중략...) 소위 말하면 인권의 역사부터 시작해 이데올로기식으로 짝 펼쳐지는 내용을 습득을 하고 또 교수법은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서 그때는 진짜 막 저녁 8시, 9시까지 숙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힘든 것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과제를 계속 내야 되고, 또 국가인권위에서 그거를 계속 또 원하시고, 뭔가 습득물이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배워 와서 그때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교관 활동을 하는데 좀 의지도 생기고 전문 지식도 어느 정도 배양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 **군 인권교육 FT\_04** | “처음에는 인권교관이라는 걸로 임명되었을 때 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저희 군에서는 육군과 국방부에서 솔직히 인권이라는 주제를 잘 모르는 사람, 간부들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읽어주면 되겠구나, 시간 때우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실제 제가 이러한 인권 교관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교관 양성 과정 교육을 받고 시

간이 조금 지나서 직접 교육을 하다 보니, 저는 군 생활이 그때가 벌써 한 10년째를 한 상태였는데 내가 이 〇〇년 동안 군내 인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었고, 그때부터는 저 스스로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인권 교육을 다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다 들어보면서 인권이라는 주제를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하략...)"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헌법소원 및 행정



---

##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

인 쇄 일 2023년 12월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홈 페이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연구 기관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

ISBN : 978-89-6114-996-9 93390